

**金融環境 變化와
銀行·企業間 關係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金融制度의 安定性을 보장하기 위한 과도한 規制 및 監督이 金融仲介의 效率性을 저해하고 있다는 認識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金融自律化의 움직임은 금융산업 내에서 銀行들이 차지하는 지위에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新種 金融機關들의 市場 進入과 금융혁신에 의한 新金融商品의 출현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들은 전통적인 은행시장에서 보다 많은 市場參加者들과 한층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에 따른 市場占有度 下落과 收益性 惡化를 보전하기 위해 營業業務의 범위를 확대하고 大型化 혹은 금융그룹의 형성을 통해 費用節減 및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은행의 주된 고객인 기업들이 소요자금을 직접금융시장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은행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기업들의 날로 다양화되는 金融需要를 종합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도 향후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은행들도 지금까지는 당국의 規制와 過保護 속에서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財源을 조달하여 기업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은행 內部經營의 自律性 및 은행간의 공정한 競爭이 제약됨에 따라 외국의 주요은행들에 비해 生産性 및 收益性이 뒤지고 金融技法面에서도 크게 낙후됨으로써 실물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앞으로 金融規制의 완화와 金融 및 資本市場의 開放이 가속화될 경우 資產 및 資本規模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상당한 규모의 不實債權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은행들의 영업기반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本 研究報告書는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우리 은행들이 금융산업의 先頭走者로서 기업들에 대해 운전 및 설비자금을 공급하는 信用供與者와 기업경영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機關投資家로서의 기능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래의 銀行-企業間 關係를 再照明하고 美國·英國·獨逸·日本의 關聯事例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개입이 축소된 새로운 환경하에서 우리 은행들이 기업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摘示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銀行 所有構造 改編 및 金融專業企業그룹의 도입을 둘러싼 諸般 論議가 은행-기업간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兼業化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本 報告書가 우리 금융산업의 中長期 發展計劃을 수립해야 할 政策當局者들과 세계적인 銀行으로의 跳躍을 모색하고 있는 銀行關係者들,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研究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安鍾吉 研究委員이 집필하였으며, 朴世準 研究員과 廉世羅 研究助員이 原稿整理를 도와 주었다. 筆者는 본 보고서의 草稿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韓國金融研究院의 鄭智晚 博士와 本 研究院의 李基榮 博士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研究報告書의 내용은 筆者의 개인적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5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 宗 淇

目 次

| | |
|------------------------------------|----|
| 第1章 序 論 | 13 |
| 第2章 金融環境變化와 主要國 銀行들의 對應 | 21 |
| 第1節 概 觀 | 21 |
| 第2節 主要國 銀行들의 業務多角化 現況 | 24 |
| 1. 美 國 | 24 |
| 2. 日 本 | 29 |
| 3. 獨 逸 | 35 |
| 4. 英 國 | 41 |
| 第3章 金融環境의 變化와 銀行의 役割 再定立 | 47 |
| 第1節 企業金融과 銀行의 役割 | 49 |
| 1. 直接金融과 間接金融 | 49 |
| 가. 資金調達形態의 決定要因 | 49 |
| 나. 우리 企業의 資金調達 現況 | 52 |
| 2. 與信管理制度의 變遷 | 61 |
| 가. 與信管理制度 關聯規程의 主要變更 推移 | 61 |
| 나. 與信管理制度에 대한 評價 | 64 |
| 다. 向後의 與信管理制度 運用方向 | 68 |
| 3. 金融環境의 變化와 銀行의 資金供給者로서의 役割 | 75 |
| 가. 主要國에서 銀行의 資金供給者로서의 役割 | 75 |

| | |
|--------------------------------------|-----|
| 나. 經濟成長 過程에서 銀行의 資金供給 | 84 |
| 다. 主去來銀行制度的 評價 | 90 |
| 라. 金融環境 變化和 우리 銀行의 對應方向 | 98 |
| 第2節 企業支配構造와 銀行의 役割 | 124 |
| 1. 主要國 銀行의 企業株式保有와 機關投資家로서의 役割 | 127 |
| 가. 獨逸 | 127 |
| 나. 日本 | 132 |
| 다. 美國 | 136 |
| 라. 英國 | 141 |
| 2. 機關投資家로서의 銀行의 役割 提高方向 | 144 |
| 가. 現行 企業支配構造와 銀行役割 提高의 必要性 | 144 |
| 나. 銀行의 機關投資家로서의 役割 提高方案 | 153 |
| 第4章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과 金融그룹의 形成方向 | 161 |
| 第1節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 | 161 |
| 1. 主要國 銀行들의 所有構造와 銀行經營 | 166 |
| 가. 美國 | 166 |
| 나. 英國 | 171 |
| 다. 獨逸 | 173 |
| 라. 日本 | 176 |
| 2.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方向 | 180 |
| 가. 同一人 株式所有限도의 縮小 | 180 |
| 나. 金融專業企業家の 導入 | 183 |
| 第2節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形成 | 186 |
| 1. 우리 銀行들의 子會社 進出現況 | 190 |
| 2.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導入可能性에 대한 檢討 | 196 |

| | |
|-------------------------------|-----|
| 3. 向後的 金融그룹 形成方向 | 201 |
| 가. 金融專業企業그룹 形成을 위한 與件整備 | 201 |
| 나. 金融그룹 形成時的 一般的 考慮事項 | 204 |
| 第5章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 217 |
| 〈參考文獻〉 | 227 |
| 〈附 錄〉 | 232 |

表 目 次

| | | |
|----------|----------------------------------|----|
| 〈表 1- 1〉 | 主要國의 世界 100大 및 500大 銀行 現況 | 15 |
| 〈表 1- 2〉 | 銀行規模의 國際比較 | 15 |
| 〈表 1- 3〉 | 主要國 銀行職員 1人當 生産性 比較 | 16 |
| 〈表 1- 4〉 | 主要國 銀行들의 收益性指標 比較 | 17 |
| 〈表 2- 1〉 | 主要國 商業銀行의 非利子收入 比重 推移 | 23 |
| 〈表 2- 2〉 | 美國 主要 商業銀行들의 證券브로커業務에의 進出 | 27 |
| 〈表 2- 3〉 | 美國 金融그룹의 子會社 現況 | 30 |
| 〈表 2- 4〉 | 日本 主要 銀行그룹들의 子會社 現況 | 32 |
| 〈表 2- 5〉 | 證券 子會社 設立 現況 및 金融改革法上의 業務取扱範圍 | 34 |
| 〈表 2- 6〉 | 信託 子會社 設立 現況 및 金融改革法上의 業務取扱範圍 | 36 |
| 〈表 2- 7〉 | 獨逸 金融 子會社 現況 | 38 |
| 〈表 2- 8〉 | 3大 銀行의 金融綜合化 強化 現況 | 40 |
| 〈表 2- 9〉 | 英國 主要銀行의 純利子收入 및 非利子收入 推移 | 44 |
| 〈表 2-10〉 | 英國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 | 45 |
| 〈表 3- 1〉 | 製造業 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 | 52 |
| 〈表 3- 2〉 | 製造業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 | 54 |
| 〈表 3- 3〉 | 企業部門 資金調達構造 | 55 |
| 〈表 3- 4〉 | 民間企業의 金融負債 推移 | 56 |
| 〈表 3- 5〉 | 美國 非金融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 58 |
| 〈表 3- 6〉 | 英國 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 58 |

| | | |
|----------|--|-----|
| 〈表 3-7〉 | 日本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 58 |
| 〈表 3-8〉 | 製造業體의 自己資本 및 負債比率 推移 | 60 |
| 〈表 3-9〉 | 製造業 金融費用/賣出額 比率의 國際比較 | 61 |
| 〈表 3-10〉 | 主要國의 營業 및 經常 利益率 推移比較 | 61 |
| 〈表 3-11〉 | 與信限度管理對象 貸出金 現況 | 64 |
| 〈表 3-12〉 |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 占有比率 推移 | 65 |
| 〈表 3-13〉 | 銀行貸出金의 中小企業 比重 推移 | 65 |
| 〈表 3-14〉 | 政策金融 供給比重 推移 | 66 |
| 〈表 3-15〉 | 30大 系列企業群 主力業體 負債比率 現況 | 67 |
| 〈表 3-16〉 |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 | 76 |
| 〈表 3-17〉 | 貸出金 依存率 現況 | 77 |
| 〈表 3-18〉 |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依存率 | 79 |
| 〈表 3-19〉 | 同一企業集團內 金融機關에의 借入金依存率 推移 | 80 |
| 〈表 3-20〉 | 市中銀行 貸出金規模 方程式의 期間別 推定結果 | 90 |
| 〈表 3-21〉 | 貸出金 規模別 分布 | 91 |
| 〈表 3-22〉 | 主去來銀行의 貸出順位 | 92 |
| 〈表 3-23〉 | 貸出 1位 銀行 및 主去來銀行의 1985~92年 平均 貸出金 占有率 | 92 |
| 〈表 3-24〉 | 1985~92年間 貸出金 占有率 1位 銀行의 順位變動回數 | 93 |
| 〈表 3-25〉 | 主去來銀行의 貸出占有率 分布 | 94 |
| 〈表 3-26〉 | 占有率 10% 以上 銀行數 | 95 |
| 〈表 3-27〉 | 貸出 上位 銀行의 貸出占有率 分布 | 96 |
| 〈表 3-28〉 | 第1, 2金融圈 與信比重 | 99 |
| 〈表 3-29〉 | 金融仲介模型에 의한 推定結果 | 103 |
| 〈表 3-30〉 | 使用者費用 接近法에 의한 推定結果 | 105 |
| 〈表 3-31〉 | 一般銀行의 部門別 收益狀況 | 109 |
| 〈表 3-32〉 | 最近의 銀行 元貨 預貸金利差 推移 | 111 |

| | | |
|----------|---------------------------|-----|
| 〈表 3-33〉 | 企業의 外貨資金 調達 推移 | 113 |
| 〈表 3-34〉 | 一般銀行의 不實債權 現況 | 115 |
| 〈表 3-35〉 | 一般銀行의 自己資本比率 現況 | 116 |
| 〈表 3-36〉 | 市中銀行의 用途別·期間別 貸出金 推移 | 118 |
| 〈表 3-37〉 | 企業株式의 所有者 構成 推移 | 145 |
| 〈表 3-38〉 | 30大 大規模 企業集團의 株式所有構造 | 146 |
| 〈表 3-39〉 | 證券市場規模의 國際比較 | 150 |
| 〈表 3-40〉 | 市中銀行 銀行計定 有價證券 保有 現況 | 155 |
| 〈表 3-41〉 | 市中銀行 信託計定 有價證券 保有 現況 | 156 |
| 〈表 4- 1〉 | 銀行別 大株主 株式所有 現況 | 165 |
| 〈表 4- 2〉 |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및 大株主 比重 | 167 |
| 〈表 4- 3〉 |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大株主 現況 | 168 |
| 〈表 4- 4〉 | 美國의 主要 大型商業銀行들의 理事會 構成 | 171 |
| 〈表 4- 5〉 | 英國 主要 銀行들의 理事會 構成 | 172 |
| 〈表 4- 6〉 | 英國 主要 銀行들의 株主構成 現況 | 173 |
| 〈表 4- 7〉 | 獨逸 主要 銀行들의 理事會 構成 | 175 |
| 〈表 4- 8〉 | 日本 主要 銀行그룹의 株主 現況 | 177 |
| 〈表 4- 9〉 | 日本 主要 都市銀行들의 意思決定機關 構成 | 179 |
| 〈表 4-10〉 | 銀行·非銀行 業務重複 現況 | 189 |
| 〈表 4-11〉 | 金融機關別 核心業務와 附隨業務의 現況 | 191 |
| 〈表 4-12〉 | 銀行機關의 業務內容 | 193 |
| 〈表 4-13〉 | 國內 主要 金融機關의 子會社 保有 現況 | 195 |
| 〈表 4-14〉 | 金融그룹 形成의 段階 | 212 |
| 〈表 5- 1〉 | 製造業 企業의 總資產 對比 自己資本 構成 推移 | 222 |

圖 目 次

| | | |
|---------|---------------------------------------|-----|
| [圖 3-1] | 主要國 貸出金利 推移 比較 | 59 |
| [圖 3-2] | 市中銀行의 資金運用과 經濟成長率間의 關係 | 86 |
| [圖 3-3] | 市中銀行의 資金運用과 通貨供給量間의 關係 | 87 |
| [圖 4-1] | 主要 銀行의 産業資本 持分 現況 | 198 |
| [圖 4-2] | 主要 證券會社의 資本金 및 大株主 1人 持分率 現況 | 199 |

第1章 序 論

1970년대 말 이후의 범세계적인 金融의 自律化·國際化·證券化의 진전으로 주요국의 銀行產業은 현재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銀行產業을 둘러싸고 있던 각종 규제와 완화는 銀行間 및 銀行과 非銀行間 競爭을 심화시켜 資金調達費用을 높이고 있으며, 소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 금융상품의 출현은 銀行商品에 대한 수요기반을 축소시킴으로써 銀行의 收益性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監督當局들이 金融環境變化로 銀行產業의 健全性 및 금융제도 전반의 안정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自己資本規制를 포함한 健全經營監督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收益性 壓迫要因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主要國 銀行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收益源을 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銀行間 合併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점망을 정비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은행들이 대대적인 構造調整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企業의 多國籍化 및 資本移動의 自由化 등으로 은행들의 영업기반이 점차 해외로 확대되면서 대형은행들이 국내시장에서의 날로 심화되는 경쟁을 피해 특히 自國보다 競爭度가 낮지만 收益性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흥 공업국들에 다투어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1993년 말의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향후 各國 金融市場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國內銀行間 또는 國內銀行과 外國銀行間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銀行産業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자 各國 金融當局들은 自國 銀行産業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함으로써 銀行들의 構造調整을 지원하는 동시에 自國 金融市場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關聯 法規 및 規程들을 他國의 그것들과 조화되도록 정비·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實物部門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러한 自由化·開放化·國際化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金融産業이 實物部門의 지속적인 성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 제국들에 비해 낙후된 金融産業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급히 강구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周知하다시피 우리 金融機關들은 과거 30여 년 동안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實物部門의 성장에 소요되는 財源을 국내외로부터 동원하여 이를 전략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각종 규제로 인해 公共性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利潤極大化動機에 입각한 영업활동을 自律的, 效率的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우리 은행들은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資産 및 資本規模가 영세하고 부실채권의 과다보유, 외형위주의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預貸金利率에도 불구하고 收益性이나 勞動生産性이 현저히 낮으며, 금융기법의 낙후, 新金融商品開發 부진, 전문인력의 양성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先進 外國金融機關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一例로 최근(1994년 7월)에 발간된 『뱅크』誌의 세계 1,000대 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 중 규모면에서 100대 은행에 드는 은행은 全無하고 예금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外換銀行이 169위에 그치고 있으며, 14개 市中 銀行의 자산을 합쳐도 세계 28위 은행보다 작은 실정이다. 또한 預金銀行 중 5대 은행의 行當 平均 資本은 일본 5대 은행 평균자본의 1/9.9, 미국 5대 은행자본의 1/5.4에 불과하다.

〈表 1-1〉 主要國의 世界 100大 및 500大 銀行 現況
(1993年 現在, 資本金 基準)

(單位: 個社)

| | 韓 國 | 日 本 | 美 國 | 프랑스 | 獨 逸 | 이탈리아 |
|---------|-----|-----|-----|-----|-----|------|
| 100大 銀行 | — | 26 | 20 | 7 | 9 | 7 |
| 500大 銀行 | 16 | 104 | 84 | 16 | 36 | 34 |

資料: The Banker, 1994. 7.

〈表 1-2〉 銀行規模의 國際比較(1993年 現在)

(單位: 百萬달러)

| | 行當 平均資本 | | 行當 平均資産 | |
|-----------------|---------|-------|---------|-------|
| | 金 額 | 對韓國倍數 | 金 額 | 對韓國倍數 |
| 韓 國 (28) | 737 | 1.00 | 11,299 | 1.00 |
| 美 國 (175) | 1,055 | 1.43 | 16,171 | 1.43 |
| 獨 逸 (73) | 1,048 | 1.42 | 37,224 | 3.29 |
| 英 國 (32) | 1,772 | 2.40 | 42,368 | 3.75 |
| 日 本 (115) | 2,869 | 3.89 | 75,144 | 6.65 |
| 프 랑 스 (25) | 2,992 | 4.06 | 79,935 | 7.07 |
| 캐 나 다 (9) | 2,900 | 3.93 | 60,624 | 5.37 |
| 이 탈 리 아 (69) | 954 | 1.29 | 17,488 | 1.55 |
| 스 페 인 (37) | 859 | 1.17 | 15,719 | 1.39 |
| 스 위 스 (26) | 1,483 | 2.01 | 29,028 | 2.57 |
| 臺 灣 (32) | 558 | 0.76 | 11,315 | 1.00 |
| 홍 콩 (7) | 238 | 0.32 | 3,539 | 0.31 |
| 싱 가 포 르 (5) | 1,566 | 2.12 | 16,729 | 1.48 |
| 말 레 이 시 아 (7) | 445 | 0.60 | 8,451 | 0.75 |

註: 國別로 1,000大 銀行에 포함되는 銀行들의 平均數值이며, () 안은 各國의 1,000大 銀行에 포함되는 銀行數를 가리킴.

資料: The Banker, 1994. 7.

銀行職員 1인당 생산성 지표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5대 市中銀行의 직원 1인당 總資產은 미국 5대 은행의 1/2.3, 일본 6대 도시은행의 1/14.7에 불과하며, 1인당 稅前利益 規模도 각각 미국 5대 은행의 1/4.3, 일본 6대 은행의 1/2.1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 14개 市中銀行의 1991~93년 평균 總資產利益率은 0.67%로 최근 收益性이 크게 악화된 일본 은행들보다는 높으나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 은행들보다는 낮으며, 自己資本 利益率은 9.0%로서 美國, 獨逸, 英國, 臺灣 銀行 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表 1-3〉 主要國 銀行職員 1人當 生産性 比較(1993年度 基準)

(單位：千달러)

| | 韓國 (5大 市中銀行) | 日本 (6大 都市銀行) | 美國 (5大 銀行) |
|----------|-----------------|-----------------|---------------|
| 1人當 總資產 | 1,783 | 26,189 | 4,018 |
| 1人當 稅前利益 | 14.5 | 30.1 | 62.2 |
| 1人當 預受金 | 1,854 | 19,124 | 2,038 |
| 1人當 貸出金 | 1,375 | 16,767 | 1,704 |

資料：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1994.

日本 全國銀行協會聯合會, 『全國銀行 財務諸表分析』, 1994. 8.

美國 5大 銀行 年次報告書, 1993.

- 1) 日本 都市銀行들의 自己資本利益率은 1980년대에는 韓國 市中銀行들 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최근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대량의 不實債權 발생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됨.

(單位：%)

| | 韓國(市中銀行 平均) | | | | | | 日本(都市銀行 平均) | | | | | |
|-------------|-------------|------|------|------|------|------|-------------|------|------|------|------|------|
| | 1983 | 1985 | 1988 | 1991 | 1992 | 1993 | 1983 | 1985 | 1988 | 1991 | 1992 | 1993 |
| 自己資本 當期純利益率 | 3.8 | 3.5 | 6.1 | 6.4 | 6.9 | 5.8 | 11.4 | 10.4 | 11.9 | 4.5 | 2.9 | 2.1 |

資料：韓國銀行.

〈表 1-4〉 主要國 銀行들의 收益性指標 比較

(單位：%)

| | 總資產利益率 | 自己資本利益率 |
|--------------------------|----------------|---------------|
| 韓國 14個 市中銀行 (6大 市中銀行) | 0.67 (0.61) | 9.0 (10.1) |
| 美國 10大 銀行 | 1.23 | 23.3 |
| 日本 11個 都市銀行 (6大 都市銀行) | 0.24 (0.24) | 6.4 (6.3) |
| 獨逸 3大 商業銀行 | 0.62 | 18.6 |
| 英國 4大 決濟銀行 | 0.64 | 15.7 |
| 프랑스 4大 商業銀行 | 0.21 | 6.1 |
| 臺灣 5大 銀行 | 0.82 | 21.8 |
| 싱가포르 3大 銀行 | 1.54 | 16.0 |
| 말레이시아 3大 銀行 | 0.98 | 9.3 |

註：1991~93년도 各國 銀行의 行當 平均.
資料：The Banker, 1992. 7, 1993. 7, 1994. 7.

이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金融産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병·전환을 통한 大型化로 規模의 經濟를 도모하거나,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專門化를 시도하거나, 또는 業務多角化를 통해 範圍의 經濟를 실현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專業主義를 지향해온 우리 金融産業의 경우 業種間 相互進出을 통해 收益源의 多邊化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 우리 금융시장의 구조, 各種 金融機關의 고유업무기반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短期的인 實效性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를 추진하더라도 長期的인 觀點에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부 金融機關들을 大型化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각자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專門化하여 固有業務의 基盤을 강화해 나가면서 附隨業務 및 兼營可能業務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利自由化와 金融機關의 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한 金融改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요구에 부응하는 時宜適切한 規制緩和 및 관련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金融機關의 經營者들이 변화하는 金融環境 속에서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수익전망을 근거로 수립된 장·단기 전략에 따라 顧客의 需要에 부응하는 다양한 金融商品을 적극적으로 開發하고 이를 통해 조달된 資金을 收益성이 높은 부문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責任經營의 姿勢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政府도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金融産業의 낙후가 資金配分の 非效率性和 자금의 한계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實物部門의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대 이후 市中銀行의 民營化, 銀行의 人事·豫算 등 內部經營의 自律性 提高, 금융기관 업무영역에 관한 각종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정책금융의 축소 및 通貨管理方式의 間接規制로의 전환 등 金融産業에 대한 自律化 措置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정책금융 및 부실채권의 존재, 통화관리를 위한 窓口指導의 존속, 金利規制, 금융기관의 수용능력 미흡 등 諸般與件의 不備로 인해 이들 自律化 措置는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金融部門이 實物部門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國內 金融機關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발전을 통해 外國 金融機關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金融産業 전반의 問題點 및 낙후요인들을 摘示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金融當局과 金融機關들의 일치된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金融産業의 根幹이 되어 온 銀行部門은 그 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하에서 實物部門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해 온 결과 預貸市場에서의 占

有率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銀行 經營者들은 막대한 규모의 不實與信을 축소하고 銀行의 收益性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낙후된 銀行產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해서는 產業資本들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異種 金融機關들간의 預金部門에서의 業務重複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金利自由化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金融機關들간의 예금고객유치를 위한 가격경쟁은 한층 심해질 것이며, 資金運用面에서도 은행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金利의 실세반영으로 다소 해소되고 大企業들의 資金調達窓口가 다양화됨으로써 대기업들의 銀行借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諸般 環境은 더욱 불리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지금까지의 다소 受動的인 經營行態에서 벗어나 환경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自生力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은행들 스스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比較優位部門을 파악하여 이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대한 對應策을 마련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中長期 進路를 開拓해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本稿에서는 다음 章에서 主要國에서의 金融環境 變化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銀行들의 戰略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第3章에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주된 資金供給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銀行들이 金利自由化,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金融自律化와 금융국제화·증권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에 여하히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主顧客인 企業들과의 關係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再定立할 수 있을 것인가를 美國·英國·獨逸·日本의 事例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市場參加者들의 전문성 결여, 제도정비의 미흡 등으로 인해 證券市場이 價格機構를 통해 기업들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제한된 金融資源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을 통해 행사해 온 영향력이 金融自律化의 진행으로 약화되는 공백을 銀行과 企業들간의 自律的인 關係定立으로 메우기 위한 방안, 즉 機關投資家로서의 은행들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第4章에서는 銀行-企業間 關係에서 최근에 들어 論議의 주된 爭點이 되어 온 企業의 銀行經營 參與 및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方向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은행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금융전업기업그룹 형성의 필요성, 도입가능성, 兼業化에 대비한 金融市場의 여건정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本稿에서 논의된 내용의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은 마지막 章에 제시되어 있다.

第2章 金融環境 變化와 主要國 銀行들의 對應

第1節 概 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經濟構造가 複雜多岐化됨에 따라 金融去來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처럼 변화하는 고객들의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金融機關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新種 金融商品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 결과 주요국의 은행들은 既存顧客의 離脫 防止와 新規顧客의 유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餘他 金融機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經營戰略을 추구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主要 國家나 大企業 借入자들이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기보다는 資本市場에 직접 의존하는 경향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으며, 一般顧客들도 은행의 요구불예금이나 낮은 금리의 저축성예금보다는 流動性이 높으면서도 高收益을 실현할 수 있는 非銀行 金融機關의 대체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금융자원의 배분에 있어 이전보다 市場 機構의 역할에 보다 더 의존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金融機關들의 業務領域에 대한 구분이 완화됨에 따라 傳統的 銀行業務에 주력해 온 은행들은 다른 金融機關들의 銀行市場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에 직면하게 되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고 預貸마진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를 補填하기 위해 危險度가 보다 높은 신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不實債權이 늘어나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¹⁾.

이상의 변화들로 인해 銀行의 收益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게 되자, 은행금융기관들은 資金離脫(disintermediation) 현상에 대응함과 동시에 그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成長展望이 높은 분야에 據點을 확보하기 위해 非傳統的인 業務에 다투어 진출하여 왔다. 실제로 많은 은행들은 利子收入의 증가세 둔화를 補填하기 위해 1980년대 말에 들어 直接, 혹은 子會社를 통해 證券關聯業務의 취급을 크게 확대하여 왔다. 이들 업무는 은행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資產規模를 늘리지 않고서도 手數料收入을 가져다 주므로 資產利益率(ROA)이나 自己資本比率을 維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²⁾. 은행들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하게 된 데는 金融自律化와 더불어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銀行資產의 質低下와 流動性危機를 해결하기 위해 證券化現象이 심화되고, 주요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하락, 국가간 자본이동의 확대 등에 힘입어 債券·株式市場이 활성화되면서 投資關聯業務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主要國 商業銀行들의 전체 수입 중 預貸마진을 통한 이자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手數料와 같은 非利子收入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은행의 수익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表 2-1>에서 보듯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독일, 캐나다 등 金融先進國 商業

1) 실제로 1980년대에 들어 불·독·일·네덜란드에서는 預貸마진이 점차 축소되었으며, 美·英·캐나다에서는 利子收入은 늘었으나 대손충당금의 급증으로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대단히 커짐(Koguchi, 1993).

2) 그러나, 1980년대 말의 證市不安定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銀行의 證券關聯業務 擴大가 반드시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음.

銀行의 非利子收入 比重은 20% 내외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30~40%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어 手數料關聯業務가 더 이상 은행의 부수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表 2-1〉 主要國 商業銀行의 非利子收入 比重 推移

(單位：%)

| | 1981 | 1983 | 1985 | 1987 | 1989 | 1990 | 1991 | 1992 |
|-----|------|------|------|------|------|------|------|------|
| 美 國 | 24.0 | 26.5 | 26.6 | 30.2 | 31.8 | 32.8 | 34.3 | 34.5 |
| 日 本 | 17.8 | 14.7 | 21.1 | 25.1 | 23.8 | 24.1 | 10.9 | 3.7 |
| 獨 逸 | 29.1 | 24.8 | 30.1 | 29.8 | 36.0 | 35.9 | 30.5 | 30.8 |
| 프랑스 | 16.0 | 16.8 | 14.1 | 15.4 | 18.9 | 19.5 | 25.8 | 33.0 |
| 英 國 | — | — | 34.5 | 37.4 | 37.9 | 38.9 | 40.7 | 41.9 |
| 스위스 | 47.7 | 46.5 | 47.4 | 51.6 | 50.9 | 49.1 | 50.8 | 49.9 |
| 캐나다 | — | 21.1 | 23.7 | 28.4 | 29.2 | 31.0 | 30.1 | 31.0 |

註：商業銀行 기준, 단 프랑스는 商業銀行과 信用協同組合, 스위스는 全銀行 기준.

資料：OECD, *Banks Profitability*, 1992, 1994.

이와 함께 金融機關間的 경쟁심화와 그에 따른 收益性 惡化, 국제금융부문에의 市場參加者 過多에 직면한 金融機關들은 效率性和 收益性を 높이도록 더 한층 압력을 받게 되었다. 많은 은행들은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여 大型銀行間, 혹은 大型銀行과 中小金融機關間的 合併을 통해 비용절감 및 規模의 經濟性を 추구하였다. 合併을 통한 市場占有度의 제고, 인원감축 및 불필요한 점포 축소 등을 통한 費用節減, 대규모 신용 공여능력 확보, 합병기관들의 상호업무보완을 통한 競爭力 強化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銀行間 合併이 크게 늘어났으며, 일부 은행들의 경우에는 世界的인 金融機關의 健全性 惡化 趨勢에 대응하기 위해 1988년 7월 이후 國際決濟銀行(BIS) 自己資本規制가 강화됨에 따라 合併이 自己資本 擴充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그룹의 형성을 통해 業務領域의 多樣化를

기함으로써 範圍의 經濟 또는 「시너지」效果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금융서비스별로 수요의 장기적 증가가 다른 양상을 보여 異種 金融機關들이 서로 다른 成長展望을 보임에 따라 金融機關들이 收益性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영업분야를 찾기 위해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그룹을 통한 綜合金融서비스 體制 實現으로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多樣化를 도모함과 동시에 one-stop banking을 통해 顧客의 去來費用을 절감함으로써 우량고객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개별 金融機關의 電算시스템 및 情報 「노하우」(knowhow)를 금융그룹차원에서 共有·活用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금융그룹의 一般的 特性和 組織形態 및 期待效果 등에 대해서는 〈附錄〉을 참조하기 바라며, 다음 節에서는 主要國 銀行들이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진하여 온 業務多角化의 內容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第 2 節 主要國 銀行들의 業務多角化 現況

1. 美 國

美國에서는 소수의 銀行이 金融資源에 대한 막강한 지배력을 보유할 경우 과도한 經濟力 集中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金融當局이나 議會는 金融資本의 肥大化를 막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Sherman Antitrust Act(1890), Clayton Antitrust Act(1914)의 제정에 의해 거래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줄이는 모든 형태의 계약이나 企業結合을 禁止하였으며, McFadden Act(1927)는 州間 支店設置를 통한 營業活動(interstate branching)을 금지하였다. 특히 Glass-Steagall Act(1933)에서는 商業銀

行業務를 投資銀行業務와 분리시킴으로써 은행이 산업자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였으며, 銀行持株會社가 영위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도 銀行持株會社法(Section 4(c)(8))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1970년에 銀行持株會社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顧客의 便宜 增大와 금융서비스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大型 銀行들이 單一銀行持株會社 형성을 통해 非銀行業務에 자유로이 진출하는 것을 金融當局이 대체로 허용하였으나, 複數銀行持株會社가 영위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는 금융, 신탁, 혹은 보험에 관련된 성격 을 갖는 업무로 국한하였다(Section 4(c)(6)).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單一銀行持株會社의 형성이 크게 늘어나자 銀行持株會社 형성에 따른 公的 利益보다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결합에 따라 야기 될 社會的 費用(집중의 심화, 경쟁 감소, 이해상충, 불건전 금융관행 조장 등)의 증대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어 1970년 銀行持株會社法 改正에서는 單一銀行持株會社를 포함하여 銀行持株會社가 수행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 은행이 傳統的으로 취급하는 業務, ② 은행의 傳統的 業務와 밀접한 關聯이 있고 취급할 능력이 있는 업무, ③ 앞으로 許容될 것으로 豫想되는 銀行業務와 절대적으로 關聯이 있는 업무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商業銀行 및 投資銀行 業務의 分離規制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은행들은 1960년대 중반 이후 尤러시장을 필두로 海外金融市場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들어 證券化 및 기업의 직접금융 의존 증가, 低金利로 인한 資金離脫 現象(disintermediation phenomenon), 金融自律化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銀行業의 收益性이 악화되자 銀行持株會社들은 子會社를 통해 증권관련 상품의 판매를 시도하고 當局이 上記 法들의 신축적인 해석을 통해 이를 허용함에 따라 은행의 證券業務 取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즉, 大企業들의 直接金融에 의한 자금조달 증대로 商工業貸付의 比重 및 收益性이 하락하는 데 대응하여 商業銀行들은

證券關聯業務 및 投資銀行業務, 「뮤추얼 펀드」(mutual fund)업무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으로써 收益源을 다변화하고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데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大都市의 大型商業銀行들(money center banks)의 경우 자산 중 대출, 특히 商工業貸出의 비중이 급속히 저하된 반면, 私募債 발행이나 M&A 중개·주선업무 등 이른바 投資銀行業務에의 진출이 근년에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貸出債券의 매매에 관한 仲介業務도 직접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은행일수록 전통적 예금보다는 市場性債務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預貸金利差가 축소되어 收益성이 악화되는 것을 補填하기 위해 非利子收入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매수합병 「붐」(boom) 동안에는 大型商業銀行들이 LBO(leveraged buyouts)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金利와 仲介手數料 등의 수입을 추구하였으며, 1989년 여름 이후 매수합병 건수가 크게 줄어들자 도산기업들에 대한 DIP(debtor-in-possession) 貸出³⁾등에서 高收益을 얻고자 하였다.

美國 銀行들의 證券業 進出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은행의 非銀行企業 株式所有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當局이 Glass-Steagall Act 제20조를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방화벽(fire walls)을 적절히 설치하여 유지하는 한 총수입의 10%까지를 證券去來로부터 획득하는 非銀行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⁴⁾. 또한 「뮤추얼 펀드」(mutual fund)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은행이 고객의 증권매매를 단순히 대리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證券割引·仲介業務는 1975년 뉴욕 證券去來所의 手

3) 聯邦破産法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도산기업들에 대해 제공되는 企業 再建用 貸出로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 기업자산에 대한 최우선권을 가지며, 높은 금리와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됨.

4) 美國 銀行들의 證券業 進出에 관한 이하의 논의에 관해서는 數阪孝志(1991)를 참조하였음.

數料自由化 改革 이후 商業銀行들이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한 割引仲介(discount broker)業務로부터 복합적인 中개업무까지 취급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商業銀行들은 證券流通市場에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⁵⁾. 그러나 1987년의 證券波動 이후에는 주요은행들이 서서히 證券의 割引仲介業務 비중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表 2-2〉 美國 主要 商業銀行들의 證券브로커業務에의 進出

| | | |
|----------------------|-----------|---|
| Bank of America | 1981년 11월 | Charles Schwab & Co., Inc.(캘리포니아州, 業界 1위) 買收를 發表 |
| | 1983년 1월 | FRB의 認可 |
| | 1987년 3월 | Charles Schwab를 賣却 |
| Security Pacific | 1981년 11월 | Fidelity Brokerage Service(캘리포니아州, 業界 2位)와의 提携를 發表 |
| | 1982년 2월 | 營業開始 |
| | 1982년 8월 | Security Pacific Discount Broker Inc. 設立 |
| | 1983년 1월 | Commission Discount Corp. 등을 買收 Security Pacific Discount Broker를 賣却 |
| Citicorp. | 1982년 | Quick & Reilly Group Inc.(뉴욕州, 業界 3位)와의 提携를 發表 |
| | 1983년 4월 | Focus (CMA類似商品)를 N.Y.에서 販賣 |
| Chase Manhattan | 1983년 2월 | Rose & Co.(일리노이州, 業界 4位)의 買收를 發表 |
| | 1983년 8월 | FRB의 認可 |
| | 1989년 3월 | Rose & Co.를 賣却 |
| Chemical | 1982년 | Pershing & Co.(뉴욕州)와 提携 |
| | 1984년 3월 | Brown & Co.(매사추세츠州)의 買收를 發表 |
| United Jersey Banks | 1983년 | Richard Blackman & Co., Inc.를 買收 |
| First Union Na. Bank | 1983년 | Dis-Com Securities Inc.를 買收 |

資料：數阪孝志, 『アメリカ 商業銀行의 多角的展開』, 東洋經濟新報社, 1991, p. 173.

둘째, Glass-Steagall Act 제16조상에 州·地方自治團體 債券 中 一般保證債(general obligation municipal bonds)는 商業銀行의 취

5) 銀行持株會社에 의한 할인 中개회사(discount broker)의 매수나 상업은행에 의한 割引仲介 子會社의 설립에 대해 SIA가 異議를 제기하였으나, 재판소는 상업은행의 브로커업무가 1933년 은행법상 은행업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함.

금이 규제되는 有價證券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1977년 이후 地方債(municipal revenue bonds)의 발행이 급증하자 은행들은 同 債券의 引受業務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단, 1986년 稅制改革의 영향으로 同 債券의 보유에 대한 稅制上的 優待措置가 없어지면서 1986년 이후 商業銀行의 同 部門 市場占有率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1985년 35%, 1989년 20% 下廻). 그리고 私募債 發行時 商業銀行이 대리기관이 되는 것을 聯邦準備理事會(이하 聯準이라 칭함)이 1977년 이후 정식으로 인가함에 따라 商業銀行들은 私募債 市場의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市場占有率을 높여 왔다. 이 부문은 이미 大型 商業銀行의 優越한 收入源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私募債 發行時 금리·기간·발행시기·관련서류작성 등에 관여하거나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CP발행취급업무에 관해서는 1933년법(제16, 20, 21조)의 有價證券 범위에 CP가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관해 논란이 전개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聯準이 대형 銀行持株會社에 대해 證券 子會社를 통한 CP, 주택저당증권 등에 관한 인수·딜링업무를 量的인 制限을 붙여 인가한 이후 商業銀行에 의한 각종 증권의 발행·인수업무에의 參入이 個別認可方式에 의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⁶⁾.

6) 1986년 12월의 뱅커스 트러스트 은행(BT)에 대한 聯準의 認可는 證券 子會社의 총수익과 국내 CP시장의 점유율이 각각 5%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졌으며, 1987년 4월 3개 大型 銀行持株會社(Citi, JP Morgan, BT)에 대해 子會社의 주된 업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CP, 수익채권(revenue bonds), 주택저당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消費者債務擔保證券의 인수와 딜링이 인가됨. 1989년 9월에는 은행의 대출을 증권화한 資產擔保附證券(ABS)의 인수업무를 인가하였으며, 이때 5% 규정을 10% 규정으로 개정함. 1989년 1월에는 聯準이 5개대형은행들(Citi, Chase, JP Morgan, BT, Securities Pacific)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 일반채권인수와 주식인수업무를 자기자본 충실 등의 조건하에 인가하였으며, 1989년 7월에는 Citi, Chase, BT에 일정기간 내에 自己資本을 강화한다는 조건으로 사채업무를 인가함.

넷째, 商業銀行은 1980년대 이후 기업합병매수(M&A) 주선·중개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는데, 대형 투자은행과는 달리 규모가 다소 작은 합병매수를 주로 취급하였으며, M&A에 관련된 連結貸出(bridge loan)이나 期間貸出(term loan), 회전신용약정 등의 信用供與도 제공함으로써 주선·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이자수입도 얻고 있다. 이 밖에 金融革新이 진전되면서 기업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매우 다양화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商業銀行에 의한 실질적인 投資銀行業務의 취급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商業銀行의 證券業務 進出에는 의회에서 은행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監督機關의 個別 業務申請에 대한 認可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국내의 商業銀行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金融自律化·證券化의 급속한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商業銀行들의 業務範圍 擴大要求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또한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自國 金融産業 競争力強化政策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分業主義를 계속 고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證券業 이외에 銀行持株會社가 영위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로는 신탁, 일부 보험의 인수, 제한된 범위의 보험대리점 또는 중개인 업무, mortgage banking, 리스, 팩토링, 정보처리업무, 非居住用 不動產 評價 조언 및 브로커 업무 등이 있으며(〈表 2-3〉 參照), 은행이 新規로 非銀行業務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持株會社와 關連회사를 포함한 연결베이스로 일정한 自己資本比率를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2. 日 本

일본의 『私的 獨占의 禁止 및 公正去來의 確保에 관한 法律』

(表 2-3) 美國 金融그룹의 子會社 現況(1992年 末 現在)

| Citicorp. | | | Bank America Corp. | | |
|---|---------|---------|--|---------|---------------|
| 主要 子會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主要 子會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Citibank N.A. | 100 | 상업은행업무 | Bank America NT&SA | 100 | 상업은행업무 |
| Citicorp Mortgage, Inc. | 100 | 주택저당업무 | BA ATM Inc. | 100 | 전산개발업무 |
| Citicorp Real Estate, Inc. | 100 | 부동산업무 | BA Business Services of Arizona Inc. | 100 | 컨설팅업무 |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 | 100 | 해외투자업무 | BA Leasing Co. | 100 | 리스업무 |
| Citicorp Securities Markets, Inc | 100 | 증권업무 | BA Properties I Inc. | 100 | 부동산업무 |
| Quotron Systems Inc. | 100 | 금융정보서비스 | BA Lease Capital Co. | 100 | 창업리스업무 |
| Citicorp Venture Capital Ltd | 100 | 개발금융업무 | Bank America International | 100 | 국제금융업무 |
| Bankers Trust Co. | | | Bank America Ventures Inc. | 100 | 개발금융업무 |
| 主要 子會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Davenport Data Processor Inc. | 100 | 금융정보처리 |
| Bankers Trust company | 100 | 투자은행업무 | D & R Realty Inc. | 100 | 부동산업무 |
| BT Brokerage Corp. NY. | 100 | 증권중개업무 | The Electronic Payments Exchange Inc. | 100 | 자금결제업무 |
| BT Capital Corp. NY. | 100 | 증권투자금융 | Bank America Options Inc. | 80 | 옵션중개업무 |
| BT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Corp. | 100 | 금융정보업무 | Chase Manhattan Corp. | | |
| BT Equipment Leasing Inc. NY. | 100 | 설비리스업무 | 主要 子會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BT Futures Corp. NY. | 100 | 선물중개업무 | Chase Manhattan bank N.A. | 100 | 상업은행업무 |
| BT International Trading Corp. | 100 | 국제증권투자 | Chase Auto Leasing Corp. | 100 | 자동차리스업무 |
| BT Securities Corp. NY. | 100 | 증권업무 | Chase Automated Clearing House Inc. | 100 | 자금결제업무 |
| Bank One Corp. | | | Chase Commercial Corp. NJ. | 100 | 상업금융업무 |
| 主要 子會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Chase Home Mortgage Corp. | 100 | 주택저당업무 |
| Bank One Milwaukee N.A. | 100 | 상업은행업무 | Chase Manhattan Financial Services Inc. | 100 | 단기금융업무 |
| Bank One Brokerage Co. | 100 | 증권중개업무 | Chase Manhattan Futures Corp. | 100 | 선물중개업무 |
| Bank One Venture Corp. | 100 | 개발금융업무 | Chase Securities Inc. NY. | 100 | 유가증권, 국공채인수업무 |
| Bank One Wisconsin Bankcard Co. | 100 | 신용카드업무 | Chase Manhattan Leasing Corp. NY. | 100 | 리스업무 |
| Bank One Wisconsin Investment Service Co. | 100 | 단기금융업무 | Chase Clark Credit Corp. Buchanan | 100 | 신용카드업무 |
| Bank One Financial Services Inc. | 100 | 투자신탁업무 | Chase Manhattan Trust Compan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 100 | 투자신탁업무 |
| Bank One Leasing Co. | 100 | 리스업무 | Chase Infoserve International | 100 | 금융정보서비스 |
| Bank One Mortgage Co. | 100 | 주택저당업무 | | | |

資料：各行 年次報告書 및 内部資料

(1947년 4월 14일 제정, 1977년 개정) 제11조는 金融業(은행업, 신탁업, 보험업, 무진업 또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國內會社 發行株式의 5%(保險會社は 10%)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⁷⁾, 은행이 發行株式 總數의 5%를 초과하여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子會社 遂行可能業務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따라서 일본 은행들은 예금, 소비자금융 등 銀行業務의 대리나 관계은행을 위한 업무로서 업무용 부동산 관리, 직원복지후생시설 관리, 기타 은행업무대행(집배금업무, 담보관리업무, 광고선전업무 등)의 분야에는 100% 出資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은행의 부수업무인 신용보증, 팩토링, 신용카드, 저당증권업무 등과 주변업무인 창업투자, 리스, 住宅金融, 경영상담, 투자자문, 계산수탁 등을 수행하는 회사에는 5% 이하의 資本參與을 통해 진출하고 있다⁸⁾(表 2-4) 참조).

한편, 일본은 1992년 6월 子會社 設立을 통한 은행업·신탁업·증권업의 점진적, 단계적 상호진출 허용, 證券去來法上 有價證券의 범위확대와 金融機關의 증권화 관련상품 취급허용,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法 改正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金融制度改革法을 제정하여 關聯 大藏省 政省令과 함께 1993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業種別 子會社의 업무범위, 업종간 방화벽(fire walls) 설치

7) 同 株式保有限度は 1953년 개정법에 의해 5%에서 10%로 높아졌다가 1977년 법 개정시 다시 5%로 낮춰짐.

8) 단, 日本 獨占禁止法 제9조는 재벌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소유에 의한 국내회사의 사업활동 지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특정형태의 사업활동을 영위함이 없이 회사의 주식소유에 의해 해당 회사의 경영을 관리·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純粹持株會社의 설립은 막을 수 있지만,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경영하는 事業持株會社의 기업-은행 복합그룹의 형성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表 2-4) 日本 主要 銀行 그룹들의 子會社 現況(1993年 6月 30日 現在)

| 第一 勳 銀 | | | さくら 銀 | | |
|------------------------|---------|------------------------|---------------------|---------|-------------|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第一勳銀 ハートサービス | 100 | 業 務 代 行 | さくら事務サービス | 100 | 業 務 代 行 |
| 第一勳銀 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さくらオフィスサービス | 100 | ・ |
| 第一勳銀 オフィスサービス | 100 | ・ | さくら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 第一勳銀 不動産調査センター | 100 | ・ | さくらスタッフサービス | 100 | ・ |
| 第一勳銀信用開発 | 5.0 | 信 用 保 證 | さくら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 東京リース | 4.9 | リ ス | さくら新宮代理店 | 100 | ・ |
| センチュリー・リーシング・システム | 4.4 | | さくら西浦安代理店 | 100 | ・ |
| 第一勳銀投資顧問 | 5.0 | 投 資 諮 問 | 東日本総合信用 | 5.0 | 信 用 保 證 |
| 第一勳銀経営センター | 5.0 | 經 營 相 談 | 京阪神総合信用 | 5.0 | ・ |
| 第一勳銀総合研究所 | 5.0 | 經 済 研 究 所 | 三銀保証キャピタル | 5.0 | ・ |
| 第一勳銀情報システム | 5.0 | 計 算 受 託 | さくら投資顧問 | 5.0 | 投 資 諮 問 |
| 日本オナー・シー・マール | 5.0 | 情 報 開 発 | さくら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 5.0 | 融 資 ・ 集 金 |
| 第一勳銀ハウジングセンター | 5.0 | 住 宅 貸 出 | 三井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 5.0 | 代 行 ・ 課 税 理 |
| 第一勳銀ファクタリング | 5.0 | 課 税 理 | さくら総合研究所 | 5.0 | 經 済 研 究 所 |
| 第一勳銀カード | 5.0 | 信 用 カ ー ド | さくらソフトウェアサービス | 5.0 | ソ フ ト 開 発 |
| ユニオンクレジット | 5.0 | | さくらケーシーエス | 5.0 | ・ |
| ハートファイナンス | 5.0 | 消 費 者 金 融 | さくらコンピュータサービス | 5.0 | 情 報 處 理 |
| 東京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 | 5.0 | 創 業 投 資 | さくらカード | 5.0 | カ ー ド 業 務 |
| 日本販 | 5.0 | 福 券 販 賣 | さくら抵当証券 | 5.0 | 抵 当 證 券 販 賣 |
| | | | さくらキャピタル | 0.0 | 經 營 技 術 指 導 |
| 三 和 銀 | | | 富 士 銀 | | |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三和オペレーションビジネス | 100 | 業 務 代 行 | 富士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業 務 代 行 |
| 三和オペレーションビジネス東京 | 100 | ・ | 富士ビジネスエイジェンシー | 100 | ・ |
| 三和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富士キャリアビューロー | 100 | ・ |
| 三和ビジネスサービス東京 | 100 | ・ | 富士銀厚生サービス | 100 | ・ |
| 三和モーゲージサービス | 100 | ・ | 富士銀ビルディング | 100 | ・ |
| 三和インターナショナルオペレーションサービス | 100 | ・ | 富士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 三和スタッフサービス | 100 | ・ | 富士銀クレジット | 5.0 | 信 用 保 證 |
| 三和信用保証 | 5.0 | 信 用 保 證 | 富士銀ファクター | 5.0 | ・ |
| 三和投資顧問 | 5.0 | 投 資 諮 問 | 住宅ローン | 5.0 | 住 宅 貸 出 |
| 三和ビジネスクレジット | 5.0 | 融 資 ・ 抵 当 證 券 ・ リ ス | 富士銀投資顧問 | 5.0 | 投 資 諮 問 |
| 三和キャピタル | 5.0 | 創 業 投 資 | 富士銀キャピタル | 5.0 | 經 營 相 談 |
| 三和総合研究所 | 5.0 | 經 營 相 談 ・ 經 済 研 究 所 | 富士総合研究所 | 5.0 | 經 済 研 究 所 |
| 三和システム開発 | 100 | ソ フ ト 開 発 | 富士オペレーションサービス | 5.0 | 計 算 受 託 |
| 三和ネットワークサービス | 5.0 | VAN・情 報 處 理 | 富士ソフトウェアサービス | 5.0 | ソ フ ト 開 発 |
| 三和カードサービス | 5.0 | カ ー ド 業 務 | ユニオンクレジット | 5.0 | カ ー ド 業 務 |
| ジェーシービー | 5.0 | ・ | 富士銀クレジット | 5.0 | ・ |

(表 2-4)의 계속

| 三 菱 銀 | | | 住 友 銀 | | |
|--------------------|---------|-------------|-----------------|---------|---------|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ダイヤモンドテクノサービス | 100 | 信用保證 | 泉オファサービス | 100 | 業務代行 |
| ダイヤ印刷 | 100 | | 住銀インターナショナルビジネス | 100 | ・ |
| ダイヤモンド事務サービス | 100 | | サービス | | |
| 君津ダイヤモンドエージェンシー | 100 | | 住銀モーゲージサービス | 100 | ・ |
| ダイヤモンドスタッフサービス | 100 | | 泉セクターサービス | 100 | ・ |
| ダイヤモンド不動産 | 100 | | 泉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 ダイヤモンド不動産調査 | 100 | | 泉キャリア開発 | 100 | ・ |
| ダイヤモンドコンステム開発 | 100 | 소프트웨어 | 泉サービス | 100 | ・ |
| ダイヤモンドコンドコンピュータ | 5.0 | ・ | 住友クレジットサービス | 5.0 | 信用카드 |
| ダイヤモンドカード | 5.0 | 信用카드 | 住銀アメックスサービス | 5.0 | 金銭貸付 |
| ダイヤモンドリース | 5.0 | 리스 | 住銀リース | 4.9 | 스 |
| ダイヤモンドキャピタル | 5.0 | 企業公開相談 | 日本総合研究所 | 5.0 | 經濟研究所 |
| ダイヤモンド信用保證 | 5.0 | 住宅貸出・保證 | 住友ビジネスコンサルティング | 5.0 | 經營諮問 |
| ダイヤモンドファクター | 5.0 | 貸付 | 住銀ファイナンス | 5.0 | 抵當證券・現引 |
| ダイヤモンドビジネスコンサル | 5.0 | 經營管理 | 東京総合信用 | 5.0 | 金銭債券買受・ |
| ダイヤモンド抵當證券 | 5.0 | 抵當證券販賣・長期融資 | 日本総合信用 | 5.0 | 信用保證・集金 |
| コムネス | 5.0 | VAN業務 | 住銀保證 | 5.0 | 代行業務 |
| ダイヤモンド投資顧問 | 5.0 | 投資諮問 | 住銀投資顧問 | 5.0 | 信用保證 |
| ダイヤモンドビジネスエンジニアリング | 5.0 | 소프트웨어 | | | 投資諮問 |
| あ さ ひ 銀 | | | 東 海 銀 | | |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子 會 社 | 持分率 (%) | 業 務 形 態 |
| あさひ銀総合サービス | 100 | 業務代行 | 東海総合サービス | 100 | 業務代行 |
| あさひ銀厚生サービス | 100 | ・ | 東海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 あさひ銀ビジネスサービス | 100 | ・ | 東海キャリアサービス | 100 | ・ |
| あさひ銀事務サービス | 100 | ・ | 東海モーゲージサービス | 100 | ・ |
| あさひ銀サブライ | 100 | ・ | 東昭 | 100 | ・ |
| あさひ銀ビジネスエージェンシー | 100 | ・ | 東海ビルメンテナンス | 100 | ・ |
| あさひ銀キャリアサービス | 100 | ・ | 朝日東海ビル管理 | 33.3 | 빌딩管理 |
| あさひ銀ビル管理 | 100 | ・ | ミリオン信用保證 | 5.0 | 信用保證 |
| あさひ銀ビルディング | 100 | ・ | セントラル抵當證券 | 5.0 | 抵當證券業務 |
| あさひ銀クレジット | 5.0 | 信用保證 | セントラル投資顧問 | 5.0 | 投資諮問 |
| あさひ銀保證 | 5.0 | ・ | セントラルキャピタル | 5.0 | 創業投資 |
| あさひ銀ファイナンスサービス | 5.0 | 賣掛債權買取 | 丸万ファイナンス | 5.0 | ・ |
| あさひ銀ファクター | 5.0 | 業務 | 東海総合研究所 | 5.0 | 經營相談・ |
| 共同抵當證券 | 5.0 | 抵當證券業務 | | 5.0 | 經濟研究所 |
| 昭和リース | 5.0 | 리스 | 東海バンキングソフトウェア | 100 | 소프트웨어 |
| あさひ銀リース | 5.0 | ・ | セントラルシステムズ | 5.0 | VAN業務 |
| あさひ投資顧問 | 5.0 | 投資諮問 | ミリオンカードサービス | 5.0 | 카드業務 |
| あさひ銀事業投資 | 5.0 | 創業投資 | セントラルファクター | 5.0 | 광고 |
| あさひ銀総合研究所 | 5.0 | 經營相談・經濟研究所 | | | |
| あさひ銀情報システム | 5.0 | 計算受託 | | | |
| あさひ銀総合システム | 5.0 | ・ | | | |
| あさひ銀システム開発 | 100 | 소프트웨어 | | | |
| あさひ銀ソフトウェア | 100 | ・ | | | |
| あさひ銀クレジット | 5.0 | 카드業務 | | | |
| あさひ銀ユニオンクレジット | 5.0 | ・ | | | |

註：1. 富士三菱銀行(1993년 5월 말 현재), 東京銀行(1993년 7월 말 현재).
資料：各銀行 營業報告書.

등에 관해서는 금융제도개혁 실시 후의 상황, 시장상황, 證券會社 및 金融機關의 經營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2~3년 내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新規로 設立된 金融 子會社들의 現況을 살펴보면, 먼저 證券 子會社의 경우 제 1진으로 日本興業銀行, 日本長期信用銀行, 農林中央金庫가 1993년 7월 2일 證券 子會社를 설립하여 7월 26일부터 營業을 개시하였으며, 9월 16일 2개 신탁은행의 證券 子會社가 설립되어 11월 1일부터 營業을 개시하였다. 이들 證券 子會社들은 공공채·보통사채·금융채 등의 거래업무를 통해 채권딜링업무를 순조로이 수행하고 있으며, 社債引受業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轉換社債(CB)·新株引受權附社債(WB) 引受業務는 유통업무에 대한 제약 때문에 幹事資格의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금리하락국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債券賣買益을 실현함으로써 인건비·부동산관련비 등을 흡수하고도 經常利益을 실현하고 있다.

〈表 2-5〉 證券 子會社 設立 現況 및 金融改革法上の 業務取扱範圍

a) 新規 證券 子會社 設立 現況

| 會社名 (業務開始日) | 資本金(億円) | 任員(人) | 従業員 (人) | 主要取扱業務 |
|--------------------|---------|-------|------------|-------------------------------------|
| | 資本準備金 | | | |
| 興銀證券 (93.7.26) | 250 | 10 | 128 | 私債引受, 公共債 等 딜링 |
| | 100 | | | |
| 長銀證券 (93.7.26) | 150 | 7 | 78 | 私債引受, 公共債 等 딜링 金融派生商品 |
| | 50 | | | |
| 農中證券 (93.7.26) | 150 | 6 | 36 | 私債引受, 公共債 等 딜링 投信販賣(금년 가을 以後) |
| | 50 | | | |
| 三菱信證券 (93.11.1) | 150 | 6 | 29 | 私債引受, 公共債 等 딜링 |
| | 50 | | | |
| 住信證券 (93.11.1) | 150 | 8 | 30 | 私債引受, 公共債 等 딜링의 一部 |
| | 50 | | | |

資料: さくら銀行

b) 證券 子會社 業務取扱範圍

| | | 公共債 | 普通社債 | 投資信託 | 轉換社債, 워런트債, 워런트 | 株式, 株價指數· 先物옵션 |
|-------------|-----|-----|------|------|-----------------------|----------------------|
| 發行(인수,모집 등) | | ○ | ○ | ○ | ○ | × |
| 流通 | 딜링 | ○ | ○ | ○ | × | × |
| | 브로커 | ○ | ○ | ○ | × | × |

資料：日本銀行

한편 都市銀行 上位 6行에 대해서는 거품경제의 붕괴 후 현재까지 證券市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大藏省이 證券 子會社의 설립에 의한 신규진입을 불허해 왔으나, 이들 6行들은 조만간 이러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證券業 進出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信託 子會社의 경우에는 대형 증권회사 4社와 東京銀行이 1993년 8월 24일 信託 子會社를 설립하여 10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投信受託에 있어 系列 投信委託會社로부터의 受託분이 신규설정액의 25%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경영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信託業務 중 연금신탁·단순운용 지정금신탁·특정금신탁 등 收益性이 좋은 업무는 금지되고 있어 대형 도시은행들이 信託 子會社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회사들은 현재로는 投資信託·特定金外信託(fund trust)를 중심으로 신탁기능을 이용한 新商品開發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野村은 外換딜링, 日興은 자금·外換딜링 등 은행업무에도 비중을 둘 방침으로 있다.

3. 獨逸

獨逸은 兼業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형태, 조직의 크

〈表 2-6〉 信託 子會社 設立 現況 및 金融改革法上의 業務取扱範圍

a) 新規 信託 子會社 設立 現況

| | 資本金(億円) | 任員(人) | 従業員(人) | 主要取扱業務 |
|----------------------|---------|-------|--------|--|
| 野村信託 | 300 | 7 | 64 | 投信受託, fund trust |
| 大和イン タナツォ ナル信託 | 200 | 6 | 70 | 投信受託, fund trust global custody(將來에 취급예정) |
| 日興信託 | 200 | 8 | 40 | 投金·外換 dealing, 投信受託 fund trust |
| 山一信託 | 200 | 5 | 51 | 投信受託, fund trust 및 그에 수반 되는 外換 |
| 東京信託 | 100 | 5 | 16 | fund trust, 金錢債權信託受託 |

資料：さくら銀行

b) 信託 子會社 業務取扱範圍

| 금 전 신 탁 | | 금 전 이 외 신 탁 | |
|---------|---|-------------|---|
| 대 부 신 탁 | × | 유가증권신탁 | ○ |
| 연 금 신 탁 | × | 금전채권신탁 | ○ |
| 합 동 신 탁 | × | 동 산 신 탁 | ○ |
| 특정금전신탁 | × | 부 동 산 신 탁 | ○ |
| 지정단위신탁 | ○ | | |
| 증권투자신탁 | ○ | | |

資料：日本銀行

기 및 영업범위는 각기 다르지만 은행들의 75% 이상이 普通銀行業務, 長期信用銀行業務, 信託業務, 證券業務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兼業銀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에 규정된 證券業務를 포함한 아홉 가지 업무⁹⁾를 모두 수행하는 완전한 兼業銀行은 3대 은행과 일부 대형지방은행에 국한된다.

9) 예금, 대출, 할인, 증권중개, 證券任置, 투자신탁(providing trust(safe custody) services and operating investment funds), 채권인수(factoring), 보증(providing financial guarantees), 지로업무.

최근에 들어 獨逸 金融機關들은 1980년대부터 추진하여 온 金融 綜合化(Allfinanz)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우선 金融規制의 緩和, 국가간 자본거래 증가 및 증권화라는 국제금융의 추세와 1990년 10월의 동서독 통일, 1993년 1월의 EC 單一市場 實現 및 자금의 수요·공급자의 행태변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獨逸 金融機關들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低價의 安定的 資金調達上의 어려움, 기업 자금수요 감소에 따른 대기업금융상의 경쟁 격화, 기존 도매금융시장에서의 이윤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악화, 市場占有度 低下를 補填하기 위해 소매금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점 등도 金融綜合化를 촉진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이에 따라 獨逸銀行들은 兼業銀行을 중심으로 保險會社, 공영·민영 주택저축은행, 공영·민영 저당은행, 투자신탁 등과의 종래의 협력·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참가비율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以前의 특별한 협력이나 자본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子會社 設立을 통해 金融綜合化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民營商業銀行들은 子會社를 통해 팩토링, 리스, 부동산 거래업무 등으로 그 業務領域을 확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短期金融業務 위주로 영업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長期金融業務의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3대 은행과 대형 지방은행들은 中小企業顧客과 自營業者를 위한 각종 형태의 經營諮問業務(유동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기자금 운용시스템, 대차대조표 분석을 위한 software 제품, 銀行間 計定에 관한 정보, 다양한 자동이체서비스, 세계 각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에의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銀行 子會社의 定義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3대 은행들은 子會社 設立, 자본참여비율의 증대를 통해 保險會社, 住宅貯蓄銀行, 抵當銀行, 投資信託會社 등과의 협력·제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表 2-8〉 參照). 또한 이들 대형은행들은 최근에 들

〈表 2-7〉 獨逸 金融 子會社 現況(1992年 12月 31日 現在)

| | 子 會 社 | 持分率(%) | 業 務 形 態 |
|------------------|--|---|--------------|
| Deutsche Bank | Deutsche Bank Lübeck Deutsche Bank Saar | 93.0 69.2 | 상업은행 업무 |
| | Deutsche Centralbodenkredit Frnkfruter Hypothekenbank Lübecker Hypothekenbank Schiffshypothekenbank zu Lübeck | 93.6 94.3 100 100 | 부동산담보부 대출 |
| | Deutsche Asset Management Deutsche Gesellschaft für Fondsverwaltung Deutsche Gesellschaft für Wertpapiersparen Deutsche Grundbesitz-Anlagegesellschaft Deutsche Grundbesitz-Investment-gesellschaft Deutsche Vermögensbildungs-gesellschaft Grunelius KG Privatbankiers | 100 100 93 60 60 100 82.9 | 투자은행·증권투자업 |
| | ALD AutoLeasing D Comco Datenanlagen DB Export-Leasing Deutsche Immobilien Leasing EFGEE Gesellschaft für Einkaufs-Finanzierung GEFA Gesellschaft für Absatzfi-nanzierung GEFA-Leasing | 51 52 100 100 100 100 100 | 할부금융·리스 |
| | Deutsche Bank Bauspar Deutsche Gesellschaft für Netzwerkdienste DPE Deutsche Projektentwicklungs-Gesellschaft für Grundvermögen Bonndata Gesellschaft für Datenverarbeitung | 98 100 50 51 | 전산·통신 등 특수업무 |
| | Deutscher Herold Allgemeine Versicherungs Deutscher Herold Lebensversicherungs Lebensversicherungs der Deutschen Bank | 65.3 65.3 100 | 보험업 |
| | Roland Berger & Parter Holding Bonnfinanz Aktiengesellschaft für Vermögensberatung und Vermittlung DB Morgan Grefell DB Rsearch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und Finanzanalyse Deutsche Gesellschaft für Mittelstandsberatung Deutsche Immobilien gogesellschaft der Deutschen Bank Vertriebsgesellschaft der DeutschenBank für Privatkunden | 75.1 65.3 100 100 100 100 100 | 경영자문 |

〈表 2-7〉의 계속

| | 子 會 社 | 持分率(%) | 業 務 形 態 |
|--|---|--------|---------------|
| Dresdner Bank | Bankhaus Reuschel & Co München | 50 | 은행업무 |
| | Deutsch-Südamerikanische Bank | 100 | |
| | Hardy & Co Privatbankiers | 100 | |
| | Oldenburgische Landsbank | 62 | |
| | Dresdner Bauspar | 100 | |
| | Deutsche Hypothekenbank | 96 | 부동산담보부 대출 |
| | Hypothekenbank | 85 | |
| | Norddeutsche Hypotheken- und Wechselbank | 94 | |
| | Deutscher Investment-Trust Gesellschaft für Wertpapieranlagen | 100 | 투자업 |
| | Dresdnerbank Investment Management Kapitalanlage-gesellschaft | 100 | |
| | DEGI Deutsche Gesellschaft für Immobilienfonds | 65 | |
| | Beteiligungsgesellschaft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 100 | 증권투자·경영자문·중개업 |
| | Unternehmensbeteiligungs-gesellschaft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 100 | |
| DMC Management Consult | 100 | | |
| DOWC Ost-West-Consult | 100 | | |
| Dresdner international Advisors | 100 | | |
| Dresdner Vermögensberatungs-gesellschaft | 100 | | |
| Dr. Lübke | 100 | | |
| RHEINHYP Rheinische Hypothekenbank | 97.2 | 은행업무 | |
| Berliner Commerzbank | 100 | | |
| Commerz-Credit-Bank | 65 | | |
| Deutsche Schiffsbank | 40 | | |
| Leonberger Bausparkasse | 39.9 | | |
| DBV Holding | 48.3 | | |
| ADIG Allgemeine Deutsche Investment-Gesellschaft | 37.1 | 자산관리 | |
| Commerzbank Investment Management | 100 | | |
| Commerz Immobilien | 100 | | |
| Deutsche Grundbesitz-Anlagegesellschaft | 30 | | |
| Deutsche Grundbesitz-Investmentgesellschaft | 30 | 리스 | |
| Commerz-und Industrie-Leasing | 100 | | |
| Deutsche Immobilien Leasing | 50 | | |
| Commerz Beteiligungs-gesellschaft | 100 | 지주회사 | |
| Commerz Unternehmens-beteiligungs | 50 | | |
| Wirtschaftspartner Beteiligungsgesellschaft | 20.9 | | |
| Commerz Finanz-Management | 96.0 | 경영자문 | |
| PMC Personal Management Consult | 100 | | |
| Karl Baumgartner + Partner Consulting | 35.1 | | |
| MIPA Müller Verwaltungs | 31.3 | | |

資料：各 銀行 年次報告書.

어 대출업무보다는 證券業務의 收益性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업무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그 결과 證券業에서의 수익이 총 수익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⁰⁾. 또한 경영자문회사의 인수, 外勤職員의 增員을 통해 투자자문업무를 확대하는 등 자산관리경영, 투자상담, 투자기금저축업무를 늘리고 있다(〈表 2-7〉 參照). 뿐만 아니라 銀行 子會社의 업무취급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대 은행은 子會社를 통해 금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비금융업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表 2-8〉 3大 銀行의 金融綜合化 強化 現況

| | 金融綜合化 強化 現況 |
|---------------|---|
| Deutsche Ba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인 “도이치銀行生命保險會社” 설립(1989년 9월) - 개인은행 Grunelius & Co., Frankfurt를 매수 對個人金融去來 개척 - 선박저당은행 Schiffshypothekenbank zu Luebeck AG, Hamburg 매수 - 투자고문회사의 지분 확대 실시 |
| Dresdner Ba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行이 歐州 최대 보험회사인 Allianz의 주식 10%를, Allianz는 동행 주식의 23%를 상호보유하여 금융상품의 연결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금융 보험의 종합화 추진, 즉 Dresdner Bank는 Allianz 고객망을 이용하여 소매 금융 강화 |
| Commerz Ban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대출금융회사(Leonberger Bausparkasse)의 주식 40% 취득 : Commerz Bank는 위 기업에 주택대출예금의 고객추진을, 위 기업은 同 銀行의 금융상품 판매 - 보험회사(DBV+Parther Versicherung)의 주식 50%를 출자하여 보험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 - 대형 부동산회사인 뮤인터내셔널의 주식 25% 취득 : 국내외 부동산 Project의 공동개발 추진 - Merrill Lynch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펀드(The One Germany Fund) 개발 |

資料 : 野村總合研究所, 『財界觀測』, 1992. 8.

10) 증권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하며, 단지 해외에서만 子會社를 통해 수행하고 있음.

4. 英 國

英國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商業金融, 投資金融, 住宅金融, 保險, 基金運用 및 證券去來 등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法的 規制의 產物이라기보다는 競爭制限的인 慣行 및 市場構造와 金融機關들의 자발적인 업무제한 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감독당국도 各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개별 金融機關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金融機關의 기능적 구분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70, 80년대의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에 따른 規制緩和措置로 경쟁제한적인 관행을 유지하기가 한층 어렵게 되었으며,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으로 외국금융기관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各種 金融機關間 競爭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이들 金融機關들이 收益性 補填을 위해 業務多角化¹¹⁾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異種 金融機關의 업무영역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져 왔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은행과 건축조합(Building Societies)간에 利子支給에 대한 課稅 및 資金調達源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매금융 부문에서 金融機關間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들은 건축조합의 영역이었던 抵當貸出(mortgage lending)에 참여하는 한편, 子會社를 통해 증권중개, CP 발행, 기타 投資金融業務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986년의 Building Societies Act 제정 이후 건축조합들은 無擔保貸出(unsecured loans)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1억파운드가 넘는 주거용건물을 대상으로 건축조합 자산의 10%까지 취급 가능), 은행의 고유영역이었던 부수 금융서

11) 業務多角化의 推進要因으로는 심화된 경쟁하에서의 수익성 유지, 업무 분산에 따른 위험 축소, 범위의 경제 추구, 部門間的 相互補助(cross-subsidies) 제거, 해당업종의 높은 수익성 등을 들 수 있음.

비스(overdraft facilities, full current-account facilities 등)에도 진출하였다.

현재 英國 銀行法은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나 투자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은행의 非銀行 金融機關에 대한 持分參加를 제한하는 규정은 自己資本의 適正性이나 巨額貸出에 관한 事項 외에는 없다. 다만 은행의 子會社들은 1983년의 EC Consolidated Supervision Directive에 의해 母銀行과 통합기준에서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 항목이 銀行의 資産構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공식적인 한도는 없지만 사례별로 당국의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case-by-case limit). 카르텔의 폐지와 金融機關間 競爭의 심화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金融機關들의 不實化와 이에 따른 합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합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英國에서의 銀行業과 證券業의 구분은 완전한 兼業主義를 표방하는 獨逸과 종래 美國에서 유지되어 온 專業主義를 합친 형태(hybrid)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 들어 은행과 資本市場에서의 자금 조달에 대한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다. 1986년 10월의 Big Bang 이전의 證券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입장벽은 自己資本 기준과 유통망에 대한 접근(access to distribution channels)이었는데, 英國의 주요은행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金融自由化 趨勢에 따라 가속화되었다. 즉, 은행들은 證券去來所 會員社를 매수하여 증권 유통업무를 직접 취급하거나 證券會社를 子會社로 보유하여 證券業務에 진출하였다. Big Bang에 의해 증권 매매 위탁수수료의 자유화, 證券去來所 회원의 개방, jobber와 broker를 구분하던 單一資格制度(single capacity system)의 폐지 등이 이루어지자, 영국 은행들은 기업들의 間接金融 依存度 축소, 金融證券化 趨勢 등으로 인해 악화되는 收益性을 補填하기 위해 證券

業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였다¹²⁾. 그러나 4대 은행들이 證券業에 진출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Barclays와 NatWest는 각각 Barclays de Zoete Wedd(BZW)와 County Bank를 새로이 매수하여 거의 모든 投資金融業務에 진출하여 영업을 지속한 반면, Lloyds는 子會社를 통해 일부 업무에 진출하였다가 1년 만에 철수하였으며, Midland는 Samuel Montagu를 통해 前者의 두 은행보다 제한된 범위의 投資金融業務를 수행하였다. 證券業에 대한 진출은 子會社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은행의 證券 子會社들은 초반에는 런던 資本市場에서의 機關數 過多(over capacity)와 이에 따른 競爭激化, 證券市場沈滯에 따른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고전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同 部門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¹³⁾. 그러나 막대한 창업비와 은행업보다 높은 인건비, 증권전문인력의 부족, 證券業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銀行의 證券業務 영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이들 요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證券業의 收益性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銀行間 金利協定이 폐지되고(1971년 9월, 건축조합금리협정 폐지는 1983년 10월) 금융혁신과 함께 대체적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간 또는 異種金融機關間에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은행들은 부수업무로부터의 수수료 등 非利子收入을 늘리는 동시에 脚註去來(off-balance-sheet instruments)를 개발하여

12) Financial Services Act(1986)上的 投資關聯業務는 투자의 취급, 알선, 관리, 상담, 설립, 운영, 청산 등이며, 투자관련업무의 대상품목은 株式社債(보증채 포함) 공공채 및 이의 예탁증서, 투자신탁, 옵션, 선물, 저축성 장기보험 등으로 되어 있음.

13) 일례로 BZW의 稅前利益은 1990년의 1억 8백만파운드에서 1992년에는 2억 4,200만파운드로 늘어났으며, NatWest Markets Division의 업무이익은 1991년 3억 2,600만파운드에서 1992년에는 3억 8천만파운드로 늘어났음.

利子收入 減少에 대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영국 4대 은행의 경우 總收入 중에서 은행업관련서비스와 證券業務로부터의 非利子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5~8%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9〉 參照). 또한 은행들은 종래의 短期金融業務 中心에서 住宅金融, 중장기대출, 소비자금융, 부동산, 신탁,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업무, 短期金融市場業務 등으로 業務領域을 확대하고 있다(〈表 2-10〉 參照).

이상의 업무 이외에 4대 은행은 모두 子會社 또는 孫會社를 통해 保險仲介 및 引受業務를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의 전국적인 지점망을 통하여 계열회사 보험상품 및 보험연계상품을 판매하고 있다¹⁴⁾.

〈表 2-9〉 英國 主要銀行의 純利子收入 및 非利子收入 推移

(單位: £m, %)

| | Barclays | | | NatWest | | | Midland | | | Lloyds | | |
|------|-----------------|-----------------|----------------|-----------------|-----------------|----------------|-----------------|-----------------|----------------|-----------------|-----------------|----------------|
| | 純利子 收入 | 非利子 收入 | 合計 | 純利子 收入 | 非利子 收入 | 合計 | 純利子 收入 | 非利子 收入 | 合計 | 純利子 收入 | 非利子 收入 | 合計 |
| 1989 | 3,420 (61.7) | 2,127 (38.3) | 5,547 (100) | 3,501 (65.3) | 1,857 (34.7) | 5,358 (100) | 1,850 (58.1) | 1,332 (41.9) | 3,182 (100) | 2,205 (60.4) | 1,448 (39.6) | 3,653 (100) |
| 1990 | 3,489 (60.9) | 2,236 (39.1) | 5,725 (100) | 3,603 (64.0) | 2,024 (36.0) | 5,627 (100) | 1,643 (52.4) | 1,495 (47.6) | 3,138 (100) | 2,279 (59.6) | 1,545 (40.4) | 3,824 (100) |
| 1991 | 3,620 (57.3) | 2,699 (42.7) | 6,319 (100) | 3,688 (59.1) | 2,549 (40.9) | 6,237 (100) | 1,757 (52.7) | 1,575 (47.3) | 3,332 (100) | 2,353 (59.1) | 1,627 (40.9) | 3,980 (100) |
| 1992 | 3,733 (55.3) | 3,016 (44.7) | 6,749 (100) | 3,957 (57.4) | 2,931 (42.6) | 6,888 (100) | 1,712 (52.2) | 1,567 (47.8) | 3,279 (100) | 2,226 (55.7) | 1,767 (44.3) | 3,993 (100) |

註: 統合基準임.

資料: 各行 年次報告書.

14)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간의 소유관계(ownership linkage)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保險會社法(1982)上 保險對象에 대한 支拂能力(solven- cy cover) 算定時의 特定資産에 대한 보유한도는 있으며, 또한 은행이 10% 이상의 보험회사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에 알리도록 권유하고 있음.

〈表 2-10〉 英國 主要 銀行그룹의 子會社 現況(1992年 12月 31日 現在)

| Barclays | | NatWest | |
|---|--------|--|--------|
| 子 會 社 | 持分率(%) | 子 會 社 | 持分率(%) |
| BZW Holdings Ltd. | 100 | NatWest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Ltd. | 100 |
| └ BZW Portfolio Management | 20 | └ NatWest Stockbrokers Ltd. | 100 |
| └ BZW Asset Management | 100 | NatWest Insurance Services Ltd. | 100 |
| └ ─ BZW Investment Management | 100 | NatWest Life Assurance Ltd. | 100 |
| └ Thamesway Investment Services | 100 | NatWest Unit Trust Managers Ltd. | 100 |
| └ BZW Money Market Services | 100 | NatWest Capital Market Ltd. | 100 |
| └ BZW Ltd. | 100 | NatWest Securities Ltd. | 100 |
| └ ─ BZW Futures Ltd. | 100 | └ NatWest Wood Mackenzie & Co., Ltd. | 100 |
| └ Barclays Development Capital Ltd. | 100 | Country NatWest Ltd. | 100 |
| └ BZW Securities Ltd. | 100 | └ NWM Property Advisory Ltd. | 100 |
| └ ─ BZW Research Ltd. | 100 | Country NatWest Investment Management Ltd. | 100 |
| └ ─ BZW Gilts Ltd. | 100 | NatWest Ventures (Group) Ltd. | 100 |
| └ ─ Dezoete & Bevan Ltd. | 100 | └ NatWest Ltd. | 100 |
| BZW Portfolio Management | 100 | NatWest Financial Products Plc | 100 |
| Barclays Finacial Services | 100 | NatWest Gilts Ltd. | 100 |
| └ Barclays Bank Trust Co. | 100 | Coutts & Co Group | 100 |
| └ Barclays Life Assurance Co. | 100 | └ Coutts & Co. | 100 |
| └ 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 | 100 | Lombard North Central Plc | 100 |
| └ Barclays Unicorn Ltd. | 100 | └ Lombard Bank Ltd. | 100 |
| Barclays Stockholders Ltd. | 100 | Ulster Bank Bank Ltd. | 100 |
| Barclays GTS(Holdings) Ltd. | 100 | └ Lombard & Ulster Ltd. | 100 |
| └ Barclays Metals | 100 | └ Ulster Investment Bank Ltd. | 100 |

〈表 2-10〉의 계속

| Lloyds | | Midland | |
|---|--------|--------------------------------------|--------|
| 子 會 社 | 持分率(%) | 子 會 社 | 持分率(%) |
| Lloyds Abbeys Life(Holdings) Plc | 100 | Greenwell Montagu | 100 |
| └ Black Horse Financial Serv. Group Ltd. | 100 | Midland Bank Trust Co., Ltd. | 100 |
| └└ Black Horse Life Assurance Co Ltd. | 100 | Midland Stockbrokers | 100 |
| └└ Lloyds Bank Unit Trust Managers Ltd. | 100 | Midland Private Equity Ltd. | 100 |
| └└ Black Horse Financial Services Ltd. | 100 | Midland Bank Insurance Services Ltd. | 100 |
| └ Lloyds Bowmaker Fin Ltd. | 100 | Midland Unit Trusts Ltd. | 100 |
| └└ Lloyds Bowmaker Ltd. | 100 | Greenwell Montagu Stockbrokers | 100 |
| └└└ Lloyds Bowmaker Assurance Ltd. | 100 | Midland Life | 72.5 |
| └ Abbey Life Ass Co., Ltd. | 100 | Forward Trust Group Ltd. | 100 |
| └└ Ambassador Life Assurance Co., Ltd. | 100 | └ Forward Trust Ltd. | 100 |
| └└ Abbey Life Pension & Annuities Ltd. | 100 | └ Forward Trust Ltd. | 100 |
|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Holdings) Ltd. | 100 | | |
|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Life & Pensions) Ltd. | 100 | | |
| └└ Lloyds Bank Insurance Services(Direct) Ltd. | 100 | | |
| └ Abbey Unit Trust Managers Ltd. | 100 | | |
| └ Abbey Life Investment Serv Ltd. | 100 | | |
| Lloyds Bank Futures Ltd. | 100 | | |
| Lloyds Bank(BLSA) Ltd. | 100 | | |
| Lloyds Private Banking Ltd. | 100 | | |
| Lloyds Bank Stockbrokers Ltd. | 100 | | |
| └ Chambers & Remington | 100 | | |
| Lloyds Development Capital Ltd. | 100 | | |
| Lloyds Investment Managers Ltd. | 100 | | |
| └ Lloyds Bank Fund Management Ltd. | 100 | | |
| └ Lloyds Investment Management Int. | 100 | | |
| LMBS(Holdings) Ltd. | 100 | | |
| └ LMB Services Ltd. | 100 | | |

資料：英蘭銀行 內部資料.

第 3 章 金融環境의 變化와 銀行의 役割 再定立

銀行은 企業經營에 필요한 設備 및 運營資金을 공급하며, 이 과정에서 企業의 流動性制約을 완화하는 反對給付로서 企業의 經營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資格을 가지게 될 수 있다. 企業들의 銀行자금에 대한 依存度와 銀行의 企業經營에 대한 영향력은 企業內部的으로는 企業의 業種, 收益性 및 成長性, 株主構成 등의 요인에 따라, 그리고 企業外部的으로는 그 나라의 文化와 經濟成長 段階, 金融市場의 발전정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의 銀行과 企業간의 關係는 이들 여러 요인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 章에서 우리는 銀行의 傳統的인 업무인 企業에 대한 貸出提供이 銀行의 營業活動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金融自律化에 따른 金融기관간의 경쟁심화로 預貸마진이 축소되고 直接金融市場의 발달로 大企業顧客의 銀行 이탈이 가속화되자, 專業主義를 표방하던 나라들에서도 銀行들이 대출업무에서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銀行의 周邊 및 附隨業務뿐만 아니라 다양한 證券關聯業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銀行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傳統的으로 대출을 媒介로 하여 형성되어 온 銀行과 企業간의 關係에도 상당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主要國에서의 銀行과 企業간 關係는 資金供給 및 企業支配構造 측면에서 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影響력이 상대적으로 큰 銀行中心構造와 銀行보다는 直接金融市場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市場中心構造의 두 형태

로 구분되고 있으나¹⁾, 銀行中心構造를 표방하는 獨逸과 日本 등에서는 直接金融市場의 발전으로 企業들과 主去來銀行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英·美 등 市場中心構造를 가진 국가들에서는 機關投資家の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의 중요성에 관한 論議가 진행되는 등 兩 構造가 다소 근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후된 金融產業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銀行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資金調達 및 運營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一例로 은행과 기업간의 자율적인 關係形成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與信管理制度는 그 적용대상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同一人 與信限度 강화와 巨額與信 總額限度制 도입, 稅制 및 公正去來法의 개정 등으로 그 기능이 점차 대체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의 質的 內實化 및 資本·外換 去來 自由化의 확대로 大企業의 銀行依存도가 저하되고 金利自由化로 인해 은행간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은행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銀行資金의 배분과정에 작용하던 政府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자금을 이전보다 自律的으로 運用하게 된 銀行과 보다 다양한 시장에서 資金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기업들간의 信用供與關係를 어떠한 형태로 再定立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本章에서는 銀行의 機能을 기업에 대한 資金供給者와 機關投資家로서의 기업경영에 대한 監視者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먼저 우리 기업들의 資金調達 形態와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與信

1) 같은 구조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들간에도 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임.

管理制度의 역할을 살펴본 후 美國·英國·獨逸·日本의 사례를 중심으로 銀行의 信用供給者로서의 역할을 어떠한 방향으로 再定立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金融規制緩和로 인해 기업경영상의 代理人 問題를 정부가 銀行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시해 온 現 體制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機關投資家로서의 은행이 기업경영에 대한 監視者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第 1 節 企業金融과 銀行의 役割

1. 直接金融과 間接金融

가. 資金調達形態의 決定要因

企業活動에 투입되는 資金은 크게 나누어 自己資本과 他人資本으로 구성된다. 自己資本은 기업내부에서 조달된 자금으로서 株主로부터의 出資金과 이익의 사내유보, 應當金 등으로 구성되며, 他人資本은 기업외부에서 株主가 아닌 第3者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 會社債·어음 發行, 借款 등을 포함한다. 기존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設備 및 運轉資金을 조달하는 형태는 기업내부에서 조달하는 內部金融(社內留保, 充當金 등)과 기업외부에서 구하는 外部金融으로 나누어지며, 외부금융의 형태에는 다시 資金의 원천적 공급자에 대한 信用證書 發行을 통해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直接金融(株式·會社債·企業어음 發行 등)과 금융중개기관이 자금의 源泉의 供給者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借入하는 間接金融, 그리고 借款 등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들여오는 海外金融 등이 있다. 銀行은 일반 黑字主體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기업들에

공급하는 間接金融을 통해 기업들과 信用關係를 맺게 되며, 證券業을 겸하고 있는 銀行의 경우에는 이러한 信用仲介 以外에 기업이 발행하는 有價證券의 引受, 仲介, 發行周旋 등 直接金融 側面에서도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資金調達方法 中 특정 기업이 소요자금을 어떠한 형태로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決定은 해당 기업의 信用度, 所要資金의 規模, 調達형태별 費用水準, 市中資金事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나아가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國家의 企業金融에 대한 각종 規制 및 金融市場 발달 정도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資金調達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理論으로는 모딜리아니-밀러(1958)가 완전한 자본시장 등의 制限的인 假定下에서는 資金調達 형태가 기업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이후, 負債增加에 따른 기업의 잠재적 파산비용 상승이 負債의 法人稅 減免效果나 기업가치의 上昇期待를 상쇄하는 점에서 最適 資本構造가 결정된다는 代替理論(Trade-Off Theory), 株主와 債權者·經營者의 代理人費用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負債와 株式의 組合이 最適이라는 代理人理論(Principal-Agent Theory), 기업의 資金調達에 대한 選好度를 중시하는 「페킹오더」(Pecking Order) 理論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여기에서는 이들 理論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대신 이들에 언급되고 있는 기업 資金調達 형태의 결정요인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²⁾.

첫째, 負債調達費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貸出金利, 物價上昇率, 法人所得稅率 및 個人所得稅率 등을 들 수 있다. 貸出金利가 낮을수록,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調達費用이 낮아지게 되어 負債比率이 높아질 것이며, 부채에 대한 支給利자가

2) 기업 자금조달형태의 결정이론에 관해서는 南尙九·李永琪(1994), 金聖民·李殷撲(1990), Brealey & Myers(1988) 등을 참조하기 바람.

損費로 처리될 경우 法人 所得稅率이 높을수록 支給利子の 법인소득세 절감효과가 크게 되어 負債借入이 株式發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에 차이가 있을 경우 負債(債券·어음)와 株式 중 實效稅率이 낮은 쪽의 相對的 調達費用이 저렴하게 되어 해당 자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둘째, 自己資本 調達費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配當率(配當性向), 株式價格, 大株主 持分率 등이 있다. 配當率이 높으면 그만큼 주식 조달비용이 높아져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며, 株式價格이 높으면 기업측에서는 동일한 비용으로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調達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大株主의 持分率이 높을 경우 그만큼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株式을 選好할 수 있으나, 株式發行에 의해 持分率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經營權 確保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株式發行보다는 負債를 選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企業의 規模나 資金運用規模가 작을수록 株式이나 債券을 발행할 경우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負債比率이 높게 된다. 그러나 資金運用規模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經營權 問題, 企業公示費用 부담 등으로 인해 주식 발행의 相對的 費用이上昇하는 반면, 企業 信用度の 증가로 負債調達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負債比率이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의 收益性이 높고 配當率이 낮을수록 負債依存度는 낮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潛在的) 破産費用이 높고 有形固定資産 保有 比重이 낮을수록 부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며, 損費로 인정되는 減價償却費나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投資 등 非負債 減稅手段(non-debt tax shields)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負債利子の 節稅效果를 노린 借入誘引이 작을 것이므로 負債比率이 낮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업의 資金調達 형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이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國家別로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국가의 企業金融形態는 그 나라에서의 각종 租稅·金融制度和 企業文化 및 金融慣行 등에 따라 이상의 요인들 중 一部 要因들로부터 주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우리 企業의 資金調達 現況

『企業經營分析』을 통해 製造業 企業들의 資金調達 형태를 살펴보면, <表 3-1>에서 보듯이 1970년대에는 內部金融에 의한 資金調達 비중이 20% 내외에 불과하여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企業外部로부터 조달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內部金融 比率이 40% 수준으로, 그리고 3低好況이 絶頂이던 1988년에는 56.0%까지 상승하였으며, 1993년에는 同 比重이 51.4%를 기록하고 있다. 內部金融의 形態別로는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內部留保의 增加가 두드러졌고, 減價償却의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1990년대에는 초반의 景氣沈滯로 內部留保보다는 減價償却費의 增加가 內部金融比重의 上昇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表 3-1> 製造業 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

(單位: %)

| | 1970 ~79 | 1980 ~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內部金融 | 21.3 | 30.0 | 39.2 | 41.5 | 37.1 | 56.0 | 46.4 | 31.3 | 33.6 | 42.1 | 51.4 |
| 內部留保 | 6.8 | 5.0 | 7.5 | 13.4 | 10.7 | 21.3 | 18.2 | 7.1 | 9.8 | 10.2 | 14.7 |
| 減價償却費 | 13.2 | 21.8 | 28.0 | 24.6 | 22.4 | 28.7 | 24.1 | 21.0 | 19.8 | 27.5 | 33.0 |
| 充當金 | 1.1 | 3.2 | 3.7 | 3.5 | 4.0 | 6.0 | 4.1 | 3.2 | 4.0 | 4.4 | 3.8 |
| 外部金融 | 78.7 | 70.0 | 60.8 | 58.5 | 62.9 | 44.0 | 53.6 | 68.7 | 66.4 | 57.9 | 48.6 |
| 增資 ¹⁾ | 10.3 | 7.7 | 6.7 | 5.3 | 10.7 | 9.5 | 7.2 | 5.4 | 3.8 | 4.9 | 6.0 |
| 借入 | 41.4 | 34.1 | 46.3 | 31.4 | 25.7 | 9.6 | 27.6 | 42.0 | 41.4 | 41.7 | 29.8 |
| 其他 ²⁾ | 27.0 | 28.2 | 7.8 | 21.8 | 26.5 | 24.8 | 18.8 | 21.3 | 21.2 | 11.3 | 12.8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註: 1) 주식발행 초과금 제외

2) 매입채무 등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號.

다음, 外部金融을 보면 資金調達의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던 1970년대에는 외부금융의 절반 이상을 金融機關借入으로, 34% 정도를 買入債務 등으로 조달하였으며, 増資에 의한 조달은 13%에 불과하였다. 외부금융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의 景氣活況과 정부의 企業公開·増資 등 직접금융 활성화 유도에 힘입어 1985년의 76.2%에서 1988년에는 21.8%까지 下落하였으나, 1990년대 초에는 경기침체와 證券市場의 不況으로 인해 60%대로 다시 높아졌다.

한편, 増資에 의한 資金調達が 전체 資金調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의 10.7%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1993년 현재 6%에 머물러 주식발행에 의한 資金調達は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2〉를 통해 製造業 企業들의 資金調達 형태를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大企業의 경우 外部金融이 總資金調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9~83년 동안에는 평균 72.5%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에 內部留保 및 減價償却의 확대를 持續적으로 도모한 결과 1993년에는 同 比重이 43.9%로 낮아졌다. 외부금융 중에서 間接金融이 總資金調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17.9%까지 낮아졌으나, 1990년대 초에는 다시 30%대로 높아졌으며, 1993년에는 設備投資의 부진으로 13.7%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直接金融의 경우에는 増資의 비중이 6%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會社債發行을 통한 調達比重은 1989년에는 8.5%, 1993년에는 15.5%까지 높아졌다.

반면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외부금융의 비중이 1970년대 말의 78% 수준에서 1993년에는 62%로 낮아지는 데 그쳐 여전히 外部金融에 의 依存度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直接金融의 경우 増資가 차지하는 비중은 大企業과 비슷하나 회사채 발행은 1~3%에 불

〈表 3-2〉 製造業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推移(1979~93)

(單位: %)

| | 大 企 業 | | | | | | | 中 小 企 業 | | | | | | |
|-------|-------------|-------------|-------|-------|-------|-------|-------|-------------|-------------|-------|-------|-------|-------|-------|
| | 1979 ~83 | 1984 ~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79 ~83 | 1984 ~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内部金融 | 27.5 | 44.8 | 48.5 | 32.3 | 35.1 | 43.4 | 56.1 | 21.9 | 38.4 | 33.9 | 27.5 | 25.9 | 33.7 | 38.0 |
| 内部留保 | 4.0 | 13.1 | 19.2 | 6.6 | 10.8 | 12.2 | 16.6 | 4.4 | 15.2 | 12.3 | 9.6 | 4.7 | -2.1 | 8.9 |
| 減價償却費 | 20.6 | 27.0 | 25.0 | 22.2 | 20.1 | 26.9 | 35.3 | 15.0 | 19.8 | 18.6 | 16.0 | 18.3 | 30.8 | 26.2 |
| 充當金 | 2.9 | 4.6 | 4.3 | 3.5 | 4.2 | 4.3 | 4.2 | 2.5 | 3.4 | 3.0 | 1.9 | 2.8 | 5.0 | 2.9 |
| 外部金融 | 72.5 | 55.2 | 51.4 | 67.7 | 64.9 | 56.6 | 43.9 | 78.1 | 61.6 | 65.8 | 72.6 | 74.1 | 66.3 | 62.0 |
| 直接金融 | 14.2 | 14.9 | 16.1 | 16.9 | 16.0 | 10.8 | 21.4 | 11.6 | 9.8 | 4.8 | 1.6 | 9.0 | 8.1 | 7.8 |
| 增資 | 6.7 | 8.7 | 7.6 | 4.6 | 3.3 | 4.6 | 5.9 | 9.1 | 7.0 | 5.1 | 8.8 | 6.2 | 6.7 | 6.4 |
| 社債 | 7.5 | 6.2 | 8.5 | 12.3 | 12.7 | 6.2 | 15.5 | 2.5 | 2.8 | 0 | 1.8 | 2.8 | 1.4 | 1.4 |
| 間接金融 | 28.9 | 19.4 | 17.9 | 30.2 | 23.0 | 34.7 | 13.7 | 34.5 | 25.7 | 34.3 | 38.1 | 37.0 | 46.2 | 29.7 |
| 銀行借入 | 18.8 | 14.8 | 13.7 | 22.3 | 18.2 | 21.7 | 9.3 | 25.3 | 23.7 | 28.8 | 32.1 | 25.3 | 36.0 | 23.8 |
| 其他借入 | 10.1 | 4.5 | 4.2 | 7.9 | 10.8 | 13.0 | 4.4 | 9.2 | 2.0 | 5.5 | 6.0 | 11.7 | 10.2 | 5.9 |
| 企業間信用 | 13.0 | 8.2 | 5.3 | 9.4 | 9.2 | 4.9 | -1.5 | 21.7 | 13.6 | 12.2 | 12.9 | 14.8 | 6.6 | 16.5 |
| 其 他 | 16.5 | 12.8 | 12.1 | 11.2 | 10.6 | 6.2 | 10.3 | 10.2 | 12.4 | 14.8 | 11.1 | 13.3 | 5.4 | 8.0 |
| 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號.

과하여 中小企業들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金融機關借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3低好況期가 포함된 1984~88년 동안에만 30%를 밑돌았을 뿐,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는 34~46%로 大企業의 경우보다 7~16%p 정도 높았으며, 1993년에는 1980년대 초의 34% 수준보다 다소 낮아진 29.7%에 달하고 있다.

다음, 『企業經營分析』상의 資金調達構成과 〈表 3-3〉의 『資金循環表』에 나타난 非金融企業의 資金調達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인 構成比의 변화추이는 비슷하나, 『資金循環表』상의 全體 資金調達 中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企業經營分析』의 경우보다 훨씬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内部資金의 비중은 1970년대 후반 22.8%에서 1980년대에는 전반 26.7%, 후반 35.5%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1989년 이후 景氣沈滯에 따른 企業收支 惡化로 다소 하락하다가 199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92년에는 28.7%에 이르렀다.

外部資金 중에서는 間接金融의 비중이 1970년대 후반의 42.5%에서 1980년대 전반에는 通貨緊縮에 따른 非通貨金融機關 借入 확대로 41.7%로 다소 높아졌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景氣活況으로 通貨金融機關 借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非通貨金融機關 借入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同 比重이 40.2%로 낮아졌다. 直接金融의 비중은 1970년 후반 24.6%에서 1980년대 前半에는 緊縮政策으로 인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34.8%로 높아졌으며, 後半에는 銀行借入이 많은 大企業들에 대한 政府의 直接金融轉換誘導로 특히 주식발행이 크게 증가하여 47.9%까지 상승한 후 1990년대 들어서는 證市沈滯로 다소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海外借入의 비중은 1970년대 초의 30% 水準에서 계속 낮아져 1980년대 전반에는 5.0%, 후반에는 1.9%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1990년

〈表 3-3〉 企業部門 資金調達構造(增減額 基準)

(單位: %)

| | 1975 ~79 | 1980 ~84 | 1985 ~89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²⁾ |
|------------------|-------------|-------------|-------------|-------|-------|-------|-------|-------|-------|-------|-------|--------------------|
| 調達合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内部資金 | 22.8 | 26.7 | 35.5 | 36.3 | 38.7 | 41.1 | 41.0 | 26.0 | 24.0 | 26.7 | 28.7 | - |
| 外部資金 | 77.2 | 73.3 | 64.5 | 63.7 | 61.3 | 58.9 | 59.0 | 74.0 | 76.0 | 73.4 | 71.3 | - |
| 外部資金合計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間接金融 | 42.5 | 41.7 | 40.2 | 56.2 | 43.7 | 45.7 | 27.4 | 37.6 | 40.9 | 45.0 | 39.4 | 35.9 |
| 通貨金融機關 | 27.3 | 19.8 | 22.1 | 35.4 | 32.7 | 20.1 | 19.4 | 15.7 | 16.8 | 21.3 | 16.4 | 15.1 |
| 非通貨金融機關 | 15.2 | 21.9 | 18.1 | 20.8 | 11.0 | 25.7 | 8.0 | 21.9 | 24.1 | 23.7 | 22.9 | 20.9 |
| 直接金融 | 24.6 | 34.8 | 47.9 | 30.3 | 35.4 | 38.0 | 59.5 | 57.0 | 45.2 | 40.8 | 44.9 | 58.5 |
| 國公債 | 1.4 | 1.5 | 2.5 | 0.8 | 0.7 | 1.3 | 5.3 | 3.0 | 3.1 | 2.7 | 6.2 | 7.9 |
| 企業어음 | 2.1 | 4.9 | 7.6 | 0.4 | 10.0 | -2.2 | 6.1 | 14.1 | 4.0 | -4.1 | 8.3 | 16.1 |
| 會社債 | 4.8 | 10.5 | 11.2 | 16.1 | 9.6 | 7.7 | 7.5 | 13.6 | 23.0 | 26.0 | 13.1 | 16.4 |
| 株式 出資金 | 16.3 | 17.9 | 26.5 | 13.0 | 15.1 | 31.1 | 40.6 | 26.4 | 15.1 | 16.2 | 17.3 | 18.1 |
| 海外借入 | 13.4 | 5.0 | 1.9 | 0.8 | 5.7 | -0.5 | 6.4 | -0.5 | 6.8 | 4.4 | 5.0 | -2.3 |
| 其他 ²⁾ | 19.5 | 18.5 | 10.0 | 12.7 | 15.2 | 16.8 | 6.7 | 5.9 | 7.1 | 9.7 | 10.7 | 7.9 |

註: 1) 推定值임.

2) 기업신용 및 정부융자임.

資料: 韓國銀行.

〈表 3-4〉 民間企業의 金融負債 推移

(單位: %)

| | 1970 ~79 | 1980 ~84 | 1985 ~89 | 1985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金融負債殘額 (10萬圓) | - | - | - | 101,881.9 | 129,152.5 | 146,265.1 | 179,217.5 | 225,455.8 | 276,812.6 | 321,697.0 | 373,377.6 |
| 金融機關借入 | 30.5 | 36.8 | 40.9 | 41.5 | 41.8 | 39.9 | 40.1 | 40.2 | 41.5 | 41.2 | 40.6 |
| 通貨金融機關借入 | 22.2 | 22.4 | 23.1 | 23.7 | 23.5 | 22.7 | 21.7 | 20.8 | 21.1 | 20.6 | 19.8 |
| 非通貨金融機關借入 | 8.3 | 14.4 | 17.7 | 17.8 | 18.3 | 17.2 | 18.3 | 19.3 | 20.4 | 20.7 | 20.8 |
| 有價證券 | 18.8 | 22.9 | 27.7 | 24.2 | 25.8 | 28.4 | 32.2 | 33.4 | 33.0 | 33.3 | 35.1 |
| 企業어음 | 1.2 | 3.9 | 4.4 | 3.3 | 3.5 | 3.9 | 6.0 | 5.7 | 3.8 | 4.6 | 6.4 |
| 會社債 | 1.9 | 5.5 | 8.1 | 7.3 | 7.6 | 8.0 | 9.3 | 12.0 | 14.2 | 13.6 | 13.8 |
| 株式 및 出資金 | 15.7 | 13.5 | 15.3 | 13.6 | 14.6 | 16.5 | 16.9 | 15.7 | 15.0 | 15.1 | 15.0 |
| 海外借入 | 13.4 | 10.1 | 5.5 | 6.9 | 5.4 | 5.4 | 4.4 | 5.3 | 5.6 | 3.3 | 3.0 |
| 其 他 | 37.3 | 30.2 | 25.9 | 27.4 | 27.0 | 26.3 | 23.3 | 21.1 | 19.9 | 19.5 | 18.7 |

資料: 韓國銀行.

대에 들어서는 海外 有價證券 發行의 증가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資金調達 行태는 金融負債殘額으로 살펴보다라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3-4〉에서 民間企業의 金融負債 中 銀行借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대신 非通貨金融機關 借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金融機關 借入의 비중은 1988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여 1991년에는 41.5%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政治·經濟上의 不確實性 增大와 景氣不振 등에 따른 투자수요의 감소로 금융기관 차입이 金融負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株式 및 出資金의 비중은 1980년대에는 전반적인 增加勢를 보여 1989년에는 16.9%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신 會社債 殘額의 비중이 1980년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의 資金調達上의 특징은 內部資金보다는 外部金融, 그 중에서도 특히 間接金融에 의존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特徵은 主要國의 자금조달 구성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美國의 경우 純

資金調達 중 內部資金에 의존하는 비율이 대체로 70%를 넘고 있으며, 外部金融 중에서도 金融機關 借入보다는 會社債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表 3-5〉 참조). 英國의 경우에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내부자금 비중이 62~8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들의 收益性 惡化로 은행차입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表 3-6〉 참조). 日本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內部金融의 비중이 50%를 상회하였으나, 후반에는 「엔」高 등의 영향으로 40%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대신 주식 및 해외 有價證券 發行이 크게 늘어났다(〈表 3-7〉 참조). 그리고 獨逸의 경우에는 所要資金의 4분의 3 정도를 내부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4분의 1의 대부분을 은행차입으로 충당하며, 證券發行에 의한 조달은 3~4%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Prowse, 1994). 이상 4개국의 資金調達構成으로부터 우리는 銀行借入에 의한 자금조달 비중이 直接金融市場의 발달 정도와 기업의 內部資金 調達可能性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銀行의 貸出利子率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獨逸과 日本의 銀行依存도가 美國·英國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서 資金調達비용을 구성하는 貸出利子率, 法人稅率 및 個人所得稅率, 物價上昇率 등의 요인들이 기업들의 資金調達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圖 3-1] 참조).

우리 기업들의 間接金融 依存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여러 要因들이 複合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要因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우선 外國의 企業들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은 內部資金에 의한 初期資本形成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소요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外部資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1960·70년대에는 정부의 積極的인 資本市場 육성시책에도 불구하고 株式·債券의 발행 및 流通市場 規模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企業 資金需要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였기 때문에 銀行借入에 의존하는

〈表 3-5〉 美國 非金融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單位：%)

| | 1952 ~53 | 1954 ~57 | 1958 ~60 | 1961 ~69 | 1970 ~73 | 1974 ~79 | 1980 ~81 | 1982 ~88 |
|------------------|-------------|-------------|-------------|-------------|-------------|-------------|-------------|-------------|
| 總資金調達 (10億달러) | 28.6 | 38.6 | 44.8 | 75.6 | 128.1 | 208.4 | 296.7 | 402.8 |
| 內部金融 | 78.3 | 75.4 | 76.5 | 73.1 | 62.0 | 72.1 | 74.1 | 81.3 |
| 社內留保 | 34.0 | 32.5 | 24.9 | 25.4 | 20.6 | 35.0 | 28.1 | 13.0 |
| 減價償却費 | 44.3 | 42.9 | 51.6 | 47.7 | 41.4 | 37.0 | 46.0 | 68.3 |
| 外部金融 | 21.7 | 24.6 | 23.5 | 26.9 | 38.0 | 27.9 | 25.9 | 18.7 |
| 借入 | 1.4 | 6.8 | 5.8 | 11.2 | 11.8 | 10.8 | 16.4 | 13.7 |
| 社債 | 17.7 | 14.8 | 15.4 | 14.0 | 18.3 | 14.0 | 10.5 | 19.6 |
| 株式 | -4.6 | -2.1 | -1.8 | 0.2 | 0.9 | 1.6 | -1.3 | 0.1 |
| 其他 | 7.1 | 5.2 | 4.0 | 1.5 | 7.0 | 1.5 | 0.2 | -14.7 |

資料：Kopcke(1989), p. 39, Table 7.

〈表 3-6〉 英國 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單位：%)

|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
| 總資金調達 (10億달러) | 33.4 | 29.0 | 33.2 | 29.4 | 33.7 | 34.8 | 44.3 | 47.9 | 70.7 | 86.2 | 89.8 | 66.7 |
| 內部金融 | 76 | 66 | 64 | 62 | 76 | 80 | 68 | 57 | 49 | 41 | 31 | 37 |
| 外部金融 | 25 | 34 | 36 | 39 | 24 | 20 | 32 | 42 | 50 | 59 | 69 | 63 |
| 銀行借入 | 12 | 22 | 17 | 23 | 5 | 20 | 17 | 19 | 17 | 36 | 37 | 28 |
| 普通株 | 3 | 3 | 5 | 4 | 6 | 3 | 8 | 11 | 19 | 5 | 2 | 4 |
| 其他增加 | - | 3 | 4 | 1 | 3 | 3 | 6 | 7 | 8 | 7 | 15 | 14 |
| 其他 | 10 | 6 | 10 | 11 | 10 | -6 | 1 | 5 | 6 | 11 | 15 | 17 |

資料：Charkham(1994), p. 297, Table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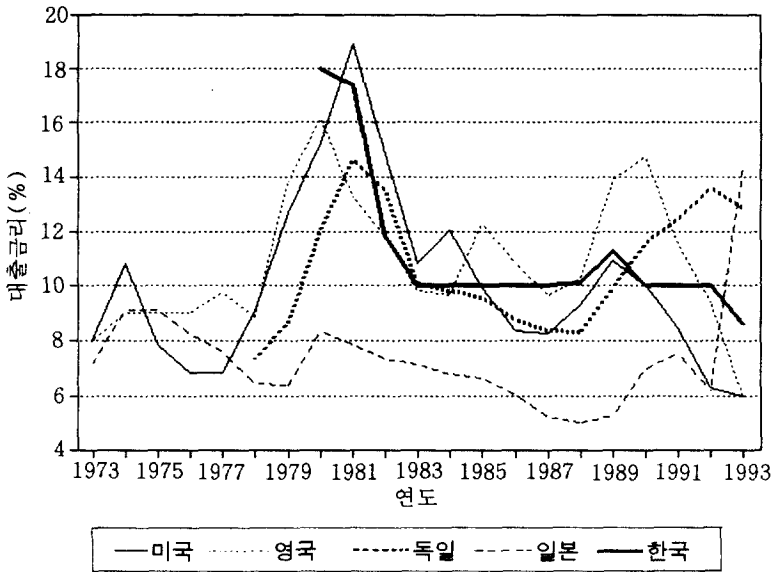
〈表 3-7〉 日本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 推移

(單位：%)

|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
| 資金調達合計 (千億円) | 582.2 | 548.7 | 665.1 | 732.7 | 838.1 | 993.2 | 1,106.5 | 1,234.9 | 1,313.9 | 938.5 |
| 內部金融 | 49.6 | 55.8 | 51.4 | 52.1 | 50.5 | 45.8 | 45.0 | 42.0 | 40.5 | 58.7 |
| 外部金融 | 50.4 | 44.2 | 48.6 | 47.9 | 49.5 | 54.2 | 55.0 | 58.0 | 59.5 | 41.3 |
| 金融機關借入 | 35.3 | 35.8 | 35.5 | 28.9 | 32.2 | 29.3 | 31.2 | 35.9 | 34.8 | 32.3 |
| 有價證券發行 | 5.7 | 6.3 | 7.7 | 6.1 | 8.4 | 13.1 | 18.0 | 20.1 | 10.7 | 8.6 |
| 事業債 | 0.7 | 0.7 | 1.7 | 0.4 | 2.5 | 1.8 | 1.3 | 1.2 | 2.4 | 3.9 |
| 株式 | 3.2 | 3.3 | 3.2 | 2.9 | 2.5 | 4.9 | 5.9 | 8.2 | 3.4 | 1.4 |
| 外貨有價證券 | 1.8 | 2.2 | 2.8 | 2.7 | 3.4 | 3.7 | 5.0 | 7.7 | 2.9 | 7.0 |
| 企業어음 | - | - | - | - | - | 2.7 | 5.8 | 3.1 | 2.1 | -3.6 |
| 海外借入 | -0.8 | -0.6 | 0.6 | 0.7 | 1.1 | 2.6 | 2.4 | 3.1 | 5.3 | -0.1 |

資料：韓國銀行.

[圖 3-1] 主要國 貸出金利¹⁾ 推移 比較



註：1) 基準金利 혹은 優待金利(prime rate).
 資料：IFS Yearbook, 各號.

것이 不可避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經濟開發過程에서 정부가 전략부문에 대해 實勢金利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의 政策金融을 大規模로 공급하고 一般貸出金利도 人爲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였으며, 높은 物價上昇率이 借入金의 實質金利를 크게 낮춘 것이 은행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超過需要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支給利率에 대한 損費 認定과 配當所得에 대한 綜合課稅³⁾, 높은 法人稅率 등으로 인해 주식발행에 의한 資金調達보다는 銀行借入의 調達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기업들의 과도한 銀行借入을 초래하는 데 중요

3) 우리나라의 경우 稅制上 總發行社債의 3%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회사채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 반면, 總發行株式의 1% 이상 또는 액면가 1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大株主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있음.

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993년 현재 우리 製造業體들의 負債比率은 294.9%로 美國 174.5%, 臺灣 93.0%(1992년)보다 훨씬 높은 반면, 自己資本比率은 25.3%(大企業 26.8%, 中小企業 20.5%)로 美國 36.4%, 日本 31.6%(1992년), 臺灣 51.8%(1992년)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30大 大規模企業集團의 負債比率은 1993년 말 현재 348.4%, 자기자본비율은 20.1%로 이들 大規模 企業集團 소속기업들이 외부자금인 貸出金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負債依存度가 높음에 따라 製造業 企業들의 金融費用負擔이 높아져 賣出額 對比 金融費用比率은 1992년 현재 6.3%로 日本의 1.7%, 臺灣의 2.3%에 비해 대단히 높은 실정이며(〈表 3-9〉 참조), 이로 인해 賣出額 營業利益率이 主要國들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賣出額 經常利益率은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表 3-10〉 참조).

〈表 3-8〉 製造業體의 自己資本 및 負債比率 推移

(單位: %)

|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自己資本 比 率 | 製造業 全體 | 22.7 | 25.3 | 28.2 | 25.9 | 24.6 | 23.9 | 25.3 |
| | 大 企 業 | 23.1 | 26.0 | 29.4 | 26.7 | 25.8 | 24.8 | 26.8 |
| | 中小企業 | 21.1 | 21.8 | 22.4 | 22.8 | 19.5 | 19.3 | 20.5 |
| | 美 國 | 42.9 | 42.0 | 40.5 | 40.2 | 40.4 | 37.3 | 36.4 |
| | 日 本 | 28.2 | 29.1 | 30.3 | 30.6 | 31.2 | 31.6 | |
| | 臺 灣 | 47.5 | 48.0 | 52.4 | 54.5 | 50.5 | 51.8 | |
| 負債比率 | 製造業 全體 | 340.1 | 296.0 | 254.3 | 285.5 | 306.7 | 318.7 | 294.9 |
| | 大 企 業 | 333.1 | 283.9 | 239.9 | 274.5 | 288.1 | 302.5 | 273.5 |
| | 中小企業 | 375.0 | 357.7 | 347.0 | 339.5 | 413.2 | 418.5 | 388.1 |
| | 美 國 | 133.1 | 138.2 | 146.8 | 148.7 | 147.3 | 168.2 | 174.5 |
| | 臺 灣 | 110.7 | 108.5 | 91.0 | 83.4 | 97.9 | 93.0 | |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號.

〈表 3-9〉 製造業 金融費用/賣出額 比率의 國際比較

(單位: %)

|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韓國 | 4.9 | 4.6 | 4.6 | 5.1 | 5.1 | 5.7 | 6.3 | 5.9 |
| 日本 | 2.3 | 1.9 | 1.7 | 1.8 | 1.9 | 1.9 | 1.7 | — |
| 臺灣 | 1.8 | 1.7 | 1.5 | 2.1 | 2.5 | 2.6 | 2.3 | — |
| 獨逸 | 0.8 | 0.9 | 0.8 | 0.8 | 0.9 | 1.1 | — | — |

註: 金融費用 = 支給利子 + 割引料 + 會社債 差金償却
 資料: 南尙九·李永琪(1994), p. 13, 〈表 4〉.

〈表 3-10〉 主要國의 營業 및 經常利益率 推移 比較

(單位: %)

| | | 1985 | 1987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韓國 | 賣出額 營業利益率 | 7.8 | 7.2 | 6.0 | 6.5 | 6.6 | 6.6 | 7.0 |
| | 賣出額 經常利益率 | 2.5 | 3.6 | 2.5 | 2.3 | 1.8 | 1.5 | 1.7 |
| 日本 | 賣出額 營業利益率 | 3.9 | 4.1 | 5.0 | 4.8 | 4.2 | 3.3 | — |
| | 賣出額 經常利益率 | 3.2 | 3.7 | 4.7 | 4.3 | 3.4 | 2.6 | — |
| 臺灣 | 賣出額 營業利益率 | 5.3 | 7.5 | 5.9 | 7.0 | 6.4 | 5.7 | — |
| | 賣出額 經常利益率 | 2.7 | 5.8 | 3.8 | 4.5 | 4.0 | 3.4 | — |
| 美國 | 賣出額 營業利益率 | 5.9 | 6.6 | 6.6 | 6.1 | 4.9 | 5.2 | 6.0 |
| | 賣出額 稅前利益率 | — | — | 6.9 | 5.7 | 3.7 | 1.3 | 4.0 |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號.

2. 與信管理制度的 變遷

가. 與信管理制度 關聯規程의 主要變更 推移

同一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은 1970년대에도 系列企業群에 대한 偏重與信 抑制, 기업의 財務構造 改善, 企業公開 促進 등을 위해 金融團에서 제정한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 協定」(1974. 7)과 「主去來銀行 運用協定」(1976. 7)을 바탕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1982년 銀行法 개정시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의 法的 根據(은행법 제30조 2항)가 마련됨으로써 1984년 1월부터 系列企業群에 대한 basket 與信管理가 비로소 法的인 拘束力을 갖게 되었

다. 同 制度의 導入目的은 은행법상의 同一人 與信限度 規制만으로는 系列企業群 所屬 特定 企業의 소요자금을 同一 系列企業群 内の 與信이 적은 他企業名義로 조달하여 系列社間에 轉用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의 與信管理를 통해 系列企業群에 대한 偏重與信을 억제함으로써 大企業에 의한 과도한 經濟力集中을 방지하고 나아가 金融機關의 건전경영과 國民經濟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銀行法上에 與信管理制度가 도입된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 때까지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는 관련 施行細則의 개정을 통해 持續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 기간중의 대표적인 조치로는 1987년 말부터는 銀行與信規模가 1,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에 대해 新規投資 혹은 不動產 買入時 銀行監督院長의 事前承認을 얻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所要資金도 自救努力으로 조달하도록 한 것과, 1990년 5월 이른바 「5·8 對策」을 통해 系列企業群이 보유하고 있던 非業務用 不動產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고 不動產의 新規取得을 금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경제가 계속 沈滯狀態를 벗어나지 못하자 기업들의 競爭力 強化努力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與信管理方式을 변경하고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관련 규제들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6월 제조업 競爭力 강화와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해 與信管理對象 系列企業群의 選定基準을 總與信 1,500억원 이상에서 金融機關 貸出金 基準 上位 50대 그룹으로 바꾸고 主力業體(각 계열별로 3개 이내에서 선정)와 株式分散優良業體(대주주 1인 지분을 8% 이하)를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1~50大 系列企業群에 대한 기업투자 승인 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自救義務 부과를 폐지하였다. 대신 30大 系列이 신규업종에 진출할 경우 최

4) 韓國銀行, 『銀行法 解說』, 1993, pp. 203~4.

초 투자금액 및 진출 후 3년 이내의 투자금액에 대해 特別自救義務를 부과하고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영위업종과 관련없는 신규 투자 및 부동산취득을 금지하는 등 大企業들의 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規制는 강화하였다. 그리고 1993년 2월부터는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대출금 상위 50대 계열에서 30대 계열로 축소하고 기업투자 및 不動產 取得時의 自救努力 義務比率를 100~600%에서 自己資本 指導比率 達成業體는 所要資金의 100%, 未達業體는 200%로 상당히 완화하였다. 또한 1994년 1월부터는 11~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企業投資 및 不動產取得承認 관련제도를 폐지하였으며, 商工資源부가 선정한 「主力企業」(現在 108個社) 중에서 系列別로 3개 이내의 「主力業體」를 선정하여 與信限度 管理對象에서 제외하였다. 이때 1~10대 계열소속 주력업체에 대한 自救努力 減免措置를 확대하고 自救免除對象 企業投資 및 不動產 取得은 모두 事後申告 對象으로 전환하였으며, 主力業體의 新規業種 관련여부 判定 기준을 中分類 基準인 73개 업종분류에서 大分類 基準인 15개 업종분류로 완화하였다. 끝으로 1994년 6월부터는 1~10대 系列企業群 所屬 企業의 海外 營業活動에 대한 規制를 全面 廢止하는 동시에 企業投資 및 不動產取得關聯 自救免除對象 및 事後申告對象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가 이처럼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大 系列에 대한 銀行貸出金の 增加率은 둔화되고 있으며, 銀行의 總貸出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1994년 6월 말 현재 30대 계열의 銀行貸出金은 30조 716억원으로 은행 總貸出金(200조 2,453억원)의 15.0%를 차지하였으며, 5대 계열의 銀行貸出金은 모두 16조 2,461억원으로 30대 계열 대출금의 54.0%, 은행 總貸出金の 8.1%에 달하였다. 30대 계열에 대한 貸出金 中 53.1%인 15조 9,745억원이 主力業體 및 주식분산 優良業體에 대한 貸出金으로서 與信管理對象에서 제외되고 있다.

〈表 3-11〉 與信限度管理對象 貸出金 現況(1994年 6月 末 現在)

(單位：億圓, %)

| | 總 貸 出 金 ¹⁾ (A) | 主力業體 및 株式分散 優良業體 貸出金 (B) | 管理對象 貸出金 (C=A-B) |
|----------|------------------------------|--------------------------------|---------------------|
| 1~ 5大 銀行 | 162,461 < 8.1> | 80,322 (49.4) | 82,139 (50.6) |
| 6~30大 銀行 | 138,255 < 6.9> | 79,423 (57.4) | 58,832 (42.6) |
| 1~30大 銀行 | 300,716 <15.0> | 159,745 (53.1) | 140,971 (46.9) |
| 銀行 全體 | 2,002,453 | | |

註：1) 國外支店 貸出金 및 引渡 後 輸出金融을 제외한 貸出金임.

1. () 안의 數値는 系列企業群別 總貸出金에 대한 構成比(%)임.

2. < > 안의 數値는 銀行全體貸出金에 대한 比重(%)임.

資料：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나. 與信管理制度에 대한 評價

먼저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與信管理制度가 大企業들의 銀行資金 依存度を 낮추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면, 當局的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에 힘입어 30대 系列企業群 總貸出金の 銀行 總貸出金에 대한 점유비중은 1986년의 28.6%에서 1994년 6월 말 현재 15.0%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主力企業에 대한 여신 관리 배제에 따라 産業合理化 與信 등을 제외한 管理對象 貸出金 基準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25.3%에서 7.0%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大企業에 대한 與信規制와 더불어 中小企業貸出義務比率制度의 지속적인 운용, 貿易金融 融資單價 引上 등의 조치에 힘입어 은행 總貸出金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43.9%에서 1993년에는 59.3%(殘額 基準)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産業構造調整의 지원과 우리 기업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목적으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政策金融 중 中小企業에 지원되는 金融資金(貿易金融, 輸出産業設備金融, 輸入代替金融 등)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表 3-15〉 참조). 지금까지의 與信管理制度가 기업의 財務構造 改善보다는 大企業들에 의한 金融資金 獨占과 經濟力集中을

〈表 3-12〉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 占有比率 推移

(單位：%)

|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6 |
|-------------|------|------|------|------|------|------|------|------|--------|
| 관리대상 대출금 기준 | 25.3 | 21.6 | 18.3 | 14.7 | 10.1 | 9.8 | 8.1 | 7.1 | 7.0 |
| 총대출금 기준 | 28.6 | 26.3 | 24.2 | 20.7 | 19.0 | 18.9 | 17.9 | 15.6 | 15.0 |

資料：韓國銀行 銀行監督院.

〈表 3-13〉 銀行貸出金¹⁾의 中小企業 比重 推移

(單位：%)

| | 1980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잔액 기준 | 43.9 | 43.0 | 48.1 | 50.1 | 55.5 | 56.8 | 56.3 | 59.3 |
| 순증 기준 | — | 70.5 | 93.3 | 56.8 | 190.2 | 63.0 | 53.3 | 83.8 |

註：1)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 기준.
資料：財務部.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들은 정부의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規制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金融支援施策과 더불어 大企業에 의한 金融獨占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大企業들에 의한 與信獨占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主力業體 및 株式分散優良業體에 대한 與信管理 排除 등 與信管理의 점진적 축소가 大企業의 金融獨占을 완화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中小企業의 資金難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실제로 30大 系列의 主力業體로 선정된 76개 기업들의 1993년 平均 負債比率이 368.9%로 證券去來所가 조사한 12月 決算法人 607개사(金融機關 및 신규상장사 제외)의 平均負債比率 267.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30대 계열의 主力業體 中 負債比率이 400% 이상인 업체가 31개사나 되며, 5大 系列의 경우 主력업체가 石油化學, 自動車, 電氣 電子, 重工業 등 大規模 投資가 필요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主力業體에 대한 與信管理 排除가

〈表 3-14〉 政策金融 供給比重 推移

(單位: 億圓, %)

| | | 金融 資金 | 貿易 金融 | 輸出 産業 設備 金融 | 輸入 對替 金融 | 素材 部品 金融 | 財政 資金 | 國民 投資 基金 |
|--------|---------|-----------|----------|----------------------|----------------|----------------|----------|----------------|
| 1987 | 總計(A) | 437,800 | 24,063 | 23,593 | 947 | 273 | 32,961 | 26,508 |
| | 中小企業(B) | 149,346 | 11,323 | 6,399 | 530 | 273 | 11,789 | 9,780 |
| | (B/A) | 34.2 | 47.1 | 27.1 | 56.0 | 100.0 | 35.8 | 36.9 |
| 1988 | 總計(A) | 526,185 | 13,668 | 32,602 | 4,023 | 1,553 | 35,189 | 24,012 |
| | 中小企業(B) | 198,997 | 12,390 | 10,340 | 1,133 | 1,133 | 15,688 | 10,803 |
| | (B/A) | 37.8 | 90.6 | 31.7 | 28.2 | 73.0 | 44.6 | 45.0 |
| 1989 | 總計(A) | 634,973 | 13,875 | 29,055 | 7,134 | 1,422 | 43,730 | 25,149 |
| | 中小企業(B) | 256,953 | 12,924 | 11,108 | 1,994 | 1,422 | 19,177 | 10,420 |
| | (B/A) | 40.4 | 93.1 | 38.2 | 28.0 | 100.0 | 43.9 | 41.3 |
| 1990 | 總計(A) | 763,885 | 19,514 | 29,744 | 10,164 | 2,196 | 51,597 | 23,491 |
| | 中小企業(B) | 335,556 | 17,999 | 12,231 | 2,143 | 2,196 | 21,941 | 10,634 |
| | (B/A) | 43.9 | 92.2 | 41.1 | 21.1 | 100.0 | 42.5 | 45.3 |
| 1991 | 總計(A) | 923,570 | 22,500 | 32,136 | 10,400 | 4,080 | 62,798 | 20,280 |
| | 中小企業(B) | 414,184 | 20,743 | 15,686 | 2,394 | 4,080 | 28,399 | 10,204 |
| | (B/A) | 44.8 | 92.2 | 48.8 | 23.0 | 100.0 | 45.2 | 50.3 |
| 1992 | 總計(A) | 1,074,473 | 25,520 | 30,440 | 9,289 | 6,619 | 78,581 | 14,088 |
| | 中小企業(B) | 475,320 | 21,575 | 17,838 | 2,990 | 6,619 | 32,566 | 8,262 |
| | (B/A) | 44.2 | 84.5 | 58.6 | 32.2 | 100.0 | 41.4 | 58.6 |
| 1993 | 總計(A) | 1,236,531 | 24,921 | 28,344 | 7,996 | 9,831 | 89,033 | 10,500 |
| | 中小企業(B) | 564,894 | 21,387 | 19,388 | 3,889 | 9,829 | 37,175 | 6,153 |
| | (B/A) | 45.7 | 85.8 | 68.4 | 48.6 | 100.0 | 41.8 | 58.6 |
| 1994.5 | 總計(A) | 1,337,753 | 26,672 | 28,015 | 7,377 | 10,116 | 97,510 | 9,468 |
| | 中小企業(B) | 604,033 | 22,822 | 20,165 | 3,381 | 10,116 | 41,069 | 5,678 |
| | (B/A) | 45.2 | 85.6 | 72.0 | 45.8 | 100.0 | 42.1 | 60.0 |

資料: 韓國銀行.

재벌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貸出金の 事後管理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主力業體나 株式分散優良業體에 대한 與信管理의 배제시 이들 업체에 대한 貸出金이 非主力業體로 전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30大 財閥의 主力業體 중 非上場業體가 23개사에 달하고 이 중 內部持分率이 50% 이상인 업체도 18개사나 되는 등 主力業體의 內部持分率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與信管理의 배제가 增資 등 直接金融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재

〈表 3-15〉 30대 系列企業群 主力業體¹⁾ 負債比率 現況

(1993年 末 現在)

(單位: 個社)

| | 1~200% | 201~300% | 301~400% | 400% 以上 | 計 |
|-------|--------|----------|----------|---------|----|
| 1~5大 | 2 | 2 | 3 | 7 | 14 |
| 30大 計 | 15 | 20 | 10 | 31 | 76 |

註: 1) 주력기업 중 계열별로 3개 이내에서 主力業體를 선정하여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資料: 經濟企劃院.

별기업의 所有分散을 저해할 可能性도 있다.

다음으로 財閥의 不動產投機抑制 및 방만한 系列擴張 防止를 위해 金融機關 대출금 기준 상위 50대 系列企業群의 不動產取得 및 企業投資(企業의 新設, 引受, 出資, 合併)時 主去來 銀行의 事前承認을 의무화한 규정은 '5·8 不動產 投機抑制對策' 등과 함께 財閥의 과다한 不動產保有를 抑制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企業投資 및 不動產取得에 관한 규제는 銀行과 顧客企業間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은행들로 하여금 固有業務가 아닌 곳에 많은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副作用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政府는 이러한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1991년 이후 企業投資 및 不動產取得에 대한 過度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11~30대 系列企業群에 대한 기업투자 및 不動產取得 承認關聯制度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大規模 企業集團의 계열기업 확장 및 業種多角化 추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狀況⁵⁾에서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은 政府의 業種專門化 趣旨에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大企業의 不動產投機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表明하고 있다.

5)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는 1993년 4월의 604개에서 1994년 4월에는 616개로 늘어났으며, 평균 영위업종수도 1991년의 17.9개에서 1993년에는 19.1개로 늘어남.

셋째, 與信管理制度的 실시가 재벌기업들의 財務構造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與信管理對象系列의 自己資本 및 負債比率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製造業 全體의 平均 自己資本比率이 1987년 22.7%에서 1993년에는 25.3%로 提高된 반면, 30大 系列企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同比率이 平均 19.8%에서 20.1%로 0.3%p 向上되는 데 그쳤으며, 1993년 말 현재 5대 및 30大 系列企業의 負債比率은 각각 330.6% 및 348.4%로서 製造業體 平均인 294.9%를 여전히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財務構造가 景氣變動에 따른 內部留保, 株式市場 狀況 등의 各種 經濟與件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與信管理制度的 運用만으로는 財閥企業들의 財務構造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示唆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與信管理制度的 시행은 기업의 財務構造를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大規模 企業集團들의 經濟力 集中, 특히 金融獨占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한 成果를 거둔 것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財閥들의 企業擴張 行態에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없고 與信管理를 대체할 關聯規程들의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與信管理制度上的 規制緩和가 進行되고 있는 것에 관해 經濟力集中의 완화와 우리 기업들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規制緩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므로 向後의 與信管理制度 運用方向과 관련하여 보다 慎重한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向後의 與信管理制度 運用方向

1) 與信管理制度的 改編方向

新경제計劃 金融改革部門上 與信管理制度的 개편방향은 종전의 與信偏重 緩和, 財務構造改善, 不動產取得과 放漫한 系列擴張의 抑

制, 産業競爭力 向上, 所有分散 등의 異質的인 目標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탈피하여 偏重與信 抑制 및 財務構造 改善 誘導 등을 통한 金融機關의 건전성 제고 위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與信管理制度가 기업과 金融機關의 자율적인 經營活動을 劃一的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金融資金에 대한 超過需要의 존재로 은행대출이 여전히 特惠로 인식되고 있고 大企業들의 所有集中으로 이들 기업의 經營성과가 所有主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여전히 크며 銀行들도 自律的인 資金運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與信管理制度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相互支給保證 및 不動產 擔保 貸出慣行下에서 與信限度 管理가 일시에 完化될 경우 相互支給保證이 거의 不可能하고 不動產 擔保 能力이 부족한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을 더욱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融機關의 資產運用에 대한 規制가 持續적으로 完化되어 갈 경우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與信管理制度는 金融機關의 健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規制를 제외하고는 폐지되는 것이 不可避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與信管理對象을 단계적으로 上位 系列로 축소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持續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財閥企業의 主力業體에 대한 與信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中小企業에 대한 與信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金融機關의 中小企業에 대한 義務貸出比率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금보다 다소 下向調整하는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金融機關의 貸出審査機能을 강화함으로써 金融기관들로 하여금 大企業들과 일정한 關係를 유지함으로써 손쉽게 營業을 하기보다는 收益性이 유망한 中小企業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해 擔保 및 信用貸出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融機關들의 立場에서도 大企業들의 資

金調達 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銀行借入 依存度가 낮아질 경우에 대비하고 金融自律化에 따른 경쟁심화로 收益性이 악화되는 것을 補填하기 위해서는 優良中小企業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분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地方 金融機關들의 경우 날로 치열해지는 競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資本規模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中小企業 고객들과 긴밀한 紐帶關係를 유지하는 專門化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第2金融圈의 대출이 中小企業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非主力企業에 대한 與信을 관리함에 있어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借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自己資本 指導比率에 미달하는 系列業體의 餘他 企業에 대한 新規出資를 제한하고 相互株式保有 및 支給保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系列社間 相互所有構造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으로부터의 退出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며, 계열기업들로 하여금 經營革新이나 技術開發보다는 獨寡占價格 維持, 非價格 競爭, 生産要素 獨占, 內部去來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데 안주하도록 함으로써 業種專門化를 통한 體質改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消費者의 기호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壽命週期가 단축되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상황에서 수익 흐름의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過度한 相互出資나 支給保證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競爭力 강화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이를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業種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企業에 대해서는 過多保有分の 賣却을 통해 運轉資金이나 設備投資資金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與信管理制度의 改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종래의 大企業 爲主 成長政策에서 中小企業을 중점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 기업의 財務構造가 美國·日本·臺灣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으므로 大規模 기업집단의 非關聯多角化와 所有集中 程度가 축소되는 데 비례하여 系列企業群에 대한 規制를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의 競爭力 강화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資金·人力·技術·情報 등 모든 면에서 大企業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中小企業들도 독자적으로 혹은 大企業과의 協力關係 摸索을 통해 체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與信管理制度의 改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同一人 與信限도의 強化와 巨額與信 總額限定制의 導入

정부는 大企業들에 대한 與信管理는 段階的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 결과 발생할지도 모를 편중여신에 따른 銀行의 健全性 惡化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94년도 은행법 개정에서 은행의 同一人 與信限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巨額與信에 대해서는 총액한도(銀行自己資本의 一定 倍數)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먼저 同一人 與信限度 規制는 金融機關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자금의 均霑配分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金融機關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銀行法 제정 당시 은행 自己資本의 25%로 정하였고, 同一人에 대한 支給保證限度는 1982년 12월 6차 개정시 신규로 自己資本의 50%로 제한하였으며, 1991년 12월 은행법 7차 개정시 대출은 자기자본의 25%에서 20%로, 支給保證의 경우 自己資本의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大規模 企業集團에 대한 與信管理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同一人 與信限度를 대출은 自己資本의 20%에서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自己資本의 4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은 金融自律化의 확대로 銀行의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銀行 經營者의 방만한 資產運用이 銀行의 건전성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金融產業의 효율성을 높이고 開放化·國際化의 세계적 大勢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金融規制 緩和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나, 무분별한 자율화가 金融機關 不實化와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外國의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銀行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健全經營監督方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金融自律化 조치가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銀行들은 그 동안 金融環境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經營合理化를 통한 生産力 向上을 도모하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金融自律化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金融機關들이 환경변화에 效率的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악화되는 收益性을 補填하기 위해 신중하지 못한 대출을 확대하거나 高危險 收益資產에의 의존을 높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실화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主要國의 銀行들이 金融自律化 과정에서 심화되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比較優位를 고려하여 特定 部門에 專門化하거나 合併·業務多角化를 통해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顧客確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銀行들, 특히 市中銀行들이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大企業 爲主의 수동적인 경영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同一人 與信限度의 축소는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

가 추구해야 할 長期發展戰略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1991년 이후 銀行들이 內部留保 增大, 增資 등을 통해 自己資本을 확충해 온 결과 일반은행의 自己資本은 최근 2년 동안 20.2% (시중은행은 23.1%)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동일인 與信限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大企業들에 대한 與信可能規模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大企業에 대한 편중여신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同一人 與信限도를 축소하고 여신한도 초과분은 법 施行日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限度超過 與信의 은행감독원장 承認範圍도 대출은 自己資本의 50%에서 30%로, 지급보증은 自己資本의 100%에서 60%로 각각 縮小하였다. 참고로 주요국의 與信規制를 살펴보면, 美國에서는 특정한 借入者에 대한 대출이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州에서는 擔保가 있는 경우의 대출한도를 自己資本의 25~3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13조와 대장성 政令 제4조에 의거하여 동일인에 대한 信用供與는 廣義의 自己資本(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잉여금 총당금 중 大藏相이 정하는 것의 합계)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英國에서는 銀行 自己資本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은 英蘭銀行에 사후보고하여야 하며, 25%를 초과하는 여신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與信總額이 金融機關 책임자기자본액의 15%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巨額與信은 지체없이 독일 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별 거액여신은 金融機關 責任自己資本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30대 계열 總貸出金 비중과 銀行의 自己資本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동일인 여신한도의 축소가 당장 은행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大企業들이 1991년 말에 20% 한도

를 채우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출증가보다는 銀行의 自己資本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부 개별기업의 경우 예외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볼 때 1993년 말 현재 동일인 여신비율은 18%(시중은행의 경우 17.6%) 정도로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비율인 15%를 충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大企業 고객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경영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량고객의 확보에 나서거나 특정 大企業의 大規模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銀行이 여타 은행과의 협조용자를 주선하는 등의 움직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인 여신한도의 축소와 더불어 당국은 同一系列企業群別 與信限度 規制의 보완장치로 동일인 또는 同一系列企業群에 대한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5%를 초과하는 巨額與信의 總額限度를 설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同 制度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결정될 예정이나,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의 경우 自己資本의 15%(EU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巨額與信의 총합계액이 自己資本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의 15%를 넘는 巨額與信의 總計가 自己資本의 3~5배 수준임을 고려할 때, 도입 초기에 金融機關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총액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財界에서는 巨額與信의 총액한도제 도입을 與信管理 緩和 이후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은행들의 自己資本 증가추세와 현재의 거액여신 규모,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同 制度의 도입은 또 다른 형태의 규제수단이라기보다는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와 함께 향후의 與信集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3. 金融環境의 變化와 銀行의 資金供給者로서의 役割

가. 主要國에서 銀行의 資金供給者로서의 役割

1) 日 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日本의 산업자금공급에 있어서는 民間 金融機關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른바 間接金融構造가 형성되어 왔다. 戰後의 산업부흥을 위한 財源調達은 銀行이 맡았으며, 銀行들은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보다는 고객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객확보와 貸出의 不實化 방지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構造의 根幹은 戰後 銀行을 중심으로 企業集團이 형성되면서 銀行이 동일집단소속 기업들에 대해 系列融資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日本의 都市銀行들은 은행자본의 축적·집중을 도모함으로써 중장기 신용공여능력을 배양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같은 계열소속 기업들과의 융합을 강화하여 왔다. 三菱, 三和, 三井, 富士, 住友, 第一勸業 등 6대 도시은행들은 각자의 계열기업들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의 대출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계열의 다른 金融機關들(신탁은행, 生保·損保會社)에 의한 系列融資 比重도 상당히 높았다. 또한 이들 대형 도시은행들은 서로 다른 도시은행의 系列企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共同融資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構造가 형성된 배경에는 日本 政府가 기업들로 하여금 證券市場보다는 銀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Roe, 1993). 즉, 銀行들로 하여금 수익률이 낮은 國公債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低利로 貸出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日本 政府는 1980년대 중반까지 預金金利를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또한 擔保와 발행 규제를 통해 債券市場을 통제하였고, 기업에 債券市場에의 접

〈表 3-16〉 企業集團에 속하는 金融機關(1990年 3月 末 現在)

| | 三井 | 三菱 | 住友 | 芙蓉 | 三和 | 第一勸銀 |
|------------|------------|------------|------------|------------|------------|--------------------------|
| 都市銀行 | 三井銀行 | 三菱銀行 | 住友銀行 | 富士銀行 | 三和銀行 | 第一勸業銀行 |
| 信託銀行 | 三井 信託銀行 | 三菱 信託銀行 | 住友 信託銀行 | 安田 信託銀行 | 東洋 信託銀行 | — |
| 生命保險 會社 | 三井生命 | 明治生命 | 住友生命 | 安田生命 | 日本生命 | 朝日生命 富國生命 |
| 損害保險 會社 | 大正海上 火災 | 東京海上 火災 | 住友海上 火災 | 安田火災 海上 | — | 日產火災 海上 大成火災 海上 |
| 證券會社 | — | — | — | — | — | 日本勸業 角丸 |

資料：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その 組織と 行動』, 1992.

근을 허용할 때는 銀行들로 하여금 채권고객의 수탁자가 되게 하였으며, 주식발행과 같은 대체적 企業金融手段 및 投資會社의 발전도 억제하였다.

대부분의 日本 企業들은 자금의 借入 決濟, 예금의 預入, 換서비스의 依存 등을 통해 長期에 걸쳐 특정한 銀行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⁶⁾. 같은 企業集團所屬 銀行과 企業들은 株式을 상호 보유하고 있으나, 銀行의 입장에서는 持分率에 관계없이 貸出提供을 가장 주된 영향력의 根源으로 삼고 있다. 銀行은 산업기업과의 지속적인 貨幣·信用去來의 발전을 통해 去來企業들의 영업상태 파악에 노력하며, 法人預金の 대부분이 兩建預金이기 때문에 이의 확

6) 도시은행 및 신한은행이 대출관계를 맺고 있는 동일기업집단소속 기업의 비율은 6대 기업집단 평균으로 각각 97.97%와 95.59%에 이르고 있음.

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日本 企業들이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主去來銀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계열용자만에 의존할 경우 主去來銀行의 資金力을 초과하는 資金을 조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은행측에서 보더라도 모든 자금을 계열용자로 돌릴 경우 餘裕資金이 있는 한 系列企業獲得競争에 나서야 할 것이며, 계열독점기업이 경영난에 빠질 경우 그 위

〈表 3-17〉 貸出金 依存率 現況

(單位：%)

| 年度 金融機關名 | 企業集團名 | 三井 | 三菱 | 住友 | 舊財閥系 企業集團 平均 | 芙蓉 | 三和 | 一勳 | 銀行系 企業集團 平均 | 6大企業 集團平均 |
|-------------|-------|------|------|------|--------------------|------|------|-------|-------------------|--------------|
| | | 1981 | 5.20 | 6.00 | 5.30 | 5.50 | 6.20 | 8.90 | 9.30 | 8.20 |
| 都市銀行 | 1987 | 4.00 | 3.37 | 2.49 | 3.19 | 2.74 | 4.65 | 3.43 | 3.59 | 3.41 |
| | 1989 | 3.13 | 2.72 | 1.61 | 2.39 | 1.94 | 3.22 | 3.61 | 2.95 | 2.69 |
| | 1981 | 6.10 | 8.50 | 6.30 | 7.00 | 8.20 | 12.2 | - | 10.0 | 7.90 |
| 信託銀行 | 1987 | 3.59 | 4.12 | 1.38 | 3.05 | 3.65 | 6.99 | - | 5.09 | 3.70 |
| | 1989 | 5.36 | 6.31 | 4.07 | 5.28 | 4.99 | 6.73 | - | 5.73 | 5.43 |
| | 1981 | 12.8 | 11.0 | 5.00 | 8.60 | 8.30 | 3.60 | 10.90 | 6.10 | 7.10 |
| 生命保險 會社 | 1987 | 5.76 | 1.01 | 2.52 | 1.78 | 7.32 | 2.97 | 10.36 | 5.88 | 3.78 |
| | 1989 | 8.67 | 5.84 | 1.45 | 4.28 | 5.54 | 2.84 | 8.66 | 4.56 | 4.45 |
| | 1981 | 16.2 | 11.7 | 10.8 | 12.6 | 4.50 | - | 5.00 | 4.60 | 9.70 |
| 損害保險 會社 | 1987 | 4.23 | 4.24 | 2.31 | 3.85 | 2.52 | - | 4.47 | 2.96 | 3.57 |
| | 1989 | 8.10 | 2.13 | 1.35 | 3.36 | 1.90 | - | 7.04 | 3.30 | 3.24 |
| | 1981 | 6.20 | 7.30 | 5.60 | 6.40 | 6.80 | 8.20 | 9.50 | 8.10 | 7.20 |
| 合計 | 1987 | 4.01 | 2.81 | 2.18 | 2.90 | 3.17 | 5.85 | 4.04 | 4.31 | 3.52 |
| | 1989 | 4.19 | 3.63 | 1.98 | 3.15 | 2.58 | 3.49 | 4.12 | 3.12 | 3.13 |

註：1. 貸出金 依存率

$$= \frac{\text{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同一企業集團所屬 企業의 貸出金}}{\text{企業集團內 金融機關의 貸出總額}} \times 100$$

2.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その 組織と 行動』, 1992.

협을 銀行 혼자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계열관계를 확정하여 主去來銀行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 다른 銀行들과 분야협정을 체결하여 계열기업이 資金調達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主去來銀行은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去來企業이 經營難에 빠졌을 때 해당 기업이 經營難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資金 및 人力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主去來銀行이 부실화된 모든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나, 主銀行(lead bank)은 경영난에 봉착한 企業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主去來銀行으로서의 信認度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과 종업원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보통이다.

최근에 들어 大企業들이 內部資金 依存度를 높이는 한편, 주식과 사채발행에 의한 資金調達의 비중을 높여감으로써 銀行借入에 대한 依存度를 낮춤에 따라 主去來銀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유러시장과의 자금공급 경쟁이 심화되고 利率規制의 완화 이후 國內銀行의 收益性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은행 이외의 金融機關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집단 내의 金融機關의 貸出金 總額에서 동일 기업집단소속 기업들에 대한 貸出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3.13%로서 1981년의 7.2%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각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先 金融機關을 보면, 1989년 현재 동일기업집단소속 金融機關보다는 다른 기업집단소속 金融機關으로부터의 차입금 비중이 높으며,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이 總借入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上廻하고 있다. 그러나 金融機關을 제외한 기업집단소속 기업들의 總借入金 중 동일 기업집단의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6대 기업집단 평균이 17.48%로 1982년의 17.52%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⁷⁾. 더구나 銀行들은 보통사채 및 보증채 발행에 대한 保證의 提供者로서, 그리고 私募債의 斡旋者로

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中小企業金融 분야에서는 銀行貸付의 중요성이 1980년대에 들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堀內昭義, 1993).

〈表 3-18〉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 依存率(1989年)

(單位: %)

| 借立先名 | | 企業集團名 | | | | | | | | 6大企業集團平均 |
|--------|-------------|-------|-------|-------|------------|-------|-------|-------|-----------|----------|
| | | 三井 | 三菱 | 住友 | 舊財閥系企業集團平均 | 芙蓉 | 三和 | 一勸 | 銀行系企業集團平均 | |
| 長期借入金 |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2.07 | 21.03 | 25.50 | 22.26 | 16.93 | 15.50 | 10.79 | 13.59 | 16.68 |
| |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0.06 | 19.46 | 9.38 | 17.83 | 22.50 | 21.16 | 29.68 | 25.39 | 22.69 |
| | 其他金融機關 | 56.41 | 55.07 | 63.31 | 57.11 | 58.50 | 57.30 | 56.05 | 56.95 | 57.01 |
| | 其他 | 1.47 | 4.43 | 1.81 | 2.81 | 2.08 | 6.04 | 3.48 | 4.07 | 3.62 |
| 短期借入金 |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6.04 | 15.99 | 27.32 | 21.12 | 21.75 | 18.20 | 13.12 | 16.35 | 18.12 |
| |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3.93 | 13.71 | 7.98 | 15.35 | 23.57 | 23.65 | 22.30 | 22.98 | 20.14 |
| | 其他金融機關 | 49.54 | 31.14 | 63.09 | 42.86 | 53.74 | 51.62 | 56.06 | 54.15 | 49.96 |
| | 其他 | 0.49 | 39.16 | 1.60 | 20.67 | 0.94 | 6.53 | 8.53 | 6.53 | 11.78 |
| 長·短期合計 | 同一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3.99 | 17.95 | 26.58 | 21.61 | 19.46 | 16.99 | 12.10 | 15.11 | 17.48 |
| | 다른企業集團內金融機關 | 21.93 | 15.95 | 8.55 | 16.42 | 23.06 | 22.53 | 25.53 | 24.06 | 21.27 |
| | 其他金融機關 | 53.08 | 40.47 | 63.18 | 49.04 | 56.00 | 54.18 | 56.06 | 55.41 | 53.08 |
| | 其他 | 0.99 | 25.63 | 1.69 | 12.93 | 1.48 | 6.31 | 6.32 | 5.42 | 8.16 |

註: 1. 借入金 依存率은 各 項目에 속하는 借入先으로부터의 借入金이 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의 合計에서 定하는 比率임.

2.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7) 기업집단별로는 住友가 26.58%로 가장 높고, 第一勸銀이 12.1%로 가장 낮으며, 三菱 및 三和를 제외한 4대 기업집단에서는 同 比率이 1987년에 비해 다소 높아지고 있음.

〈表 3-19〉 同一企業集團 內 金融機關에의 借入金依存率 推移

(單位: %)

| 年度 項目 | 企業集團名 | 三井 | 三菱 | 住友 | 舊財閥系 企業集團 平均 | 芙蓉 | 三和 | 一勳 | 銀行系 企業集團 平均 | 6大企業 集團平均 |
|-----------|-------|-------|-------|-------|--------------------|-------|-------|-------|-------------------|--------------|
| | | | | | | | | | | |
| 長期 借入金 | 1981 | 17.77 | 23.19 | 26.52 | 22.07 | 14.83 | 17.64 | 8.67 | 13.10 | 16.57 |
| | 1987 | 18.70 | 21.82 | 24.99 | 21.60 | 16.56 | 15.95 | 9.34 | 13.00 | 16.05 |
| | 1989 | 22.07 | 21.03 | 25.50 | 22.26 | 16.93 | 15.50 | 10.79 | 13.59 | 16.68 |
| 短期 借入金 | 1981 | 20.00 | 21.36 | 25.19 | 21.99 | 17.66 | 20.00 | 14.33 | 17.03 | 18.78 |
| | 1987 | 23.96 | 19.36 | 23.86 | 22.04 | 19.88 | 18.56 | 13.02 | 16.30 | 18.29 |
| | 1989 | 26.04 | 15.99 | 27.32 | 21.12 | 21.75 | 18.20 | 13.12 | 16.34 | 18.12 |
| 合計 | 1981 | 18.62 | 22.42 | 25.94 | 22.04 | 16.01 | 18.72 | 11.16 | 14.85 | 17.52 |
| | 1987 | 21.64 | 20.48 | 24.35 | 21.84 | 18.34 | 17.50 | 11.41 | 14.88 | 17.32 |
| | 1989 | 23.99 | 17.95 | 26.58 | 21.61 | 19.46 | 16.99 | 12.10 | 15.11 | 17.48 |

註: 1. 借入金 依存率

$$= \frac{\text{同一企業集團 內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text{企業集團所屬 企業의 借入金 合計}} \times 100$$

2. 1981년은 上場企業 및 生命保險會社만을 대상으로 함.

3. 企業集團平均은 加重平均임.

資料: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 6大企業集團: その 組織と 行動』, 1992.

2) 獨 逸

산업화의 초기에 獨逸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늦은 데다 當局이 까다로운 허가절차와 證券讓渡稅⁸⁾ 등을 통해 非銀行借入(企業어음과 長期債의 발행 등)을 엄격히 규제하였기 때문에, 企業들은 內部資金을 제외한 長期資金調達을 銀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監督理事會에 종업원대표가 참가하는 것도 株式發行에 의한 資金調達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獨逸 銀行들은 후에 詳述하는 企業株式 保有, 議決權의 代理行使, 任員 派遣 등의 경로 이외에 企業에 대한 資金提供者로서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銀行 또는 여러 銀行이 특정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 해당 借入企業의 모든 사업을 主銀行(lead lender)을 통해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資

8) 주식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1988년까지 무거운 세금을 부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보다 비용면에서 불리한 자금조달 수단이었음.

金供給者로서의 은행의 위치와 兼業主義下에서 그들이 기업들에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銀行이 기업들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獨逸企業들은 主去來銀行(Hausbank)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短期間의 收益目標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 아래 새로운 제품과 工程의 개발에 전념할 수 있었으며, 銀行으로부터 사업확장에 필요한 固定 및 運轉資本投資에 필요한 財源을 當座計定形態의 信用으로 제공받아 왔다. 兩者間의 이러한 유대는 銀行의 영향력 행사 및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銀行이 企業의 監督理事會에 참여할 경우 유대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일부 大企業들이 과거보다 資本市場에서 資金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는 하나, 資金調達源으로서의 證券市場의 중요성은 여전히 그다지 크지 않으며, 銀行들이 대부분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證券市場에서도 銀行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兼業銀行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최근에 들어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大企業의 尤러債 主幹社로 특정 大銀行이 아닌 多數의 銀行이 선정되는 등 大銀行에 대한 忠誠度가 저하되고 있고, 소규모기업의 경우에도 거래 은행 이외의 은행으로 主幹社를 다양화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이 主去來銀行(Hausbank)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데서 나아가 일정한 企業群이 특정의 銀行群과 대출, 주식보유, 감독이사 파견 등을 통해 相互關係를 맺는 network banking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3) 美 國

美國에서는 기업들의 內部資金에 의한 資本調達の 비중이 높았고 일찍부터 기업어음(CP)시장이 발달하였으며, 경제력집중에 대한 우려에 따라 銀行의 규모 및 영업범위를 제한해 온 것 등이 信用供

與者로서의 銀行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제2차대전 이후 美國 企業들은 帳簿價額上으로는 주식발행보다는 銀行借入이나 會社債發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美國 企業들의 負債比率이 높아졌는지의 여부와 負債增加의 효과, 負債調達의 상대적 비용에 대한 論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S. Herman(1981)은 大企業에 대한 대형 은행의 주요한 영향력의 원천이 주요한 貸付者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機關大株主로서의 지위가 대형 은행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追加的이고 附隨的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大銀行과 大企業은 용자 등 본래의 金融業務를 통해 결합되지만, 兩者의 관계는 지배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등한 互惠的 關係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대형 은행의 大企業에 대한 資金供給者로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인 규모에서의 商業銀行 등의 合併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전국적 시장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大型 金融機關數가 증가하고 있으며, 海外에서도 資金調達이 가능한 多國籍 企業의 數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어음(CP)시장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보험회사, 연금기금, 금융회사 등 은행 이외의 貸付機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貸付機關으로서의 商業銀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商業銀行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貸出에 의한 경상적인 기업과의 관계 위주에서 탈피하여 企業의 財務活動 전반에 걸친 분야를 커버하는 방향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帳簿外去來를 확대하고 기업의 有價證券 發行 周旋·引受業務 이외에 投資諮問, 리스크 관리, 財務構造의 再構成(balance sheet restructuring)을 포함한 증권관련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4) 英 國

英國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資金調達에서 銀行이 증권시장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80년에는 총자금조달 중 은행대출비중이 22%인 반면 주식발행은 6%에 불과하였으며, 1990년에는 同 比率이 각각 28%, 18%로 주식발행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銀行借入比重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arkham, 1994). 그러나 英國의 銀行들이 기업들과 유지하고 있는 관계는 獨逸이나 日本에 비해 그다지 긴밀하지 못한 편이다. 최근에 들어 英國 銀行들은 中長期 貸出商品을 개발하고 기업과의 관계를 보다 建設的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長期貸出보다는 短期貸出, 그리고 긴밀한 협력 관계보다는 대등한 관계(arm's-length relationship)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英國의 銀行들은 非金融企業들에 대해 일반적인 은행서비스와 함께 주로 當座貸越(overdraft)의 형태로 운전자본을 공급하며, 當座貸越 등의 短期貸出은 만기 후 지속적으로 再供給(roll-over)됨으로써 실제로는 中長期 資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은행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銀行들(외국은행 포함)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多國籍企業들에 대해 長期貸出(structured lending)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방은행들의 경우에는 지방기업들과 長期的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大型銀行들의 총대출 중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 비중은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直接金融市場에서도 大企業證券에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아 대형은행들이 대기업 위주의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은행측으로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의 不實化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貸出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대출수요의 감소에다 大企業들이 資金調達을 證券市場에서 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 및 가계부문에서의 우량고객을 늘려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은행점포(4대 은행의 점포만 8,500여개)가 預貸顧客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英國 銀行들은 고객과의 관계유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銀行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去來 銀行을 바꾸는 등 기업고객들의 銀行에 대한 忠誠度(loyalty)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證券市場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있어 銀行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獨逸이나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보다는 英國 證券市場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형기업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長期資本의 주된 供給源이 되고 있다.

나. 經濟成長 過程에서 銀行의 資金供給

이상에서 우리는 企業의 내부자금 조달가능성,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차이가 銀行·企業 성장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함께 나라별로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銀行借入에 依存하는 程度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長·短期 資金의 供給者로서 銀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국의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의 資金調達이 資本市場의 미발달로 여의치 않거나, 조달비용이나 調達時期의 신축성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經營權 유지에 장애가 되는 등의 이유에서 銀行과 대출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銀行과의 紐帶의 정도는 앞의 요인들이 강할수록 더욱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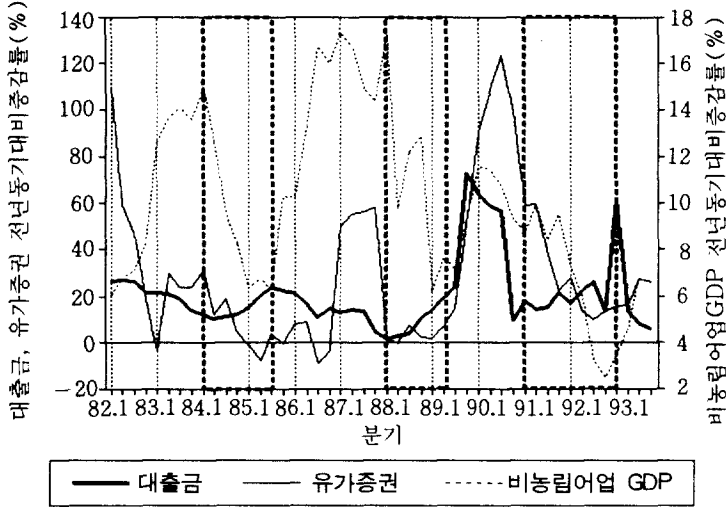
周知하다시피 우리 銀行들은 경제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중 해외차입에 의한 충당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국내에서 높은 預金金利로 조달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수출산업, 중화학공업 등 戰略的 部門에 낮은 金利로 공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우리 銀行들이 경기변동에 따른 기

업들의 流動性 制約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貸出을 공급하여 왔는가는 銀行의 資産運用과 經濟成長率間의 關係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圖 3-2]와 [圖 3-3]에서 계절조정 및 추세제거를 하지 않은 貸出金의 증가율 행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景氣收縮期에 높아지다 景氣擴張期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대출증가율이 둔화되다가 1985년에는 정책기조의 변화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3低好況에 따라 기업들의 잉여자금이 증가한 1986~87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1988~89년에는 호황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수요의 급증으로 貸出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景氣가 下降局面에 접어든 1990년에는 대출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1991~92년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증대로 대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 1993년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출금 증가세는 다시 둔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1987년과 1990년의 擴張期에만 비농림어업GDP 증가율과 貸出金 增加率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기간에서는 대체로 兩者가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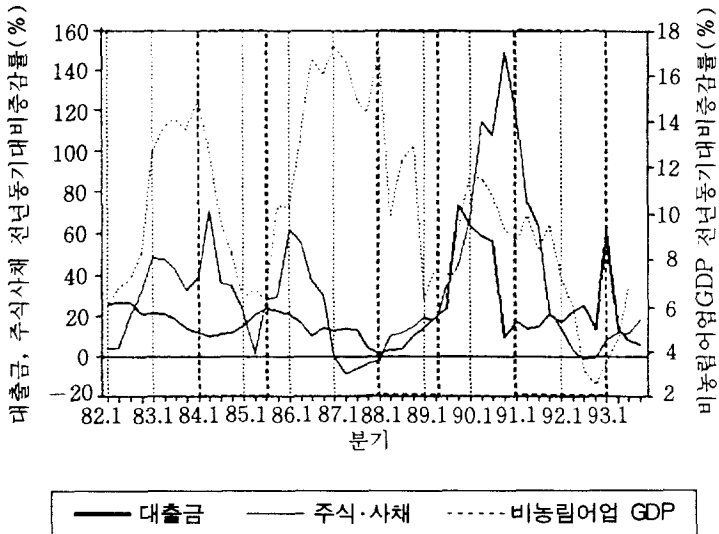
다음으로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는 擴張期에는 대체로 증가하나, 收縮期에는 확장기의 증가속도보다는 약간 낮은 率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긴축정책의 시행으로 대출공급이 둔화된 1980년대 초에는 유가증권, 그 중에서도 주식·사채의 보유가 늘어났으며, 1985년 이사분기 이후 경기부진으로 긴축기조가 다소 완화되자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가 활황을 보이던 1986년 후반부터 1989년까지는 貸出金과 有價證券 投資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貸出增加勢가 둔화되자 유가증권, 특히 會社債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1992년에는 通貨管理 強化에 따라 通貨安定證券 保有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會社債保有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有價證券 投資의

[圖 3-2] 市中銀行의 資金運用과 經濟成長率間的 關係

(a) 貸出金, 有價證券



(b) 貸出金, 株式·社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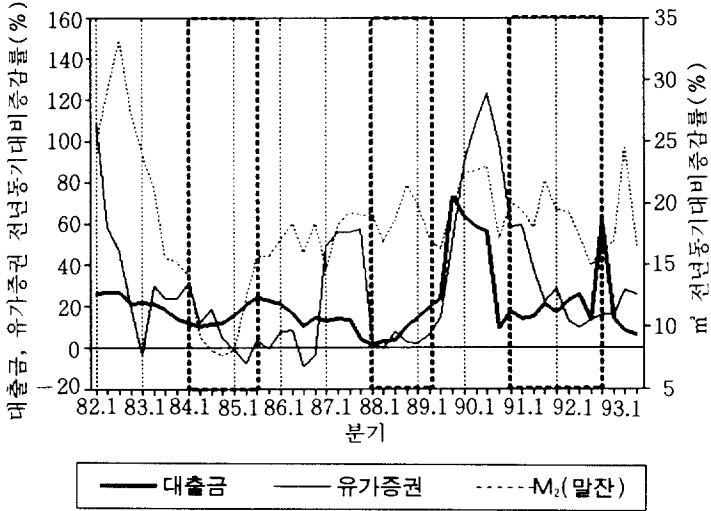


註: [] 부분은 경기순환 중 수축기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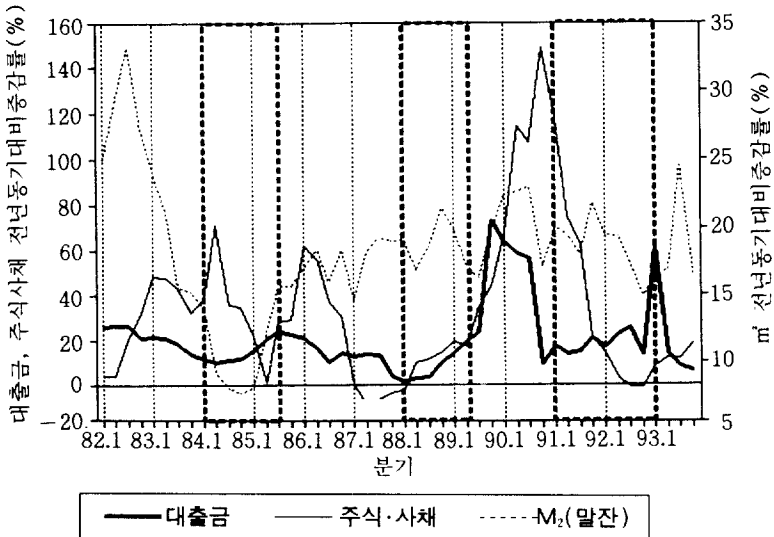
資料: 韓國銀行.

[圖 3-3] 市中銀行의 資金運用과 通貨供給量間的 關係

(a) 貸出金, 有價證券



(b) 貸出金, 株式·社債



註 : [---] 부분은 경기순환 중 수축기에 해당됨.

資料 : 韓國銀行.

增加勢가 둔화되었다가 1993년 이후 證券市場이 활기를 띠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市中銀行의 대출금 공급규모가 경기변동과 金融市場에서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季節調整 後 추세를 제거한 대출금과 實質 GNP의 1980년대 이후 時系列을 이용하여 式 (3-1)을 推定하여 보았다.

$$\begin{aligned}
 (3-1) \ln L_t = & -0.8878 + 0.1489 \ln L_{t-1} + 0.2621 \ln L_{t-2} + 0.7990^{***} \ln Y_t \\
 & (-1.39) \quad (0.79) \quad (1.32) \quad (3.37) \\
 & + 0.1695 \ln Y_{t-1} - 0.3998 \ln Y_{t-2} + 0.1699 \ln Y_{t-3} \\
 & (0.62) \quad (-1.51) \quad (0.76) \\
 & + 0.0656 \ln Y_{t-4} - 0.7750 \ln R_{L_t} + 1.8366^{***} \ln R_{L_{t-1}} \\
 & (0.27) \quad (-1.58) \quad (3.00) \\
 & - 1.1151 * \ln R_{L_{t-2}} + 0.5857 \ln R_{L_{t-3}} - 0.5379 \ln R_{L_{t-4}} \\
 & (-1.76) \quad (0.94) \quad (-1.29) \\
 & - 0.3876 \ln R_{CB_t} + 0.1680 \ln R_{CB_{t-1}} + 0.2243 \ln R_{CB_{t-2}} \\
 & (-1.57) \quad (0.52) \quad (0.73) \\
 & - 0.5995 * \ln R_{CB_{t-3}} + 0.6209^{**} \ln R_{CB_{t-4}} + e_t \\
 & (-2.04) \quad (2.42)
 \end{aligned}$$

L_t = t기의 시중은행대출금(계절조정, 추세제거)
 Y_t = t기의 실질GNP(계절조정, 추세제거)
 R_{L_t} = 은행대출이자율
 R_{CB_t} = 회사채수익률
 $\overline{R^2} = 0.9808, S.E = 0.0848, D.W = 2.14$

推定期間 : 1982. 2/4 ~ 1993. 3/4

註 : () 안의 수치는 t값, *는 $\alpha = 0.10$, **는 $\alpha = 0.05$, ***는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異分散性的의 存在 與否를 檢定한 結果 $\alpha = 0.10$ 수준에서도 異分散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歸無假說이 기각되지 않았음.

위의 推定式에서 보듯이 특정 分期의 實質 GNP가 증가할 경우 해당 分期에서의 대출금 규모는 늘어나며, 이사분기 이전의 實質 GNP 증감으로부터는 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市中銀行들이 好景氣에는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었지만, 景氣가 萎縮될 때에는 기업들의 流動性 制約을 완화시켜 주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貸出金利에 대해서는 1, 2분기 이전 수준, 그리고 會社債收益率에 대해서는 3, 4분기 이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有意한 影響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사분기 이전부터 現 分期까지의 금리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경우 貸出金利나 會社債收益率 모두 5% 有意水準에서 대출금 규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출이자율과 會社債 發行利率이 최근까지 엄격하게 규제됨으로써 가격기능에 의한 은행의 貸出供給 調節을 기대할 수 없었던 데다가 會社債 發行에 대해서도 量的 規制가 행해짐에 따라 會社債 發行이 銀行貸出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貸出金の 이러한 行態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3低好況 後 景氣가 下落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그 이전 기간과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表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兩 期間의 推定係數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982~88년의 기간 동안에는 貸出利率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有意하지 못하였으나, 1989년 이후의 기간 동안에는 대단히 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實物部門의 활동이 貸出金 規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도 최근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대출공급규모가 실물 경제활동과 貸出金利水準의 變動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會社債金利變動이 貸出에 미치는 影響은 최근 기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會社債 發行規模 증가에도 불구하고 會社債發行이 은행대출을 효과적으로 代替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表 3-20〉 市中銀行 貸出金規模 方程式의 期間別 推定結果

| 變 數 | 1982. 2/4~1988. 4/4 | | | 1989. 1/4~1993. 4/4 | | |
|--------------------|---------------------|---------|---------|---------------------|----------|----------|
| | 推定計數 | t-value | F-value | 推定計數 | t-value | F-value |
| 常數項 | 3.3339 | 2.01* | — | -12.6813 | -5.76** | — |
| $\ln L_{t-1}$ | 0.4183 | 1.32 | 4.36** | -0.5990 | -7.31*** | 53.44*** |
| $\ln L_{t-2}$ | 0.5805 | 1.85* | | — | — | |
| $\ln Y_t$ | 0.8281 | 1.70 | 4.69** | -2.5235 | -6.95*** | 27.75** |
| $\ln Y_{t-1}$ | 0.2352 | 0.56 | | 0.7259 | 5.58** | |
| $\ln Y_{t-2}$ | -1.0462 | -2.41** | | -0.3342 | -2.17 | |
| $\ln Y_{t-3}$ | -0.7640 | -1.59 | | 0.2126 | 0.93 | |
| $\ln Y_{t-4}$ | 0.5969 | 0.92 | | 3.3189 | 8.54*** | |
| $\ln R^L_t$ | -1.0211 | -0.78 | 1.99 | -3.4206 | -7.17*** | 54.74*** |
| $\ln R^L_{t-1}$ | 0.2160 | 0.21 | | 1.9195 | 7.20*** | |
| $\ln R^L_{t-2}$ | -2.0680 | -1.98* | | -1.1843 | -2.67** | |
| $\ln R^L_{t-3}$ | 1.8597 | 1.96* | | 1.3093 | 2.12 | |
| $\ln R^L_{t-4}$ | -0.0593 | -0.10 | | 6.5246 | 6.99*** | |
| $\ln R^{CB}_t$ | -0.4652 | -1.22 | 3.22* | -0.3251 | -3.02* | 5.27 |
| $\ln R^{CB}_{t-1}$ | 0.4201 | 1.00 | | 0.6567 | 3.19** | |
| $\ln R^{CB}_{t-2}$ | 1.1760 | 2.22* | | -0.5102 | -1.36 | |
| $\ln R^{CB}_{t-3}$ | -0.8319 | -1.65 | | 0.3236 | 0.74 | |
| $\ln R^{CB}_{t-4}$ | -0.4486 | -1.04 | | 0.4519 | 1.42 | |
| R^2 | 0.9694 | | | 0.9956 | | |
| S.E | 0.0456 | | | 0.0219 | | |
| D.W | 2.11 | | | 2.61 | | |

다. 主去來銀行制度의 評價

銀行과 企業間에 信用供與를 매개로 한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與信管理를 위한 主去來銀行制度는 兩者間的 關係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韓國信用評價(株)의 上場 製造業體 483社 (1993년 8월 기준) 중 1989~92년의 財務諸表가 완비된 12월 결산법인으로서 대출금 기준 30大 系列企業群에 속하는 63個社의 은

행별 대출금 구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2년 현재 63개 분석대상 업체의 평균 總貸出金은 1,431 억원으로 1985년의 511억원에 비해 2.8배, 運轉資金貸出金은 1985년의 326.6억원에서 797.6억원으로 2.44배 늘어났으며, 대체로 규모가 큰 기업의 貸出金 增加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대상 63個社 중 主去來銀行의 貸出占有率이 가장 높은 기업의 수는 1985년의 37개 기업에서 1992년에는 14개로 줄어들었으며, 主去來銀行의 貸出占有率이 4위 이하인 기업의 수가 18개로 크게 늘어났다. 규모가 가장 큰 企業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企業群에서 主去來銀行이 최대 貸出先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運轉資金貸出金 기준으로는 主去來銀行이 最大占有率을 차지하는 기업수가 39개사에서 22개사로 줄어들어 主去來銀行이 最大 資金供給者의 위치를 상실하는 정도가 總貸出金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1〉 貸出金 規模別 分布(1992年 現在)

(單位：個社，億圓)

| | | 250億圓 未滿 | 250億圓~ 500億圓 | 500億圓~ 1,000億圓 | 1,000億圓~ 2,000億圓 | 2,000億圓~ 3,000億圓 | 3,000億圓 以上 | 計 |
|-------------|-------------|------------------|------------------|-------------------|---------------------|----------------------|----------------------|--------------------|
| 總貸出金 | 企業數 | 6 | 19 | 10 | 12 | 11 | 5 | 63 |
| | 平均貸出 金規模 | 179.0 (128.6) | 366.8 (191.4) | 666.7 (274.4) | 1,502.8 (482.9) | 2,469.9 (1,038.6) | 6,046.7 (1,563.6) | 1,430.9 (510.9) |
| 運轉資金 貸出金 | 企業數 | 21 | 13 | 14 | 8 | 4 | 3 | 63 |
| | 平均貸出 金規模 | 159.8 (95.0) | 325.0 (166.7) | 767.0 (324.1) | 1,446.2 (589.7) | 2,398.8 (883.0) | 3,588.2 (1,208.4) | 797.6 (326.6) |

註：() 안의 수치는 1992년 기준 각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의 1985년도 대출금 평균임.

셋째, 總貸出金의 경우 대출 1위 은행의 1985~92년 平均 貸出金 占有率은 대출금 규모가 2,000억 원 이하인 기업들에 있어서는 40%를 약간 上廻하였으나, 貸出金 規模가 2,000억 원을 上廻하는

기업들에서는 貸出規模가 클수록 대출 1위 은행의 平均占有率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主去來銀行의 평균 점유율도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運轉資金의 경우에는 대출 1위 은행의 1985~92년 平均占有率은 企業의 規模가 커질수록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나, 主去來銀行의 平均占有率은 企業 規模別로 일정한 패턴을 보임이 없이 貸出金額이 2,000~3,000 억원인 기업들이 31.9%로 가장 높았고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15.3%로 가장 낮았다.

〈表 3-22〉 主去來銀行의 貸出順位(1992年 現在)

(單位: 假社)

| | 順位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總貸出金 | 1位 | 14(37) | 2(4) | 4(11) | 1(6) | 2(8) | 3(6) | 2(2) |
| | 2位 | 25(14) | 3(-) | 7(4) | 5(1) | 4(3) | 5(3) | 1(3) |
| | 3位 | 6(10) | - (1) | 1(4) | -(2) | 2(1) | 1(2) | 2(-) |
| | 4位 以下 | 18(2) | 1(1) | 7(-) | 4(1) | 4(-) | 2(-) | -(-) |
| 運轉資金 貸出金 | 1位 | 22(39) | 10(13) | 1(7) | 6(10) | 3(5) | 2(2) | (2) |
| | 2位 | 14(13) | 3(4) | 4(1) | 2(2) | 2(3) | 1(2) | 2(1) |
| | 3位 | 10(8) | 4(3) | 1(3) | 5(2) | | | |
| | 4位 以下 | 17(3) | 4(1) | 7(2) | 1 | 3 | 1 | 1 |

註: () 안은 1985년 수치임.

〈表 3-23〉 貸出 1位 銀行 및 主去來銀行의 1985~92年
平均 貸出金 占有率

(單位: %)

| |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總貸出金 | 貸出1位銀行 | 42.3 | 41.2 | 42.5 | 41.3 | 34.5 | 24.1 |
| | 主去來銀行 | 28.4 | 26.1 | 25.2 | 20.3 | 20.2 | 15.7 |
| 運轉資金 貸出金 | 貸出1位銀行 | 37.7 | 33.1 | 30.7 | 27.6 | 35.1 | 21.6 |
| | 主去來銀行 | 29.4 | 19.9 | 23.5 | 22.9 | 31.9 | 15.3 |

넷째, 1985~92년간 貸出金 占有率이 가장 높은 銀行이 변하지 않은 기업의 수는 63個社 중 13個社에 그쳤으며, 이 중 主去來銀行은 7個社에 불과하였다. 운전자금 대출금의 경우는 63個社 중 12個社만이 主去來銀行으로부터 가장 많은 대출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運轉資金貸出金 占有率 1위 은행의 순위변동회수는 평균 2.51회로 總貸出金 기준 1.78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短期運轉資金을 같은 銀行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

다섯째, 63個社 主去來銀行의 總貸出金 占有率 平均은 1985년의 31.0%에서 1992년에는 18.2%로, 運轉資金 基準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31.7%에서 20.6%로 크게 낮아졌다. 總貸出金과 운전자금 대출금 모두에서 主去來銀行의 占有率이 10%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占有率이 20% 이하인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50% 이상인 기업은 3個社에 불과하였다.

〈表 3-24〉 1985~92年間 貸出金 占有率 1位 銀行의 順位變動回數

(單位: 個社)

| | 回數 | 計 | 250億 未滿 | 250億~ 500億 | 500億~ 1,000億 | 1,000億~ 2,000億 | 2,000億~ 3,000億 | 3,000億 以上 |
|-------------|----|----|------------|---------------|-----------------|-------------------|-------------------|--------------|
| 總貸出金 | 0 | 13 | 1(주 1) | 4(주 4) | 1(산 1) | 3(주1, 산2) | 3(주1, 산2) | 1(산 1) |
| | 1 | 22 | 2 | 4 | 4 | 6 | 4 | 2 |
| | 2 | 8 | 1 | 4 | 1 | 1 | 2 | 1 |
| | 3 | 10 | - | 5 | 2 | 1 | 1 | - |
| | 4 | 7 | - | 2 | 2 | 1 | 1 | 1 |
| | 5 | 2 | 1 | - | - | - | - | - |
| | 6 | 1 | 1 | - | - | - | - | - |
| 運轉資金 貸出金 | 0 | 12 | 5(주 5) | 1(주 1) | 2(주 2) | 2(주 2) | 2(주 2) | - |
| | 1 | 8 | 3 | 4 | - | - | - | 1 |
| | 2 | 6 | 3 | - | 3 | - | - | - |
| | 3 | 18 | 6 | 4 | 3 | 4 | - | 1 |
| | 4 | 12 | 4 | 2 | 2 | 1 | 2 | 1 |
| | 5 | 6 | - | 1 | 4 | 1 | - | - |
| | 6 | 1 | - | 1 | - | - | - | - |

註: 「주」는 주거래은행, 「산」은 산업은행을 가리킴.

〈表 3-25〉 主去來銀行의 貸出占有率 分布(1992年 現在)

(單位: 個社, %)

| |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總 貸出金 | 0~10% | 25(10) | 1(2) | 9(2) | 5(1) | 5(3) | 4(2) | 1(-) |
| | 10~20% | 17(18) | 1(1) | 4(6) | 2(2) | 3(2) | 5(4) | 2(3) |
| | 20~30% | 10(11) | 1(-) | 2(3) | 2(2) | 2(3) | 2(2) | 1(1) |
| | 30~40% | 5(5) | 1(-) | 1(1) | 1(-) | 1(1) | -(-) | 1(1) |
| | 40~50% | 3(5) | 1(-) | 1(1) | -(-) | 1(2) | -(-) | -(-) |
| | 50% 이상 | 3(14) | 1(3) | 2(6) | -(-) | -(-) | -(-) | -(-) |
| | 占有率平均 | 18.2(31.0) | 31.4(35.1) | 19.2(35.2) | 13.6(37.4) | 16.5(26.9) | 15.0(24.2) | 19.5(21.6) |
| 運轉資金 貸出金 | 0~10% | 21(11) | 4(6) | 9(2) | 3(2) | 3(1) | 1(-) | 1(1) |
| | 10~20% | 17(11) | 4(3) | 2(4) | 7(1) | 2(1) | 1(1) | 1(1) |
| | 20~30% | 11(13) | 4(1) | 1(2) | 2(5) | 2(3) | 1(1) | 1(1) |
| | 30~40% | 5(7) | 3(1) | -(-) | 1(1) | -(-) | 1(-) | -(-) |
| | 40~50% | 6(8) | 4(3) | -(-) | 1(1) | 1(1) | -(-) | -(-) |
| | 50% 이상 | 3(13) | 2(7) | 1(1) | -(-) | -(-) | -(-) | -(-) |
| | 占有率平均 | 20.6(31.7) | 28.1(35.1) | 12.6(24.5) | 18.9(35.1) | 19.4(27.1) | 21.2(40.7) | 13.8(24.5) |

註: () 안은 1985年 數値임.

여섯째, 貸出占有率이 10% 이상인 은행수는 貸出금이 3,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에 있어 다소 높았고 1,000~2,000억원인 기업들에 있어 다소 낮았으며, 그 이외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2.3개 銀行 내외로 비슷하였다. 그리고 外國銀行 合計를 單一銀行으로 포함할 경우 占有率 10% 이상인 은행수의 기간평균이 높아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外國銀行들에 의존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貸出占有率 1位 銀行의 總貸出金 平均占有率은 1992년 현재 35.8%로 1985년의 37.2%보다 약간 하락하였으나, 運轉資金 貸出金 占有率은 38.7%에서 30.6%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5년에는 主去來銀行이 점유율 1위인 경우가 많았으나, 1992년에는 産業銀行이 主去來銀行보다 貸出占有率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運轉資金의 경우에는 최대 은행의 대

출점유율이 1985년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總貸出金の 경우에는 20% 이하와 60% 이상인 기업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 사이의 占有率을 가진 기업들의 수가 늘어났다. 運轉資金貸出 最上位 銀行이 主去來銀行인 경우는 점유율이 낮은 기업보다 높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상위 2개 銀行의 점유율은 運轉資金의 경우 60% 이상 기업수가 줄고 30%대 기업수가 늘어났으며, 總貸出金の 경우에는 運轉資金의 경우보다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개 은행의 占有率은 양 경우 모두 평균 2% 내외의 하락을 보였으며, 總貸出金の 경우 60% 이상의 기업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運轉資金은 보다 많은 銀行으로부터 조달하는 반면 設備資金은 보다 적은 수의 은행으로부터 보다 큰 규모로 調達하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表 3-26〉 占有率 10% 以上 銀行數
(總貸出金 基準, 1985~92年 平均)

(單位: %)

| | 250億원 미만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서울所在國內銀行 | 2.31 | 2.30 | 2.26 | 2.11 | 2.36 | 2.57 |
| 外銀·地方銀 포함 | 2.94 | 2.81 | 2.80 | 2.75 | 3.04 | 3.33 |

이상의 특징들은 비록 제한된 수의 企業 貸出構成上에 나타난 것으로 이들이 모든 기업들의 主去來銀行 관계를 투영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與信管理를 위해 지정된 主去來銀行이 最大 貸出銀行이 아닌 경우가 많고, 主去來銀行이 最大 貸出先인 기업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主去來銀行의 대출점유율 평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리의 主去來銀行과 企業들과의 관계가 獨逸이나 日本에서처럼 긴밀하지 못하며, 兩者間의 關係가 점차 가까워지기보다는 상호 대등한 관계로 나아가는 듯

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銀行을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보다 많은 수의 銀行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기업고객들을 확보하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表 3-27〉 貸出 上位 銀行의 貸出占有率 分布(1992年 現在)

a) 總貸出金 基準

(最上位 銀行)

(單位: 個社, %)

| | 計 | 250億 未滿 | 250億~ 500億 | 500億~ 1,000億 | 1,000億~ 2,000億 | 2,000億~ 3,000億 | 3,000億 以上 | 備 考 |
|--------|------------|------------|---------------|-----------------|-------------------|-------------------|--------------|-----------------|
| 10~20% | 7(11) | - (1) | - (3) | 1 (-) | 1 (2) | 2 (3) | 3 (2) | 주3, 산2(주5, 산2) |
| 20~30% | 18(14) | 2 (-) | 6 (4) | 3 (1) | 1 (4) | 5 (3) | 1 (2) | 주4, 산8(주10, 산2) |
| 30~40% | 10(10) | - (1) | 3 (2) | 1 (1) | 4 (1) | 1 (4) | 1 (1) | 주3, 산7(주5, 산1) |
| 40~50% | 18(11) | 2 (1) | 6 (4) | 3 (4) | 5 (2) | 2 (-) | - (-) | 주3, 산10(주5, 산3) |
| 50~60% | 4 (4) | - (1) | 2 (2) | 1 (1) | - (-) | 1 (-) | - (-) | 주1, 산3(주4) |
| 60%以上 | 6(13) | 2 (2) | 2 (4) | 1 (3) | 1 (3) | - (1) | - (-) | 주2, 산3(주9, 산1) |
| 占有率平均 | 35.8(37.2) | 45.2(48.3) | 40.3(42.9) | 38.2(46.7) | 40.0(27.1) | 32.2(29.5) | 21.9(25.0) | |

註: 1. () 안은 1985년 수치임.

2. 「주」는 주거래은행, 「산」은 산업은행을 가리킴.

(上位 2個 銀行)

(單位: 個社, %)

| | 計 | 250億 未滿 | 250億~ 500億 | 500億~ 1,000億 | 1,000億~ 2,000億 | 2,000億~ 3,000億 | 3,000億 以上 |
|--------|------------|------------|---------------|-----------------|-------------------|-------------------|--------------|
| 20~30% | 3 (5) | - (1) | - (-) | 1 (-) | 1 (2) | - (1) | 1 (1) |
| 30~40% | 7 (7) | - (-) | 1 (3) | 2 (1) | - (-) | 3 (3) | 1 (-) |
| 40~50% | 15(12) | 1 (-) | 6 (5) | 1 (-) | 2 (1) | 4 (3) | 1 (3) |
| 50~60% | 14(11) | 1 (2) | 2 (1) | 1 (3) | 5 (4) | 3 (1) | 2 (-) |
| 60%以上 | 24(28) | 4 (3) | 10(10) | 5 (6) | 4 (5) | 1 (3) | - (1) |
| 占有率平均 | 55.3(57.6) | 67.2(52.9) | 58.8(60.7) | 56.4(67.9) | 55.4(58.9) | 48.3(49.6) | 40.2(45.1) |

註: () 안은 1985년 수치임.

(上位 3個 銀行)

(單位: 個社, %)

|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20~30% | -(2) | -(-) | -(-) | -(-) | -(2) | -(-) | -(-) |
| 30~40% | 4(5) | -(1) | -(2) | 1(-) | 1(-) | 1(1) | 1(1) |
| 40~50% | 3(7) | -(-) | 1(2) | -(1) | -(-) | 1(2) | 1(2) |
| 50~60% | 14(11) | -(2) | 4(4) | 3(-) | 2(1) | 4(4) | 1(-) |
| 60%以上 | 42(38) | 6(3) | 14(11) | 6(9) | 9(9) | 5(4) | 2(2) |
| 占有率平均 | 65.6(67.4) | 78.4(71.1) | 70.4(69.1) | 66.5(76.8) | 63.5(67.1) | 58.6(60.0) | 51.2(54.6) |

註: () 안은 1985년 수치임.

b) 運轉資金貸出金 基準

(最上位 銀行)

(單位: 個社, %)

|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備 考 |
|--------|------------|-------------|-----------------|-------------------|---------------------|---------------------|---------------|----------------|
| 0~10% | 1(2) | -(2) | 1(-) | -(-) | -(-) | -(-) | -(-) | - (주2) |
| 10~20% | 16(7) | 2(2) | 3(2) | 6(1) | 2(1) | 2(-) | 1(1) | 주2, 산2(주3) |
| 20~30% | 16(13) | 3(4) | 3(1) | 5(4) | 3(3) | 1(-) | 1(1) | 주5 (주6) |
| 30~40% | 17(13) | 8(3) | 3(4) | 2(3) | 2(1) | 1(1) | 1(1) | 주7, 산3(주7, 산2) |
| 40~50% | 9(15) | 5(5) | 2(4) | 1(1) | 1(3) | - (2) | -(-) | 주5, 산1(주7, 산1) |
| 50~60% | 2(5) | 1(3) | 1(1) | - (1) | -(-) | -(-) | -(-) | 주1 (주5) |
| 60%以上 | 2(8) | 2(2) | - (1) | - (4) | -(-) | - (1) | -(-) | 주2 (주6, 산1) |
| 占有率平均 | 30.6(38.7) | 39.6(40.4) | 28.3(37.2) | 25.5(41.4) | 27.0(31.4) | 22.6(50.7) | 21.7(25.0) | |

註: 1. () 안은 1985년 수치임.

2. 「주」는 주거래은행, 「산」은 산업은행을 가리킴.

(上位 2個 銀行)

(單位: 個社, %)

|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20~30% | 6(6) | -(1) | 2(2) | 2(1) | -(1) | 1(-) | 1(1) |
| 30~40% | 17(5) | 2(3) | 2(1) | 5(1) | 5(-) | 2(-) | 1(-) |
| 40~50% | 11(12) | 2(2) | 3(1) | 4(5) | 1(4) | 1(-) | -(-) |
| 50~60% | 11(10) | 3(3) | 2(4) | 3(-) | 2(-) | -(1) | 1(2) |
| 60%以上 | 16(28) | 14(10) | 2(5) | -(7) | -(3) | -(3) | -(-) |
| 占有率平均 | 51.4(57.1) | 62.1(59.9) | 43.6(55.5) | 40.5(57.6) | 41.8(51.4) | 75.7(66.8) | 53.9(44.8) |

註: () 안은 1985년 수치임.

(上位 3個 銀行)

(單位：個社，%)

| | 計 | 250億원 未滿 | 250億원~ 500億원 | 500億원~ 1,000億원 | 1,000億원~ 2,000億원 | 2,000億원~ 3,000億원 | 3,000億원 以上 |
|--------|------------|-------------|-----------------|-------------------|---------------------|---------------------|---------------|
| 20~30% | 3 (3) | - (2) | 3 (1) | - (-) | - (-) | - (-) | - (-) |
| 30~40% | 4 (7) | - (3) | - (1) | 1 (1) | - (1) | 1 (-) | 2 (1) |
| 40~50% | 13 (4) | 2 (1) | 2 (-) | 4 (2) | 4 (1) | 1 (-) | - (-) |
| 50~60% | 15 (9) | 2 (3) | 2 (1) | 6 (2) | 3 (2) | 2 (1) | - (-) |
| 60%以上 | 28 (40) | 17 (12) | 6 (10) | 3 (9) | 1 (4) | - (3) | 1 (2) |
| 占有率平均 | 59.3(61.9) | 74.2(64.7) | 55.4(66.3) | 51.8(67.4) | 50.9(60.4) | 45.0(34.7) | 48.0(36.9) |

註：() 안은 1985년 수치임.

라. 金融環境 變化와 우리 銀行의 對應方向

1) 銀行業 및 貸出市場의 展望에 대한 分析

지금까지의 論議에서 우리는 銀行貸出이 기업의 資金調達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아직도 상당히 높으며 은행의 營業活動에서도 기업에 대한 貸出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업들의 銀行借入時 貸出利率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主去來銀行이나 대출점유율 상위 은행의 地位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등 銀行貸出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징후들이 존재함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表 3-30>에서 貸出市場에서의 預金銀行의 비중이 1990년부터 50% 이하로 떨어진 이후 1994년 9월 현재 41.0%까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⁹⁾.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는 金利自由化로 기업들의 金利에 대한 敏感度가 높아지고 기업의 資金調達手段이 점차 다양화되는 등의 환경변화가 貸出市場에서

9) 그러나 은행 신탁계정의 대출까지를 포함할 경우 대출시장에서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의 60.2%에서 1991년도에는 55.4%로 낮아졌지만 1994년 9월에는 58.5%로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表 3-28〉 第1, 2金融圈 與信¹⁾(末殘)比重

(單位：10億원, %)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9 |
|--------------------|---------------------|---------------------|----------------------|----------------------|----------------------|----------------------|----------------------|----------------------|
| 預金銀行 ²⁾ | 43,095.8 (54.1) | 48,805.4 (52.6) | 62,547.8 (52.0) | 74,028.6 (49.4) | 89,415.6 (46.3) | 102,797.0 (44.2) | 115,137.4 (42.1) | 133,496.2 (41.0) |
| 非通貨金融機關 | 36,511.2 (45.9) | 43,924.5 (47.4) | 57,645.3 (48.0) | 75,829.2 (50.6) | 103,670.9 (53.7) | 130,033.3 (55.9) | 158,452.6 (57.9) | 192,424.9 (59.0) |
| 開發機關 | 8,254.0 (10.4) | 8,930.9 (9.6) | 10,316.8 (8.6) | 12,350.8 (8.2) | 15,070.2 (7.8) | 17,807.5 (7.7) | 20,785.0 (7.6) | 23,534.5 (7.2) |
| 投資機關 | 6,562.3 (8.2) | 8,440.2 (9.1) | 10,328.3 (8.6) | 12,810.2 (8.6) | 15,321.5 (7.9) | 17,018.4 (7.3) | 19,994.2 (7.3) | 20,923.6 (6.4) |
| 投資金融 | 5,259.2 (6.6) | 7,020.4 (7.6) | 8,488.3 (7.1) | 10,474.2 (7.0) | 11,411.9 (5.9) | 11,020.6 (4.7) | 12,472.6 (4.6) | 13,031.6 (4.0) |
| 綜合金融 | 504.4 (0.6) | 439.8 (0.5) | 605.9 (0.5) | 639.2 (0.4) | 1,393.5 (0.7) | 1,903.6 (0.8) | 2,624.4 (1.0) | 3,858.9 (1.2) |
| 投資信託 | 343.3 (0.4) | 732.1 (0.8) | 485.7 (0.4) | 389.2 (0.3) | 855.3 (0.4) | 1,919.4 (0.8) | 3,351.4 (1.2) | 3,068.2 (0.9) |
| 證券金融 | 455.4 (0.6) | 247.9 (0.3) | 748.5 (0.6) | 1,307.6 (0.9) | 1,660.8 (0.9) | 2,137.4 (0.9) | 1,545.8 (0.6) | 964.8 (0.3) |
| 貯蓄機關 | 15,026.2 (18.9) | 18,309.2 (19.7) | 25,486.3 (21.2) | 35,298.6 (23.6) | 54,548.9 (28.3) | 73,701.0 (31.7) | 92,705.7 (33.9) | 120,238.5 (36.9) |
| 銀行信託 | 4,883.7 (6.1) | 5,768.3 (6.2) | 9,345.7 (7.8) | 12,548.0 (8.4) | 17,640.2 (9.1) | 28,572.3 (12.3) | 38,537.0 (14.1) | 56,895.5 (17.5) |
| 相互信用金庫 | 4,708.4 (5.9) | 5,329.4 (5.8) | 6,918.8 (5.8) | 9,609.5 (6.4) | 12,887.3 (6.7) | 15,483.9 (6.7) | 18,487.8 (6.8) | 21,696.4 (6.7) |
| 相互金融 | 4,357.1 (5.5) | 5,768.1 (6.2) | 7,276.7 (6.1) | 10,325.8 (6.9) | 13,714.7 (7.1) | 17,238.0 (7.4) | 21,114.2 (7.7) | 24,870.7 (7.6) |
| 信用協同組合 | 1,071.2 (1.4) | 1,438.9 (1.6) | 1,941.1 (1.6) | 2,734.9 (1.8) | 3,868.1 (2.0) | 4,849.5 (2.1) | 5,909.4 (2.2) | 7,009.5 (2.2) |
| 遞信預金 | 5.9 (0.0) | 4.5 (0.0) | 3.9 (0.0) | 80.5 (0.1) | 16.4 (0.0) | 85.0 (0.0) | 48.5 (0.0) | 31.1 (0.0) |
| 保險機關 | 6,668.7 (8.4) | 8,190.2 (8.8) | 11,513.9 (9.6) | 15,369.6 (10.3) | 18,730.3 (9.7) | 21,505.6 (9.2) | 24,967.8 (9.1) | 27,728.3 (8.5) |
| 總 計 | 79,607.0 (100.0) | 92,729.9 (100.0) | 120,193.1 (100.0) | 149,857.8 (100.0) | 193,086.5 (100.0) | 232,830.3 (100.0) | 273,590.0 (100.0) | 325,921.1 (100.0) |

註：1) 비통화금융기관간 및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의 상호거래 제거.

2) 외국銀行 국내지점 포함.

資料：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의 銀行의 競爭力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銀行들이 이러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변화에 대한 銀行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現 貸出市場에서의 競爭도와 銀行貸出規模의 適正性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非銀行 金融機關들에 의한 銀行 貸出市場 잠식과 直接金融市場의 발전에 따른 大企業들의 銀行 이탈이 기업들에 대한 주된 資金供給者로서의 銀行의 位置를 어느 정도 위협하느냐에 따라 銀行의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特定 商品의 市場構造가 시장참가자들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관해서는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銀行市場이 不完全 競爭的이라는 가정하에서 市場構造活動分析(market structure-conduct-performance studies)을 시도하여 왔다. 분석방법에 概念的, 計量經濟學的 문제가 없지 않고, 分析結果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이들 分析의 대부분은 市場集中度를 가리키는 係數(機關數, CRn 등)가 產出物 價格이나 機關의 收益性, 安定性(시장점유율 순위변동 등) 등에 대해 有意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市場集中度를 나타내는 係數가 해당 市場에서의 競爭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haffer(1993, 1994)의 模型을 인용하여 銀行들이 일정한 투입요소들을 고용하여 特定 產出物(자산, 대출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완전경쟁수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銀行業에 遊休施設(excess capacity)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該當 產出物 市場에서의 競爭도를 간접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Shaffer에 의하면 銀行産業의 限界收入(MR)函數는 $p+h(Q, Y, \alpha)$ 로 표시될 수 있다. 이 式에서 p 는 산출물 가격, $h(\cdot)$ 는 시장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며, Q , Y , α 는 각각 산출량, 외생변수 벡터, 추정계수 벡터를 표시한다. 그리고 銀行産業에 속하는 대표적

銀行(a representative bank)의 限界收入函數는 $p + \lambda h(Q, Y, \alpha)$ 로 표시된다. 여기서 λ 는 대표적 銀行의 市場支配力의 정도를 가리키는 계수이며, $-\lambda$ 는 산출량이 완전경쟁수준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가리키게 된다. $\lambda=0$ 은 완전경쟁인 상태를, $\lambda=1$ 의 경우에는 銀行들이 공동으로 利潤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며, λ 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 不完全競爭이나 市場支配力이 존재함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추정된 λ 의 값은 추정기간 동안의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競爭度나 市場支配力의 程度를 나타내며, 따라서 추정기간 내의 일정시점에서의 시장 경쟁 상황은 λ 가 示唆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근년에 올수록 銀行市場에서의 競爭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推定된 λ 를 평가할 때 이 點에 有意할 필요가 있다.

銀行의 投入要素 및 產出物에 관한 定義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預金과 勞動 資本을 投入要素로 하여 貸出(혹은 資產)을 生産한다고 하는 金融仲介模型(Intermediation Approach)이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이 접근방법에 따라 분석을 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銀行 산출물 및 투입요소에 대한 定義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檢定하기 위해 銀行이 貸出 등의 자산 이외에 고객에게 예금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使用者費用接近方法(User-Cost Approach)에 의한 推定도 병행하기로 한다. 먼저 銀行 產出物에 대한 需要와 供給式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2) \quad Q = a_0 + a_1 P + a_2 Y + a_3 Z + a_4 PY + a_5 PZ + a_6 YZ + u_1$$

$$(3-3) \quad P = \frac{-\lambda Q}{a_1 + a_4 Y + a_5 Z} + \frac{C}{Q} [b_0 + b_1 \ln Q + \sum_j b_j \ln W_j] + u_2$$

Q : 銀行 產出物의 實質 供給規模

P : 銀行 產出物의 價格(=收入/產出量)

Y : 實質GDP

- Z : 會社債 收益率
 C : 銀行 總費用
 W_j : 銀行 投入要素($j=3,4$)
 λ : 市場競爭度 係數
 u_1 : 誤差項

式 (3-2)는 銀行 產出物에 대한 需要가 產出物價格, 所得水準, 代替資產의 價格 등에 의존함을 의미하며, 交叉項들은 λ 의 識別 (identification)을 위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式 (3-3)은 銀行產出物의 供給函數로서 銀行의 한계수입함수와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MR=MC$ 의 조건으로부터 導出된다. 推定에 필요한 관련수치는 1972~1993년간의 一般銀行 財務諸表로부터 구하였으며, 推定方法은 推定式間의 係數에 대한 制約을 고려하기 위해 非線形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먼저 金融仲介模型에 따라 銀行 產出物을 貸出 또는 資產 總額으로 정의하여 추정한 결과는 <表 3-31>에 제시되어 있다. 銀行 產出物의 定義에 관계없이 推定式들의 $\overline{R^2}$ 는 모두 95% 이상이었으며, 추정된 계수들도 사전적 條件들을 대체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artial Q/\partial P = a_1 + a_4 Y + a_5 Z < 0$ 으로서 銀行 產出物에 대한 수요곡선이 右下向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a_2 + a_4 + a_6 Z > 0$ 의 조건도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나 銀行 產出物이 正常財(normal goods)임을 보여주었다. 단, a_1, a_4, a_5 등 산출물가격(P)과 관련된 계수들의 부호가 모두 (-)인 것은 銀行 產出物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示唆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銀行 產出物을 總資產 또는 貸出金 總額 중 어느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관계없이 $\alpha = 0.40$ 수준에서도 $H_0: \lambda = 0$ 을 棄却할 수 없었다. 產出物을 貸出金으로 정의할 경우 λ 의 추정치는 -0.024 로서 貸出業務에 2.4% 정도의 초과설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였으

나, 同 係數가 有意성을 갖지는 못하였다. 產出物을 총자산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λ 의 크기가 더욱 작은 것으로 나타나 銀行들의 자산규모가 대체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間接的으로 示唆하였다. DW 의 크기로 볼 때 銀行 產出物의 時系列에 오차항의 自己相關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條件附 最小自乘法(conditional least square regression)에 의한 AR process를 적용하여 自己相關을 수정한 係數를 추정해 보았으나, 이상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表 3-29〉 金融仲介模型에 의한 推定結果

a) 銀行 產出物을 貸出金으로 定義할 境遇

| Parameter | 원 자 료 | | | AR(1) 적용 | | |
|---------------------|-------------|--------------|-----------|-------------|--------------|-----------|
|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 λ | -0.024452 | 0.03675 | -0.67 | -0.020912 | 0.02422 | -0.86 |
| a_0 | -4,413.49 | 1,868.2 | -2.36** | -3,430.78 | 1,723.5 | -1.99* |
| a_1 | 16,692.12 | 9,864.0 | 1.69 | 15,087.98 | 9,217.3 | 1.64 |
| a_2 | 0.00445709 | 0.0009327 | 4.78*** | 0.00300289 | 0.0011132 | 2.70** |
| a_3 | 19,353.33 | 10,176.2 | 1.90* | 15,491.58 | 8,827.0 | 1.76 |
| a_4 | -0.00701535 | 0.0051860 | -1.35 | -0.00739794 | 0.0051829 | -1.43 |
| a_5 | -80,061.24 | 48,119.7 | -1.66 | -67,124.51 | 42,237.7 | -1.59 |
| a_6 | -0.00527347 | 0.0046327 | -1.14 | -0.00362893 | 0.0040231 | -0.90 |
| b_1 | -0.00922210 | 0.03515 | -0.26 | -0.042570 | 0.03024 | -1.41 |
| b_2 | -0.866484 | 0.84501 | -1.03 | 0.558994 | 0.82641 | 0.68 |
| b_3 | -0.176064 | 0.07763 | -2.27** | -0.099864 | 0.04965 | -2.01** |
| b_4 | -0.167822 | 0.10309 | -1.63 | -0.013560 | 0.09277 | -0.15 |
| Q-1 | | | | 0.467832 | 0.20450 | 2.29** |
| P-1 | | | | 0.151735 | 0.05535 | 2.74** |
| $\overline{R^2}(Q)$ | 0.9684 | | | 0.9747 | | |
| $\overline{R^2}(P)$ | 0.9359 | | | 0.9621 | | |
| $DW(Q)$ | 1.09 | | | 1.79 | | |
| $DW(P)$ | 2.12 | | | 1.99 | | |

註: *, **, ***는 각각 $\alpha=0.10$, $\alpha=0.05$, $\alpha=0.01$ 수준에서 有意함을 표시함 (이하 동일).

b) 銀行 產出物을 資産總額으로 定義할 境遇

| Parameter | 원 자료 | | | AR(1) 적용 | | |
|---------------------|-------------|--------------|-----------|-------------|--------------|-----------|
|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 λ | -0.00669476 | 0.01476 | -0.45 | -0.00262947 | 0.0026296 | -1.00 |
| a_0 | -4,492.06 | 5,510.6 | -0.82 | -9,235.88 | 5,961.1 | -1.55 |
| a_1 | 18,632.74 | 39,885.6 | 0.47 | 99,405.78 | 66,702.1 | 1.49 |
| a_2 | 0.00763262 | 0.0029295 | 2.61** | 0.00661808 | 0.0032958 | 2.01** |
| a_3 | 20,288.83 | 31,321.9 | 0.65 | 25,841.49 | 19,415.1 | 1.33 |
| a_4 | -0.00741152 | 0.01584 | -0.47 | -0.065296 | 0.04300 | -1.52 |
| a_5 | -110,685.97 | 227,758.2 | -0.49 | -281,922.20 | 201,531.3 | -1.40 |
| a_6 | -0.00650163 | 0.01250 | -0.52 | 0.00606402 | 0.0088029 | 0.69 |
| b_1 | 0.798502 | 0.35592 | 2.24** | 0.938765 | 0.36037 | 2.60** |
| b_2 | 0.024204 | 0.02790 | 0.87 | 0.018540 | 0.01464 | 1.27 |
| b_3 | -0.098392 | 0.03563 | -2.76** | -0.013882 | 0.02662 | -0.52 |
| b_4 | 0.020003 | 0.05822 | 0.34 | 0.013226 | 0.04225 | 0.31 |
| Q-1 | | | | 0.022006 | 0.01608 | 1.37 |
| P-1 | | | | 0.725709 | 0.15880 | 4.57*** |
| $\overline{R^2}(Q)$ | 0.9530 | | | 0.9784 | | |
| $\overline{R^2}(P)$ | 0.9967 | | | 0.9888 | | |
| DW(Q) | 0.57 | | | 2.00 | | |
| DW(P) | 2.13 | | | 1.33 | | |

셋째, 이러한 결과가 銀行 產出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使用者費用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預金(예금의 가격은 각종 手數料 收入合計를 예금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함)을 銀行 產出物에 포함시켜 추정하여 보았다. 이 경우 銀行 資産市場, 貸出金市場, 預金市場에서의 競爭度 혹은 완전경쟁수준으로부터의 괴리정도는 각각 λ_A , λ_L 및 λ_D 로 표시된다. <表 3-32>에서 보듯이 예금을 銀行 產出物에 포함하더라도 貸出金 規模의 완전경쟁수준으로부터의 乖離程度를 나타내는 λ_L 의 크기는 金融仲介 模型의 경우와 비슷하였으며, 有意性은 前者의 경우보다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R(1)을 적용하여 구한 λ_A 의 경우에도 금융중개모형에서의 推定値보다 크기는 다소 하락하나 有意性은 크게

〈表 3-30〉 使用者費用 接近法에 의한 推定結果

a) 銀行 產出物을 貸出 및 預金總額으로 定義할 境遇

| Parameter | 원 자 료 | | | AR(1) 적용 | | |
|------------------|-------------|--------------|-----------|-------------|--------------|-----------|
|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 λ_L | -0.031963 | 0.07517 | -0.43 | -0.023375 | 0.08101 | -0.29 |
| λ_D | 0.00503138 | 0.04527 | 0.11 | -0.00585672 | 0.04296 | -0.14 |
| a_{10} | -4,102.40 | 1,861.6 | -2.20** | -3,160.45 | 1,762.8 | -1.79* |
| a_{11} | 14,725.74 | 10,055.3 | 1.46 | 12,368.97 | 9,630.3 | 1.28 |
| a_{12} | 0.00043283 | 0.00009416 | 4.60*** | 0.00028267 | 0.0001127 | 2.51** |
| a_{13} | 180.633376 | 105.04027 | 1.72 | 151.769774 | 102.41615 | 1.48 |
| a_{14} | -0.00063733 | 0.0006520 | -0.98 | -0.00050316 | 0.0007114 | -0.71 |
| a_{15} | -727.167692 | 480.40512 | -1.51 | -636.733760 | 446.05801 | -1.43 |
| a_{16} | -4.98022E-6 | 5.06729E-6 | -0.98 | -3.62096E-6 | 5.12124E-6 | -0.71 |
| a_{20} | -4,063.43 | 1,647.5 | -2.47** | -3,513.30 | 1,678.4 | -2.09* |
| a_{21} | 53,477.39 | 84,313.1 | 0.63 | 57,102.72 | 85,503.0 | 0.67 |
| a_{22} | 0.00035315 | 0.0001005 | 3.51*** | 0.00029303 | 0.0001084 | 2.70** |
| a_{23} | 216.220243 | 55.62746 | 3.89*** | 185.278750 | 59.84216 | 3.10*** |
| a_{24} | 0.00530392 | 0.0046171 | 1.15 | 0.00332519 | 0.0051981 | 0.64 |
| a_{25} | -5,934.92 | 2,118.4 | -2.80** | -5,231.35 | 2,168.8 | -2.41** |
| a_{26} | -6.6122E-6 | 3.00736E-6 | -2.20** | -5.40835E-6 | 3.15734E-6 | -1.71 |
| b_{10} | -0.552640 | 1.58051 | -0.35 | -0.415564 | 1.93953 | -0.21 |
| b_{11} | 0.160490 | 0.22883 | 0.70 | 0.095707 | 0.17957 | 0.53 |
| b_{13} | -0.186896 | 0.13741 | -1.36 | -0.156664 | 0.18057 | -0.87 |
| b_{14} | -0.121471 | 0.20170 | -0.60 | -0.107875 | 0.25259 | -0.43 |
| b_{20} | -0.576611 | 1.68906 | -0.34 | 0.367451 | 1.55823 | 0.24 |
| b_{21} | -0.168514 | 0.23395 | -0.72 | -0.101001 | 0.16773 | -0.60 |
| b_{22} | 0.186677 | 0.25294 | 0.74 | 0.102683 | 0.17736 | 0.58 |
| b_{23} | 0.00446745 | 0.10814 | 0.04 | 0.056280 | 0.09573 | 0.59 |
| b_{24} | -0.075727 | 0.19534 | -0.39 | 0.029881 | 0.17340 | 0.17 |
| Q_L-1 | | | | 0.437405 | 0.21228 | 2.06** |
| Q_D-1 | | | | 0.237042 | 0.20193 | 1.17 |
| P_D-1 | | | | 0.649747 | 0.85124 | 0.76 |
| P_L-1 | | | | | | |
| $\bar{R}^2(Q_L)$ | 0.9684 | | | 0.9747 | | |
| $\bar{R}^2(Q_D)$ | 0.9889 | | | 0.9888 | | |
| $\bar{R}^2(P_L)$ | 0.9544 | | | 0.9482 | | |
| $\bar{R}^2(P_D)$ | 0.2939 | | | 0.8286 | | |
| $DW(Q_L)$ | 1.08 | | | 1.75 | | |
| $DW(Q_D)$ | 1.80 | | | 1.92 | | |
| $DW(P_L)$ | 1.85 | | | 1.92 | | |
| $DW(P_D)$ | 1.62 | | | 1.91 | | |

b) 銀行 產出物을 總資產 및 預金總額으로 定義한 境遇

| Parameter | 원 자료 | | | AR(1) 적용 | | |
|-----------------------|-------------|--------------|-----------|-------------|--------------|-----------|
|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Estimate | Approx. S.E. | 'T' Ratio |
| λ_A | -0.046697 | 0.23645 | -0.20 | 0.00109091 | 0.02412 | 0.05 |
| λ_D | 0.018729 | 0.06741 | 0.28 | -0.010982 | 0.04451 | -0.25 |
| a_{10} | -7,396.79 | 12,783.1 | -0.58 | -6,442.07 | 3,603.1 | -1.79* |
| a_{11} | 33,032.91 | 130,357.4 | 0.25 | 91,251.86 | 52,814.3 | 1.73 |
| a_{12} | 0.00115255 | 0.0008383 | 1.37 | 0.00030941 | 0.0002213 | 1.40 |
| a_{13} | 292.250303 | 483.87828 | 0.60 | 118.541963 | 136.04433 | 0.87 |
| a_{14} | -0.00521538 | 0.01030 | -0.51 | -0.00386336 | 0.0031616 | -1.22 |
| a_{15} | -1,282.33 | 4,444.4 | -0.29 | -2,290.85 | 1,685.0 | -1.36 |
| a_{16} | -6.34542E-6 | 0.00001412 | -0.45 | 9.438321E-6 | 9.62333E-6 | 0.98 |
| a_{20} | -3,740.53 | 1,616.8 | -2.31** | -3,347.82 | 1,547.4 | -2.16** |
| a_{21} | 36,208.21 | 82,166.3 | 0.44 | 54,248.34 | 76,478.6 | 0.71 |
| a_{22} | 0.00034012 | 0.00009908 | 3.43*** | 0.00029037 | 0.0001019 | 2.85** |
| a_{23} | 205.650505 | 55.17517 | 3.73*** | 172.492331 | 57.53694 | 3.00** |
| a_{24} | 0.00583443 | 0.0045366 | 1.29 | 0.00261381 | 0.0046722 | 0.56 |
| a_{25} | -5,421.25 | 2,080.1 | -2.61** | -4,746.67 | 2,010.9 | -2.36** |
| a_{26} | -6.37231E-6 | 3.00862E-6 | -2.12* | -5.16503E-6 | 3.10339E-6 | -1.66 |
| b_{10} | 0.459094 | 5.91662 | 0.08 | 1.906506 | 17.80725 | 0.11 |
| b_{11} | -0.047984 | 0.46100 | -0.10 | 0.046653 | 0.69776 | 0.07 |
| b_{13} | -0.062025 | 0.49086 | -0.13 | 0.062137 | 1.34513 | 0.05 |
| b_{14} | -0.043814 | 0.71530 | -0.06 | 0.090036 | 2.08177 | 0.04 |
| b_{20} | 0.266924 | 3.13377 | 0.09 | 0.415230 | 1.85627 | 0.22 |
| b_{21} | 0.079564 | 0.39829 | 0.20 | -0.060648 | 0.26565 | -0.23 |
| b_{22} | -0.072308 | 0.42331 | -0.17 | 0.054820 | 0.27677 | 0.20 |
| b_{23} | 0.011468 | 0.16608 | 0.07 | 0.067267 | 0.10189 | 0.66 |
| b_{24} | 0.038765 | 0.41795 | 0.09 | 0.018313 | 0.23817 | 0.08 |
| Q_A-1 | | | | 0.830686 | 0.17687 | 4.70*** |
| Q_D-1 | | | | 0.267416 | 0.19181 | 1.39 |
| P_A-1 | | | | 0.019754 | 0.84995 | 0.02 |
| P_D-1 | | | | 0.769350 | 0.92701 | 1.83 |
| $\overline{R^2}(Q_A)$ | 0.9522 | | | 0.9798 | | |
| $\overline{R^2}(Q_D)$ | 0.9887 | | | 0.9885 | | |
| $\overline{R^2}(P_A)$ | 0.9731 | | | 0.6113 | | |
| $\overline{R^2}(P_D)$ | 0.7588 | | | 0.8679 | | |
| $DW(Q_A)$ | 0.61 | | | 2.2 | | |
| $DW(Q_D)$ | 1.71 | | | 1.8 | | |
| $DW(P_A)$ | 0.75 | | | 2.1 | | |
| $DW(P_D)$ | 1.43 | | | 2.0 | | |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使用者接近方法을 따르더라도 銀行의 產出物 供給水準이 완전경쟁수준과 크게 떨어져 있거나 超過設備가 존재함으로써 銀行들이 적정한 이윤을 보지 못하고 產出物을 공급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使用者費用 接近方法에 의한 推定結果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產出物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관계없이 λ_L 이나 λ_A 가 λ_D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볼 때 銀行側面에서는 資金調達市場보다 資金運用市場이 덜 競爭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銀行의 貸出業務에는 不完全 競爭이 존재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에 따른 貸出供給規模의 縮小나 銀行의 市場支配力 保有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니며, 銀行들이 超過設備의 存在로 인해 貸出業務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대출을 供給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銀行들이 貸出市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환경변화로 銀行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貸出 供給規模를 지금보다 다소 늘릴 여지가 없지 않다는 暫定的인 結論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銀行-企業間 信用供與關係의 바람직한 方向

貸出市場에서의 銀行 占有率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은행들이 기업들에 대해 收益性이 있는 貸出을 경쟁적으로 해왔으며, 이러한 趨勢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앞에서의 分析結果는 기업들의 銀行借入 依存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과 더불어 우리에게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에 대한 貸出業務가 은행의 전체 업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一般銀行의 總收益 중 貸出關聯 收益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65%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8년에는 51.5%까지 하락하

였으며, 以後 한동안 證券市場 不振과 景氣沈滯로 同 比重이 다소 상승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證券市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有價證券關聯 收益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수익비중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50.4%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최근에 들어 일부 大型 市中銀行들을 중심으로 株式賣買를 포함한 有價證券 投資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收益을 얻고 있으나¹⁰⁾, 證券市場의 活況이 계속될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外國 主要銀行들의 경우 최근 유가증권 매매로부터 큰 손실을 입게 되자 해당 업무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事例들도 없지 않음을 고려할 때, 株式投資의 比重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證券市場 沈滯時 銀行이 심각한 經營難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銀行들이 株式投資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들의 設備投資 需要 不振으로 은행들이 餘裕資金을 운용할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은 企業들의 銀行資金에 대한 초과수요가 축소되어 가는 반면, 은행들의 대출고객 발굴을 위한 노력이 이에 상응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銀行들의 收益性 維持를 위해서는 非利子收益業務의 확대에도 이전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貸出關聯業務에서 既存 顧客들을 維持하고 새로운 顧客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課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예상되는 일련의 銀行 營業環境上의 變化는 銀行의 貸出市場에서의 地位를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은행들은 이들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對應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0) 시중은행의 株式賣買益은 1991년 585억원에서 1992년 1,809억원, 1993년 3,82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994년에는 1조 986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리고 有價證券賣買益 合計는 1993년중 4,138억원에서 1994년 상반기중 5,443억원으로 늘어났음.

〈表 3-31〉 一般銀行의 部門別 收益狀況

(單位：億원，%)

| | | 總收益 | 貸出關聯收益 | 有價證券關聯收益 | 外換關聯收益 |
|------|-----|------------------|----------------|----------------|--------------|
| 1980 | 金額 | 21,246(18,357) | 13,703(11,924) | 1,790(1,246) | 1,902(1,758) |
| | 構成比 | 100.0(100.0) | 64.5(65.0) | 8.4(6.8) | 9.0(9.6) |
| 1985 | 金額 | 34,047(28,418) | 20,192(17,043) | 4,935(3,567) | 3,104(2,830) |
| | 構成比 | 100.0(100.0) | 59.3(60.0) | 14.5(12.6) | 9.1(10.0) |
| 1987 | 金額 | 51,614(44,250) | 27,379(23,421) | 7,876(6,318) | 6,373(5,923) |
| | 構成比 | 100.0(100.0) | 53.0(52.9) | 15.3(14.3) | 12.3(13.4) |
| 1988 | 金額 | 59,004(49,936) | 30,424(25,732) | 9,070(7,225) | 7,180(6,630) |
| | 構成比 | 100.0(100.0) | 51.6(51.5) | 15.4(14.5) | 12.2(13.3) |
| 1989 | 金額 | 72,914(61,979) | 39,844(33,577) | 11,019(8,450) | 7,721(7,293) |
| | 構成比 | 100.0(100.0) | 54.6(54.2) | 15.1(13.6) | 10.6(11.8) |
| 1990 | 金額 | 88,731(74,480) | 52,017(43,458) | 12,274(9,237) | 7,672(7,225) |
| | 構成比 | 100.0(100.0) | 58.6(58.3) | 13.8(12.4) | 8.6(9.7) |
| 1991 | 金額 | 110,480(91,349) | 63,892(52,284) | 17,632(13,361) | 8,507(8,002) |
| | 構成比 | 100.0(100.0) | 57.8(57.2) | 16.0(14.6) | 7.7(8.8) |
| 1992 | 金額 | 128,997(106,978) | 71,700(58,521) | 22,283(17,300) | 8,969(8,457) |
| | 構成比 | 100.0(100.0) | 55.6(54.7) | 17.3(16.2) | 7.0(7.9) |
| 1993 | 金額 | 132,418(109,637) | 67,848(55,276) | 26,483(20,435) | 8,946(8,391) |
| | 構成比 | 100.0(100.0) | 51.2(50.4) | 20.0(18.6) | 6.8(7.7) |

註：() 안은 시중은행 수치임.

資料：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各號.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與·受信金利의 自由化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預貸市場에서 취해오던 종전의 營業方式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991년 11월의 1단계 자유화, 1993년 11월의 2단계 자유화에 이어 1994년 12월 3단계 자유화조치(일부는 7월에 早期施行)가 시행된 결과 與信金利의 94.9%와 受信金利의 67.4%에 대한 規制가 완화됨으로써 銀行間에 金利의 差等化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展望이다. 이렇게 될

경우 종래와 같이 은행들이 銀行資金에 대한 超過需要의 존재를 전제로 店鋪增設 등을 통해 예금유치에만 전력을 투입하는 方式을 유지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資金調達面에서는 은행들간, 그리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들간에 예금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受信金利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價格競爭을 통한 預金 擴大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며, 資金運用 收益率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經營合理化 등을 통한 費用節減으로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預金利率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들만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은행이 무리하게 높은 預金金利로 자금을 조달한 뒤 적절한 運用處를 찾지 못해 高危險을 감수할 경우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不實化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자금을 운용할 곳을 보아가며 예금유치규모를 조절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預金調達費用의 過度한 上昇을 막기 위해 營業實績이 좋지 않은 점포를 出張所, 無人店鋪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 동안 無償으로 제공해 오던 각종 서비스에 대한 手數料를 부과하여 늘어나는 預金利率負擔의 일부를 補填하려 할 것이다.

다음, 資金運用面에서는 企業金融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으로 기업들의 資金調達源이 다양해지고 貸出金利에 대한 敏感度(interest rate sensitivity)도 높아짐에 따라 특히 大企業들의 銀行借入 增加勢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조달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貸出利率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大企業顧客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보다 收益性이 높은 家計 및 中小企業들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험이나 최근의 預貸金利趨勢를 볼 때 은행들이 어떤 戰略을 추구하더라도 金利自由化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預貸金利差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表 3-34>에서 보듯이 원貨

預金·貸出의 金利差는 1990년대에 들어 1980년대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與信金利는 거의 자유화된 반면 預金金利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預貸金利差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상승하기도 하고 있으나, 受信金利까지 완전 자유화될 경우 銀行의 預貸金利差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이에 따른 收益性 악화와 金利의 變動幅 확대로 인한 위험증대를 補填하기 위해 多角的인 對應策을 강구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종래의 부채관리 중심에서 資産과 負債를 綜合的으로 管理할 수 있는 體制(asset-liability management system)를 갖추어나감으로써 期間不一致에 따른 流動性 및 金利危險을 줄이는 동시에 조달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운용대상을 정하고 이에 差等金利를 적용함으로써 收益의 極大化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表 3-32〉 最近의 銀行 元貨 預貸金利差 推移

(單位：%)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
| 市中銀行 平均 | 2.45 | 3.67 | 4.34 | 4.25 | 1.78 | 1.79 | 1.42 | 1.83 |
| (5大 市銀 平均) | (2.31) | (3.49) | (4.52) | (4.27) | (1.88) | (1.92) | (1.42) | (-) |
| 地方銀行 平均 | 4.31 | 4.84 | 6.01 | 5.79 | 3.79 | 3.99 | 3.90 | 4.20 |
| 一般銀行 平均 | 2.72 | 3.84 | 4.61 | 4.53 | 2.20 | 2.24 | 1.91 | 2.30 |

資料：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各號.

둘째, 종래 엄격하게 규제되어 오던 金融機關들의 業務領域이 완화될 경우 은행들은 새로운 收益源를 活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반면, 非銀行 金融機關들의 銀行市場 進入으로 인해 각 市場에서 보다 치열한 競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新경제計劃上의 業務領域調整 方針은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金融部門間 業務領域의 균형이 확보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一般銀行에 대해

서는 附隨業務의 範圍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證券業務에 대해서는 國公債 主幹事業과 巨額 RP의 對個人賣渡를 허용하는 외에 1996~97년중 은행의 國公債 窓口賣出을 허용하고 금리 및 환율과 연계된 선물·옵션관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으로 있다. 단, 株式의 引受·賣買·仲介 등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子會社 設立을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볼 때 銀行들의 兼業化가 향후 수년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銀行 業務範圍의 점진적 확대와 더불어 현재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非銀行 子會社들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수요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기업고객들에게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非銀行 金融機關의 銀行類似業務 取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비은행권 수준으로 완화됨이 없이 銀行市場에 대한 진입장벽을 축소할 경우 預·貸市場에서의 은행의 지위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앞으로 金融開放化가 더욱 확대되고 實物部門의 國際化도 가속화될 경우 國內銀行들의 營業環境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의 경우 1996년으로 예정된 OECD 가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外國 金融機關의 市場進出(market access)을 허용하고 外換 및 資本去來 自由化를 더욱 확대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다. 또한 外換 및 資本去來 自由化가 확대되면 大企業들이 직접금융시장이나 海外金融市場에서의 資金調達을 확대함으로써 銀行借入에의 依存度를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대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 資本의 流出入도 크게 늘어남으로써 銀行들의 國際業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각 은행들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顧客基盤과 축적된 지식 및 金融技法의 정도에 따라 小賣金融과 都賣金融(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제금

〈表 3-33〉 企業의 外貨資金 調達 推移

(單位：百萬달리, %)

| | 1984~1986* | 1987~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國內金融機關 借入 | | | | | | |
| ・ 外貨貸出 | 2,900 (77.7) | 5,028 (77.6) | 5,829 (69.3) | 6,263 (87.0) | 2,851 (50.7) | 3,631 (53.0) |
| 海外에서 直接調達 | | | | | | |
| ・ 外貨證券發行 | 283 (7.6) | 158 (2.4) | 570 (6.8) | 1,165 (16.2) | 1,916 (34.1) | 1,916 (28.0) |
| ・ 商業借款 | 1,147 (30.7) | 1,135 (17.5) | 30 (0.4) | 0 (0.0) | 150 (2.7) | 0 (0.0) |
| 貿易關聯 外貨借入 | | | | | | |
| ・ 延支給輸入金融(純) | -597 (-16.0) | 161 (2.5) | 1,980 (23.5) | -228 (-3.2) | 702 (12.5) | 1,300 (19.0) |
| 合 計 | 3,733 (100.0) | 6,482 (100.0) | 8,409 (100.0) | 7,200 (100.0) | 5,619 (100.0) | 6,847 (100.0) |

註：* 수치는 해당기간 연평균이며, () 안은 構成比임.
資料：財務部, 韓國銀行.

용) 중 특정 부문에 전문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WTO체제의 출범 이후 국내 金融市場의 개방이 확대될 경우 외국 金融機關들의 신규진출 및 업무 확대가 계속될 것이며, 이들이 주로 小賣金融보다는 都賣金融市場을 공략할 것이므로 이에 적절히 對備하지 않을 경우 國內銀行들의 國際業務 營業基盤이 잠식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외국은행으로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앞서서도 살펴 보았듯이 30大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가 점차 完化되어 궁극적으로는 管理對象이 5대 계열 이내로 축소되거나 同一人 與信限度와 系列企業群에 대한 巨額與信 總額限度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管理대상에서 제외되는 大企業들의 銀行借入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은행들로서는 形式的

인 主去來銀行의 골레에서 벗어나는 大企業들을 實質的인 主去來顧客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系列企業群 所屬 企業들이 이전보다 여러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향이 늘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가장 큰 銀行의 占有率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企業들의 設備投資 規模가 커짐에 따라 한 은행이 投資所要額 전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데서 비롯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첫째, 기업들이 主去來 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둘째,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現行 規制들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될 경우 銀行들이 主去來 關係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대출요청시 다소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後者の 경우에는 은행의 收益性 維持에 寄與度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대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主去來 關係를 유지하고자 하는 誘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金融의 自律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資金調達을 위해 과당경쟁을 하거나 자산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해 銀行이 不實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健全經營監督(prudential regulation)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不實與信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일정규모 이하로 축소하도록 하는 한편 BIS自己資本規制를 충족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¹¹⁾. 一般銀行의 不實與信(回收疑問 및 推定損失의 승

11) 은행감독원에서는 1994년 6월 발표한 「은행경영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종래 은행들에 대해 총여신의 2% 이상 일률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서 은행별로 與信關聯 損失豫想額(正常分類 與信의 0.5%, 要注意分類 與信의 1%, 固定分類 與信의 20%, 回收疑問 및 推定損失 分類 與信의 100%를 합계한 금액) 전액을 대

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減少勢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절대액이 다시 증가함으로써 1994년 6월 말 현재 3조 4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은행 總與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1991년 이후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不實與信에 固定分類 與信을 포함할 경우 同 規模는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를 조속히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貸損償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業務利益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나, 은행들이 날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經營與件下에서 보다 좋은 收益性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

〈表 3-34〉 一般銀行의 不實債權 現況

(單位: 10億원, %)

|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6 |
|---------------|--------|--------|--------|--------|---------|---------|---------|---------|
| 總 與 信 (A) | 37,981 | 41,527 | 53,925 | 90,556 | 118,475 | 143,705 | 160,520 | 179,055 |
| 不 實 與 信 (B) | 3,041 | 2,979 | 2,205 | 1,910 | 2,090 | 2,425 | 2,932 | 3,040 |
| 貸 損 充 當 金 (C) | 507 | 592 | 813 | 998 | 1,311 | 1,662 | 2,000 | 2,598 |
| (B) / (A) | 8.0 | 7.2 | 4.1 | 2.1 | 1.8 | 1.7 | 1.8 | 1.7 |
| (C) / (B) | 16.6 | 19.9 | 36.9 | 52.3 | 62.7 | 68.5 | 68.2 | 85.5 |

註: 年末 基準
資料: 韓國銀行

뿐만 아니라 현재 一般銀行들은(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BIS가 요구하는 危險加重資産 對比 自己資本比率(8% 이상)을 上廻하고 있기는 하나, 후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의 경우 危險加重資産의 증가에 비례하는 自己資本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自己資本比率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 시중은행의 自己資本比率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有價證券賣買 및 評價益의 증가에 따른 업무이익의 호전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따라서

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별로 중간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지도할 계획으로 있음.

證券市場이 활황국면에서 벗어날 경우 시중은행들도 자기자본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후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은 自律化에 따른 경영여건의 악화로 지급보증, 元金補填約定信託 등 危險加重資産의 취급을 늘리고 있으며, 納入資本의 增額이 없을 경우 조만간 영업규모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은행들이 自己資本比率을 적정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經營合理化 努力을 강화하여 收支改善 및 利益의 內部留保 擴大를 도모하고 외형성장보다는 건전성을 중시하는 자산운용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證市 狀況을 보아가며 지속적으로 有價增資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3-35〉 一般銀行의 自己資本比率 現況

(單位: %, %p)

| | 1991 | 1992 | 前年對比 | 1993 | 前年對比 | 1994.6 | 前年對比 |
|---------|-------|-------|-------|-------|-------|--------|-------|
| | | | 增減 | | 增減 | | 增減 |
| 6大市銀 平均 | 9.78 | 9.63 | △0.15 | 9.95 | 0.32 | 10.26 | 0.31 |
| 後發市銀 平均 | 14.90 | 13.16 | △1.74 | 11.32 | △1.84 | 11.16 | △0.16 |
| 市中銀行 平均 | 10.85 | 10.40 | △0.45 | 10.28 | △0.12 | 10.49 | 0.21 |
| 地方銀行 平均 | 17.44 | 16.34 | △1.1 | 14.86 | △1.48 | 13.79 | △1.07 |
| 一般銀行 平均 | 11.71 | 11.18 | △0.53 | 10.90 | △0.28 | 10.96 | 0.06 |

資料: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들은 자금의 調達 및 運用에 대한 규제를 덜 받게 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예상되는 다섯 가지 주요 환경변화 모두 은행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현재의 영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收益性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 經營者 및 職員들의 預貸業務에 대한 認識

轉換을 바탕으로 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한 倍前의 努力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금융·자본시장 여건이나 기업의 재무구조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기업들의 간접금융 의존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經營權 확보를 위한 높은 持分率 유지나 기업 未公開 경향은 직접금융을 통한 資金調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支給利子の 損費認定이 계속되는 한 銀行借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資金調達手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대출고객 확보가 이전처럼 용이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規制나 當局의 窓口指導에 의해 자금이 인위적으로 배분되는 정도가 줄어들어 따라 기업고객들이 거래은행을 선택할 여지가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市中銀行들은 대출의 90% 정도를 企業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對企業 대출의 70% 가까이를 1년 미만의 短期貸出이 차지하고 있다 (<表 3-38> 參照). 따라서 은행의 대출업무에서 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이로부터 金融自律化로 은행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은행과 기업들간에 信用供與를 매개로 한 顧客關係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貸出顧客과의 관계유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Hodgman(1963)은 은행들이 주요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고객으로부터의 대출요청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유가증권을 처분해서라도 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은 당장의 利子收入을 다소 잃더라도 경쟁적인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았다. 또한 Wood(1975)는 대출이자율과 유가증권 수익률간의 隔差가 景氣 擴張期에는 감소하고 景氣 收縮期에는 확대되는 현상을 은행들이 현재의 대출자

〈表 3-36〉 市中銀行의 用途別, 期間別 貸出金 推移

(單位: 億원, %)

118

|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1993 | |
|--------------|---------|------------------|---------|------------------|---------|------------------|---------|------------------|---------|------------------|---------|------------------|
|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 기업자금대출 | 202,344 | 87.03 (34.99) | 265,706 | 87.75 (31.31) | 296,475 | 87.38 (11.58) | 356,167 | 89.46 (20.13) | 422,771 | 90.35 (18.70) | 445,688 | 88.57 (5.47) |
| 6개월 미만 | 36,213 | 15.58 | 60,058 | 19.83 | 46,347 | 13.66 | 89,125 | 22.38 | 107,731 | 23.02 | 100,867 | 20.00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85,809 | 36.91 | 103,242 | 34.10 | 130,225 | 38.38 | 147,607 | 37.07 | 186,707 | 39.90 | 203,773 | 40.50 |
| 1년 초과 3년 미만 | 33,138 | 14.25 | 49,054 | 16.20 | 63,251 | 18.64 | 55,785 | 14.01 | 57,027 | 12.19 | 80,129 | 15.93 |
| 3년 초과 5년 이하 | 12,373 | 5.32 | 13,890 | 4.59 | 10,898 | 3.21 | 7,927 | 1.99 | 10,455 | 2.23 | 13,408 | 2.66 |
| 5년 초과 | 34,816 | 14.98 | 39,462 | 13.03 | 45,754 | 13.48 | 55,723 | 14.00 | 60,851 | 13.00 | 47,511 | 9.44 |
| 가계자금대출 | 16,926 | 7.28 (19.57) | 24,138 | 7.97 (42.61) | 26,660 | 7.86 (10.45) | 28,904 | 7.26 (8.42) | 30,278 | 6.47 (4.75) | 43,363 | 8.62 (43.22) |
| 6개월 미만 | 719 | 0.31 | 1,609 | 0.53 | 1,322 | 0.39 | 4,835 | 1.21 | 3,917 | 0.84 | 2,938 | 0.58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7,799 | 3.35 | 9,554 | 3.16 | 11,684 | 3.44 | 11,535 | 2.90 | 14,037 | 3.00 | 24,080 | 4.79 |
| 1년 초과 3년 미만 | 7,348 | 3.16 | 11,580 | 3.82 | 12,119 | 3.57 | 11,329 | 2.85 | 10,915 | 2.33 | 14,253 | 2.83 |
| 3년 초과 5년 이하 | 897 | 0.39 | 1,230 | 0.41 | 1,430 | 0.42 | 872 | 0.22 | 1,171 | 0.25 | 1,686 | 0.34 |
| 5년 초과 | 163 | 0.07 | 165 | 0.05 | 105 | 0.03 | 333 | 0.08 | 238 | 0.05 | 406 | 0.08 |
| 공공 및 시설자금대출 | 9,119 | 3.92 (-47.56) | 7,934 | 2.62 (-12.99) | 8,730 | 2.57 (10.03) | 6,728 | 1.69 (-22.93) | 7,905 | 1.69 (17.49) | 6,570 | 1.31 (-16.89) |
| 6개월 미만 | 152 | 0.07 | 412 | 0.14 | 366 | 0.11 | 1,774 | 0.45 | 2,713 | 0.58 | 361 | 0.07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3,480 | 1.50 | 2,829 | 0.93 | 3,372 | 0.99 | 2,124 | 0.53 | 3,078 | 0.66 | 2,258 | 0.51 |
| 1년 초과 3년 미만 | 3,374 | 1.45 | 3,410 | 1.13 | 3,795 | 1.12 | 1,585 | 0.40 | 684 | 0.10 | 1,702 | 0.34 |
| 3년 초과 5년 이하 | 552 | 0.24 | 204 | 0.07 | 262 | 0.08 | 168 | 0.04 | 172 | 0.04 | 338 | 0.07 |
| 5년 초과 | 1,561 | 0.67 | 1,079 | 0.36 | 935 | 0.28 | 1,077 | 0.27 | 1,258 | 0.27 | 1,610 | 0.32 |

〈表 3-36〉의 계속

| | 1988 | | 1989 | | 1990 | | 1991 | | 1992 | | 1993 | |
|--------------|---------|-------------------|---------|-------------------|---------|-------------------|---------|-------------------|---------|-------------------|---------|------------------|
|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 재형저축자금대출 | 1,771 | 0.76 (1.14) | 1,728 | 0.57 (-2.43) | 1,283 | 0.38 (-25.75) | 879 | 0.22 (-31.49) | 668 | 0.14 (-24.00) | 411 | 0.08 (-38.47) |
| 6개월 미만 | 152 | 0.07 | 166 | 0.05 | 80 | 0.02 | 29 | 0.01 | 58 | 0.01 | 18 | 0.00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364 | 0.16 | 294 | 0.10 | 273 | 0.08 | 161 | 0.04 | 131 | 0.03 | 61 | 0.01 |
| 1년 초과 3년 미만 | 1,232 | 0.53 | 1,231 | 0.41 | 850 | 0.25 | 654 | 0.16 | 460 | 0.10 | 313 | 0.06 |
| 3년 초과 5년 이하 | 22 | 0.01 | 35 | 0.01 | 79 | 0.02 | 34 | 0.01 | 18 | 0.00 | 19 | 0.00 |
| 5년 초과 | 1 | 0.00 | 2 | 0.00 | 1 | 0.00 | 1 | 0.00 | 1 | 0.00 | 0 | 0.00 |
| 근로자주택자금대출 | 2,323 | 1.00 (-) | 3,297 | 1.09 (41.93) | 4,727 | 1.39 (43.37) | 5,472 | 1.37 (15.76) | 6,293 | 1.34 (15.00) | 6,600 | 1.31 (4.88) |
| 6개월 미만 | 28 | 0.01 | 154 | 0.05 | 179 | 0.05 | 15 | 0.00 | 473 | 0.10 | 36 | 0.01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1,036 | 0.45 | 1,111 | 0.37 | 1,051 | 0.31 | 1,828 | 0.46 | 1,143 | 0.24 | 409 | 0.08 |
| 1년 초과 3년 미만 | 695 | 0.30 | 1,383 | 0.46 | 2,126 | 0.63 | 2,677 | 0.67 | 3,379 | 0.72 | 4,039 | 0.80 |
| 3년 초과 5년 이하 | 8 | 0.00 | 117 | 0.04 | 264 | 0.08 | 32 | 0.08 | 482 | 0.10 | 1,070 | 0.21 |
| 5년 초과 | 556 | 0.24 | 532 | 0.18 | 1,107 | 0.33 | 620 | 0.10 | 816 | 0.17 | 1,046 | 0.21 |
| 금융기관특별대출금 | 0 | 0.00 | 0 | 0.00 | 1,435 | 0.42 | 0 | 0.00 | 0 | 0.00 | 0 | 0.00 |
| 5년 초과 | 0 | 0.00 | 0 | 0.00 | 1,435 | 0.42 | 0 | 0.00 | 0 | 0.00 | 0 | 0.00 |
| 은행간자금대여금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0 | 0.00 | 520 | 0.10 |
| 합 계 | 232,488 | 100.00 (26.90) | 302,803 | 100.00 (30.24) | 339,310 | 100.00 (12.06) | 398,150 | 100.00 (17.34) | 467,915 | 100.00 (17.52) | 503,152 | 100.00 (7.53) |
| 6개월 미만 | 37,264 | 16.03 | 62,399 | 20.61 | 48,294 | 14.23 | 95,778 | 24.06 | 114,892 | 24.55 | 104,219 | 20.71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98,488 | 42.36 | 117,030 | 38.65 | 146,605 | 43.21 | 163,255 | 41.00 | 205,096 | 43.83 | 230,882 | 45.89 |
| 1년 초과 3년 미만 | 45,787 | 19.69 | 66,658 | 22.01 | 82,141 | 24.21 | 72,030 | 18.09 | 72,465 | 15.49 | 100,436 | 19.96 |
| 3년 초과 5년 이하 | 13,852 | 5.96 | 15,476 | 5.11 | 12,933 | 3.81 | 9,333 | 2.34 | 12,298 | 2.63 | 16,521 | 3.28 |
| 5년 초과 | 37,097 | 15.96 | 41,240 | 13.62 | 49,337 | 14.54 | 57,754 | 14.51 | 63,164 | 13.50 | 51,093 | 10.15 |

註: 1. 은행제정 원화대출기준임.
 2. 1987년(외환은행 제외), 1991년(하나, 보람은행 제외).
 3. () 안은 전년대비증감률임.

資料: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銀行經營統計』, 各號.

들에게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장래의 대출수요 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그에 따르면 은행들은 擴張期에는 대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貸出利率의 충분한 上向調整없이 대출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顧客關係를 유지·개선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요국 은행들이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환경의 변화로 大企業들의 은행차입 축소와 직접금융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은행들이 우선적으로 기존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거래 은행을 전환할 경우 기존 決濟體系의 변경과 신규은행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한 기업경영내용이 새로운 은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하게 자금을 구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인해 거래 은행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誘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히 대형 시중은행들의 경우 주요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貸出金利를 우대하는 외에 수표결제, 월급이체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頻度를 늘리고 資金梗塞期에 주요 고객의 자금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間接金融의 比重 減少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증권관련 서비스 제공능력을 확대하여 직접금융 주선에 따른 手數料 收入과 附帶 貸出에 따른 利子收入을 도모하는 것도 한층 중요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들의 금융수요가 점차 다양화·복합화되어 감에 따라 전통적인 은행업무와 증권관련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기업고객들에게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갈 것이며,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대로 금융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子會社들과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子會社를 새로이 설립함으로써 대출제공 및 회사채

인수·중개 이외에 投資諮問, 經營諮問, 短期餘裕資金 管理(cash managemen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취급능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外換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 擴大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내·현지기업들의 국제금융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 은행들은 國際金融市場에서의 信用度가 낮고 본격적으로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기업의 海外直接投資는 投資時點에서 海外投資를 위한 資金調達 등 국제금융수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외영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運轉資金調達이나 단기자금의 운용 등 現地 金融需要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되며, 무역관련 금융업무도 일단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는 오랫동안 고객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海外支社들은 현지 금융수요 중 약 25% 정도만을 우리나라의 해외지점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1) 貸出利子率面에서 競爭力 劣位, 2) 분야별 서비스의 전문성 결여, 3) 신속한 의사결정 부족, 4) 國際金融市場의 여건변화나 新商品 도입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組織 未備, 5) 국내의 까다로운 外國換 管理規程의 적용, 6) 금융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정보 제공능력 부족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閔相基, 1990). 그러므로 해외금융수요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는 우리 기업들의 무역거래 및 해외투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수요를 외국 金融機關들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金融機關들과 거래할 때 부담해야 하는 外國費用(Foreign Costs)을 절감할 수 있는 非價格面에서의 서비스능력 향상으로 金融技法의 劣勢와 經營의 상대적 非效率性을 극복하는 것이 요

구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규모가 크거나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에 대해 해외점포망을 확대하고 이들과 국내점포와의 효율적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며, 해당 지역 및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市場情報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업무에 있어 우리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전체적인 영업계획과 그에 따른 해외자금조달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代案을 適時에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영업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은 再言을 요하지 않는다.

다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大企業들의 은행이탈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거나 大企業들에 대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은행들의 경우에는 대출대상을 家計나 有望中小企業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多數의 다른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消費者金融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企業資金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신용배분정책으로 인해 이 부문에서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며, 中小企業金融은 金融資源의 均霑配分을 위해 시행되어 온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 규정 등에 힘입어 은행의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으나, 중소기업들의 銀行借入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할 능력만 있으면,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대출심사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없었으며, 그 결과 債務不履行 危險에 대한 대응은 향후의 收益性 전망에 대한 엄격한 분석보다는 대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한 擔保를 확보하는 데 안주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일시적으로 경험한 바와 같이 은행에 餘裕資金이 생겨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銀行間 市場에서 운용하거나 有價證券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아무튼 消費者金融이나 中小企業金融에 대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경우 이들 부문으로부터의 수익률이 大企業에 대한 貸出收益率을 上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潛在需要도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은행들도 이들 부문에서의 영업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사전에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량 기업고객들에 대해 信用貸出을 확대할 경우 담보대출시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貸出審査能力을 단기간에 배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 主營業地域 내에 위치한 企業顧客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및 향후전망, 그 기업이 속하는 產業의 전반적인 收益性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기업과의 관계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반복해 나감으로써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貸出審査能力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유지될 것이나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는 기업고객들의 選好度 변화에 따라 기존 고객들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기업들과 고객 관계를 형성·강화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現 時點에서 은행-기업간에 英國·美國에서와 같은 對等關係(*arm's length relationship*)를 견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고 해서 獨逸·日本의 경우처럼 은행들이 기업들의 경영전반에 깊숙히 참여하는 體制로 바로 이행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은행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특히 與信管理의 완화추이를 보아가며 기존 거래고객의 금융수요와 기존 서비스에 대한 滿足度を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기존 거래고객들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제도상의 형식적인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主去來銀行으로서의 關係를 형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들간에 기업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한층 심화될 것이나, 기업의 設備投資에 필요한 자금규모가 大型化되어 한 은행이 전체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여 은행들간에 協助融資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構築하는 방안에도 사전에 신중한 檢討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 2 節 企業支配構造와 銀行의 役割

일국의 企業支配構造(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기업의 성장과정, 金融機關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주체인 經營者, 理事會, 株主·債權者(은행 포함), 證券市場 및 企業間市場 등의 역할관계상의 특징, 형성배경 등을 나라별로 파악하고, 특정 국가에서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기업규모가 커질 경우 외부자금 조달규모가 확대되고 공개기업의 경우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가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때 외부자금을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이 자금제공자들의 利害에 반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株主 및 債權者의 收益性を 높여 자금제공을 장려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企業支配構造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중심이 되어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銀行中心型과 市場機構에 주로 의

존하는 市場中心型의 두 형태로 크게 구분된다. 美國·英國 등 시장 중심형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株式保有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고 機關投資家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으며, 은행과 기업들은 통상적인 상업금융거래나 주식보유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 기업들은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내부자금이나 證券市場을 통해 조달하고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은 대체로 낮으며, 은행차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신용관계를 통한 은행의 영향력 행사 정도는 미미한 것이 보통이다. 기업경영은 최고경영자(측근의 내부이사 포함)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고, 一般株主가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약되며, 最高經營者의 經營成果에 대한 評價는 證券市場에서의 株價變動이나 合併·買受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情報의 非對稱性, 經營者의 戰略的 對應, M&A에 필요한 자금확보의 어려움, 政治的 規制 등으로 인해 市場機構에 의한 經營者 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批判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獨逸·日本 등 銀行中心型으로 분류되는 國家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주식분산의 정도가 시장중심형 국가에 비해 낮으며, 은행이 신용공여·기업주식 보유·임원파견 등을 통해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면서 기업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국가에서는 銀行借入을 제외한 資金調達源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은행 이외로부터의 資金調達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외부자금의 조달을 은행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貸出의 元利金 보존과 고객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거래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사전적, 사후적으로 계속 감시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은행중심구조하에서는 시장중심형 국가들의 경우보다 낮은 資金調達費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收益性이 좋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은행이 기업들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주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동 구조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은행중심형 국가들에서도 銀行借入을 대체할 수 있는 資金調達手段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證券市場의 발달이 機關投資家들의 자산구성을 이전보다 분산시키게 됨으로써 은행의 信用供與者 및 株主로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企業經營者들의 창의력 발휘를 저해할 수 있고, 兩者의 협력관계가 利害相衝을 야기하거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업지배구조에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나, 같은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에서도 은행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한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特定 構造가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Roe(1993)는 정치·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각국의 金融機關에 대한 규제를 相異하게 하며, 이로 인한 金融機關의 성격차이가 서로 다른 형태의 企業支配構造를 형성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企業들이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銀行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內部經營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介入으로 인해 은행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去來關係를 형성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게다가 기업주식의 분산 정도가 낮아 은행들이 株式保有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으며, 정부에 의한 信用割當으로 인해 經營者 監視에 대한 誘引이 축소되고

그 결과 信用供與者로서의 地位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도 그다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大企業의 직접금융에 의한 資金調達이 늘어나고 證券市場의 발달로 기업주식의 분산이 촉진되면서 機關投資家의 주식보유비중이 높아질 경우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機關投資家들이 企業經營者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金融自律化로 자금배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될 경우 은행과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의 상호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국들에서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이들 支配構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主要國 銀行의 企業株式保有와 機關投資家로서의 役割

가. 獨 逸

1991년 말 현재 독일에는 2,806개의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중 665개사만 공개되어 있을 뿐(이 중 98개사는 2부종목), 많은 기업들이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기업주식의 소유자 중 個人株主의 비중은 미미하고¹²⁾그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을 제외한 기관투자자들은 기업의 경영권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다¹³⁾.

12) 1990년 현재 독일기업의 주주구성을 보면, 회사 40.19%, 개인 15.94%, 보험회사 11.28%, 은행 9.98%, 연방 주정부 6.38%를 차지함 (Charkham, 1994, p. 26).

13) 연금기금과 보험회사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데, 이는 독일 기업들이 연금기금을 부채항목으로 하여 운전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이들 회사들은 자산의 20% 이상을 증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

독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먼저 기업내부에서의 二元的 理事會의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監督理事會(Aufsichtsrat)와 執行理事會(Vorstand)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유한회사(GmbH)의 경우 종업원수가 500명 이하일 경우에는 執行理事(managing director)만이 필요하나,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二元的 理事會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감독이사의 3분의 2는 주주대표, 3분의 1은 종업원/노조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AG)의 경우에는 반드시 監督理事會를 구성하여야 하며, 감독이사회의 구성은 종업원수가 2,000명 이하일 경우에는 500명 이상의 유한회사와 동일하나, 2,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이사회의 대표비율이 50 : 50이어야 한다. 종업원 대표 중 1명은 봉급직원, 1명은 간부임원(executive staff)이어야 하며, 理事長(chairman)은 株主代表 중에서 선출된다. 監督理事會의 권한은 법에 명시되며(분기별 회계감사, 주요 자본지출 및 전략적 매수, 해산, 집행이사 임명, 배당 승인 등), 각 항목에 대해 承認 혹은 不許만 할 수 있지 독자적인 제안은 할 수 없다. 監督理事¹⁴⁾들로 하여금 執行理事들을 감독하게 하는 유인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직접적인 이해관계(株主 혹은 貸出者 등),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의 법적인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監督理事會의 정보수집은 종업원대표는 works council을 통해, 株主 중 銀行家들은 기업·동료들로부터 하게 되며, 이러한 「채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적으로 감독이사들, 특히 理事長의 권한과 개성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에 들어서는 監督理事會의 역할이 執行理事會에 대한 자문 및 조언제공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 종업원 대표 이외의 監督理事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5년 임. 監督理事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은 영국의 非常任理事보다 상당히 적음(회동은 일년에 3, 4번하며, 비공식회의·준비모임 등도 있음).

다음, 독일 기업지배구조상 證券市場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는 정부의 非銀行金融에 대한 규제, 엄하지 않은 公示義務制度,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 重課 등이 자본시장의 주요 資金調達源으로서의 발전을 저해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간 합병이 최근에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적대적 매수는 거의 없으며, 독일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적대적 매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自社株式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에서 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獨逸에는 은행의 대출 및 자본참가의 합계가 은행자본의 18배 이내여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규정 이외에 은행의 非金融企業 株式保有를 제한하는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¹⁵⁾ 독일 겸업은행들은 직접적으로 非金融企業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¹⁶⁾. 또한 持分率이 25%에 이를 때까지는 持分率을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25%를 넘더라도 50%에 이를 때까지는 구체적 數值나 추가적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실제로 독일 3대 은행들은 많은 기업들에 대해 10~25% 범위 내에서 持分參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독일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은행이 이를 인수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해 온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은행 주식보유의 상당 부분은 도산하는 기업들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독일 은행들의 기업주식보유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0대 기업 중 독일 은

15) 단, 개별은행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보고하여야 함; 1) 개별은행이 타기업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동 주식을 처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개별은행의 持分率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3) 해당 기업에 대한 개별은행의 持分率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

16) 非金融企業이 겸업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음.

행들의 지분율이 5%가 넘는 기업수는 1972년 20개사에서 1980년 26개사, 1990년에는 33개사로 늘어났다(Roe, 1993).

둘째, 은행들은 株式의 直接所有와 함께 고객이 맡긴 株式의 議決權을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은행들이 대기업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발행주식의 5%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분을 포함하면 동 지분은 40%에 가까워진다¹⁷⁾. 은행들은 매 15개월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권한을 새로이 위임받아야 하며, 고객이 은행에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셋째, 독일 은행들은 기업의 주식 보유와 議決權의 대리행사 이외에 기업의 監督理事會에 任員을 파견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4년 독점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00대 기업의 監督理事會에 Deutsche는 39석, Dresdner는 22석, Commerz는 15석을 차지하였으며¹⁸⁾, 1990년 6월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 은행들은 100대 기업 중 96개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임원을 파견하였으며, 이 중 14개사에서는 理事長(chairman)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rkham, 1994).

이상에서 보듯이 독일 은행들은 기업주식 보유, 고객의 議決權 代理行事, 기업 監督理事會에 대한 任員 派遣 등을 통해 企業經營陣을 감시하고 그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 기업들은 외부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기업의 경영에

17) 1978년의 독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기업 중 41개 기업에서 독일 은행들의 의결권 합계가 25%를 초과하였으며, 은행들이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56개 기업에 있어 평균 의결권 비율은 거의 57%에 근접함.

18) 1989년 보고서에서는 70년대 중반에는 은행들이 100대 기업 이사회에 10%를 차지하였으나, 이 비율이 1988년에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Charkham, 1994, p. 41).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실제로 獨逸에서는 은행들이 기업들을 과다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論議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이 문제를 다룬 각종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兼業主義에 의한 은행의 기업경영에의 개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은행이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독점적 가격담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Gessler 報告書(1979. 5)는 金融機關의 보유주식을 투자기업 자본금의 25%+1株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1986년의 독점위원회에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産業資本 持分을 5%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으며, 은행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때 해당 기업이 대출을 보장받거나 발행주식의 소화를 위해 그 은행을 선호한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독일 經濟部(the Economic Ministry)는 카르텔法 제102조에 근거하여 은행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은행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은행들이 監督委員會의 참가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영업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은행과 기업간의 代理人費用을 축소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¹⁹⁾.

이러한 獨逸 主去來銀行(hausbank)들의 地位는 최근에 들어 負債의 證券化, 金融市場의 국제화, BIS의 주식보유에 대한 추가자본 보유 요구, 기업들의 내부유보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기업들의 직접금융 依存度 증가로 인해 獨逸 銀行들의 大企業에 대한 信用供與者로서의 지위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獨逸 銀行

1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arm(1992)을 참조하기 바람.

들은 株式所有와 代理議決權 行使를 통해 企業들에 대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影響力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oe, 1993). 기업들의 負債依存도가 감소하고 直接金融 依存도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공급에 따른 권한보다는 영향력 행사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측에서 보더라도 독일 기업들은 현재 기업은행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監督理事로 선임된 은행 임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主去來銀行(hausbank)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기업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利點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과의 기존 유대관계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日 本

日本の 많은 기업들은 法的으로는 독립기관이나 다른 기업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²⁰⁾. 戰前에는 재벌들이 은행과 기업들을 가족소유라는 형태로 통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나, 1949년 법인간 相互株式保有가 가능해지자 은행을 중심으로 과거에 재벌그룹에 소속되었던 기업들이 상호주식보유에 의해 새로이 기업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法人株主化 傾向은 196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의 OECD가입(1964년) 후 1966년에 1차 자본자유화계획이 시행되자 일본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의한 자본잠식을 우려한 나머지 정부주도하에 安定株主 政策을 시행하여 유동성이 큰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감소시키는 대신 유동성이 작은 法人株主의 持分을 적극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 결과 현재 金融機關과 기업이 보유

20)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1992년 현재 188개사가 계열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이 자본의 17%, 자산의 19%, 상장회사 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하는 주식의 비중이 약 70% 정도 되며, 이들 安定株主들은 그들의 투자회사와 거래를 확대하고 지위를 향상하는 데 주된 관심을 보이며, 자본이득을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높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 기업들의 경영은 會長·社長과 그들이 실질적으로 선임한 内部理事들로 구성되는 理事會가 담당하며, 경영진에 대한 감시는 主去來銀行에 의해 주로 행해지고 證券市場이나 기업간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계열 소속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영상의 간섭을 하지는 않으나, 매월 열리는 社長會에서 계열 소속 기업의 사장들이 모여 논의된 의견을 존중하며, 특히 계열기업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경우 문제 해결, 그룹의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社長の 任期는 없는 것이 보통이며, 理事들의 任期는 2년이나 대개 은퇴할 때까지 재임명된다. 理事會는 대부분 직급이 분명히 구분되는 内部理事들²¹⁾로 구성되며, 월 1회 회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金融機關들은 都市銀行을 중심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다. 독점금지법상(제11조) 銀行은 기업 자본의 5% 이상을 보유할 수 없으나, 계열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기업집단 내의 金融機關이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중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企業數의 比率(주식소유관계율)은 기업집단마다 거의 100%에 가까우며, 동일 기업집단 내의 金融機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기업수의 비율도 대개 90%를 넘고 있다. 1977년 독점금지법이 개정되어 은행의 持株制限比率이 5%(보험회사는 10%)로 낮춰진 이후 金融機關들의 동일기업집단 소속 기업주식의 평균

21) 理事들은 실질적으로 최고경영자에 의해 선출되어 株主總會의 선임과정을 거침.

보유비율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기업집단 전체의 平均持株率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²²⁾. 일본의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보통 대기업 주식의 20% 정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지난 2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Roe, 1993). 한편, 계열기업그룹 이외의 주식 상호보유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주식을 보유하는 비용이 높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기업집단에 소속된 金融機關들은 계열기업 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면서 또한 계열기업에 대한 주요 信用供給者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차대전 이후 일본의 산업자금 공급에 있어서는 민간 金融機關 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른바 間接金融構造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은행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도시은행들은 주식의 상호보유, 자금의 主供給者로서의地位 이외에 기업들에 은행임원을 파견(出向)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1989년 현재 6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49.5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동일 기업집단 내의 도시은행으로부터의 임원 파견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일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임원 중 도시은행으로부터 파견된 임원의 비율이 51.6%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社當 파견인수는 0.77명으로 많지 않고, 金融機關을 중심으로 한 人的關係의 정도도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며, 同關係의強度를 표시하는 은행의 파견 회사비율이나 파견 임원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된 임원은 대부분 재무담당이사로 근

22) 1989년(1981년) 현재 금융기관별 6대 기업집단 平均 持株率은 都市銀行 4.3%(5.1%), 生保 4.1%(4.3%), 信託銀行 2.7%(2.7%), 損保 1.9%(2.1%)의 順으로 되어 있음.

무하면서 결정된 투자의 재원을 조달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영 전체(사업전략, 투자결정, 인사 등)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の 이와 같은 主去來銀行을 중심으로 한 企業支配構造는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들에 신용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을 감시·규제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에 필요한 대단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産業構造調整이나 企業의 構造改編이 필요한 경우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株式의 相互保有에 의한 安定株主의 존재는 기업 경영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임기간이 긴 대형 프로젝트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기업집단의 결속력 약화와 함께 大企業들의 直接金融 依存度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이 신용공여를 통해 동일 계열 소속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본의 主去來銀行制度는 복수기업이 다수의 都市銀行들과 거래를 하는 中心銀行體制(core bank system)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Aoki et al., 1993). 信用供給者로서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일본 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임원 파견을 늘리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大株主로서의 의견개진을 강화하는 등 金融機關들이 주식보유를 토대로 한 기업경영 참여를 늘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신용공여를 통한 은행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주식보유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통한 기업경영 참여의 폭은 여전히 큰 것과 비교할 때, 의결권의 대리행사권이 없는 일본 은행들이 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相互株式保有 차원에서 벗어나 安定株主로서 기업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 美 國

19세기 말부터 美國 企業들은 대량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등 산업화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내부유보와 자본시장에서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의 직접금융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은 市場機構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一般 投資者들의 주식구성과 기업경영자들의 투자선택이 기업의 단기수익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존재하여 왔다. 미국 기업들의 最高經營者(CEO)들은 理事들의 선임에 직접 간여하며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株主들에 대한 경영정보 전달은 충분하지 못하다. 株主들은 투자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그 원인을 찾아내고 경영진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주식을 매각하는 경향이 있다.

企業들의 理事會는 주로 內部理事들로 구성되고 일년에 6, 7회 정도 회합(金融機關이나 大企業의 理事會는 일년에 9회 정도 회합)을 가짐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기업의 上場條件으로 外部理事로 구성되는 監査委員會(audit committee)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근에는 外部理事들의 數가 늘어나고 있다²³⁾. 外部理事가 반드시 독립적인 것은 아니나(예: 변호사들은 비독립적 외부이사임), 최근에 들어 그들의 독립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에서 理事選任에 대한 CEO의 영향력을 줄이고 선임을 보다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선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상위원회, 집행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理事會 내부에 둬으로써 理事會 機能을 활성화하고 外部理事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23) 한 조사에서는 製造業體 理事會의 86%, 여타 기업의 91%에서 外部理事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Charkham, 1994, p. 188).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하에서 경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銀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1933년에 제정된 銀行法(Glass-Steagall Act)은 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투자 은행과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銀行持株會社法(1956)은 銀行持株會社가 은행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持分을 경영지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즉, 관련회사는 非銀行企業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5%를 넘지 않는 주식보유도 수동적인 목적(자산구성의 분산)에 국한된다. 또한 信託業法은 은행의 信託部가 한 기업에 운용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식보유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다른 규정들은 信託部가 다른 機關投資家들과 조화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기업주식보유에 대한 規制 이외에도 美國 銀行들은 州間 業務 規制, 非金融業務 취급 규제, 투자은행·보험·기금과의 결합억제, 다른 金融機關과의 주식 상호보유 규제 등에 따라 獨逸이나 日本의 銀行보다 규모가 작으며, 기업에 대한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Roe, 1993). 경제발전으로 기업의 활동범위는 美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은행들은 遠距離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어 이들 기업의 短期 기업어음(CP)을 수동적으로 매입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상대적인 소규모는 미국 은행들이 신탁계정을 통해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의 자본 증대를 저해함으로써 은행의 주식투자능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Fitch and Oppenheimer(1970)나 Kotz(1978) 등은 大型 銀行의 信託部가 大企業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해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은행의 기

업지배 여부에 관한 議會의 각종 위원회 보고서들도 대형 은행들이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²⁴⁾. Patman Report(1966)에 의하면, 은행 신탁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에 투자되는데, 8개 금융자본그룹에 속하는 대은행들이 신탁자산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신탁업무의 대은행으로의 집중이 일반 은행업무의 집중보다 더 진척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Metcalf Report(1974~78)도 대형은행을 비롯한 機關投資家들이 투자선인 회사의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 중역 파견, 회사측 간부 직원과의 협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중역겸임을 통한 人的 結合關係를 맺고 있는 은행과 기업의 대부분(약 85%)의 경우 은행은 신탁부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도 보유함으로써 持株關係와 融資關係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E. S. Herman(1981)은 대형은행의 機關大株主로서의 地位는 중요한 貸出者로서의 영향력을 보완하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은행의 이러한 지위는 기업을 지배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관계기업의 일부 의사 결정영역에 대해 부분적, 잠재적 지배력(latent power)이나 억지력(power to constrain)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은행이 기업에 중역을 파견하는 것은 은행과 기업간의 상업은행 업무를 통한 거래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銀行 信託部의 주식 소유에 기초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았다.

美國 銀行들이 신탁계정을 통한 기업주식보유에 의해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 관련되는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美國에서의 機關投資家 持株比率는 1956년 말의 24.5%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76년 말에는

24) 미국에서의 은행의 기업지배에 관한 각종 논문과 위원회보고서들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松井和夫(1986)를 참조하기 바람.

39.7%, 1990년에는 주식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Roe, 1993). 이 중 은행신탁의 점유율은 9.2% 정도이며, 연금기금이 28.2%, 「뮤추얼 펀드」가 7.2%, 보험회사가 6.9%를 차지하고 있다²⁵⁾. 그러나 25대 기업 주식만을 고려할 경우 기관투자가분 45.92% 중 은행이 17.1%로 가장 높으며, 투자회사 16.54%, 公的 基金 등 5.31%, 보험회사 2.32%의 순으로 되어 있다(Charkham, 1994). 美國의 機關投資家들은 위험분산을 위해 주식보유를 다수의 기업에 과도할 정도로 분산하도록 유도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25대 기관투자가들이 평균적으로 25대 기업 주식의 16%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일의 3대 은행이 40%, 일본의 5대 은행이 20%를 투표하는 것보다는 美國 機關投資家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에서는 金融機關에 대한 불신과 금융의 산업지배에 대한 우려 때문에 機關投資家들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는 많은 증권관계 규정들이 존재한다. 즉,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은 한 기업의 株主들이 10명까지 모여 회사에 관해 論議를 할 수는 있으나, 持分率 5% 이상의 大株主들이 회합을 할 경우 公示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러한 회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3, 14조는 한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취득하는 者는 SEC에 매수 의도, 持分率, 자금출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제20조는 持分保有를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株主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金融機關이 그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규정이 貸出者들로 하여금 거래기업의

25) 1990년 현재 연금기금은 자산의 38.6%, 상호기금은 23.0%, 보험회사는 9.1%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Charkham, 1994, pp. 204~5).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銀行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州間 營業規制로 大企業 顧客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데다 大企業들의 信用度가 은행들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들의 도움 없이도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 銀行의 地位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은행들이 대출을 증권화하거나 協力融資(syndicated loans)를 늘릴 경우 신용공여를 매개로 한 기존의 관계마저 더욱 약화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금융환경변화로 金融機關間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銀行과 企業間的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D. P. Morgan(1993)은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조건에 관한 자세한 규정(detailed covenants)을 명시하거나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monitoring)를 하는 것이 經營者에 의한 代理人 問題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특히 투자은행)들은 LBO나 기업매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였는데,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새로운 경영진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된 잠재적 영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미국의 경우 은행을 포함한 機關投資家の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이 獨逸이나 日本에 비해 미약한 수준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감시기능을 대체하는 주된 수단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經營者에 대한 報償과 연결시키는 각종 방안들과 市場 機構에 의한 압력 및 企業買受이며, 株主들의 委任權 競爭(proxy process)에 의해 理事會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특히 敵對的 企業買受(hostile take-over)는 1960년대에 무능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게 환영을 받았으며, 企業買受의 件數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은 株主들의 利害를 무시해서

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²⁶⁾. 그러나 企業買受에는 無賃乘車 (free rider) 問題가 존재하고 비밀리에 이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으며²⁷⁾, 企業매수시에 대부분의 株主들은 경영진의 資質보다는 그들이 받게 되는 「프리미엄」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企業買受의 위험만으로 經營者에 의한 代理人 問題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企業買受는 경영진의 교체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최근에는 경영자들이 企業買受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수단들²⁸⁾을 개발함으로써 企業買受의 經營者 監視機能이 약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라. 英 國

英國에서는 19세기 중반까지 무역업자나 동반자(partnerships, 때로는 가족)에 의해 경영되는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철도 등 公企業들이 주식을 공모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말 현재 공개된 株式會社 (Public Limited Company, PLC)의 수는 약 2,000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들 주식회사 주식의 3분의 2 정도를 機關投資家들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경영권문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뿐만 아니라 機關投資家들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1986년의 Financial Services Act는 상호

26) 기업 매수액은 1975년 120억달러에서 1988년에는 2,680억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junk bond 시장의 침체와 매수에 필요한 신용의 부족 등으로 인해 1991년에는 1,00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다(Charkham, 1994, p. 215).

27) 주식거래법 제13조(d)(1)은 持分率이 5%를 초과할 경우 10일 이내에 SEC에 신분과 買集意圖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持分率이 1% 이상 변할 때마다 혹은 의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28) Poison Pills, Crown Jewels, Supermajority Provision, Golden Parachute, White Knight 등이 있음.

기금(unit trusts)이 기업통제를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內部者去來法은 株主가 대량의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英國 稅法이 단체저축(특히 연금기금)을 우대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대단히 높지만, 年金基金들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한 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는 자산의 2% 이하, 많아 야 5%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株主가 CEO나 理事會構成을 경질하는데 직접 개입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理事會가 株主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도 미미하다. 기업법상 2명 이상의 理事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常任과 非常任理事, 理事長은 법상의 구분이 아니며, 理事의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규정도 없다. Cadbury Code가 상장기업은 적어도 3명의 非常任理事로 구성된 監査委員會를 가지도록 의무화하고 PRO NED라는 조직이 非常任理事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 데 힘입어 理事會에서 非常任理事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非常任理事들은 常任理事보다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훨씬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常任理事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어 助言者·意思決定者·監視者로서의 복합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 銀行의 非金融企業에 대한 持分參加를 제약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은행의 非金融企業에 대한 자본참가는 없으며, 일부 기업에 대한 持分保有는 同 企業에 대한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감독당국이 건전경영감독상의 이유로 은행들로 하여금 기업주식을 상당량 보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은행

29) 비금융기업 주식보유가 은행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영란은행에

들도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기업주식의 보유를 비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객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英國 企業들 또한 은행의 압력이나 간섭을 대단히 싫어하며 다른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은행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信用供與者로서의 은행의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英國 企業들의 이러한 경향은 내부유보가 가장 중요한 資金調達源이었고 영국이 전통적으로 高金利 國家였기 때문에 은행차입이 매력적인 資金調達手段이 되지 못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法人稅의 지속적인 인하와 景氣沈滯에 따른 자금난으로 英國 企業들은 은행차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英國 企業支配構造上 은행의 역할은 구제금융제공시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대신 기업 경영자를 견제하는 기능은 美國과 마찬가지로 證券市場에서의 株價變動이나 기업간 시장에서의 企業買受가 담당하고 있다. 株主들이 短期成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英國의 기업경영자들은 短期成果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의 보수를 경영성과에 연동하는 정도가 美國보다도 훨씬 높다. 企業買受는 1950년대에 시작되어 1960년대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198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³⁰⁾. 하지만 많은 경우 합병이나 기업매수 후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企業買受에 대한 두려움이 經營者로 하여금 위험부담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批判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하여야 하며, 20% 초과시는 은행 자기자본에서 공제되고, 20% 미만일 때는 가중치가 100% 적용됨.

30) 1970년에는 614건의 M&A에 시가총액의 2.3%에 해당하는 10억파운드, 1988년에는 937건에 시가총액의 4.2%인 168.7억파운드가 거래됨.

2. 機關投資家로서의 銀行의 役割 提高方向

가. 現行 企業支配構造와 銀行役割 提高의 必要性

이상의 論議로부터 우리는 銀行들이 大株主의 자격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정도가 銀行의 非金融企業 株式 保有에 대한 정부의 規制, 企業株式 保有의 分散 程度, 證券市場의 발달 정도(銀行借入에의 依存度), 議決權의 대리행사 가능여부, 기업 最高經營者의 지위 등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은행들이 機關投資家로서 기업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상의 요인들이 현재 은행들의 기업주식 보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요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表 3-37>에서 企業株式의 所有者 構成을 살펴보면 은행을 비롯한 金融機關들의 持分 合計는 1980년대 중반의 14% 내외 수준에서 1990년 이후 정부의 證市對策에 대한 호응 혹은 收益源의 다변화를 위한 주식 보유가 늘어남에 따라 30% 정도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金融機關 및 基金들의 주식보유비중이 미국 45.5%, 일본 45.7%, 영국은 62.7%(1992년)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³¹⁾, 우리 金融機關들의 주식보유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로는 은행의 보유비중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1993년 현재 11.6%로 金融機關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투자신탁의 비중은 1990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증권 및 보험사들은 1990년대에 들어 각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個人의 주식보유 비중은 1980년의 56.9%에서 1988년에는

31) 崔運烈(1994), <表 2> ~ <表 4> 참조.

〈表 3-37〉 企業株式의 所有者 構成 推移

(單位: %)

| | 1975 | 1980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機關合計 | 32.13 | 27.55 | 44.44 | 44.40 | 34.22 | 32.95 | 31.43 | 46.11 | 46.77 | 50.96 | 49.87 |
| 銀行 | 8.14 | 5.92 | 7.09 | 7.04 | 5.61 | 6.52 | 3.15 | 6.26 | 8.55 | 8.77 | 11.55 |
| 證券 | 6.29 | 2.24 | 7.35 | 6.72 | 2.63 | 3.14 | 5.07 | 5.36 | 5.56 | 5.80 | 5.32 |
| 投信 | - | - | - | 0.76 | 0.77 | 0.53 | 2.67 | 9.34 | 8.53 | 8.09 | 6.64 |
| 保險 | - | - | - | 4.98 | 4.41 | 4.02 | 2.60 | 6.28 | 6.34 | 6.67 | 6.50 |
| 短資·信用金庫 | - | - | - | 0.37 | 0.39 | 0.11 | 0.09 | 0.88 | 0.61 | 0.72 | 0.63 |
| 其他法人 | 17.70 | 19.39 | 30.00 | 24.53 | 20.41 | 18.63 | 17.85 | 17.99 | 17.18 | 20.91 | 19.23 |
| 個人 | 52.93 | 56.91 | 52.48 | 52.43 | 62.35 | 62.96 | 54.62 | 51.63 | 50.24 | 44.57 | 41.26 |
| 政府 및 政府管理業體 | 13.90 | 14.45 | 0.41 | 0.15 | 0.12 | 1.40 | 11.84 | 0.12 | 0.10 | 0.03 | 0.02 |
| 外國人 | 1.04 | 1.99 | 2.63 | 3.01 | 3.31 | 2.69 | 2.13 | 1.97 | 2.89 | 4.43 | 8.83 |
| 合計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註: 1990년부터는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주식 제외.
 資料: 韓國證券去來所, 『株式』, 1994. 6.

63.0%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3년에는 41.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個人과 非金融 其他法人의 비중 합계는 1980년의 76.3%에서 1987년에는 82.8%에 이르렀으며, 이후의 하락세로 1993년에는 60.5%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 기업들의 株式은 金融機關보다는 개인과 사업법인에 의해 보유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上場企業의 大株主 1人 持分率(國民株 除外)이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993년 현재 15.0%에 달하고 있고³²⁾ 系列社 持分을 포함할 경우 同 數值가 이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 개인 및 사업법인에 의한 주식보유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식보유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30

32) 國民株를 포함할 경우에도 大株主 1人 持分率은 1990년 26.5%, 1991년 24.5%, 1992년 23.0%, 1993년 22.0%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株式』, 1994. 4, 참조).

〈表 3-38〉 30大 大規模 企業集團의 株式所有構造(1994年 4月 1日 現在)

(單位: %)

| | 內 部 持 分 率 | | | | 自 己 資 本 比 率 ¹⁾ | 公 開 比 率 | |
|-------------|-----------|---------|-----------|------|------------------------------|---------|-------|
| | 同 一 人 | 系 列 會 社 | 特 殊 關 係 人 | 計 | | 會 社 數 | 資 本 金 |
| 5大 企業集團 平均 | 3.3 | 38.5 | 5.8 | 47.5 | 24.4 | 26.4 | 52.0 |
| 10大 企業集團 平均 | 3.2 | 34.6 | 5.0 | 42.8 | 23.7 | 27.2 | 54.2 |
| 30大 企業集團 平均 | 4.2 | 33.1 | 5.5 | 42.7 | 22.2 | 26.6 | 56.8 |

註: 1) 金融·保險 除外

資料: 公正去來委員會

大(5大) 大規模 企業集團의 內部持分率は 최근에 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1994년 4월 1일 현재 42.7%(47.5%)나 되며, 이 중 系列會社의 持分率が 33.1%(38.5%)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일인 大株主의 持分率は 3~4%에 불과하나 동일인의 영향력하에 있는 계열회사들의 지분율을 포함할 경우 母會社의 동일 大株主가 母會社 및 系列會社들의 기업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0大 企業集團의 公開比率는 資本金基準으로는 56.8%에 이르고 있으나, 會社數基準으로는 전체 616개 계열사 중 164社만이 공개됨으로써 26.6%에 그치고 있어 규모가 큰 계열사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계열회사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企業들의 經營權 創出이 소수의 大株主들(창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이 스스로의 持分 혹은 系列會社들의 持分 保有를 통해 경영전반을 지배하는 형태를 취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³³⁾. 내부관계자의 持分率이 높아 기업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경우 그만큼 代理人 問題가 발생할 소지가 축소되어 所有主-經營者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33)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鄭光善(1994)을 참조하기 바람.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經營者의 그릇된 판단을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기업내부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경영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또한 大株主가 위험부담을 기피할 경우 非關聯多角化를 확대하거나 技術開發 및 高危險事業에 대한 投資를 회피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個人 大株主가 경영을 지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企業에서도 大株主 經營者에게 경영에 관한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독립적인 內部統制裝置(예: 理事會, 株主協議會 등)나 外部機構(예: 去來 金融機關, 諮問委員會 등)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규모 확대에 소요되는 投資財源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시 金融機關 借入 이외에 株式發行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公開나 增資가 늘어날 경우 同一人 大株主의 持分率은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며, 相續·贈與稅制의 강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의 出資總額限度를 현행 純資產의 40%에서 25%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系列社間의 相互出資도 향후 축소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오랫동안 우리 기업들을 지배하여 왔던 所有主-經營者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확대되는 만큼 代理人問題의 축소가 企業支配構造上의 중요한 課題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鄭光善(1994)이 지적한 대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敵對的 企業買受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企業買受에 대한 法的 規制도 상존하고 있어 현재 大株主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들이 계속 經營權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外部株主의 比重이 높아질수록 內部 大株主의 경영방침이 대다수 株主들이 바라는 방향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이를 시정하려는 시

도가 늘어날 것이며, 이때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試圖들이 효율적으로 기업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들의 내부에서 最高經營者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內部株主들의 持分率이 경영을 지배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外部株主들이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데다, 대부분의 少額株主들은 경영개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議決權을 代理行使하는 실질적인 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소액주주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연례적으로 열리는 株主總會는 執行部의 의견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企業支配構造의 형태에 관계없이 일반 株主들이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경영자를 겸하고 있는 大株主의 持分率이 높아 일반 株主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지극히 제한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商法上 理事會는 株主總會에서 선임되는 임기 3년 미만의 理事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理事의 職務 집행 감독과 지배인의 任免,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대한 결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理事들의 대부분은 내부인사 중에서 선임되며, 선임과정에서도 株主들보다는 最高經營者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최고경영자를 견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 결과 理事會는 의사결정기구나 경영감독기구라기보다는 大株主 經營者의 경영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4년의 商法 改正으로 지위가 강화된 監事도 理事와의 교체임명 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經營者의 先任 介入 등에 따라 理事會와 대등한 입장에서 회계감사 및 업무집행감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기업 내부에서 大株主 經營者를 견제할 수 없을 경우 경영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외부에서라도 그러한 압력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우리의 경우 證券市場의 未發達로 公開企業數가 적고 株價가 經濟外的인 要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價格機構를 통한 經營者 牽制가 용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經營權 喪失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議決權 있는 株式의 大量保有를 제한함으로써 企業引受를 통한 經營陣 交替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⁴⁾.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의 경우 大株主 經營者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나 기업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 30년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기업들은 운영 및 확장에 필요한 資金의 대부분을 金融機關 借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與信管理制度와 主去來銀行制度를 통해 기업들의 주요 사업계획들을 간접적인 통제하에 둬으로써 大株主 經營者의 독점적인 經營權 行使에 따른 弊害를 줄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構造 또한 複雜·多岐化됨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기업들의 활동을 주도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민간부문 스스로 구축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與信管理 등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규제들을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경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해 나

34) 1994년 1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同法 200條는 上場 당시의 大株主 이외에는 의결권부 주식 발행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단,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식, 상장 당시 持分率 10% 이상 大株主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합계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함. 이 규정은 법개정에 따라 1997년부터는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변경됨.

같은 경우 政府의 經營監視者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市場機構에 의한 經營者 牽制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表 3-39〉 證券市場規模의 國際比較(1993年 現在)

(單位：個社, 10億달러)

| | 上場會社數 | 時價總額 | 株式去來代金 | 增資 |
|-----|-------|---------|---------|-------|
| 美 國 | 9,852 | 8,993.8 | 3,789.9 | 134.0 |
| 獨 逸 | 664 | 460.8 | 578.9 | 8.7 |
| 英 國 | 1,927 | 1,198.6 | 423.2 | 26.2 |
| 日 本 | 1,667 | 2,906.3 | 792.0 | 7.4 |
| 韓 國 | 693 | 139.6 | 211.9 | 3.7 |

註：외국회사를 포함한 數值임.

資料：韓國證券去來所, 『株式』, 1994. 6., pp. 67~71.

우리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證券市場이나 企業間市場의 존재가 企業經營者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表 3-39〉에서 보듯이 우리 證券市場의 규모는 그 동안의 量的 擴大에도 불구하고 시장중심형인 영국·미국은 물론 證券市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獨逸이나 日本에 비해서도 상당히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주식거래자들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초한 長期投資보다는 讓渡差益을 노린 短期去來에 과도할 정도로 치중하고 있으며, 市場 자체에도 내부자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경영정보의 公示體系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證券市場이 발달되어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證券市場이나 기업간시장의 존재가 기업의 不實化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보다는 문제가 상당히 진척된 후에야 이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경영진 교체에 드는 비용이 내부통제기구의 경우보다 높으며, 經營者로 하여금 단기수익을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취하도록 함으로

써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市場中心型 國家에서의 企業支配構造 形態로 전환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한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企業의 公開 및 增資가 늘어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의 內部持分率이 지금보다 상당히 낮아지거나 1997년부터 주식의 대량보유에 대한 제한이 예정대로 철폐될 경우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일부 기업의 公開買受 시도 등을 볼 때 이러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아무튼 市場으로부터의 압력이 經營者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 限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不均衡을 시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證券市場에서 기업가치가 株價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情報公示體系를 확립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함과 함께 企業間市場이 무능력한 經營者를 교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規制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내부에 있어서는 大株主들의 意思가 經營者에게 전달될 수 있는 通路를 마련함으로써 經營者와 株主間의 利害上의 差異를 줄이는 한편, 理事會에 外部人士를 영입함으로써 理事會가 經營者와 독립적으로 기업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常勤 與否에 관계없이 理事의 選任에 최고경영자가 간여를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理事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경영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업무감독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誘引이 크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理事會가 최고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

다는 批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와 같이 知名度가 있는 外部理事의 비중을 높여 理事會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理事의 선임에 經營者가 간여하는 정도를 축소할 경우 지배적인 經營者가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영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理事會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지배구조상 理事會와 市場의 役割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本 報告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大株主로 있는 機關投資家들이 어느 정도 경영에 개입하는가에 따라 企業支配構造가 구분됨을 고려하여 機關投資家, 그 중에서도 특히 銀行이 기업지배구조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市場中心型 國家에서는 은행이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法的인 規制로 인해 어렵거나 이 부문에 대한 은행의 관심이 적어 은행의 경영참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銀行中心型 國家에서는 은행이 주식보유 및 임원 파견 등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투자 및 資金調達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금융환경변화로 인해 두 形態의 실질적인 差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시장중심형 국가에서의 기업지배구조를 지향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기업들이 資金調達을 銀行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율화로 야기될 수 있는 經營者의 少額株主들에 대한 代理人 問題의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銀行들이 기관투자가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은행의 입장에서조차 전통적인 銀行市場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非銀行業務(특히 證券業務)에의 진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이 기업들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證券

市場의 機關化 現象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機關投資家들의 주식보유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이 기업지배구조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銀行의 機關投資家로서의 役割 提高方案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은행들의 주식보유에 대한 法的 規制를 살펴보면, 은행들이 株式 또는 만기 3년 이상의 社債 및 기타 유가증권(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제외)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어 있으며³⁵⁾(은행법 제22조), 또한 타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매입하거나 항구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은행법 제27조 ①). 신탁자금의 경우에도 특정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불특정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제외)의 경우 주식의 매입·인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전월 평균수탁금액의 25% 이내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의 배경에는 은행들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은행자산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은행들이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하에서 우리 은행들이 기업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가를 <表 3-40> 및 <表 3-41>을 통해 살펴보면, 시중은행들은 1994년 6월 말 현재 은행계정 총자산의 13.6%를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株式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의 3%에 달하고 있다. 1985년에 1% 수준에 머물러 있던 주식보유비중은 1980년대 말의 證市 好況期에 1.8%까지 오른 후 비슷한 수준을 유

35) 1991년 12월 31일 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同 限度가 금융기관 요구불예금의 25% 이내였음.

지하여 오다 1993년 중반 이후 證券市場이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規制對象 有價證券의 自己資本對比 比率은 은행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6대 은행을 제외한 여타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40%를 밑돌고 있으나, 6대 시중은행의 비율은 50.1~97.9%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同 比率이 90%를 넘고 있어 주식보유를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반면 신탁계정에서는 시중은행들이 1989년에는 신탁자산의 9.1%를 株式의 형태로 보유하였으나, 이후 同 比重이 점차 하락하여 1993년에는 4.7%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은행들이 資金調達費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탁자금을 收益性이 불확실한 株式보다는 CP, 어음 등 단기 高收益性 상품에 운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4년 12월 말 현재 대형 시중은행들이 持分率 5% 이상의 大株主로 있는 企業數는 제일은행이 7個社로 가장 많고 서울신탁은행 5個社(이 중 2個社에서는 10% 이상 보유),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3個社와 2個社였으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경우에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은행들이 최근에 들어 株式 보유를 주된 자금운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주식투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얻고 있으나, 이들 은행이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議決權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설령 은행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더라도 持分率이 大株主 經營者에 비해 크게 낮아 주식보유 자체가 영향력의 근원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銀行들이 기업지배보다는 단지 收益獲得을 목표로 企業株式을 보유하고 있고 개별기업에서의 주식보유비중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表 3-40〉 市中銀行 銀行計定 有價證券 保有 現況(末殘基準)

(單位：億원, %)

| | 1980 | 1985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6 |
|--------|--------------------|--------------------|--------------------|--------------------|--------------------|--------------------|----------------------|----------------------|----------------------|----------------------|
| 國公債 | 3,762 (2.9) | 10,526 (3.1) | 21,440 (3.7) | 26,104 (4.0) | 32,239 (4.2) | 29,754 (3.0) | 35,393 (3.1) | 50,549 (3.9) | 68,637 (4.9) | 68,086 (4.5) |
| (連安證券) | - | 1,452 (0.4) | 9,736 (1.7) | 10,764 (1.6) | 14,783 (1.9) | 6,485 (0.7) | 9,142 (0.8) | 30,590 (2.4) | 43,629 (3.1) | 41,083 (2.7) |
| 株式 | 2,365 (1.8) | 3,448 (1.0) | 5,574 (1.0) | 9,625 (1.5) | 13,490 (1.8) | 15,908 (1.6) | 18,429 (1.6) | 23,304 (1.8) | 31,745 (2.3) | 45,567 (3.0) |
| 社債 | 572 (0.4) | 3,373 (1.0) | 3,129 (0.5) | 3,035 (0.5) | 6,883 (0.9) | 26,054 (2.6) | 36,834 (3.2) | 27,289 (2.1) | 25,234 (1.8) | 26,416 (1.7) |
| 外貨證券 | 131 (0.1) | 7,223 (2.1) | 22,763 (3.9) | 24,766 (3.8) | 27,937 (3.6) | 31,752 (3.2) | 32,286 (2.8) | 34,338 (2.7) | 42,847 (3.0) | 55,636 (3.7) |
| 其他 | - | - | 1,155 (0.2) | 1,155 (0.2) | 1,161 (0.2) | 10,288 (1.0) | 10,444 (0.9) | 12,529 (1.0) | 16,591 (1.2) | 11,566 (0.8) |
| 合計 | 6,830 (5.2) | 24,570 (7.3) | 54,061 (9.4) | 64,685 (9.8) | 81,710 (10.6) | 113,756 (11.6) | 133,386 (11.6) | 148,009 (11.5) | 185,053 (13.1) | 207,271 (13.6) |
| 資産總計 | 131,402 (100.0) | 336,657 (100.0) | 577,283 (100.0) | 658,985 (100.0) | 768,258 (100.0) | 983,960 (100.0) | 1,148,148 (100.0) | 1,285,530 (100.0) | 1,409,758 (100.0) | 1,523,525 (100.0) |

註：() 안의 수치는 자산대비 구성비,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資料：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各號.

〈表 3-41〉 市中銀行 信託計定 有價證券 保有 現況(末殘基準)

(單位：億圓，%)

| | 1985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國公債 | 1,254 (3.8) | 20,285 (25.9) | 41,814 (34.4) | 48,470 (27.8) | 49,932 (22.1) | 47,704 (16.8) | 50,609 (12.1) | 65,585 (10.8) |
| (通安證券) | — | — | 27,595 (22.7) | 28,185 (16.2) | 19,862 (8.8) | 15,765 (5.5) | 16,616 (4.0) | 34,836 (5.7) |
| 株式 | 610 (1.9) | 2,020 (2.6) | 6,132 (5.1) | 15,811 (9.1) | 19,837 (8.8) | 18,553 (6.5) | 21,872 (5.2) | 28,652 (4.7) |
| 社債 | 1,651 (5.0) | 3,033 (3.9) | 6,920 (5.7) | 13,515 (7.7) | 33,411 (14.8) | 45,085 (15.9) | 68,731 (16.4) | 80,231 (13.1) |
| 其他 | 1,916 (5.8) | 8,227 (10.4) | 13,658 (11.2) | 21,210 (12.2) | 17,881 (7.9) | 22,069 (7.8) | 54,182 (12.9) | 190,277 (31.1) |
| 合計 | 5,431 (16.5) | 33,565 (42.8) | 68,524 (56.4) | 99,006 (56.8) | 121,061 (53.7) | 133,411 (47.0) | 195,394 (46.6) | 364,744 (59.6) |
| 資產總計 | 32,891 (100.0) | 78,346 (100.0) | 121,381 (100.0) | 174,456 (100.0) | 225,296 (100.0) | 284,095 (100.0) | 419,276 (100.0) | 611,637 (100.0) |
| | | | <106.1> | <15.9> | <3.0> | <-4.5> | <6.1> | <29.6> |
| | | | <203.6> | <157.8> | <25.5> | <-6.5> | <17.9> | <31.0> |
| | | | <128.2> | <95.3> | <147.2> | <34.9> | <52.4> | <16.7> |
| | | | <66.0> | <55.3> | <-15.7> | <23.4> | <145.5> | <251.2> |
| | | | <104.2> | <44.5> | <22.3> | <10.2> | <46.5> | <86.7> |
| | | | <54.9> | <43.7> | <29.1> | <26.1> | <47.6> | <45.9> |

註：() 안의 수치는 자산대비 구성비,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資料：韓國銀行, 『銀行經營統計』, 各號.

은행들의 企業 監視者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이 특정 기업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誘引과 기업들이 은행의 경영간여를 받아들일 誘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은행이 대출만을 제공할 경우에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만 관심을 갖게 되므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가능한 한 위험이 적은 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할 것인 반면, 經營者는 부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은행이 신용공여없이 주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時價에 해당하는 유한책임만 지게 되므로 기업에 대해 위험이 크더라도 收益性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할 것이나, 企業 經營者는 자신의 지위보장을 위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와 같은 所有者와 債權者間的 대리인문제와 經營者와 株主間的 대리인문제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기업경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誘引을 갖게 된다.

다음, 기업 大株主 經營者의 입장에서는 經營權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持分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資金調達에 애로가 없다면 은행의 경영개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 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향후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유동성 제약을 줄이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 운영 및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간에 신용공여를 매개로 한 고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은행이 해당 기업의 安定株主로 있을 경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둘 경우 특히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은행으로부터 긴급지원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機關投資家들이 安定株主로 있게 될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단기 경영성과에 집착함이 없이 전망이 좋은 대규

모 프로젝트에도 장기적 收益性을 근거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 확대를 위해 增資를 추진함에 따라 소유주-경영자의 持分率이 점차 낮아질 경우 敵對的 企業引受의 위협하에 놓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이러한 위협을 사전에 축소하기 위해 은행에 一定持分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주도록 요청할 誘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收益性에 관계없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각오가 필요하다³⁶⁾. 더구나 銀行資金의 성격상 단기로 조달한 운용자금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 특정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 묶어 두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은행이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법상의 유가증권 보유 제한으로 인해 주식보유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의 영향력이 강한 獨逸의 경우 단일 은행의 특정 기업 주식보유비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企業에 대한 任員 派遣과 顧客株式 議決權의 代理行使를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볼 때, 持分率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역할 증대가 힘들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들은 預貸마진의 축소에 따른 收益性 악화를 補填하기 위해 株式投資의 收益性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할 것이며,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주식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手數料 收入을 추구할 필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株式投資를 확대할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

36) 一例로 일본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은 낮은 배당에도 불구하고 동일 계열소속 기업들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왔으나,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로 주식보유의 비용이 높아지자, 1993년에는 前年の 2배가 넘는 2조 1,480억엔, 1994년 8월까지 1조 5,500억엔의 계열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등 그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음(*Financial Times*, November 30, 1994, p. 13).

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收益性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렇게 하여 수집된 정보는 利害相衝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주식보유 확대는 持分率 提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력 증대 이외에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은행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은행의 경영개입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企業株式 保有의 확대와 아울러 은행들이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保有株式의 議決權 行使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은행이 특정기업에 대한 持分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子會社를 통한 證券業 進出이 늘어날 경우 多數 顧客의 議決權을 代理行使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추구할 수도 있다. 議決權의 代理行使에 의한 기업경영 참여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證券去來法(제199조)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한 규정을 機關投資家들의 惡用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현 상황에서는 獨逸의 議決權 代理行使制度(Proxy Voting System)가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에 주식을 위탁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앞에서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經營者 牽制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理事會에 유능한 外部人士가 참여할 수 있는 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외국의 예에서도 은행임원들이 企業 理事會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인 점을 고려하여 은행과 기업간에 자율적인 유대관계를 형성·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銀行任員의 企業 理事會 파견을 늘리는 것도 은행의 기업에 대한 잠

재적인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용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은행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은행임원이나 소속 은행으로부터 經營諮問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식을 보유하는 주체로 個人보다는 機關投資家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하에서 은행과 기업간에 존재하는 信用供與를 매개로 한 顧客關係를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은행들이 기업주식 보유를 확대하고 은행 및 고객 보유 주식의 議決權을 행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에 임원과견을 늘려 은행-기업간의 情報不均衡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현재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상 내부로부터의 감독과 市場으로부터의 牽制가 미흡한 데 따른 경영상의 非效率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은행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資金調達 및 운용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收益性을 근거로 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大株主 經營者들이 경영권을 지배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持分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은행들이 기업경영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경제력집중 억제 의 주된 목표를 대기업의 소유집중을 해소하는 데 두고 필요한 法的 措置 및 關聯稅制의 整備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第 4 章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과 金融그룹의 形成方向

第 1 節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

앞 章에서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자 및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多角度로 論議를 전개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들어 은행의 責任經營 不在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은행경영 참여가 바람직한가에 관한 論議가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되는가에 따라 銀行의 所有構造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本章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金融機關의 所有構造에 따라 그 기관의 경영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所有構造는 궁극적으로 그 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소유집단은 일반적으로 經營의 果實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所有 金融機關의 資金調達과 配分에도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업에 대한 財產權의 상당 부분이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所有集中이 富의 偏在 以上の 經濟力 集中問題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제조업을 지배하는 大株主가 금융기관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利害相衝問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銀行 所有制限의 基本目的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은행경영에 과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은행경영이 大株主의 利害를 지나치게 고려하게 됨으로써 은행의 공공성이 저하되거나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의 소유에 대해 가해져 온 규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1982년 이전에는 銀行 大株主의 株式保有에 대한 한도는 없었으며, 단지 保有株式數가 議決權 있는 株式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議決權을 제한해 왔으나, 1982년 12월 은행법 제6차 개정시 大株主의 은행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여를 배제하기 위해 同一인이 은행의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數의 8%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제17조의 3). 이때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同 限度超過分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개발지원의 필요성과 원활한 增資 등을 위해 同一人 株式保有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지 않다가 1992년 5월 29일 은행법 시행령 개정시 15%의 동일인 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아울러 大株主의 銀行支配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92년 5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주식의 범위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시행령상의 同一人 概念에 접근시켰다.

은행의 株式所有制限問題에 관해서는 소유권의 民間移轉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주식소유의 제한으로 인해 소유와 경영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責任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是正하기 위해서는 은행주식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大企業에 의한 銀行支配로 자금배분의 형평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信用制度의 維持와 預金者保護라는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株式所有制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大株主 1인의 支分限度

를 현행 8%에서 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측(은행감독원 포함)에서는 은행이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운영될 경우 금융자율화로 支配株主의 經營權 및 人事權에 대한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公共的 性格이 강한 銀行과 私的 利益을 추구하는 대기업들간의 利害가 상충될 소지가 커지고,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의 존재와 낮은 금리로 인해 아직도 特惠的 性格이 강한 은행대출이 大企業에 편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預金 保險制度 없이 정부가 은행의 존립을 보증하는 현 상황하에서는 大企業의 經營不實化로 인해 은행이 倒産의 危機에 처하게 되면 정부가 불가피하게 救濟金融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식소유제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大企業의 은행지배에 의한 與信偏重現象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산운용에 대한 監督(여신관리 포함)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으며, 정부가 租稅나 公正去來審議 등을 통해 大企業의 不公正去來를 규제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이 私利를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은행경영의 지배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株式이 과도하게 分散되는 경우 銀行 經營者가 株主보다는 자신의 厚生을 극대화하기 위해 危險度가 높은 수익극대화 경영방식보다는 수익은 낮지만 보다 안정적인 경영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장기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곤란하게 하는 代理人問題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책임경영의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逆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은행소유구조의 개편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은행들의 大株主 現況을 살펴보면, 1993년 말 현재 5대 시중은행에 대한 株式持分率이 1%를 초과하는 大株主의 비중은 行當 평균 37.1%로 1992년 말의

38.2%보다 약간 낮아졌다. 持分率 4% 이상 大株主는 行當 평균 3인이며, 이들이 18.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 포함)의 銀行株式 持分率 合計는 은행별로 11~21% (行當 平均 16.8%)에 달하며, 이 중 持分率 4% 이상 산업자본 大株主들이 行當 平均 8.8%를 占有하고 있다(〈表 4-1〉 참조).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5개 은행 모두에서 3.4~7.1%의 높은 持分率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동아그룹은 3개 은행에서 5% 이상의 持分을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 현대와 럭키금성그룹이 2개 은행에서, 대우·쌍용·대림·동아건설 등은 1개 은행에서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단일기업으로는 태광산업(조흥은행, 5.96%), 일성신약(한일은행, 2.48%), 동국제강(서울신탁은행, 1.49%) 등이 있다. 한편 地方 銀行의 경우에는 10개 은행 중 産業資本의 持分率 合計가 10%를 넘는 곳이 7個社이며, 이 중 20%를 넘는 은행도 4個社나 된다.

정부에서는 금융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市中銀行의 寡占株主로 되어 있는 大企業들이 은행경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1995년부터 시중은행의 同一人 所有持分限度를 현행 議決權附 株式의 8%에서 4%로 축소하는 대신, 경영권의 효율적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金融 專業企業家制度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12%까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主要國 銀行들의 所有構造와 經營權 創出過程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 축소와 金融專業企業家制度 도입의 意味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은행주식보유 제한을 둘러싼 은행-기업간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당초 新경제計劃에 포함된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形成問題도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銀行의 兼業化 擴大라는 관점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表 4-1〉 銀行別 大株主 株式所有 現況(1993年 末 現在)

| | 1% 이상 大株主 | | 4% 이상 大株主 | | 5大株主 持分率 |
|---------|-----------|------------|-----------|------------|----------|
| | 數 | 持分率(%) | 數 | 持分率(%) | |
| 朝 興 | 13(5) | 41.7(19.7) | 3(2) | 19.5(11.9) | 25.8 |
| 商 業 | 9(4) | 26.2(10.9) | 2(1) | 14.7(7.1) | 19.0 |
| 第 一 | 14(7) | 43.7(20.9) | 5(2) | 26.0(10.3) | 26.0 |
| 韓 一 | 14(6) | 40.4(18.4) | 4(2) | 20.6(9.3) | 24.1 |
| 서 信 | 12(5) | 33.4(14.1) | 2(1) | 13.3(5.5) | 21.4 |
| 5大市銀 平均 | 12(5) | 37.1(16.8) | 3(2) | 18.4(8.8) | 23.3 |
| 外 換 | 2(-) | 66.9(-) | 1(-) | 65.3(-) | n.a |
| 新 韓 | 8(5) | 16.3(10.5) | -(-) | - (-) | 13.0 |
| 韓 美 | 14(8) | 74.1(28.5) | 6(3) | 60.4(20.0) | 53.4 |
| 하 나 | 18(3) | 66.7(7.8) | 4(1) | 37.8(4.4) | 38.8 |
| 보 람 | 16(6) | 59.9(33.5) | 6(4) | 42.1(30.6) | 36.1 |
| 同 和 | 9(1) | 16.6(1.6) | -(-) | - (-) | 11.0 |
| 大 同 | 2(-) | 15.2(-) | 2(-) | 15.2(-) | n.a |
| 東 南 | 2(-) | 15.2(-) | 2(-) | 15.2(-) | n.a |
| 平 和 | 9(1) | 48.9(1.3) | 6(-) | 42.1(-) | 37.0 |
| 市銀 平均 | 10(4) | 37.6(-) | 3(1) | - (-) | - |
| 大 邱 | 12(5) | 31.8(12.2) | 2(1) | 12.4(4.5) | 21.1 |
| 釜 山 | 11(2) | 54.7(29.4) | 2(1) | 33.8(25.6) | 39.7 |
| 忠 清 | 14(8) | 53.1(23.2) | 4(1) | 34.3(9.6) | 36.9 |
| 光 州 | 7(2) | 28.9(8.8) | 3(1) | 21.1(7.8) | 26.0 |
| 濟 州 | 4(-) | 61.2(-) | 3(-) | 58.5(-) | n.a |
| 京 畿 | 13(5) | 46.2(25.1) | 4(3) | 30.3(22.6) | 34.1 |
| 全 北 | 15(3) | 52.0(18.1) | 5(2) | 34.7(17.0) | 34.7 |
| 江 原 | 17(6) | 60.4(30.3) | 3(1) | 34.1(21.5) | 40.5 |
| 慶 南 | 15(3) | 42.0(13.7) | 2(1) | 17.7(9.5) | 26.1 |
| 忠 北 | 10(2) | 26.2(2.2) | 1(-) | 9.6(-) | 21.3 |
| 市銀 平均 | 12(4) | 42.8(-) | 3(1) | - (-) | - |
| 一般銀 平均 | 11(4) | 38.4(-) | 3(1) | - (-) | - |

註: () 안의 수치는 민간산업자본(계열 금융기관 포함)의 수 및 지분율을 나타냄.

資料: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1. 主要國 銀行들의 所有構造와 銀行經營

가. 美 國

美國에서는 銀行持株會社가 특정은행의 議決權附 株式을 5% 이상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할 경우, 그리고 10% 이상의 은행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非銀行企業의 銀行支配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企業의 銀行持分參與는 25%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表 4-2>에 의하면 미국 7대 대형 銀行持株會社들의 경우 1993년 3월 현재 株式의 54~70%를 다른 상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의 機關投資家들이 보유하고 있다. Bankamerica Corp.의 경우 持分率 5% 이상의 大株主가 없으나, Citicorp.와 Bank of NY Co.는 5% 이상의 大株主가 4인(혹은 기관) 존재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를 제외하면 大株主의 持分率이 1~2%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持分率 1% 이상 大株主들의 주식보유비중을 보면 Bank of NY Co.의 경우 大株主 20인이 50.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大株主들의 점유율이 높으나, Citicorp. 등 다른 6개 은행들의 경우에는 11~15인의 大株主들의 持分 合計가 17.9~31.8%로서 9~12인이 26.2~43.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5대 시중은행보다 주식보유가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表 4-3>에서 보듯이 은행들은 은행신탁계정을 통해 서로 다른 은행들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은행간 협조관계를 도모하거나 은행경영진의 지위를 상호보전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大株主의 持分은 經營陣과 大株主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 경영진의 지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는 大型 金融機關의 경우 경영진, 외부임원, 大株主인 다른 금융기관과 個人 大株

主 등을 생각할 수 있다¹⁾. 그러나, 機關投資家들은 은행주식에 대한 투자에 있어 은행경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재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은행들의 經營權은 理事會(대형은행들은 銀行持株會社의 理事會)로부터 창출되며, 最高經營者(CEO)가 理事會의 議長으로서 內部理事는 물론 外部理事의 선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理事會를 지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金東源, 1993). 銀行長은 일반적으로 最高經營者나 理事會의 銀行長 推薦委員會에서 지명된다. 外部理事들이 全體 理事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이 은행경영에 관한 충분한 情報를 蒐集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사선임시 最高經營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고경영자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外部理事들로 구성된 선임위원회가 理事會의 구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등 理事會가 最高經營者의 支

〈表 4-2〉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및 大株主 比重
(1993年 3月 現在)

(單位: 個, %)

| | 機關投資家 總數 | | 5% 以上 所有者數 | |
|------------------------------|----------|-------|------------|-------|
| | | 比重 | | 比重 |
| Citicorp. | 296 | 54.60 | 4 | 33.32 |
| Chemical Banking Corp. | 380 | 69.10 | 2 | 10.28 |
| Bankamerica Corp. | 424 | 56.00 | 1 | 6.50 |
| J.P. Morgan & Co., Inc. | 566 | 62.25 | 1 | 7.58 |
| Chase Manhattan Corp. | 257 | 57.59 | 2 | 11.12 |
| Bankers Trust New York Corp. | 296 | 70.37 | 3 | 21.25 |
| Nations Bank Corp. | 389 | 56.02 | 0 | 0.00 |
| Bank of New York Co., Inc. | 260 | 77.76 | 4 | 21.40 |

1) 大型 金融機關과 大企業이 서로 임원을 파견함으로써 양쪽 지배그룹의 지위를 보강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음.

〈表 4-3〉 美國 金融그룹의 機關投資家 大株主 現況(1993年 3月 31日 現在)

(單位：%)

| CITICORP. | | CHEMICAL BANKING CORP. | | BANKAMERICA CORP. | |
|----------------------------|-------|------------------------------------|-------|----------------------------|-------|
| 株 主 名 | 持分率 | 株 主 名 | 持分率 | 株 主 名 | 持分率 |
| FIDELITY MGMT & RES CORP. | 7.10 | MANUFACTURERS HANOVER CO.(INSIDER) | 7.18 | OPPENHEIMER & CO., L.P. | 2.50 |
| WELLINGTON MGMT CO. | 5.64 | BARROW HANLEY MEWHINNEY | 4.42 | JANUS CAPITAL CORP. | 2.04 |
| ABDULAZIZ AL SAUD(INSIDER) | 4.45 | BERNSTEIN SANFORD C. & CO. | 3.04 | WELLS FARGO INST. TR. NA. | 2.04 |
| BERNSTEIN SANFORD C. & CO. | 2.98 | LINCOLN CAPITAL MGMT CO. | 2.32 | BANKERS TRUST N. Y. CORP. | 1.77 |
| BRINSON PARTNERS INC. | 2.98 | WELLS FARGO INST. TR. NA. | 2.06 | BARROW HANLEY MEWHINNEY | 1.64 |
| MICHIGAN STATE TREASURER | 2.55 | BANKERS TRUST N. Y. CORP. | 1.87 | ALLIANCE CAPITAL MGMT | 1.62 |
| WELLS FARGO INST. TR. NA. | 1.99 | MILLER ANDERSON & SHERRERD | 1.74 | MORGAN J. P. & CO., INC. | 1.49 |
| MORGAN J. P. & CO., INC. | 1.89 | TCW MANAGEMENT COMPANY | 1.69 | BERNSTEIN SANFORD C. & CO. | 1.45 |
| BANKERS TRUST N. Y. CORP. | 1.84 | THOMSON ADVISORY GRP LP. | 1.68 | IDS FINANCIAL CORP. | 1.32 |
| DODGE & COX | 1.27 | LAZARD FRERES & CO. | 1.62 | AGGREGATE OF 178 OWNERS | 1.01 |
| STATE STREET RESR & MGMT | 1.05 | ALLIANCE CAPITAL MGMT | 1.48 | COLLEGE RETIRE EQUITIES | 1.02 |
| COLLEGE RETIRE EQUITIES | 1.02 | DELAWARE MANAGEMENT CO. | 1.47 | | |
| | | SCUDDER STEVENS & CLARK | 1.35 | | |
| | | SHEARSON LEHMAN BROTHERS | 1.27 | | |
| | | COLLEGE RETIRE EQUITIES | 1.22 | | |
| | | PHOENIX MUTUAL LIFE INS. | 1.18 | | |
| | | MICHIGAN STATE TREASURER | 1.11 | | |
| | | LYNCH & MAYER INC. | 1.11 | | |
| | | AETNA LIFE & CASUALTY CO. | 1.09 | | |
| 11 | 31.78 | 19 | 38.90 | 11 | 17.90 |

〈表 4-3〉의 계속

(單位：%)

| J. P. MORGAN & CO., INC. | | CHASE MANHATTAN CORP. | | BANKERS TRUST NEW YORK CORP. | |
|---------------------------|-------|-------------------------------------|-------|---------------------------------------|-------|
| 株 主 名 | 持分率 | 株 主 名 | 持分率 | 株 主 名 | 持分率 |
| CAPITAL RESEARCH & MGMT | 4.91 | BERNSTEIN SANFORD C. & CO. | 5.75 | CAPITAL RESEARCH & MGMT | 7.41 |
| BANKERS TRUST N. Y. CORP. | 2.19 | BARROW HANLEY MEWHINNEY | 5.37 | WELLINGTON MANAGEMENT CO. | 6.84 |
| WELLS FARGO INST. TR. NA. | 2.01 | CHASE THRIFT INCENTIVE PL.(INSIDER) | 2.25 | BARROW HANLEY MEWHINNEY | 4.94 |
| BOSTON COMPANY INC. | 1.97 | WELLINGTON MANAGEMENT CO. | 2.18 | WELLS FARGO INST. TR. NA. | 2.04 |
| JENNISON ASSOC CAPITAL | 1.81 | BANKERS TRUST N. Y. CORP. | 1.93 | DELAWARE MANAGEMENT CO. | 1.98 |
| WELLINGTON MGMT CO. | 1.23 | WELLS FARGO INST. TR. NA. | 1.93 | MICHIGAN STATE TREASURER | 1.82 |
| SCUDDER STEVENS & CLARK | 1.22 | INVESCO FUNDS GRP INC. | 1.85 | BANKERS TRUST N.Y. CORP. PAR(INSIDER) | 1.75 |
| CAPITAL GUARDIAN TRUST | 1.20 | MERRILL LYNCH ASSET MGMT | 1.62 | BANKERS TRUST N.Y. CORP.(INSIDER) | 1.75 |
| RITTENHOUSE FINL SVCS | 1.18 | BRINSON PARTNERS INC. | 1.59 | MILLER ANDERSON & SHERRERD | 1.60 |
| AGGREGATE OF 308 OWNERS | 2.43 | INDEPENDENCE INVT ASSOC. | 1.16 | BOATMEN'S BANCSHARES INC. | 1.46 |
| COLLEGE RETIRE EQUITIES | 1.12 | BOSTON COMPANY INC. | 1.03 | TEXAS TEACHER RETIRM SYS | 1.33 |
| MELLON BANK CORPORATION | 1.01 | OHIO STATE TEACHERS RETM | 1.01 | GSB INVESTMENT COUNSEL | 1.32 |
| | | COLLEGE RETIRE EQUITIES | 1.00 | ARK ASSET MGMT CO., INC. | 1.24 |
| | | | | BERNSTEIN SANFORD C. & CO. | 1.23 |
| | | | | MELLON BANK CORPRATION | 1.22 |
| | | | | BOSTON COMPANY INC. | 1.20 |
| | | | | MORGAN J. P. & CO., INC. | 1.17 |
| 12 | 22.28 | 13 | 27.67 | 17 | 40.30 |

〈表 4-3〉의 계속

(單位: %)

170

| NATIONSBANK CORP. | | BANK OF NEW YORK CO., INC. | |
|----------------------------|-------|----------------------------|-------|
| 株 主 名 | 持分率 | 株 主 名 | 持分率 |
| NATIONSBANK CORPORATION | 3.69 | FIDELITY MGMT & RES CORP. | 6.38 |
| JANUS CAPITAL CORP. | 3.08 | JANUS CAPITAL CORP. | 6.03 |
| ELLIS ALPHEUS L.(INSIDER) | 2.25 | CAPITAL RESEARCH & MGMT | 4.40 |
| FIDELITY MGMT & RES CORP. | 2.11 | BEACON CAPITAL MGMT CO. | 3.68 |
| JEFFERSON PILOT CORP. | 2.08 | CAPITAL GROWTH MGMT | 3.68 |
| WELLS FARGO INST. TR. NA. | 1.98 | BANK OF NEW YORK | 3.22 |
| DELAWARE MANAGEMENT CO. | 1.79 | MORGAN J. P. & CO., INC. | 2.66 |
| BANKERS TRUST N. Y. CORP. | 1.61 | LAZARD FRERES & CO. | 2.37 |
| INDEPENDENCE INVT ASSOC. | 1.57 | MERRILL LYNCH ASSET MGMT | 2.34 |
| ALLIANCE CAPITAL MGMT | 1.39 | INVESCO FUNDS GRP INC. | 1.93 |
| AGGREGATE OF 179 OWNERS | 1.29 | INVESTORS RESEARCH CORP. | 1.81 |
| MORGAN J. P. & CO., INC | 1.37 | WELLINGTON MANAGEMENT CO. | 1.74 |
| ENGEMANN ROGER & ASSOCS. | 1.35 | BARROW HANLEY MEWHINNEY | 1.60 |
| MILLER ANDERSON & SHERRERD | 1.22 | BANKERS TRUST N. Y. CORP. | 1.40 |
| COLLEGE RETIRE EQUITIES | 1.10 | BOSTON COMPANY INC. | 1.32 |
| | | COLLEGE RETIRE EQUITIES | 1.15 |
| | | WELLS FARGO INST. TR. NA. | 1.15 |
| | | THOMSON ADVISORY GRP LP | 1.13 |
| | | BEAR STEARNS & CO., INC. | 1.12 |
| | | DREYFUS CORPORATION | 1.09 |
| 15 | 27.88 | 20 | 50.20 |

〈表 4-4〉 美國의 主要 大型商業銀行들의 理事會 構成
(1992年 末 現在)

(單位: 名)

| | Chase | Citicorp. | Bank America | J.P. Morgan | Bank One |
|---------|-----------------|-----------------|-----------------|-----------------|----------|
| 理事數 | 23 | 18 | 26 | 15 | 13 |
| 內部 | 5 | 4 | 5 | 6 | 4 |
| 外部 | 18 | 14 | 21 | 9 | 9 |
| 外部理事構成 | | | | | |
| 企業 | 13 | 9 | 16 | 6 | 7 |
| 學界 | 3 | 3 | 1 | 2 | 2 |
| 言論人 | 1 | — | — | 1 | — |
| 辯護士·諮問業 | 1 | — | 4 | — | — |
| 公益機關 | — | 2 | — | — | — |
| 理事推薦委員會 | 6 ¹⁾ | 6 ¹⁾ | 5 ¹⁾ | 3 ¹⁾ | — |

註: 1) Citicorp.를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전부 外部理事들로 구성되어 있음.
資料: 金東源(1993), p. 37.

配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理事會의 最高經營者 監視機能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 英國

英國에서는 은행주식을 5%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영란은행에 사후 통보하여야 하며, 은행을 매수(발행주식의 15% 이상 취득)하려 하거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50% 및 75%를 초과할 때에는 영란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銀行法 제21, 37조). 영란은행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上記 株式買入 申請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2조), 또한 既存 大株主가 은행의 건전경영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所有株式을 賣却하도록 法院에 提訴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24, 26조). 대형은행 주식의 대부분(80% 이상)은 〈表 4-6〉에서 보듯이 機關投資家들이 보유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앞 章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機關投資家들은 주식투자를 광범위하게 분산하도록 유도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별로 보면 외부에 公示하도록 되어 있는 持分率 3% 이상의 大株主는 없거나 있더라도 1~2인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 銀行經營에 대한 주요 意思決定은 最高經營者(CEO)와 理事會가 담당하며, CEO를 포함하는 7~8명의 執行理事(Executive Directors)가 내린 결정들을 理事會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CEO는 理事會에서 선출되나, 예외적으로 1993년의 Barclays 은행에서처럼 外部理事로 구성되는 4~5인의 銀行長 推薦委員會를 통해 선출되기도 한다. 次期 CEO는 대체로 現任 CEO가 물러나기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부각되어 오다 現任 CEO가 은퇴할 때 理事會의 형식적인 선임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銀行株式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은행경영에 대한 株主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機關投資家를 포함한 壓力團體(Pressure Group)들이 理事會를 통해 경영진의 주요한 의사결정과 최고 경영진의 선임에 영향을 미칠 潛在的 統制力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理事會에는 집행이사들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10명 내외의 外部理事들(Nonexecutive Directors)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前職 官僚, 企業任員, 海外專門家 들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으

〈表 4-5〉 英國 主要 銀行들의 理事會 構成(1992年 末 基準)

(單位:名)

| | Barclays | NatWest | Midland | Lloyds |
|--------------------------|----------|---------|---------|--------|
| Chairman | 1 | 1 | 1 | 1 |
| Deputy Chairman | 2 | 3 | 1 | 2 |
| Vice-Chairman | 2 | - | - | 1 |
| Directors | 14 | 16 | 12 | 15 |
| (Executive Directors) | (3) | (6) | (2) | (5) |
| (Nonexecutive Directors) | (11) | (10) | (10) | (10) |
| 總 計 | 19 | 20 | 14 | 19 |

資料: 各 銀行 年次報告書.

〈表 4-6〉 英國 主要 銀行들의 株主構成 現況

(單位: 名, %)

| 區 分 | | 銀行名 | | |
|------------------------|-------|-------------------|-----------------------|---------------------|
| | | Barclays | NatWest | Midland |
| 個 人 投 資 家 | 株 主 數 | 130,206(85.45) | 103,235(83.42) | 95,898(93.40) |
| | 所有株式數 | 221.6백만(13.78) | 211,158,690(12.82) | 117,594,023(14.99) |
| 保 險 會 社 | 株 主 數 | 621(0.41) | 409(0.33) | 408(0.40) |
| | 所有株式數 | 140.9백만(8.76) | 133,841,262(8.13) | 58,410,435(7.44) |
| 受 託 會 社, 證 券 會 社 등 | 株 主 數 | 12,991(8.53) | 7,698(6.22) | 5,185(5.05) |
| | 所有株式數 | 1,020.8백만(63.44) | 1,048,847,534(63.68) | 447,320,141(56.99) |
| 年 金 基 金 | 株 主 數 | 74(0.05) | 88(0.07) | 59(0.06) |
| | 所有株式數 | 45.7백만(2.84) | 86,058,428(5.23) | 20,967,357(2.67) |
| 病 院 自 治 體 會 등 | 株 主 數 | — | 642(0.52) | 275(0.27) |
| | 所有株式數 | — | 36,998,218(2.25) | 6,378,888(0.81) |
| 其 他 會 社 | 株 主 數 | 3,394(2.22) | 693(0.56) | — |
| | 所有株式數 | 157.1백만(9.76) | 19,917,231(1.21) | — |
| 銀 行 及 投 資 信 託 會 社 등 | 株 主 數 | 5,083(3.34) | 10,996(8.88) | 318(0.31) |
| | 所有株式數 | 22.9백만(1.42) | 110,109,142(6.68) | 16,394,255(2.09) |
| 合 計 | 株 主 數 | 152,369(100.00) | 123,761(100.00) | 102,663(100.00) |
| | 所有株式數 | 1,609.0백만(100.00) | 1,646,930,505(100.00) | 784,909,378(100.00) |

註: 1. () 안의 數値는 구성비임.

2. Barclays, NatWest는 1992년 12월 31일 현재, Midland는 1991년 12월 말 현재 數値임.

資料: 各 銀行 內部資料.

며, 美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은행 最高經營者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 獨 逸

민영 獨逸銀行들의 法的 設立形態는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합자회사(KG), 주식합자회사(KGaH), 합명회사(OHG)

등 다양하며, 이 중 株式會社의 형태를 갖는 銀行은 그다지 많지 않다. 獨逸에서는 議決權附 株式의 10% 이상을 취득한 者は 연방은행 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취득자의 信用度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방은행감독청은 대량주식 취득자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취득주식의 議決權 行使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대 銀行의 株式은 국내외 株主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간에 주식보유에 의한 상호소유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1950년경부터 은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株主들의 대부분이 거래은행에 주식을 보관하는 bearer shares system이 유지되고 있으며²⁾, 은행들이 별도로 株主名簿管理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법(The Company Act, 20조)상 持分率이 25%를 초과할 때만 公示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一定 持分率 이상의 大株主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대 은행의 株式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은행의 經營者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獨逸 銀行들의 意思決定機構는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執行理事會(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와 監督理事會(The Supervisory Board)로 나뉘어져 있는 理事會라고 할 수 있다. 執行理事會(Vorstand)는 은행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機構이며, 집행이사들(managing directors)은 監督理事會에 의해 임명되고 그 중 1명이 CEO가 아닌 Spokesman(공식 명칭은 Chairman임)이 되어 대내외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監督理事會(Aufsichtsrat)는 20명 정도의 監督理事들로 구성되며, 은행경영에 관한 내부적인

2) 독일 3대 銀行의 株主數는 21만명에서 28만명에 이르며, 은행직원들도 전체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감독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은행경영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은 모두 감독이사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집행이사회는 주요한 신용공여에 관해 감독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監督理事들의 절반은 은행직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나머지는 株主總會에서 선임된다³⁾. 監督理事會는 단순히 株主 및 직원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그룹의 利害關係者들의 은행경영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모임(forum)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外部理事들(Nonexecutive Directors)이 Duty of Care 原則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독일 監督理事들은 경영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그만큼 監督理事會의 권한도 제한되게 된다. 최근에는 동일인이 여러 회사에서 감독이사로 근무함에 따라(규정상 10개 회사까지 이사겸직 가능) 감독이사들

〈表 4-7〉 獨逸 主要 銀行들의 理事會 構成(1992年 末 基準)

(單位: 名)

| | Deutsche | | | Dresdner | | Commerz | |
|-------------------|-------------------|---------------------|-------------------|---------------------|-------------------|---------------------|-------------------|
| | Honorary Chairman | Board of Management | Supervisory Board | Board of Management | Supervisory Board | Board of Management | Supervisory Board |
| Honorary Chairman | 1 | - | - | 1 | - | - | 1 |
| Chairman | - | - | 1 | - | 1 | - | 1 |
| Spokesman | - | 1 | - | 1 | - | 1 | - |
| Deputy Chairman | - | - | 1 | - | 1 | - | 1 |
| Members | - | 12 | 18 | 8 | 20 | 10 | 20 |
| Deputy Members | - | - | - | 2 | - | 2 | - |
| 合計 | 1 | 13 | 20 | 12 | 22 | 13 | 23 |

註: Commerzbank는 1991년 말 기준.

資料: 各 銀行 年次報告書.

3) 監督理事의 대부분은 執行理事 出身이며, 非金融企業의 現職 執行理事도 있음.

등 다양하며, 이 중 株式會社의 형태를 갖는 銀行은 그다지 많지 않다. 獨逸에서는 議決權附 株式의 10% 이상을 취득한 者는 연방은행 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취득자의 信用度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방은행감독청은 대량주식 취득자가 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득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취득주식의 議決權 行使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大 銀行의 株式은 국내의 株主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산소유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간에 주식보유에 의한 상호소유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1950년경부터 은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株主들의 대부분이 거래은행에 주식을 보관하는 bearer shares system이 유지되고 있으며²⁾, 은행들이 별도로 株主名簿管理를 하지 않고 있는데다 기업법(The Company Act, 20조)상 持分率이 25%를 초과할 때만 公示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一定 持分率 이상의 大株主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대 은행의 株式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은행의 經營者들에게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獨逸 銀行들의 意思決定機構는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執行理事會(The Board of Managing Directors)와 監督理事會(The Supervisory Board)로 나뉘어져 있는 理事會라고 할 수 있다. 執行理事會(Vorstand)는 은행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機構이며, 집행이사들(managing directors)은 監督理事會에 의해 임명되고 그 중 1명이 CEO가 아닌 Spokesman(공식 명칭은 Chairman임)이 되어 대내외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監督理事會(Aufsichtsrat)는 20명 정도의 監督理事들로 구성되며, 은행경영에 관한 내부적인

2) 독일 3大 銀行의 株主數는 21만명에서 28만명에 이르며, 은행직원들도 전체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表 4-8〉 日本 主要 銀行グループの 株主 現況(1993年 3月 末 現在)

(單位：%)

| 第一勸業 | | さくら銀 | | 三和銀 | |
|----------|------|--------|------|---------|------|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 朝日生命* | 4.46 | 太陽生命 | 3.50 | 日本生命* | 4.51 |
| 日本生命 | 3.77 | 日本生命 | 3.50 | 明治生命 | 3.21 |
| 長 銀 | 2.86 | 三井生命* | 3.50 | 大同生命 | 3.04 |
| 第一生命 | 2.85 | 第一生命 | 2.95 | 第一生命 | 2.44 |
| 明治生命 | 1.83 | トヨタ | 2.56 | トヨタ | 2.21 |
| 日債銀 | 1.37 | 東 芝 | 1.48 | 新日本製鐵 | 1.75 |
| 富國生命* | 1.36 | 三井信託* | 1.26 | 帝 人* | 1.68 |
| 川崎製鐵* | 1.25 | 三井海上* | 1.06 | 東洋信託* | 1.56 |
| 日清紡績 | 1.20 | 明治生命 | 1.02 | 日立製作所* | 1.43 |
| 日本通運* | 1.03 | 持株會 | 0.95 | 日本通運* | 1.42 |
| 三菱商事 | 1.02 | 三井不動産* | 0.93 | ダイハツ工業* | 1.38 |
| 清水建設* | 0.98 | 東 レ | 0.91 | クボタ | 1.38 |
| 石天島播磨重工* | 0.92 | 長 銀 | 0.89 | 長 銀 | 1.15 |
| 日産火災* | 0.92 | 三井物産* | 0.88 | 大阪ガス | 1.13 |
| 東京海上 | 0.89 | 興 銀 | 0.85 | 國際興業 | 1.04 |
| 日立製作所* | 0.83 | 安田生命 | 0.84 | 大林組* | 0.98 |
| 旭硝子 | 0.82 | 川崎製鐵 | 0.81 | 興亞火災 | 0.96 |
| 旭化成工業* | 0.81 | 新日鐵 | 0.80 | 太陽生命 | 0.94 |
| 神戸製鋼 | 0.78 | 東洋信託 | 0.79 | 阪急電鐵* | 0.94 |
| 伊藤忠商事* | 0.77 | 安田信託 | 0.77 | 日債銀 | 0.88 |
| 富士銀 | | 三菱銀 | | 住友銀 | |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 安田生命* | 4.90 | 明治生命* | 5.80 | 住友生命* | 6.08 |
| 第一生命 | 2.92 | 東京海上* | 4.34 | 日本生命 | 4.45 |
| 日本生命 | 2.92 | 第一生命 | 3.53 | 松下電器 | 2.73 |
| 安田火災* | 2.31 | 日本生命 | 3.17 | 住友信託* | 2.62 |
| 新日本製鐵 | 2.11 | 三菱重工 | 3.03 | 三洋電機 | 2.01 |
| 日産自動車* | 1.85 | 太陽生命 | 1.83 | 第一生命 | 1.86 |
| 安全信託 | 1.65 | 三菱信託* | 1.83 | 鹿島建設 | 1.79 |
| 日本セメント* | 1.64 | 三菱商事* | 1.75 | 住友海上* | 1.77 |
| 大成建設* | 1.56 | 新日本製鐵 | 1.56 | 住友商事* | 1.76 |
| 日本鋼管* | 1.54 | 旭硝子* | 1.49 | 新日本製鐵 | 1.69 |
| 日動火災 | 1.47 | 三菱電機* | 1.46 | クボタ | 1.50 |
| クボタ | 1.47 | 三菱地所* | 1.11 | 旭化成 | 1.39 |
| 日立製作所 | 1.24 | 麒麟麥酒* | 1.01 | 住友金屬* | 1.37 |
| 農林中金 | 1.18 | 日本郵船* | 0.94 | 武田藥品 | 1.21 |
| 丸 弘 | 1.15 | 日債銀 | 0.79 | 近藤紡績所 | 1.17 |
| 日清紡績 | 1.04 | 味の素 | 0.72 | 太陽生命 | 1.15 |
| 帝 人 | 0.95 | 近 鐵 | 0.71 | 小松製作所 | 1.15 |
| 日債銀 | 0.89 | 富國生命 | 0.65 | 日本電氣* | 1.12 |
| 小松製作所 | 0.87 | 長 銀 | 0.63 | 日本板硝子* | 1.11 |
| 旭硝子 | 0.84 | 第百生命 | 0.57 | 住友化學* | 1.06 |

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은행경영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監督理事會의 機能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의 20여명의 감독이사수를 12명 이하로 줄이는 대신 감독이사회 내에 특별위원회들을 많이 설치하고 理事들의 會晤를 보다 자주 갖는 등의 개선책들이 논의되고 있다⁴⁾.

라. 日 本

日本에서는 銀行株式의 同一人 所有持分限度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은행과 기업들이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과정에서 은행주식이 持分率 5%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분산되어 있으며, 대형 도시은행의 경우 持分率이 5%를 초과하는 大株主는 거의 없다(〈表 4-8〉 참조). 6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형은행들의 경우 동일 기업집단소속 생명보험회사가 最大株主로 되고, 2~3개의 다른 기업집단 소속 생명보험회사들도 3~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계열기업들이 1% 내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大株主인 생명보험회사들은 株主總會에도 대리인을 파견하고 있고,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은행과 고객을 서로 소개하는 정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달함으로써 機關投資家들의 持分比率이 높으나, 이들은 경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동일계열 소속 경영자들간에 社長會 등 각종 모임을 통해 기업집단의 경영방침을 확인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도시은행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4) Andrew Fisher, "Perturbation in the Boardrooms", *Financial Times*, 1994. 11. 21.

이사후보를 선출한 후 株主들의 우편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理事가 반드시 은행의 株主일 필요는 없으나 美·英·獨의 경우와는 달리 은행 외부로부터의 人士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理事會는 商法(제260조 1항)上 株式회사의 組織·운영에 관한 사항 및 營業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행하는 업무집행(회사의 事業 전체)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⁵⁾.

〈表 4-9〉 日本 主要 都市銀行들의 意思決定機關 構成
(1993年 3月 末 現在)

(單位: 名)

| | 理 事 會 | 常 務 會 | 經 營 會 議 |
|------|-------|-------|---------|
| 第一勸業 | 44 | 20 | . |
| さくら | 58 | . | 14 |
| 富 士 | 38 | 17 | . |
| 三 菱 | 29 | 19 | . |
| 三 和 | 34 | . | 12 |
| 住 友 | 42 | . | 10 |

註: 1. 理事會: 取締役會長, 取締役頭取, 取締役副頭取, 專務取締役, 常務取締役, 取締役으로 구성됨(第一勸業은 監査役 포함).

2. 常務會

3. 經營會議

| | 직 위 |
|------|---------------------------------|
| 第一勸業 | 取締役會長, 取締役頭取, 取締役副頭取, 專務取締役, |
| 三 菱 | 常務取締役 |
| 富 士 | 取締役頭取, 取締役副頭取, 專務取締役, 常務取締役 |

| | 직 위 |
|-----|--------------------------------|
| さくら | 取締役會長, 取締役頭取, 取締役副頭取, 專務取締役 |
| 三 和 | |
| 住 友 | |

資料: 各 銀行 年次報告書

5) 理事會의 구체적인 법정결의사항으로는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공동대표의 결정, 新株發行, 社債發行, 계산서류의 승인·확정,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분할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법정결의사항으로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도,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해임, 중요한 조직의 설치·변경·폐지,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 등이 있음.

〈表 4-8〉의 계속

(單位: %)

| あさひ 銀 | | 東 海 銀 | | 東 京 銀 | |
|-------|------|-------|------|-------|------|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大株主名 | 構成比 |
| 千代田銀行 | 4.00 | トヨタ | 4.98 | 明治生命 | 5.78 |
| 安田銀行 | 3.37 | 千代田生命 | 3.82 | 日本生命 | 5.39 |
| 第一生命 | 2.83 | 日本生命 | 2.73 | 第一生命 | 4.94 |
| 日本生命 | 2.41 | 豊島 | 2.66 | 太陽生命 | 2.74 |
| 第百生命 | 2.18 | 第一生命 | 2.24 | 三菱商事 | 2.04 |
| 松下電機 | 1.63 | 明治生命 | 2.24 | さくら銀 | 1.77 |
| 三洋電機 | 1.63 | 住友生命 | 1.73 | 三菱信託 | 1.68 |
| 朝日生命 | 1.58 | 朝日生命 | 1.65 | 三菱銀 | 1.55 |
| 住友生命 | 1.33 | 近藤紡績所 | 1.23 | 三井信託 | 1.55 |
| 興銀 | 1.20 | 千代田火災 | 0.99 | 東京海上 | 1.52 |
| 鹿島建設 | 1.13 | | | 農林中金 | 1.51 |
| 明治生命 | 1.05 | | | 新日鐵 | 1.48 |
| 日産自動車 | 1.01 | | | 住友生命 | 1.40 |
| 太陽生命 | 0.98 | | | 安田信託 | 1.35 |
| 日本火災 | 0.87 | | | 住友商事 | 1.22 |
| 日動火災 | 0.86 | | | 興銀 | 1.13 |
| 三井信託 | 0.81 | | | 長銀 | 1.11 |
| 日興證券 | 0.79 | | | トヨタ | 1.11 |
| あさひ銀 | 0.78 | | | 富士銀 | 1.16 |
| 日債銀 | 0.75 | | | 日産 | 1.05 |

註: *는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나타냄.

資料: 日本金融通信社, 『日本金融名鑑 上巻』, 1993. 9.

미치는 것은 銀行長이며, 예외적으로 住友銀行에서와 같이 은행장에서 물러난 會長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會長·銀行長の 임기는 2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며, 은행장의 선출은 理事會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한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定款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理事會가 열리기 3~6개월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차기 은행장 후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사전에 은행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理事會의 결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代表理事들로 구성되는 常務會(혹은 經營會議)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은 은행장이 최종결제한 후 理事會에 회부된다. 理事會는 모든 理事(取締役)들로 구성되며, 理事들의 선임은 理事會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행의 경우 동일한 大株主나 기업집단이 동시에 여러 市中銀行의 大株主로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寡占構造를 형성하고 있는 大株主나 기업집단이 담합하여 계열회사들에 대한 貸出 및 내부거래 강요 등을 통해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銀行情報의 부당한 이용을 통한 私益追求를 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大企業이 大株主로 되어 있는 일부 지방은행들이 大株主企業에 대한 대출의 不實化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이러한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金融自律化의 진전으로 향후 정부의 은행에 대한 통제가 지금보다 약화될 경우 이러한 개연성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持分率이 높아진 大企業 株主들이 은행 경영진으로 하여금 금융자율화의 소기의 목적인 금융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일지는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產業資本의 銀行所有를 허용하는 것은 產業資本의 成長過程이나 經濟力集中의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행의 경영은 株主와 經營者들에게 일임하고 銀行의 公共性 및 經營의 健全性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독만을 금융당국이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各種 金融制度의 체계적인 정비 및 公正去來慣行의 정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감독당국이 동일인 여신한도나 유동성 자기자본 등에 대한 규제만으로 銀行의 公共性 및 健全性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資本市場의 일천한 역사로 인해 市場의 價格機能에 의한 代理人 統制效果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1994년도 은행법 개정시 8대 시중은행에 대한 同

2.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方向

가. 同一人 株式所有限度의 縮小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외국 주요 銀行들의 경우에는 株主構成上 機關投資家の 持株比率이 54~87%에 이르고 있고, 대체로 주식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持分率이 5%가 넘는 大株主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민영화되었거나 增資上의 어려움 때문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持分率이 5% 이상인 個人 혹은 法人 大株主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라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15%의 범위 내에서 은행 주식소유를 규제하고 있고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同一人 持分限度를 현행 8%에서 그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주요국의 경험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은행주식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 5% 이하의 持分率로도 은행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外國銀行 大株主의 持分率 수준만으로 우리 은행들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완화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단지 외국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소유한도의 완화가 責任經營體制確立의 必要充分條件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한도 내에서도 安定株主層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의 완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음, 銀行所有構造의 변화만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大株主의 출현은 은행경영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產業資本 大株主들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에는 利害相衝, 경제력집중 심화 등의

나. 金融專業企業家의 導入

新경제計劃 金融改革部門上에 금융기관의 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95년중 金融專業企業그룹의 育成基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국에서는 그 동안 金融專業資本의 育成은 향후과제로 미루는 대신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方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金融專業企業群의 인위적 도입시 예상되는 他金融業種에의 進入障壁 緩和에 대한 특혜시비, 금융독과점 심화에 따른 또 다른 경제력집중 현상 및 金融市場에서의 제반 폐해 등의 발생을 우려하여 금융그룹형성문제는 金融機關 業務領域調整과 관련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銀行 所有構造의 改編은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은행경영을 지배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企業 株主들의 銀行經營 개입을 막기 위해 銀行 株式 所有에 대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할 경우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責任經營 不在 現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금융규제 완화가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충분히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거나 경쟁축진을 막는 금융관행이 잔존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當局의 健全經營監督이 은행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體系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競爭을 촉진하기 위해 金融自律化의 속도를 지나치게 앞당기는 것은 金融制度의 安定性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이 낮으면서도 경영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소수의 은행들이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춘 銀行 혹은 金融專業企業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 은행에 金融專業企業家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一人의 株式所有限度를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數의 8%에서 4%로 축소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 경제력집중 문제의 심각성, 금융자유화 이후의 은행 공공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同一人 所有限度의 縮小에 따라 市中銀行 大株主들이 향후 3년간 처분해야 할 한도초과분은 정부보유지분, 證市安定基金 및 投信社 保有持分, 外國과의 合作持分 등을 제외할 경우 時價로 1,69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는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행들의 自發的인 經營合理化 努力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構造改編·體質改善努力이 미흡한 데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 은행들은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상승을 경영합리화로 흡수함으로써 投資資金을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해 동원한 信託資金을 高金利로 대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人員縮小·費用節減 등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아직까지는 은행감독원의 강력한 유도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데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의 비중 축소,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金融自律化의 정착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한층 심도 있게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銀行 最高經營者의 專門化를 적극 추진하고 理事會에서 금융기관의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한 경영방침을 專門經營者로 하여금 충실히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장을 포함한 銀行 任員의 人事 事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은행들 스스로 금융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經營權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익성이 실물부문보다 높지 않고 향후 수익전망도 불투명한 銀行業에 막대한 자본(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1,500~2,500억원 정도)을 투입하려는 金融專業企業家가 과연 존재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그러한 企業家가 존재하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增資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持分率 維持를 위해 추가적인 資金을 계속 동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金融專業企業家의 존재가 오히려 은행의 大型化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銀行業의 낮은 收益性에도 불구하고 자산규모가 자기자본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금융그룹의 支配, 혹은 향후의 그룹주식으로부터의 資本利得 등을 노리는 金融資本家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해당 資本家가 국내 금융산업의 根幹이 될 금융그룹을 경영하거나 지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 더구나 금융기관간의 효율적인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經營權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준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경영효율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非金融企業에 비해 自己資本 對比 他人負債의 比率이 훨씬 높은 金融機關들이 개인의 영향력하에 놓임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이 대단히 클 수 있다는 反論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한 가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同一人 持分限度를 12%까지 완화할 경우 最大株主인 金融專業企業家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同一人 持分限度의 완화폭이 너무 클 경우 最大株主의 專橫에 의한 경영부실화나 공공성 저하, 또는 最大株主의 자금부담에 따른 增資 遲延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寡占 大株主로 있는 산업자본 3~4개 그룹들이 여러 시중은행에서 동시에 4% 가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의 제거를 앞당길 수 있는 매개체 혹은 구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우리의 금융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약요인들을 감안한 競爭力 強化策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金融專業企業家制度는 산업자본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금융자본에 대해 銀行株式의 同一人 所有限度を 議決權 있는 株式總數의 12%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은행의 安定的 經營主體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金融專業企業家の 자격요건으로는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個人으로서 銀行經營者로서의 道德性, 專門性과 資質을 구비한 者로 인정되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法人,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系列主와 그 特殊關係人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金融專業企業家가 사실상 지배하는 非金融業種 持分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非金融業種에 대한 단순 「포트폴리오」(portfolio) 投資로서 持分率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기업가의 은행주식 매입자금은 自己資金에 한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이나 고객의 수탁자금은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질적인 주인이 있어야 책임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金融專業企業家制度의 導入이 은행에 실질적인 주인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金融專業企業家가 所屬 銀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大型化를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하거나, 업무영역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所屬 系列社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金融專業企業家에 의한 이와 같은 경영합리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銀行市場에서 경쟁상의 優位를 점할 수 있어 非專業 銀行들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나아가

보험회사가 母會社가 되어 異種 금융기관들을 子會社 形態로 소유하며,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金融業이나 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에만 종사하는 企業集團으로 생각할 수 있다.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形成이 요청된다는 論議의 根據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은 銀行의 所有構造 改編에서도 살펴보았듯이 所有主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經濟力 集中의 심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기존 금융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자발적·적극적인 經營合理化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責任經營者가 실질적인 經營權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必要性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고객의 金融需要가 증대되는 동시에 다양화됨에 따라 우수한 顧客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個別 金融商品들을 여러 형태로 복합시킨 新種 商品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요청되며, 이러한 金融革新은 소속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任職員들의 자발적인 奮發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金融專業 銀行은 업무영역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非銀行 子會社가 제공하는 상품과 은행상품을 연계시킴으로써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다 영구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거나, 소속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생산함으로써 範圍의 經濟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2章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은행들은 금융자유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銀行間 合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굴지의 은행들이 大規模 投資를 통해 구축한 정보처리망과 막대한 경영정보, 기존업무를 통해 축적된 信用評價能力 및 金融技法, 이와 연

카이 지분을 보유할 경우 金融專業企業家의 실질적인 經營權 行使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金融專業企業家制度의 導入이 지향하는 銀行 責任經營體制의 確立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當局이 同 制度의 도입과 병행하여 책임경영체제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政府의 規制 및 窓口指導, 金融慣行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금융여건하에서는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責任經營體制의 定着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규제 및 창구지도를 통한 은행경영 개입, 통화관리방식, 그리고 競爭促進에 장애가 되는 진입장벽, 업무영역 규제, 금리규제, 금융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들이 추진될 경우 金融機關들이 날로 심화되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自救策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責任經營의 분위기도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金融專業企業家가 존재하지 않는 은행들에 銀行經營者의 責任經營을 유도하는 기능은 金融市場에서의 競爭促進과 함께 擴大理事會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株主協議會 혹은 獨逸式 監督理事會의 설치를 통해 은행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방안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第 2 節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形成

앞 節에서 新경제5個年計劃 金融改革部門에 포함되어 있는 1994~95년중의 金融專業企業群 育成基盤 造成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과 연계하여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金融專業企業群이 어떻게 定義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으나, 産業資本과의 연계성이 작은 은행, 증권회사, 혹은

금융그룹 형성의 필요성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의 業務領域이 분명히 구분되는 專業主義를 취해 왔기 때문에 金融機關間의 相互進出은 미미한 수준이며, 외형상 금융그룹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그룹소속 회사들 간의 업무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단순한 持分參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調整도 명백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간 이해관계에 따라 恣意的으로 決定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간의 불균형 성장의 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익성면에서 낙후된 금융기관들의 短期的 受信能力 強化와 收支改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업무영역조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전문화된 신설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시장을 개발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단기금융업무에 치중하여 일반은행화하는 경향

〈表 4-10〉 銀行·非銀行 業務重複 現況

| 구 분 | 중 복 업 무 내 용 |
|---------------------|--|
| 비은행금융기관 취급 은행업 유사업무 | 短資：자체발행어음(수신), 할인어음자체보유(여신), 어음보증, 팩토링(부수업무) 綜金：자체발행어음, 할인어음자체보유, 기업자금융자, 지급보증, 팩토링 相互信用金庫：부금예수금(예금성격), 차입금수입(정기예금성격) 投信：기업어음 할인매입, 신탁형증권저축(예금성격) 保險：대출, 단기저축성보험 證券：고객예탁금 이자지급(예금성격), 유가증권 담보대출, 회사채 지급보증 |
| 은행취급 비은행 금융기관 유사업무 | 상업어음 일반대출(단기금융업), 환매채매도(단기금융업), 상호부금(장기금융업), 금전신탁(장기금융업), 신용카드 |

資料：韓國銀行

계된 전문인력 등 광범위한 생산요소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금융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비용의 보완성(cost complementarity)을 통한 範圍의 經濟를 추구하는 경향도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자유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지금보다 심화될 경우 預貸마진의 축소에 따라 銀行 收益性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貸出利子收入 이외의 각종 수수료 수입 증대를 목표로 부수 경영업무의 확대나 子會社를 통한 신규업무 진출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은행산업의 規模 및 範圍의 經濟에 관한 실증분석들에 따르면,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銀行業에 規模의 經濟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合併이 費用減少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⁶⁾. 다만 合併으로부터 기대되는 비용절감 효과의 상당 부분은 合併을 통한 人力減縮을 통해 얻을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합병되는 두 은행 직원들의 人的 融和가 순조롭지 못해 인사관리가 어려워지고 잉여인력이 발생하며 급여수준도 높은 은행쪽으로 조정되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 합병 후 상당 기간 동안 經費效率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급격하게 변화하는 金融環境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수익 흐름의 安定化를 기하기 위해서는 收益先을 다변화하여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문의 收益增減을 다른 收益源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金利上昇期에는 은행업이, 그리고 반대로 金利下落期에는 증권업이 보다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업종의 收益展望도 달라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收益先을 다변화하여 收益의 安定을 기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관해서는 金仁基·金璋熙(1991), 左承喜(1991), 鄭益俊(1993), 梁元根(1993) 등을 참조하기 바람.

〈表 4-11〉 金融機關別 核心業務와 附隨業務의 現況

| | 銀行 | 證券 | 保險 | 投信 | 短資 | 綜金 | 貯蓄機關 |
|-----------------|----|----|----|----|----|----|------|
| 短期商業金融 및 長期金融業務 | | | | | | | |
| 요구불예금 | ◎ | | | | | | |
| 저축성예금 | ○ | | | | | | |
| 채권발행 | | | | | | | |
| 단기대출(1년 이하) | ○ | □ | △ | | □ | □ | ○ |
| 장기대출(1년 초과) | ○ | | △ | | □ | □ | ○ |
| 상호신용(부금, 적금) | | | | | | | ◎ |
| 短期金融業務 | | | | | | | |
| 환매채 | △ | △ | | | | | |
| 콜 | △ | △ | △ | △ | ○ | △ | △ |
| 상업어음 | ○ | | | | ○ | ○ | |
| 기업어음 | | | | | ◎ | ◎ | |
| CD | ○ | □ | | | □ | | |
| 投信業務 | | | | | | | |
| 운용 | | | | ◎ | | ○ | |
| 판매 및 관리 | | | | ◎ | | ○ | |
| 수탁 | ◎ | | | | | | |
| 證券業務 | | | | | | | |
| 인수, 모집, 주선 및 매출 | □ | ○ | | □ | □ | □ | |
| 자기매매 | △ | ○ | △ | △ | | | |
| 위탁매매 | | ◎ | | | | | |
| 保險業務 | | | | | | | |
| 인수 | | | ◎ | | | | |
| 판매 | | | ◎ | | | | |
| 金融關聯 周邊業務 | | | | | | | |
| 리스 | | | | | | ◎ | |
| 팩토링 | □ | | | | ○ | | |
| 보증업무 | ○ | △ | ○ | | | △ | |
| M&A주선 | ○ | ○ | | | | ○ | |
| 신용카드 | ○ | | | | | | |

註：◎ 핵심업무로서 타업종은 참여제한
 ○ 핵심업무이나 타업종이 참여가능
 □ 부수업무로서 참여제한
 △ 부수업무로서 적극적 참여가능

資料：金融產業發展審議會, 『金融制度改編研究』, 1993. 12., p. 251.

을 보여왔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金融自律化 추진으로 금융기관들간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銀行과 非銀行 金融機關間의 業務重複 現象은 더욱 심화되었다.

新경제計劃에서는 銀行·證券·保險 등 3대 金融業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子會社 設立 등의 형식으로 겸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세계적인 겸업화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향후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비할 목적으로 業務領域調整方向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여부와 관계없이 附隨 및 兼營業務를 확대하고 他業種에도 진출하려 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新경제計劃上的 金融改革案과 金融產業發展審議會에서 검토된 案들을 토대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은행들의 자회사 진출현황을 살펴본 뒤 金融專業企業그룹의 도입 가능성 및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우리 銀行들의 子會社 進出 現況

우리나라에서도 金融產業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산업에 競爭原理를 확대도입하여 金融市場의 價格機構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에 대한 規制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主張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들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各 機關이 수행할 수 있는 業務를 열거하는 positive system 형식의 規制가 존재하며(〈表 4-11〉 참조), 이러한 專業主義는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表 4-12〉 銀行機關의 業務內容

| | | 固有業務 | 附帶業務 | 周邊(兼營)業務 |
|------|--|--|--|---|
| 一般銀行 | 市 中 銀 行 地 方 銀 行 外 銀 支 店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적금 ○ 장·단기대출 ○ 내국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보증, 유가증권투자 및 대여 ○ 유가증권인수·매출 및 모집의 주선 ○ 외국환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발행 ○ 상업어음 일반매출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상호부금 ○ 팩토링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무 ○ 신용카드 ○ 리스업무 (자회사) |
| 特殊銀行 | 中 小 企 業 銀 行 國 民 銀 行 住 宅 銀 行 農 · 水 · 畜 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금융업무, 저축기관업무 등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 ○ 설립목적에 따른 분야별 전문업무 ○ 금융채권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업무와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리스, 신용카드, 불특정금전신탁 ○ 국민: 리스, 신용카드, 불특정금전신탁 ○ 주택: 신용카드, 불특정금전신탁 ○ 농협: 신용카드, 불특정금전신탁 ○ 수·축협: 불특정금전신탁 |
| 開發機關 | 產 業 銀 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자금, 특수기금, 외환 및 산업금융채권발행자금을 재원으로 주요산업자금 장기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시중은행업무 취급(거래처의 요구불예금, 기한부예금 등 수신 및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신탁 ○ 벤처캐피탈 ○ 경영컨설팅 |
| | 輸 出 入 銀 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 금융기관 차입금 및 금융채권발행자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중장기연불수출,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자금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환, 재무보증 | |
| | 長 期 信 用 銀 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금융채권 발행자금을 주재원으로 장기 설비운전자금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업무 취급(거래처의 수신 및 수신범위 내 단기대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부 사채신탁업 ○ 신용카드, 신탁 |

資料 : 韓國銀行

특정 금융기관의 경영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 운용이 지나치게 投機化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倒産을 사전에 예방하고 金融市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과다하게 한정시켜 기관간 경쟁을 약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들을 매우 수동적인 경영에 안주하게 하고 競爭制限으로 인해 資金配分의 效率性を 低下시키거나 금융혁신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非銀行 金融機關의 急伸張에 따른 銀行의 地位 弱화 및 收益性 低下 등의 金融環境變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銀行의 業務領域을 非銀行業務로 확대하고 非銀行 金融機關과 證券·保險會社에도 銀行類似業務의 兼營을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規模 및 範圍의 經濟에 따른 금융중개비용의 절감을 도모하며, 업무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금융수요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認識이 확산되고 있다(은행의 수행가능업무는 <表 4-12> 참조).

먼저 우리 銀行들의 子會社 進出 現況을 살펴보면, 현재 銀行 子會社⁷⁾의 업무취급범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고⁸⁾ 대부분의 子會

7) 은행법(제27조 ①)상에는 은행이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분을 10%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회사를 은행의 子會社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子會社에 대한 定義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이를테면, 企業會計基準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를 關係會社로 정의하며, 連結財務諸表基準에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로 있거나, 최대주주이면서 대여,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자기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다른 회사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회사를 支配會社로 규정하고 있음.

8) 다만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해야 하며(「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

〈表 4-13〉 國內 主要 金融機關의 子會社 保有 現況(1994年 7月 末 現在)

| | | 銀 行 | | | | | | | | | | | 證 券 | | | |
|-----------|---|-----|----|----|----|----|----|----|----|----|----|----|------|----|----|----|
| | | 朝興 | 商業 | 第一 | 韓一 | 서信 | 外換 | 新韓 | 國民 | 産業 | 企業 | 住宅 | 長期信用 | 大信 | 東西 | 東洋 |
| 銀 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證 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保 險 | | | | | | | ○ | | | | | | ○ | | ○ | |
| 短 資 | | | ○ | | | | ○ | | | | | | | | ○ | |
| 綜 金 | | | | | | | ○ | | ○ | | | | | | | |
| 投 信 | △ | △ | △ | △ | △ | | | | | | | | | | | |
| 리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信 用 金 庫 | ○ | ○ | | ○ | ○ | | ○ | ○ | | ○ | ○ | | | | | |
| 開 發 金 融 | | | | | | | | ○ | ○ | ○ | | | ○ | | | |
| 投 資 諮 問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創 業 投 資 | | | ○ | | | | | | | | | ○ | | ○ | ○ | |
| 電 算 系 統 | ○ | ○ | ○ | ○ | ○ | | ○ | ○ | | ○ | | | | | ○ | |
| 先 物 仲 介 | | | ○ | | | | | | | | | | | | ○ | |
| 팩 토 링 | | | | | | | | | | ○ | | | | ○ | | |
| 債 權 管 理 | | ○ | | | | | | | | | | | | | | |
| 經 濟 研 究 所 | ○ | | ○ | ○ | | | ○ | ○ | | | ○ | | ○ | ○ | | |
| 信 用 評 價 | | | | | | | | | ○ | | | | | | | |

註：○ 출자지분이 10% 이상인 子會社
 △ 출자지분이 10% 이상의 단순 持分參與 會社

社가 金融業을 영위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에 대한 規制로 인해 主要 金融機關間의 相互進出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호진출을 한 경우에도 規模와 價格面에서의 規制로 인해 상호진출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表 4-13>에서 볼 때 우리 금융기관들은 외형상으로는 많은 子會社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에 설립되고 있는 리스·투자자문·전산시스템 관련회사 등을 제외하고는 子會社들의 성격이 업무다각화보다는 부실기업을 정책적으로 인수하거나 共同出資方式에 의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子會社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임직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母-子會社間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한 데는 업무영역의 규제와 함께 新金融商品의 개발에 대한 規制도 엄격하여 子會社의 기능과 연계된 복합금융상품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銀行이 다른 業種에 진출하는 方式으로는 附隨 및 兼營業務의 확대로 타업종에 진출하는 相互進入方式, 子會社 設立을 통한 方式, 각 금융기관이 모든 종류의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完全兼業方式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相互進入方式 및 業種別 子會社 進出方式에 의한 타업종 진출이 별다른 기본원칙 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무영역조정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效率性·競爭原理·利用者 便宜 등의 사항들은 소홀히 취급된 반면, 각 금융기관간 이해조정에 치우친 나머지 금융기관간에 過多한 業務重複 現象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전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M₂ 중심의 通貨管理

한 法律」 제12조), 또한 신탁계정을 통해 타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함(신탁업법 제15조 ②).

配株主가 없더라도 은행업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子會社 設立을 통한 業務多角化를 추구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後者에 관해서는 금융그룹 형성에 관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母會社에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金融專業企業그룹의 형성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한다.

金融專業企業그룹을 육성하는 方案으로는 1) 은행,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母會社로 하는 기존의 금융그룹 중에서 일부를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방안, 2) 金融業과 非金融業을 겸영하고 있는 일반 기업집단이 非金融業種 企業을 처분하여 金融專業企業群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3) 신규로 산업자본과의 연계가 없는 金融資本家에게 은행 혹은 증권회사를 母會社로 하는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銀行이 금융전업그룹의 母會社가 되는 경우는 위의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존하더라도 앞 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母會社 은행에 金融專業企業家가 출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93년 말 현재 산업자본계열의 金融機關 持分을 포함하면 5대 시중은행과 신한, 한미은행의 產業資本系列 持分率은 모두 10%를 上廻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金融資本家나 금융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產業資本이 대형 시중은행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 은행의 기존 產業資本 大株主의 持分을 축소하는 문제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대형은행에 대해 높은 持分率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그룹 형성상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銀行을 買受하는 경우에는 支配權 확보가 보다 쉬운 장점은 있지만 이들 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證券 子會社를 신규로 매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方式의 有效性을 제약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1991년에 시행된 短資社 業種轉換 및 산업은행의 증권 자회사 설립도 전반적 금융산업 개편에 대한 기본방향의 제시없이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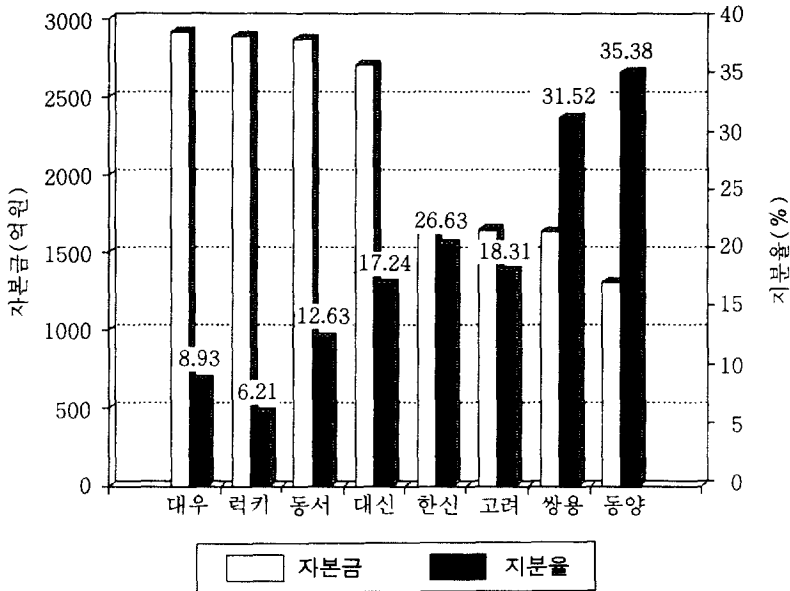
다음, 銀行 子會社를 통한 여타 업무의 兼營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利害相衝 및 은행과 자회사간 불건전거래, 子會社 經營難으로 인한 銀行經營 不實化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制度的 裝置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업종간 상호진출 수준이 미미하고 은행-자회사간 관계도 긴밀하지 않아 당국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제6차 은행법 개정시(1991. 12) 銀行과 子會社間에 일부 遮斷裝置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子會社에 대해 金融 通貨運營委員會가 정하는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 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자회사주식 담보 대출, 자회사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子會社 임·직원에 대한 대출⁹⁾도 은행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은행법 제27조 ①). 그리고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임·직원이 당해 은행 子會社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銀行과 子會社間의 人的 交流를 제한하였다(은행법 제28조 ②).

2.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導入可能性에 대한 檢討

金融專業企業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그룹의 主體가 되는 母會社에 실질적인 支配株主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母會社 金融機關의 株式保有가 분산되어 支

9) 子會社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은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한도는 一般資金貸出의 경우 1천만원 이내, 住宅資金貸出의 경우 일반자금대출금액 포함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동시에 금리 등 대출조건의 우대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함.

[圖 4-2] 主要 證券會社의 資本金 및 大株主 1人¹⁾ 持分率 現況
(1994年 12月 31日 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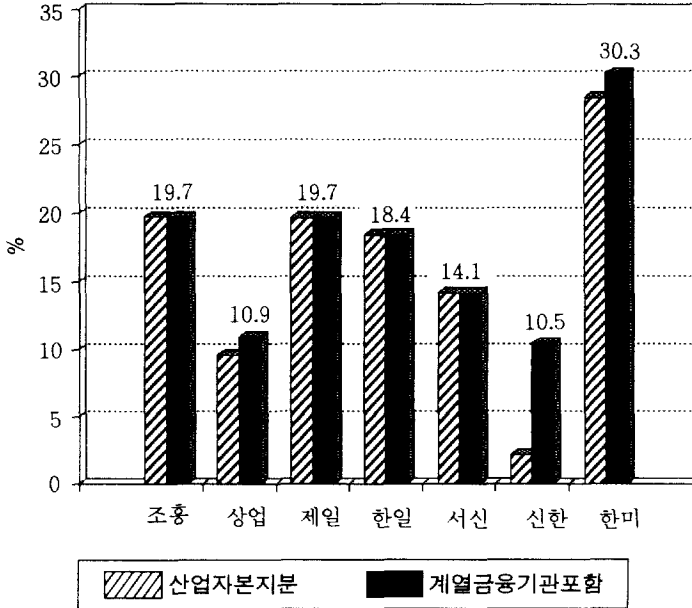
註：1) 주주 1인과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자의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집단.

資料：韓國證券去來所.

치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까운 장래에 우리 증권사들의 경쟁력이나 자본시장 현황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證券會社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保險會社의 대부분은 산업자본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여 금융그룹 형성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保險會社가 서로 다른 기업문화를 가진 銀行業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근에 들어 외국에서 銀行과 保險社間의 戰略的 提携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완전한 결합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은행이 보험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圖 4-1] 主要 銀行의 産業資本 持分 現況(1993年 末 現在)



資料：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다음, 자본금이 1,000억원이 넘는 9대 證券會社들이 대부분 산업 자본과 연계되어 있어, 證券會社를 모회사로 하는 금융전업그룹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이들 산업자본이 동일계열 非金融企業들에 대한 소유권을 처분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證券社를 母會社로 금융전업그룹을 형성하는 경우 銀行 子會社를 보유함으로써 금융전업그룹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나, 증권회사들(특히 산업자본의 持分이 낮은 증권회사)의 자본금규모나 영업현황을 볼 때 당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중은행을 子會社로 매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이들 證券社가 금융그룹 형성을 위해 은행을 子會社로 두면서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갖기 위해서는 收益性이나 營業基盤面에서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비교적 확고한 위

3. 向後의 金融그룹 形成方向

가. 金融專業企業그룹 形成을 위한 與件整備

금융전업기업그룹의 육성이 우리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실의 각종 제약요인 하에서 나름대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전업기업그룹은 산업자본과의 연계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資本金規模, 最近의 營業實績 및 保有 資産의 健全性, 經營合理化 推進實績, 機關의 信用等級 등에 관한 基準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자본과의 관련성이 작은 금융기관(들)이 同 基準을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增資나 合併 등을 통해 금융전업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金融專業企業(그룹)을 사전에 지정한 후 이들 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인위적으로 금융전업기업그룹을 육성하기보다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이 금융전업그룹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該當 機關 經營者의 專門性 및 機關의 公共性 등을 고려하여 認可與否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金融機關들의 兼業化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내실 있는 장기발전 구도하에서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新경제計劃上 業務領域調整은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段階的으로

다음, 産業資本이 非金融企業을 處分하여 金融專業企業그룹을 形成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 규모면에서 證券會社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형그룹이 금융전업기업그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그룹이라 할지라도 주력기업들의 자본이익률이 주요 금융기관의 자본이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유인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이들 그룹이 實物市場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金融專業企業그룹 형성을 희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산업자본이 계열회사를 매각할 경우 다른 大規模 企業集團이 이를 매수하여야 할 것이나, 그 경우 업종에 따라서는 기존 寡占의 市場構造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과의 연계가 없는 新規 金融資本家가 시중은행이나 대형 증권회사를 매수하여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고자 할 경우 해당기관 혹은 그룹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0~5,000억원의 資本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銀行業의 長期展望이나 不實債權의 規模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금융업에 투입할 資本家가 존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상의 論議를 종합해 보면, 현 상황에서 기존 금융기관을 母會社로 하거나 産業資本 혹은 金融資本家가 대형 시중은행을 매수하여 수년 이내에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는 대규모 금융전업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행 시장에서의 年間 株式發行金額 推移나 金融株의 比重 등을 고려할 때 만약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이 추진되면서 非專業 金融機關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의 축소가 병행되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로 인한 물량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성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넷째, 既存 金融機關들이나 産業資本, 金融資本家들이 금융전업그룹형성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는 금융전업그룹으로 지정된 이후에 향유하게 될 惠澤의 範圍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新경제計劃期間中에 설정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한도의 적용을 금융전업기업그룹에 대해서는 배제 내지 완화하는 방안, 專業與否에 따라 비은행업무 진출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 산업자본을 매각하거나 합병·전환을 통해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시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을 경감하는 방안, 금융전업기업(그룹)의 增資나 非上場 子會社의 공개에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부실채권 상각의 損金 認定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전업기업그룹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유인책의 폭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中長期的인 金融制度의 再編成 構圖를 명확히 한 후에 이의 실현을 도울 수 있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다섯째,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건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3~4개의 금융전업기업그룹이 형성될 경우 金融市場의 集中度가 현 수준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장집중에 따른 경쟁상의 불형평, 가격담합 등 不公正去來 行爲에 대해서는 公正去來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시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금융전업기업그룹이 일단 형성되고 난 후 産業資本과의 非公式的 談話에 의해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비하여 金融專業銀行의 巨額與信 動向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전업 기업그룹이 형성 초기의 자본투자를 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해 高收益性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전업은행의 內部經營의 自律性은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내부의 위험관리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經營公示義務를 확대하는 등의 健全經營監督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금융전업그룹 내 한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그룹 내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持分參加를 제외한 금융전업기업그룹소속 기관들의 상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금융그룹으로 하여금 統合基準에서 財務諸表를 작성하여 公示하도록 하며, 업종간 폐해차단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非銀行金融機關에 대한 감독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그룹이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 金融專業그룹 전체의 危險度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해당 업종의 감독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 監督機關間에 金融專業그룹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 金融그룹 形成時의 一般的 考慮事項

1) 非銀行業務 進出方式

金融專業企業그룹의 육성에 관한 論議가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른바 주인 없는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銀行이나 證券會社가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여 他業種에 진출하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金融專業企業그룹이 어떤 방식에 의해 非銀行業務에 진출할 것인가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기관들도 세계적인 兼業化 趨勢에 부응하여 향후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비할 목적으로 業務

領域 調整方向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전업기업 그룹의 형성이 결정될 경우 子會社의 수행가능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새로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非銀行業務에 대한 진출방식을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더구나 第2金融圈 金融機關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 규제의 도입이 실행될 경우 금융전업기업그룹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완화가 금융전업그룹의 형성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非銀行業務 進出方式과 무관하지 않다.

참고로 외국 금융그룹들의 業務多角化 類型들을 살펴보면, 第2章에서 본 바와 같이 兼業主義를 견지해 온 독일 이외에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은행들이 종래의 단기상업금융업무 중심에서 주택금융, 소비자금융, 부동산, 신탁, 리스, 팩토링, 신용카드업무 등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子會社 設立, 資本參與比率의 增大 혹은 業務提携를 통해 전업주의하에서 허용되지 않던 증권업 및 투자관련업무의 비중을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고, 일부 은행들은 保險業에도 진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전업주의를 고수해 온 미국의 경우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이 상존하고 있고 銀行持株會社를 통해 진출할 수 있는 非銀行業務도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해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관련법규의 신축적 적용을 통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금융제도가 유사한 면이 많은 日本도 子會社 設立을 통한 은행업·증권업·신탁업의 점진적·단계적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금융제도개혁법의 시행 이후 일부 개발은행과 신탁은행 등이 證券 子會社를, 그리고 대형 4개 증권사와 동경은행이 信託 子會社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특기할 것은 미국·영국·독일의 경우 母銀行의 子會社에 대한 持分率은 100%가 대부분이며, 이들 子會社의 영업실적이 連結 財務諸表에 반영되어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母·子會社의 역할 분담 및 기능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

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수·겸영업무 수행을 위한 子會社는 5%로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의 대리점 업무나 관계은행을 위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100% 出資 子會社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전업기업그룹의 여타 업종에 대한 進出方式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業種別 子會社 方式, 持株會社 方式, 그리고 相互所有 方式 등이 있다. 우선 業種別 子會社 方式은 이미 우리 금융기관들이 타업종에 진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은행들도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金融專業企業그룹으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고유업무에서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으로 子會社의 설립을 통해 고유업무와의 연계성이 높거나 수익성 전망이 좋은 부수·겸영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母會社와 子會社間의 利害相衝과 不公正去來를 여하히 축소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다음, 持株會社 方式은 持株會社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본을 보다 쉽게 조달하거나 금융그룹 형성에 소요되는 자본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직의 신축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持株會社 所屬 系列會社의 법적 독립성이 子會社의 경우보다 높아 한 회사의 經營 不實化가 持株會社 소속 他會社로 전과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채택하려면 「獨占去來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상의 持株會社 設立禁止條項(제8조)을 수정하여야 하며, 금융전업그룹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전업그룹의 형성 초기에 고려하기보다는 금융그룹의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 이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에 허용을 고려하는 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相互所有 方式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간에 議決權附 株式을 상호보유함으로써 금융전업기업그룹의 형성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각 금융기

관이 부수·겸영업무에 서로 진출할 수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규모의 추가적인 자본유입 없이도 금융전업그룹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相互所有 制限¹⁰⁾으로 인해 진출가능 업무의 범위가 제약될 수 있으며, 實質的 所有主에 의한 책임경영 유도라는 金融專業그룹 育成의 본래 趣旨를 달성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融專業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銀行業務를 根幹으로 영업규모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와 밀접히 관련된 非銀行業務에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그룹형성 초기부터 收益性을 토대로 關聯·非關聯 非銀行業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의 2가지 중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은행이 다른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분야의 市場構造 및 收益性 展望, 은행업무와의 연계가능성, 소요자본의 규모, 人的·物的 資源의 可用與否, 진출가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시장에서의 금융기관 수를 고려할 때 대체로 회사를 신설하여 진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실적이 兩極化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不實化한 機關을 인수한 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資源을 투입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子會社를 늘려가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은행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토대로 은행의 비교우위부문과 關聯度가 높은 부수 및 겸영업무를 子會社를 통

10) 상법(제342조의 2)은 母會社가 子會社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子會社는 母會社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제189조) 및 동법 시행령(제84조의 2)은 증권사가 매매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나 상호지분이 1%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법인이 주식을 상호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해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非銀行業務에 진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子會社의 취득이 容易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과의 業務提携¹¹⁾를 통해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업의 경우 業務提携의 주된 내용은 양 기관의 서비스를 결합한 新商品開發이나 제휴기관의 지점망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제휴는 다각화에 따른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 특정시장에의 진입 가능, 新技術 습득, 위험분산,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닌 반면, 子會社의 경우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곤란하고 경영도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提携 成果의 배분에 있어서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등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業務提携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제휴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業務提携를 검토할 때에는 제휴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그룹의 장기발전계획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기존 大株主들의 동의를 얻어 제휴를 추진하도록 하며, 업무제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資源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제휴기관과의 장기적 협력관계 유지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 일단 業務提携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양 당사자의 업무제휴상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도록 하고, 提携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제휴관계가 중도에 단절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比較優位部門의 競争力 維持와 제휴기관간의 유대강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運營의 妙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별도의 자본투자 없이 판매협

11) 業務提携는 해당 업무의 상대적인 전략적 중요성의 정도와 제휴기관의 해당 시장에서의 위상에 따라 자본참가의 정도가 달라지며, 「풀(pool)·컨소시엄·합작회사·판매협정 등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정만을 맺는 경우에는 兩者間的 關係가 상대적으로 긴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휴 쌍방이 제휴기관에 小株主로 持分參加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2) 金融그룹의 經營

일단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을 통해 금융그룹이 형성되면 새로운 組織의 再構成 및 그룹소속 계열회사의 統合經營이라는 問題가 대두되게 된다. 한 기관이 어떤 형태로 업무다각화를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룹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며, 그룹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로는 對內的으로는 그룹의 최고경영자의 성향 및 추구하는 목표, 그룹에서 非銀行業務가 차지하는 비중, 非銀行 子會社 경영진의 경영 자율성 요구 정도, 그룹소속 계열회사들간의 市場重複 여부, 그룹이 보유하는 資源上的 制約, 그룹 내 意思決定機構의 性格 등이,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경쟁기관들의 성장 및 전략적 움직임, 전반적인 경제상황, 금융규제의 변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금융그룹의 형성이 진행됨에 따라 그룹 전체에서 제공하는 金融商品들의 종류와 이를 제공하는 「채널」이 점차 다양화될 것이며, 組織構成에서도 特定 商品과 市場間的 關係를 보다 重視하는 專門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그룹의 최고경영진이 非銀行業務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이들 非銀行業務의 성장속도 및 그룹의 組織構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그룹의 형태에 관계없이 한 기관이 영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업무의 다각화를 추진할수록 대형화·다양화되는 그룹 내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새로이 형성되는 그룹의 조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의 經營成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새로이 설립되는 非銀行 子會社에는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銀行任員이 과건되어 경영을 맡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銀行業務와 非銀行業務

間에 영업방식·市場構造·人事政策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非銀行業務의 비중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은행에서 파견된 經營者가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로 인한 意思決定의 遲滯나 은행과의 경영방침에 대한 마찰 등은 子會社의 經營成果나 非銀行業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金融專業그룹의 형성 및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룹 내 子會社들의 다양한 업무수행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직의 복잡화와 이에 따른 그룹경영 통제상의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組織의 構成 및 再編成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銀行業과의 연계성이 낮은 非銀行業務에 진출하는 과정에서의 경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행임원을 해당 子會社의 最高經營者로 파견하여 경영방침에 대한 의사전달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外部 經營者를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銀行을 중심으로 금융그룹이 형성될 경우에는 초기에 은행경영자들이 전통적 銀行業務에서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非銀行業務에 관한 이해와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그룹조직이 확대될수록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르는 경영상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므로, 그룹 형성의 초기부터 경영방침의 전달 및 경영실적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業務多角化로 인해 그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룹 전체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계열회사들의 영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고 조직 및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일단 특정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뒤에는 사전에 教育·研修를 통해 해당 분야에 종사할 專門人力을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가) 組織體系의 段階的 再構成

우선 금융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목표를 재검점하고 이를 토대로 非銀行業務에의 진출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 非銀行 子會社 설립을 통해 은행의 영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母會社인 銀行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다음으로 금융그룹이 지향하는 목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룹의 조직체계 및 경영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강화해 나갈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영통제방식, 보고절차, 경영실적 평가, 정보교환채널, 자원배분, 급여 및 후생정책, 신규채용 등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銀行과 非銀行 子會社 經營者들간의 자율적 經營權에 대한 마찰 해소 및 직원들의 일체감 고양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非銀行業務를 취급하는 子會社들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회사별 영업성격의 차이를 인정하는 範圍를 확대해 나가며, 機關보다는 商品別·市場別로 市場需要 및 收益性을 판단하여 성장속도를 결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McClellan(1981)은 금융그룹의 형성을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形成期에는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회피, 그룹의 信用度 提高를 통한 새로운 資金 調達源 발굴 등의 목적으로 금융그룹의 형성을 추진하게 되며, 이때 그룹의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이나 異種業務間의 資源 配分은 銀行의 最高經營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그룹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그룹활동에서 非銀行業務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중심의 경영방식이 조직간의 갈등을 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며, 그 결과 調整期에는 非銀行 子會社들의 경영에 대한 통제가 다소 완화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의 영입도 늘어나며, 그룹경영 전반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재검토 및 가

능한 범위 내에서의 표준화가 시도되게 된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戰略的 轉換期에서는 그룹 非銀行業務의 수익성, 銀行과 子會社間의 경영상의 갈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 시점에서 非銀行業務의 수익성이 양호하고 야기되고 있는 경영상의 갈등을 조직구조의 개편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非銀行業務의 확대를 포함하는 그룹 목표의 再設定을 통해 그룹의 업무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非銀行業務의 收益性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경영상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경우 非銀行業務의 진출범위 및 경영의 자율성을 축소하는 대신 은행업무의 성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금융그룹 형성의 마지막 단계로 그룹조직의 改編을 완료하고 최고 경영층의 역할도 재정립함으로써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그룹 전

〈表 4-14〉 金融그룹 形成의 段階

a) 形成期

| 特 性 | 狀 況 | 反 應 | 意思決定 活動 |
|-----------|--|--|---|
| 戰略的 特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이 축이 됨 • 은행업무의 확장이 주된 관심 • 업무다각화는 낮은 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무와 새로운 업무들에 대한 자본 투입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분야로의 업무 확장 |
| 組織的 特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기능이 통합되어 있음 • 은행의 업무영위체계 유지 • 그룹관리 = 은행관리 • 그룹경영상의 문제성 미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상의 변화 미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금융기관을 은행조직에 통합 |
| 行政的 特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경영방식 고수 •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조직 및 정책의 변화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경영방식을 비은행업무에 적용 |
| 影響을 주는 要因 | 은행간 경쟁,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 경제적 상황, 자본의 적정성 및 재원 요구, 규제조치 | | |

〈表 4-14〉의 계속

b) 調整期

| 特 性 | 狀 況 | 反 應 | 意思決定 活動 |
|---------------|---|---|---|
| 戰略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내 비은행 업무의 규모와 중요성 증대 • 영업성격의 차이에 따른 경영의 차별화 요구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배분 결정에 있어 비은행업무의 중요성 증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사의 매수 혹은 신설 |
| 組織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상부조직이 그룹운용을 주도 • 비은행기관의 업무를 은행을 통해 관리 •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부 조직의 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사에 대한 전략적 의미부여 증대 • 사회사의 경영자율성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단위조직들을 통합하기 위한 구조설계 • 은행 최고경영자의 역할 규정 |
| 行政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조직들간의 정책상의 갈등 표출 시작 • 정책, 행정 처리절차 및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자의 노력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고용, 성과 측정 등에 대한 정책 및 관행의 수정 • 전문인력의 투입 • 업무들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정책들과 가이드라인들의 개발 • 사회사들에 통일된 정책 제시 •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들 색출 |
| 影響을 주는 要 因 | 최고경영자의 그룹 내 각종 업무에 대한 이해도, 하부조직간 갈등의 심각성, 최고경영자와 하부조직 실무책임자간의 의견 차이 | | |

〈表 4-14〉의 계속

c) 戰略的 轉換期

| 特 性 | 狀 況 | 反 應 | 意 思 決 定 |
|---------------|--|--|--|
| 戰略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금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전략수립 필요 • 비은행 금융기관 자회사의 상대적 크기 및 전략적 중요성 증가 •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대한 은행 경영자의 인식 증대 • 자회사들과 은행의 경영정책 및 행정절차 상호간의 갈등 심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자회사의 활동에 대한 독립성 강조 • 표출되는 갈등을 경영상의 문제로 간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의 목표 재설정 • 그룹보유자원 및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 |
| 組織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조직의 구조 변화에 대한 조직적인 압력이 표면화 • 최고경영자의 내부조직간 분쟁 증대 증가 • 상급 경영자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업무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업무를 관장할 기구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조직구조 및 조직간 관계 정립 • 외부로부터의 최고경영자 영입 |
| 行政的 特 性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정책 및 절차의 적용이 어렵게 됨 • 보상, 평가, 재원분배, 보고절차에 대한 차별화 요구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경영방침이 자회사들의 영업성격의 다양성을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경영통제체계, 경영성과 측정수단 개발 • 경영의 중앙통제는 유지하면서도 경영의 업종간 차별화를 가능한 한 허용 |
| 影響을 주는 要 因 | 비은행업무의 규모, 하급관리자의 의사결정 능력, 비은행 자회사와의 경영갈등의 빈도, 수익성, 규제 및 당국의 개입 | | |

資料 : McClellan(1981), pp. 46~49, Figures 3.6~3.8 修正.

체의 성장을 추구해 가는 成熟期가 있게 된다. 이 時期에 이르러서는 그룹이 수행하는 업무가 더욱 다양화되며, 非銀行 子會社 각각의 수익성이 확보될 경우 경영상의 자율성이 최대한도로 보장된다. 그리고 그룹의 규모와 수행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룹 전체의 경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진로를 계획하는 별도의 組織이나 機構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나) 銀行과 系列社間 業務連繫性 擴大

顧客의 金融需要가 날로 다양화됨에 따라 고객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商品開發과 서비스 제공이 점차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으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主顧客에 대한 金融서비스 能力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은행과 계열사간 연계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 기존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율화·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은행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複合 金融商品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經營合理化 次元에서도 그룹 내 전산시스템 및 情報·「노하우」(knowhow)를 그룹 내 계열사들이 共有·活用함으로써 費用節減 및 金融仲介의 效率性 提高를 도모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은행들은 持分參加 성격의 子會社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子會社들의 경영에 대한 개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기관 업무영역 규제로 인해 계열사간에 연계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계열사간의 상품개발에 관한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필요에 따라 상품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상품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개발상품에 대한 情報의 共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

로 현행 업무영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 계열사들간에 연계가 가능한 상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市場性 및 收益性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부터 개발하여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열사별로 타계열사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流動性, 便宜性, 收益性의 면에서 自社 金融商品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향후 系列社의 범위가 증권·보험·신탁 등으로 확대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연계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範圍의 經濟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각 계열사의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기능을 연결함으로써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系列社 保有의 金融商品을 적절하게 조합한 「포트폴리오」 新商品을 개발하여 상대적인 高收益을 보장하거나 금융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되는 특정 고객의 욕구형태에 부합되는 「패키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상품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系列社 要請時 관련정보를 適期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活用基盤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차원에서 은행과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목표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경쟁상품의 분석을 통해 自行 商品의 商品性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는 體系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며, 고객의 수요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개발상품의 수익성에 관한 事前 市場調查活動과 新商品에 대한 顧客満足度 分析 등의 事後 市場調查活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第5章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銀行을 둘러싸고 있는 金融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金利自由化와 業務領域에 대한 規制의 점진적 완화로 서로 다른 金融機關들간의 競爭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經濟의 國際化 進展 및 金融시장 개방으로 海外市場에서의 상황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影響의 정도도 점차 커지고 있다.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信用도가 높은 大企業들은 直接金融市場 및 國際金融市場에서의 資金調達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총수익 중 貸出關聯收益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대신 有價證券 關聯 收益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은행들의 업무내용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金融의 自律化 및 國際化·開放化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주도하에 형성되어 온 銀行과 企業間的 關係에도 불가피하게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信用配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銀行資金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점차 해소되어 갈 경우 銀行貸出市場은 지금까지의 供給者市場에서 需要者市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예금을 유치함에 있어 보다 많은 金融機關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입장에 처할 은행들은 조달된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우량고객을 유지·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證券化가 진전되고 銀行業과 證券業의 구분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銀行들은 收益先의 다변화를 위해 有價證券, 그 중에서도 특히 非金融企業 株式의 보유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機關投資家로서 기업경영상의 代理人 費用을 축소하는 견제세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本 報告書는 은행 및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資金供給者 및 機關投資家로서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보다 自律화된 環境下에서 은행들이 기업들과 새로운 紐帶關係를 형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主要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第2章에서는 主要國에서의 金融環境 變化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銀行들의 戰略을 살펴 보았다. 金融自律化로 金融機關들의 업무영역 구분이 완화되고 진입장벽이 축소됨에 따라 金融機關들간의 競爭이 한층 심화되고 預貸마진이 축소되는 한편 大企業 顧客들이 直接金融市場 및 國際金融市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자, 專業主義를 표방하던 나라들에서도 금융당국이 自國 金融機關들의 收益性 維持 및 競爭力 強化를 지원하기 위한 措置들을 강구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 과정에서 은행들은 대출업무에서의 收益性 악화를 補填할 목적으로 合併을 통해 비용절감 및 規模의 經濟性을 추구하거나, 금융그룹의 형성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自己資本比率에 대한 規制가 강화되는데 대응하여 傳統的 預貸業務의 주변 및 부수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證券關聯業務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銀行 資産 및 負債의 證券化 現象 확대, 국가간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主要國 銀行들이 특히 1980년대 이후 급변하는 金融環境下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이들 國家에서의 銀行과 企業間 關係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外國의 事例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第3章에서는 銀行의 機能을 기업들에 대한 資金供給者와 機關投資家로서의 企業經營監視者의 두 가지로 구분한 후 각 기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은행과 기업간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먼저 銀行의 信用供與者로서의 役割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업들이 銀行借入에 의존하는 程度는 은행·기업의 성장배경, 기업의 내부자금 보유 규모, 資本市場의 발달 정도, 金融規制의 정도, 關聯稅制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企業들의 外部資金에 대한 依存度는 최근에 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주요 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資本市場의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外部資金의 상당 부분을 株式發行보다는 金融機關 借入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負債比率에 따른 金融費用負擔 過多가 경쟁력을 압박하는 한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外部資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은행차입의 배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왔던 系列企業群에 대한 與信管理 規制는 대규모 기업집단들의 財務構造를 개선하는 데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大企業들의 金融獨占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與信管理 規制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는 과정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협력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產業政策의 수립·시행이 요청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銀行들에 대한 同一人 與信限度의 縮小와 巨額與信 總額限度制의 導入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규제의 완화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豫防하기 위한 措置로 생각된다.
- 3) 우리 은행들은 1980년대 이후 外形上으로는 대체로 景氣 擴

張期에는 대출의 확대 속도를 줄이고 有價證券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景氣 收縮期에는 이와 반대되는 영업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이나, 季節的 要因 및 趨勢를 제거할 경우 은행의 貸出供給行態는 기업들의 유동성 제약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貸出利子率 및 會社債金利의 대출금규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貸出利子率 變動이 銀行貸出供給規模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30大 企業集團에 속하는 系列會社들의 경우 與信管理를 위해 지정된 主去來 銀行이 최대 대출은행이 아닌 경우가 많고, 주거래 은행이 最大貸出先인 기업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주거래 은행의 貸出占有率 평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以前보다 많은 數의 銀行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앞으로 기업고객들을 확보하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1970년대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銀行의 資產 및 貸出市場에서의 競爭度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은행들이 이들 시장에서 超過設備(excess capacity)를 보유함으로써 適正利潤을 보지 못하고 產出物을 공급하거나, 產出物의 供給을 完全競爭의 경우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당분간은 銀行들이 貸出市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環境變化로 은행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貸出供給規模를 지금보다 다소 늘릴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銀行들이 변화하는 金融環境下에서 기업들과의 고객관계를 형성·강화해 나가는 것

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나, 現 時點에서 兩者가 美國·英國에서와 같은 對等關係를 견지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다고 해서 獨逸·日本의 경우처럼 은행들이 기업경영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데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金融規制 緩和推移를 보아가며 기존 去來顧客의 金融需要와 기존 서비스에 대한 滿足度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기존 거래고객들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緊密한 銀行-企業間 關係를 형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政府의 입장에서는 은행들이 위에서 제시된 방향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독자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金利 및 業務領域, 營業店 設置·閉鎖 등에 관한 過度한 規制들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金融機關間의 공정한 競爭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經濟의 國際化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國際金融需要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國內 金融機關들의 업무영역 조정에 앞서 우리 은행들이 相互主義의 범위 내에서 해외에 각종 非銀行 子會社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海外에서의 資金調達 및 運用에 관한 規制를 완화함으로써 企業顧客들에게 國內外에서 綜合的인 金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쌓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우리 企業들이 資金調達을 銀行借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상, 기업들이 은행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은 再論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外換 및 資本去來의 自由化 擴大로 大企業들이 自己信用을 바탕으로 國際金融市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이 間接金融보다 直接金融에 의

한 資金調達을 늘려 기업 財務構造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들의 財務構造를 건전성면에서 주요 경쟁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收益性的 提高로 내부금융의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直接金融市場에서의 資金調達을 상대적으로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國內外 市場에서의 企業間 競爭이 날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收益性的 提高에 의한 내부자금 조달확대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나, 經營合理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외형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향후의 期待收益性を 바탕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自己資本 中 剩餘金이 차지하는 비중이 納入資本金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기는 하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는 배당부담이 있는 納入資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收益性 提高를 통한 잉여금 증대가 企業의 財務構造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內部資金 調達源 中 減價償却費는 지금까지 설비의 경제적인 耐用年數를 감안하여 인정하는 데 그침으로써 주요국들에 비해 減價償却을 통한 내부자금 형성의 비중이 낮은 실정이다. 法人稅의 引下보다는 固定資本 耐用年數의 축소 등을 통해 減價償却費 계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부자금 조달 및 收益性 提高에 보다 공

〈表 5-1〉 製造業 企業의 總資產 對比 自己資本 構成推移¹⁾

(單位: %)

| | 1970 | 1980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
| 自己資本 | 23.3 | 17.0 | 22.3 | 22.2 | 22.7 | 25.3 | 28.2 | 25.9 | 24.4 | 23.8 | 25.3 |
| 納入資本金 | 16.4 | 11.6 | 12.8 | 11.8 | 13.1 | 13.2 | 12.8 | 12.3 | 10.9 | 10.6 | 10.9 |
| 剩餘金 | 6.9 | 5.4 | 9.5 | 10.4 | 9.7 | 12.1 | 15.4 | 13.5 | 13.5 | 13.3 | 14.4 |
| 資本剩餘金 | 1.9 | 3.3 | 5.8 | 5.1 | 4.5 | 6.6 | 9.8 | 8.6 | 8.7 | 8.5 | 9.2 |
| 利益剩餘金 | 5.0 | 2.1 | 3.7 | 5.3 | 5.2 | 5.5 | 5.6 | 4.9 | 4.8 | 4.8 | 5.2 |

註: 1) 期末基準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號.

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는 외국 사례들을 고려하여 1995년부터 완화될 예정인 減價償却費 認定을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直接金融市場에서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企業經營 公示制度의 확립, 內部者去來에 대한 規制 등을 통해 投資者保護를 강화하고 間接投資 金融商品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投資者 底邊을 확대하는 등 株式 및 債券 市場의 活性化를 위한 諸般 制度的 整備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 銀行의 企業經營 監視者로서의 役割 提高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銀行들이 機關投資家로서 기업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는 은행의 非金融企業 株式 保有에 대한 政府의 規制, 기업 주식 보유의 분산 정도, 증권시장의 발달 정도, 議決權의 대리행사 가능 여부, 企業 最高經營者의 地位 등에 따라 國別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少數의 大株主들(創業者 및 特殊關係人이 대부분)이 스스로의 持分 혹은 系列會社들의 持分保有를 통해 경영 전반을 지배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株式 所有者 중 個人 및 其他 法人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上場企業의 大株主 1인 持分率(國民株 除外)이 15%에 달하고 있고, 系列社 持分을 포함할 경우 同 持分率은 더욱 높아져 개인 및 사업법인에 의한 주식보유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3) 內部株主들의 持分率이 경영을 지배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最高經營者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株主總會, 理事會, 監事 등)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證券市場의 未發達 및 정부의 經營權 保護政策 등으로 인해 市場에서의 價格機構나 기업매수를 통한 기업 외부로부

터의 영향력 행사도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4) 그 동안 정부는 與信管理制度를 통해 기업들의 주요 사업계획들을 간접적인 통제하에 둬으로써 大株主 經營者의 독점적인 經營權 行使에 따른 폐해를 줄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金融自律化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 내부통제기구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市場機構에 의한 經營者 牽制를 용이하게 하는 여건 조성을 통해 정부의 經營者 監視 役割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5) 우리의 경우 市場中心型 國家에서의 企業支配構造를 지향하는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企業들이 資金調達을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銀行들이 機關投資家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銀行들은 현재 企業支配보다는 단지 收益獲得을 목표로 企業株式을 보유하고 있고 개별기업에서의 주식보유비중도 높지 않으나, 향후 은행들이 企業株式 보유를 확대할 경우 持分率 上昇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력 증대 이외에 該當 企業의 經營狀態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은행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6) 銀行과 企業間에 존재하는 信用供與를 매개로 한 顧客關係를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銀行들이 企業株式 保有를 확대하고 은행 및 고객보유 주식의 議決權을 행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며, 企業에 임원 파견을 늘려 銀行-企業間의 情報不均衡을 縮小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政府는 은행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과 더불어 銀行의 資金調達 및 운용에 가해지는 過度한 規制를 완화하고, 大企業들의 所有集中을 완화하기 위한 法的 措置 및 關聯稅制의 整備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第4章에서는 銀行 所有構造 改編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持分參加를 통해 은행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諸般 論議를 검토한 후 산업자본의 금융업 참여를 배제하는 金融專業企業그룹의 導入問題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結論들을 도출하였다.

- 1) 먼저 外國 事例들에 비추어 볼 때 銀行株式의 同一人 所有限度 緩和가 責任經營體制 확립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現行 限度 內에서도 安定株主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同一人 所有持分 限度의 조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2) 다만 1994년 은행법 개정시 시중은행에 대한 同一人 株式保有限度を 議決權 있는 發行株式 總數의 8%에서 4%로 축소 한 것은 產業資本의 은행지배 가능성, 경제력 집중문제의 심각성, 금융자율화 이후의 은행 공공성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로 생각된다.
- 3) 銀行株式의 12%까지 보유할 수 있는 金融專業企業家の 導入은 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을 앞당겨 제거할 수 있는 媒介體 혹은 求心軸으로서의 役割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인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金融專業企業家の 출현 여부가 불확실하고 專業企業家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出現時의 副作用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銀行 責任經營體制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銀行 所有構造의 改編뿐만 아니라 政府의 規制 및 窓口指導를 통한 은행경영개입이나 경쟁을 저해하는 金融慣行 등을 개선하기 위한 措置들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우리 金融機關들도 세계적인 兼業化 趨勢에 부응하는 동시에

향후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附隨 및 兼營業務를 확대하고 他 業種에도 진출함으로써 金融需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 은행들은 현재 외형상으로는 많은 子會社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子會社의 經營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단순한 持分參加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既存 金融機關을 母會社로 하거나 產業資本 혹은 金融資本家가 대형 시중은행을 매수하여 수년 이내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金融專業企業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기보다는 업무영역조정과 增資 合併에 대한 規制緩和를 통해 金融機關들 스스로 금융전업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金融그룹의 形成이 야기할 수 있는 諸般 問題點들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은행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外國 事例들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며,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銀行의 立場에서 본 연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本 報告書에서 검토된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個別 項目들에 관한 追加的인 研究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參考文獻〉

- 金東源, 「우리나라 銀行의 所有構造와 經營權 創出」, 『金融自律化와 銀行·企業間의 關係』, 韓國經濟研究院, 1993. 5, pp. 23~38.
- _____, 「銀行產業의 進入規制政策」, 韓國金融研究院, 1992. 10.
- 金聖民·李殷摸, 『우리나라 企業의 資金調達 및 運用構造分析』, 韓國銀行 調查研究資料 90-15, 1990. 4.
- 金仁基·金璋熙, 「韓國 銀行產業의 規模와 範圍의 經濟性 研究」, 韓國金融學會 定期學術大會 發表論文, 1991. 11.
- 金峻永, 『韓國의 資本소득과 資本코스트 推計 및 構造分析』, 韓國經濟研究센터 經濟研究叢書 234, 1992. 10.
- 南尙九·李永琪, 「韓國企業金融의 特質과 發展課題」, 韓國金融學會 第1次 特別 심포지엄 發表論文, 1994. 11. 25, pp. 3~56.
- 南相祐, 「企業環境의 變化와 새로운 銀行-企業 關係의 摸索」, 韓國金融學會 第1次 特別 심포지엄 發表論文, 1994. 11. 25, pp. 57~112.
- 閔相基, 「銀行產業의 對外進出」, 『金融經濟研究』, 金融經濟研究所, 1990. 6.
- 宋貞煥, 「主去來銀行의 經濟的 機能에 관한 實證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4. 4.
- 梁元根, 「우리나라 銀行의 合併에 관한 研究」, 『金融動向: 分析和 展望』, 韓國金融研究院, 1993. 6, pp. 1~27.
- 李愚寬, 「金融市場의 監視機能과 銀行-企業의 새로운 關係」, 韓國經濟研究院, 1993.
- 全洪澤·崔長鳳, 「開放化時代의 銀行產業」, 『金融經濟研究』, 金融經濟研究所, 1990. 6, pp. 27~89.
- 鄭光善, 『企業競爭力과 支配構造』, 韓國金融研究院 研究報告書 第4

- 號, 1994. 10.
- 鄭益俊, 「銀行業의 大型化와 效率性」, 『調査統計月報』, 韓國銀行, 1993. 5, pp. 20~42.
- 左承喜, 「金融의 專業 및 兼業化 이론」, 『韓國開發研究』, 第13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91년 봄, pp. 167~187.
- 崔運烈, 「機關投資家의 安定株主化」, 第4回 中央大學校 「經營포럼」 發表論文, 1994. 11. 29.
- 高橋豊治, 「銀行業における規模の經濟性について: 計測手法の展望」, 『一橋研究』, 第10號 第4號, 1986.
- 谷田庄三, 『現代日本の銀行資本』, シネルヴァ書房, 1978.
- 公正取引委員會事務局, 『日本の六大企業集團』, 東洋經濟新報社, 1992.
- 堀内昭義, 『日本の 金融構造와 企業經營의 成果』, 『金融自律化와 銀行·企業間의 關係』, 韓國經濟研究院, 1993. 5, pp. 1~13.
- 馬淵紀壽, 『アメリカの銀行持株會社』, 東洋經濟新報社, 1987.
- 粕谷宗久, 「Economies of Scopeの理論と銀行業への適用」, 『金融研究』, 第5卷 第3號, 1986.
- 松井和夫, 『現代アメリカ金融資本研究序說』, 文眞堂, 1986.
- 首藤蕙, 『銀行業のScale and Scope Economies』, 『ファイナンス研究』, 第4號, 1985.
- 數阪孝志, 『アメリカ商業銀行の多角的展開』, 東洋經濟新報社, 1991, p. 173.
- Aoki, Masahiko, Hugh Patrick, and Paul Sheard, "The Japanese Main Bank System: An Introductory Overview,"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Policy Paper No. 353, Stanford University, June 1993.
- Boyd, John H., and S.L. Graham, "The Profitability and Risk Effects of Allowing Bank Holding Companies to Merge

- with Other Financial Firms: A Simulation Study,” *Quarterly Review* 12,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pring 1988, pp. 3~20.
- Boyd, John H., and R. Shawn Hewitt, “Bank Holding Company Mergers with Nonbank Financial Firms: Effects on the Risk of Fail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17, 1993, pp. 43~63.
- Brealey, Richard A., and Stewart C. Myers, *Principles of Corporate Finance*, McGraw-Hill International Editions 3rd ed., 1988.
- Charkham, Jonathan P., *Keeping Good Company*, Clarendon Press, Oxford, 1994.
- Corrigan, Gerald E., “The Banking—Commerce Controversy Revisited,”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pring 1991.
- Fischer, Gerald C., *The Modern Bank Holding Company: Development, Regulation, and Performance*, Temple University Press, PA, 1986.
- Gilligan, T.W., and M.L. Smirlock, “An Empirical Study of Joint Production and Scale Economies in Commercial Banking,”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8, 1984, pp. 67~77.
- Gilligan, T.W. and W. Marshall, “Scale and Scope Economies in the Multi-Product Banking Firm,”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3, 1984, pp. 393~405.
- Harm, C., “The Relationship between German Banks and Large German Firms,”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Series* 900, May 1992.

- Heggstad, A., "Riskiness of Investments in Nonbank Activities by Bank Holding Companie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27, Spring 1975, pp. 219~23.
- Herman, Edward H., *Corporate Control, Corporate Powers*, A 20th Century Fund Stud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Jessee, M.A., "An Analysis of Risk-Taking Behavior in Bank Holding Compan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976.
- Jessee, M.A. and Steeven A. Seelig, *Bank Holding Companies and the Public Interest*, Lexington Books, Lexington, MA., 1977.
- Johnson, Hazel J., *The Banking Keiretsu*, Probus Publishing Company, Cambridge, England, 1993.
- Koguchi, Kazuhiko, "Financial Conglomeration," *Financial Conglomerates*, OECD, Paris, 1993, pp. 7~62.
- Kolari, J., and A.Z. Zardkoohi, *Bank Costs, Structure, and Performance*, Lexington, Mass.: D.C. Heath, 1987.
- Kopcke, Richard W., "The Roles of Debt and Equity in Financing Corporate Investment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989, Federal Reserve Bank of Boston, pp. 25~48.
- Kotz, David M., *Bank Control of Large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LA., 1978.
- Litan, R.E., "Evaluating and Controlling the Risks of Financial Product Deregulation," *Yale Journal on Regulation* 3, Fall 1995, pp. 1~52.

- Mester, L.J., "A Multiproduct Cost Study of Savings and Loans," *Journal of Finance* 42, June 1987, pp. 423~445.
- Morgan, Donald P., "Bank Monitoring Mitigates Agency Problems: New Evidence Using the Financial Covenants in Bank Loan Commitments," Research Working Paper 93-16,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December 1993.
- Murray, J.D., and R.W. White, "Economies of Scale and Economies of Scope in Multiproduct Financial Institution: A Study of British Columbia Credit Unions," *Journal of Finance* 38, 1983, pp. 887~902.
- Prowse, Stephen, "Corporate Governance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IS Economic Papers No. 41, July 1994.
- Roe, Mark J., "Some Differences in Corporate Structure in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Yale Law Journal* 102, June 1993, pp. 1927~2003.
- Shaffer, Sherrill, "A Test of Competition in Canadian Banking,"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5, February 1993, pp. 49~61.
- _____, "Market Conduct and Excess Capacity in Banking: A Cross-Country Comparison," Working Paper No. 93~28,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November 1993.
- _____, "Viability of Traditional Banking Activities: Evidence from Shifts in Conduct and Excess Capacity," Working Paper No. 94~11, 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June 1994.

〈附錄〉 金融그룹에 대한 一般的 考察

1. 主要國의 金融그룹 現況

金融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에 대한 定義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株式所有를 매개로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일련의 기업들이 동일그룹 내의 金融機關(複數 가능)을 통해 대규모로 多樣한 金融業(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Koguchi, 1993). 금융그룹 내의 여러 회사들은 株式의 保有나 경영에 대한 效率的 統制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그룹 내 계열회사들이 제공하는 金融商品의 공동판매 등을 통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先進 主要國의 금융그룹들은 나라별로 金融關聯規制나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각기 다른 배경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그룹들의 組織構造나 遂行業務 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附表 1〉을 통해 主要國 금융그룹 소속 은행들의 遂行可能業務를 살펴보면, 대체로 신용업무나 금융자문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證券關聯業務는 많은 나라에서 子會社를 통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업무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 대리인·중개인을 통해서만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그룹이 부동산, 운송, 기타 상업업무 등 非金融業務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소수이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子會社를 통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국 금융그룹들의 형성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美國의 금융그룹들은 商業銀行業과 投資銀行業의 分離(銀行의 非金融企業 주식보유 금지)와 州間業務規制를 회피하기 위해 大型銀行持

〈附表 1〉 主要國 金融그룹(financial conglomerates)의 遂行可能業務

| |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¹⁾ | 캐나다 ²⁾ | 덴마크 ³⁾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¹⁾ | 일본 ⁴⁾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1), 5)} | 스페인 ⁶⁾ | 스웨덴 | 스위스 ⁷⁾ | 터키 ⁸⁾ | 영국 | 미국 ⁹⁾ |
|-------------|----------|-----|-------|-------------------|-------------------|-------------------|--------|-----|-----|-----|--------|--------------------|------------------|-------|------|------|------|------------------------|-------------------|-----|-------------------|------------------|-----|------------------|
| 支給決済 서비스 | 신용카드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B |
| | 여행자수표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 其他信用 業務 | 주택/소비자금융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 | 팩토링 | B | B | B | B | B | AFF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 | 리빙 | B | B | B | B | B | AFF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AFF | B |
| | 보충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AFF |
| 證券關聯 業務 | 증권인수 | B | B | B | AFF | B | B | B | B | AFF | B | B | AFF(L) | B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AFF(L) |
| | 증권딜링 | B | B | B/AFF | AFF | B | B | B | B | AFF | B | B/AFF | AFF(L) | B | B | B | AFF | B/AFF | B | B | B | B | B | AFF(L) |
| | 증권중개 | B | B | B/AFF | AFF | AFF | B | AFF | B | AFF | AFF | B/AFF | AFF(L) | B | B | B | AFF | B/AFF | B | B | B | B | B | B |
| 金融 諮問業務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B | AFF | B | B | B | AFF | B | B | B | B | B | B | B | B |
| 基金運用 業務 | 신탁기금 | AFF | B | AFF | AFF | AFF | AFF | AFF | AFF | AFF | B | AFF | No | B | B | B | AFF | B/AFF | - | AFF | B | B | B | B |
| | 연금기금 | AFF | B | AFF | B | AFF | AFF | AFF | B | No | B | - | No | B | AFF | B | AFF | AFF | AFF | AFF | B | B | B | B |
| 保 險 | 인수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L) | INS | INS | INS | INS(L) | INS | No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 | No(L) |
| | 대리인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L) | INS | INS | INS | INS(L) | INS | No | INS | INS | INS | INS | B | INS | B | INS | B | INS | No(L) |
| | 중개 | INS | INS | INS | INS | INS | INS(L) | INS | INS | INS | INS(L) | INS | No | INS | INS | INS | INS | INS | B | INS | INS | INS | INS | No(L) |

〈附表 1〉의 계속

| | | 호 | 오 | 벨 | 캐 | 덴 | 핀 | 프 | 독 | 그 | 아 | 이 | 일 | 북 | 네 | 뉴 | 노 | 포 | 스 | 스 | 스 | 터 | 영 | 미 |
|---------|--------|-----|------|------------------|------------------|------------------|-----|-----|-----|-----|-----|------------------|-----------------|------|-------|-----|-----|-----------------------|-------------------|-----|-------------------|-----------------|---|-----------------|
| | | 주 | 스트리아 | 기에 ¹⁾ | 나다 ²⁾ | 마크 ³⁾ | 란드 | 랑스 | 일 | 리스 | 일랜드 | 리아 ⁴⁾ | 본 ⁴⁾ | 셈부르크 | 덜란드 | 질랜드 | 르웨이 | 르트갈 ^{1), 5)} | 스페인 ⁶⁾ | 스웨덴 | 스위스 ⁷⁾ | 키 ⁸⁾ | 국 | 국 ⁹⁾ |
| 非 金 融 業 | 운송 | No | B | AFF | No | L | AFF | AFF | B | AFF | No | No | No | L | No | B | No | AFF | AFF | No | B | B | B | No |
| | 여행사 | AFF | B | AFF | No | L | AFF | AFF | B | No | No | No | No | No | B | B | No | AFF | AFF | No | B | B | B | AFF |
| | 부동산 | No | B | AFF | B | L | AFF | AFF | B | No | No | No | No | No | B | B | AFF | AFF | AFF | INS | B | AFF | B | No(L) |
| | 기타상업업무 | No | B | AFF | No(L) | L | AFF | AFF | B | No | No | L | No | L | B/AFF | B | No | AFF | AFF | No | B | AFF | B | No |
| | 산업 | No | B | AFF | No | L | AFF | AFF | AFF | No | No | No | No | L | L | B | No | AFF | AFF | No | B | B | B | No |

註: 1) 증권딜링 및 증권중개업무를 위해 證券去來所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affiliate를 설립해야 함.
 2) 은행의 리싱업무는 금융리싱만 허용(카 리싱 제외), 은행의 證券關聯業務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가능, 은행의 보험업무는 계열사 또는 독립 보험업자의 한정된 보험상품을 판매 가능, 기타상업업무는 극히 제한됨.
 3) 商業銀行은 민영은행 및 지축은행, 협동조합을 포함(특별한 제한이 있는 특정신용기관 제외).
 4) 銀行의 證券關聯業務는 국제에 대한 인수 및 담당 업무임, 信託銀行은 자금운용 서비스 제공 가능, 1993년 봄부터 은행들의 子會社를 통한 증권업무 허용.
 5) 은행의 직접적인 폐쇄식(closed-end) 신탁기금업무 허용.
 6) 信託基金에 대한 규제 없음, 기타신용업무는 일반대출금을 의미함, 비금융업무는 상업 또는 산업관련 회사에 의해서만 수행가능.
 7) 은행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의됨.
 8) 투자은행의 리싱업무 직접 허용, 은행의 銀行業務와 관련된 보험대리인업무 허용.
 9) 銀行 및 銀行持株會社들은 상해보험 및 신용생명보험 또는 지방재보증보험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소유가능.

* 업무 허용 표시
 B : conglomerate에 속한 은행이 직접 제공가능.
 AFF : 은행의 계열 또는 子會社를 통해서만 제공가능.
 AFF(L):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를 통해 제공가능.
 INS : conglomerate에 속하는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 브로커/대리인을 통해서만 제공가능.
 INS(L):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험계열사를 통해 제공가능.
 L : 허용범위가 극히 제한됨.
 No : 수행 불가능.
 No(L) : 일반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나 간혹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됨.

資料 : Kazuhiko Koguchi(1993), pp. 39~46.

株會社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들 銀行持株會社들은 단일 혹은 複數 銀行 子會社를 중심으로 주로 은행업이나 이에 밀접히 관련된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非銀行業務에 대한 진출이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전체 업무에서 同 業務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 日本에서는 戰後 獨占禁止法에 의해 持株會社의 형성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제2차세계대전 후의 재벌해체시 大型銀行들을 중심으로 한 銀行資本이 產業資本과의 株式相互保有와 人的 結合에 의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金融資本이 축적되어 왔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大型 都市銀行들의 最大株主는 동일 및 다른 기업집단 소속 생명보험회사들이며, 非銀行業務에 대한 進出은 엄격히 규제되어 왔으나 1993년 4월 이후 業種別로 子會社 設立을 통해 증권업, 신탁업에 제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19세기의 산업화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자금수요를 은행들이 直接投資 혹은 信用供與 형태로 충족시켜 가는 과정에서 銀行產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4개의 大型銀行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大型銀行들은 제2차대전 후 10여개 지역 은행으로 분리되었다가 1958년에는 3대 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獨逸의 大型銀行들은 兼業主義下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또한 企業株式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기업에 임원을 파견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兼業主義를 채택하고 있지 않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도 金融自由化에 따라 이전에 존재하던 異種金融機關들의 法的 區分이 제거되면서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 금융그룹을 형성하고 그룹 소속 은행들이 子會社를 통해 다양한 證券關聯業務¹⁾

1) 증권의 인수·중개, 「뮤추얼 펀드」(mutual funds)의 판매 및 관리를 포함한 증권투자관리(portfolio management), 투자자문 및 이와 관련된 市場調查, 市場情報 전달 등을 포함함.

를 제공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EC 단일 金融市場이 단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유럽 金融機關들의 통합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金融그룹의 組織形態

金融그룹의 組織形態는 그 그룹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중 代表的인 組織形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첫번째 형태로는 서로 다른 종류의 金融機關들을 部署化함으로써 금융그룹이 하나의 회사로서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完全結合(complete integration)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그룹 내에서 각기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系列企業들의 資源을 가장 신속적으로 共有할 수 있어 특정 金融商品 조합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금융그룹의 市場支配력을 이용한 非競爭的 行爲나 利害相衝, 系列企業(들)의 財政難이 그룹 내 여타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contagion risks) 등이 가장 크다는 短點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험을 포함하는 完全結合形態의 금융그룹 형성을 허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째 형태는 銀行이 非銀行金融機關 子會社(subsidiaries)를 설립하는 경우로 금융그룹 형성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子會社 설립시 기존 金融機關을 매수할 경우 被買受機關의 전문인력, 자본, 고객 등을 획득할 수 있어 新規會社를 설립할 경우보다 創業費用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서로 다른 업무를 한 회사에서 수행하기보다는 별도의 子會社 設立을 통해 특정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금융그룹이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새로

2) 자세한 것은 Koguchi(1993) 참조.

이 시작하는 경우 經營者들이 子會社에 대한 債務를 持分參加에 한정할 수 있고, 法人所得稅面에서 독립적인 子會社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존재하며, 은행·보험·증권업무별로 각기 다른 영업 방식이나 인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別途의 子會社 설립시 子會社에 제공된 비밀정보가 母會社에 의해 사용되는 利害相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그룹이 子會社方式에 의해 여러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所要資本이 크고, 매수 후에 被買受機關의 결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병 후 두 기관의 기업문화가 相異함에 따른 諸般 問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非銀行 子會社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母銀行(parent bank)이 금융그룹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該當 子會社에 투자규모 이상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母銀行에 대한 公的 安全網(official safety net)이 子會社에까지 간접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세번째 형태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ies)의 設立인데, 持株會社를 형성할 경우 관계회사들을 다양한 형태로 持株會社의 산하에 둘 수 있으며, 한 持株會社가 다른 持株會社를 子會社로 둘 수도 있는 등 組織上의 伸縮性이 강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法的 獨立性이 子會社보다 강하므로 利害相衝의 위험이 있는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子會社 設立의 경우보다 고객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자본조달이 子會社의 경우보다 다소 용이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가 長期債로 조달한 자금을 子會社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double leveraging을 하는 경우 資本所要額이 子會社 設立의 경우보다 적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子會社의 경우보다 持株會社 所屬 會社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약화되며, 따라서 범위의 경제에 따른 費用節減이 子會社의 경우보다 적을 가

능성이 있다. 그리고 金融機關의 直接的인 所有가 法的으로 금지되는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은행의 安全性 및 健全성이 非銀行 系列會社와 분리되는 정도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

네번째 형태는 關聯會社(affiliates)의 形成으로 은행이 子會社가 아닌 단순한 持分參加의 형태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은행이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협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의 紐帶關係를 증진시키기 위해 낮은 率의 持分參加(minority participation)를 통해 관련회사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子會社의 경우보다는 關聯會社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기는 하나, 持分參加率이 最大株主가 될 정도로 높을 경우 關聯會社의 전문인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關聯會社들만으로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 금융그룹 내 회사들간의 강한 결속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關聯會社의 設立과 함께 子會社方式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또 다른 형태로 合作會社(joint ventures)의 設立을 들 수 있는데, 이 형태는 소유권의 면에서는 子會社 設立의 경우와 동일하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른 국적의 기업간, 혹은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간에 흔히 이루어지며, 合作을 통해 새로운 市場에의 진출, 新規進入抑制를 위한 규모의 달성, 高級人力의 利用度 提高 등을 도모할 수 있고 기술개발이나 대형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合作社와 분담하거나 상대방의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등의 利點이 있다.

마지막으로 金融그룹의 組織形態 중 결속력이 가장 약한 것이 共同販賣協定(sales and marketing agreements)의 체결인데, 고객에 대해 보다 다양한 商品을 제공하거나 販賣組織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은행은 단지 협정을 맺은 회사의 商品販賣에만 관여하고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

으며, 상품생산과정이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주식보유에 의한 所有·支配關係의 形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종종 持分參加에 의해 關係의 相互 增進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3. 金融그룹의 長短點 比較

가. 金融그룹 形成의 期待效果

1) 規模 및 範圍의 經濟 實現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合併을 통한 大型化가 이루어질 경우 대형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거나 都賣金融市場에서의 市場 占有度를 높임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金融商品間의 보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金融機關이 보완적 성격의 金融商品들을 한 곳에서 제공할 경우 固定費用을 크게 늘리지 않고서도 보다 용이하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도 증대된다. 또한 한 그룹이 여러 종류의 관련된 金融商品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固定費用이 소요되는 部門(전산시스템, 지점망,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그룹 내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경우 該當 商品들을 독립된 金融機關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에 의한 費用節減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그룹을 형성할 경우 顧客維持費用을 共同負擔하거나 그룹 내 기관들간에 顧客에 관한 情報를 어느 정도 共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金融產業에 있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美國 銀行의 경우 상당수의 實證分析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일정 수준의 규모까지는 대체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規模의 經濟가 소멸하거나 不經濟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고 日本 第一勸業銀行이나 사쿠라은행 등이 합병을 통해 資産規模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이후에도 이에 걸맞는 收益의 改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規模增加가 반드시 費用節減이나 經營效率의 增加로 연결되지 않는 양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금융업(도매금융업, 증권업 등)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 部門에서는 市場參加機關이 과다한 편이며 景氣에 따라 고객의 수도 큰폭으로 浮沈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同 部門에서의 合併이 반드시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金融商品間의 類似性이 증가하고 있고 은행·보험·증권관련 업무 등이 점차 동일한 顧客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그룹의 형성이 全般的인 費用節減 혹은 效率의 提高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규모의 대형화 및 業務多角化로 顧客의 다양한 金融需要를 충족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그룹 내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關聯商品들을 공동판매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데 따르는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그룹의 형성에 따른 市場占有度의 提高와 대형그룹의 출현에 대한 顧客의 신뢰감(reputation capital) 증진에 부응하기 위해 金融그룹이 經營合理化 노력이나 새로운 전략의 모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間接的인 效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金融機關間 競爭促進

금융그룹이 新規로 特定 市場에 진출함으로써 個別 金融市場에서의 市場 參加者數를 늘리거나 既存 參加者를 계열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우 金融機關間 競爭을 촉진함으로써 金融産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金融産業에 존재하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인해 독립된 新規 進入者보다는 금융그룹에 소속된 회사들이 기존 기관을 매수하여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foehold entry)가 많으며, 이때 해당 계열회사가 금융그룹

〈附表 2〉 銀行產業에서의 規模 및 範圍의 經濟에 관한 實證分析 結果比較

| 研 究 者 | 主 要 結 論 |
|---|---|
| Murry & White (1983), Gilligan & Smirlock(198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 ○ 預金規模 2,500만달러 이하의 銀行에서는 規模의 경제가, 그 이상은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
| 首藤惠(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規模의 經濟는 존재하며 도시은행과 상위지방은행은 그 정도가 큼. ○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
| 粕谷宗久(19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규모의 경제는 존재하나 그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음. ○ 도시은행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1975, 76, 80, 81년 제외). ○ 지방은행은 1983년까지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4년에는 존재함. |
| Gilligan, Smirlock & Marshall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規模의 經濟는 소규모에서 존재함. 預金規模 2,500만달러 이상의 단점은행, 5,000만달러 이상의 지점은행에는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 範圍의 經濟는 존재함. |
| Kolari & Zardloohi(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規模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 貸出과 總預金を 생산물로 한 경우에 範圍의 經濟가 존재함. |
| Berger, Hanweck & Humphery (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나 대규모에서는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함. ○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
| Mester(19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規模銀行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나 기타 規模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 範圍의 經濟는 존재하지 않음. |
| 高橋豊治(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은행은 規模의 不經濟가 존재하며 지방은행은 規模의 經濟가 존재함. ○ 範圍의 經濟는 모두 존재하지 않음. |

資料：全國銀行聯合會, 『金融機關間的 合併·買受와 課題』, 1990. 11, pp. 20~22.

의 認知度(reputation)를 배경으로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할 경우 該當 市場에서의 전반적인 競爭度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및 캐나다에서의 證券市場 개혁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특정부문의 競爭度를 높일 목적으로 金融機關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유도한 결과 금융그룹의 형성이 촉진된 경우도 존재한다. 競爭的 市場이 형성될 경우 거래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향상, 소비자 가격의 인하, 生産 및 經營上의 非效率 除去를 통해 金融機關의 競爭力를 強化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를 통한 大型化가 金融市場에서의 機關數를 오히려 줄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이때 市場占有度가 높아진 大型 金融機關이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非競爭的인 營業活動을 행할 경우 該當 金融市場에서의 競爭度가 저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業務多角化에 따른 危險分散

수익 흐름 사이에 相關關係가 낮거나 負의 相關關係를 갖는 業務를 동시에 한 금융그룹에서 영위할 경우 個別金融機關이 이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의 수익 흐름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함으로써 金融危險을 줄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國家別로, 그리고 동일 국가 내에서도 地域別로 巨視經濟狀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地域別로 差等化하거나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해 Litan(1985)은 非銀行業務의 收益變異係數가 은행에 비해 작고 兩 業務로부터의 收益이 負(-)의 相關關係에 있다면 銀行과 非銀行機關과의 合併은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³⁾. 그리고 Boyd와 Graham(1988)은 銀行持株會社가 생명보험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도산위험이 줄어드나, 증

3) 그러나 그의 實證分析結果는 對象分析期間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권회사나 부동산회사와 결합할 때에는 도산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新規業務가 은행업보다 危險度가 높다면 業務多角化에 따른 利點을 相殺해 버림으로써 도산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Boyd, Graham과 Hewitt(1993)는 非銀行資産의 比重이 큰 합병일수록 위험이 증가하며, 金融自由化措置에 의해 大型 非銀行金融機關들이 소형은행을 매수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金融그룹의 業務多角化에 의한 危險縮小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나. 金融그룹 形成의 問題點

1) 經濟力集中 深化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금융그룹이 형성되면 金融市場 전체가 이전보다 少數의 大型機關 支配下에 놓임으로써 市場 全體의 競爭度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록 金融市場에서의 機關數가 줄어들더라도 특정 고객층과의 긴밀한 紐帶關係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金融機關이 존재할 경우 소수 금융그룹의 출현이 市場競爭度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들의 市場支配力 濫用行爲를 저지할 수 있는 法的 裝置나 시장에서의 관행이 없을 경우 기관수의 감소는 競爭低下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市場에서의 競爭度 저하는 金融商品의 價格上昇, 金融資源의 偏重配分, 금융중개의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경제적, 분배적 효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主要 先進國들의 경우 金融市場間의 相互進出 增大,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개방, 국가간 금융서비스교역 확대 등으로 인해 一國 金融市場에 소수의 大型 金融機關이 존재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최근에 들어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金融產業

의 各 部門間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종래의 市場集中度 指數 (CRn, HHI 등)가 실제의 集中度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의 나라에서는 自國 金融機關들이 國際競爭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金融機關間 合併이나 금융그룹 형성을 오히려 권장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特定 金融市場 內에서 혹은 金融產業間에 대규모의 합병·매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병·매수의 증가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主要 金融그룹의 市場占有度가 상승하였지만, 이들 나라에 있어서도 대형 금융그룹이 자신의 증가된 市場支配力을 남용하는 현상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Koguchi(1993)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大型 金融그룹들이 市場獨占 및 非競爭的 行爲를 영위할 가능성은 常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監督當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은 再論을 요하지 않는다.

2) 利害相衝(conflict of interest)

利害相衝은 金融機關이 자기에게 유리한 서비스와 고객에게 유리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金融機關이 서로 다른 두 그룹의 고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 그룹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도 利害相衝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金融機關이 독자적으로 혹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양한 金融商品을 제공할 경우 利害相衝이 야기될 소지가 있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公正去來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나 시장감시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정도가 낮을수록 커지게 된다. 利害相衝의 危險이 있을 경우 예금자, 차입자, 해당 금융기관 등의 利害關係者 가운데 어느 한편의 이익을 다른 한편의 이익에 앞세우기 때문에 去來의 公正性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資金의 效率的 配分을 저해하게 된다. 公共政策의 觀點에서는 利害相衝이

업무다양화를 추구하는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그룹의 특정 수요에 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效率性 側面과 방만한 경영이나 過度한 危險負擔을 초래할 수 있다는 安全性 및 健全性 側面, 그리고 投資者保護를 弱화시킨다는 측면 등에 대한 고려를 요한다.

利害相衡問題에 대한 對應策은 나라마다 相異하며, 大別하여 두 가지 相反되는 接近方法이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는 金融機關이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利害相衡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金融機關을 가능한 한 法的, 制度的으로 分離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에 경쟁이 충분히 존재하는 한 市場原理의 作用(market discipline)이 좋은 금융관행을 발전시키고 金融機關 자신들로 하여금 利害相衡의 여지를 줄일 內部經營體系를 정비할 유인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는 利害相衡問題의 해결을 市場機構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금융그룹소속 회사들간에 고객의 거래에 관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Chinese Wall을 설치한다든지, 利害相衡에 의해 피해를 본 고객이 異議를 제기할 수 있는 窓口나 節次(complaints procedures)를 마련하고 엄격하고 구체적인 經營公示義務를 부과하거나 대내적, 혹은 외부인에 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當局 또는 自律規制機構에 의해 적용되는 倫理綱領(codes of conduct)을 제정하는 것 등의 補完的 措置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그룹 關係會社들간의 危險傳播(contagion risks)

金融自律化로 금리자유화 폭이 확대되고, 業務領域의 확대에 따라 각종 新金融商品이 출현하면서 금융경영리스크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非銀行業務의 리스크가 銀行業務의 리스크보다 높기 때문에 金融그룹 내의 非銀行部門

의 不實이 銀行部門의 安全性을 해칠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화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일반인들은 금융그룹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에 속하는 일부 회사에서 財政的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그룹 내 다른 關係會社들(특히 은행)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金融그룹 所屬會社들간에 金融上的 直接的인 關聯이 있을 경우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런 連繫性이 없더라도 처음에는 금융그룹의 한 부분에 국한된 어려움이 그룹 전체의 安全性, 健全性에 대한 인식(public confidence)에 惡影響을 끼침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金融制度에 대한 一般의 信認度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한 公的 安全網(official safety net)을 금융그룹의 非銀行會社에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市場이 公的 安全網의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확대가능성을 認知할 경우에는 금융그룹 소속 非銀行 子會社와 公的 安全網 밖에 있는 독립적인 非銀行會社들간에 競爭上的 不衡平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副作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連結去來의 範圍를 축소하고 그룹내 한 부문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부문들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金融그룹 所屬會社들간에 방화벽(firewalls)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나, 방화벽의 효율적 작용은 금융그룹 형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제약할 것이며, 또한 緊急事態時에는 이러한 방화벽들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금융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의 連結 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金融그룹 所屬會社들이 종사할 수 있는 業務範圍를 결정함에 있어 그룹 소속회사들의 資本金 規模를 重視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資本比率이 높은 銀行만 子會社를 통해 새로운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금융그룹에 대해 BIS의 自己資本比率보다 높은 비율의 自己資本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현실적으로 金

融그룹所屬會社들 간의 위험전파(contagion risks)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하에 關聯 監督當局들이 금융그룹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의 全般的 危險負擔水準(risk exposure)의 評價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교환, 主監督機關 設定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監督機關間的 협조를 통해 金融그룹 所屬會社들이 각기 어떤 당국의 감독을 받는 가에 관한 원칙을 설정하거나 監督機關들을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4) 組織의 肥大化에 따른 經營統制 弱화

금융그룹이 營業규모를 확대하거나 業務의 多角化를 추진할수록 大型化·多樣化되는 그룹 내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한 기관이 어떤 형태로 多角化를 추진하는 가에 따라 그룹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며, 새로이 형성되는 그룹의 組織을 얼마나 效率的으로 管理하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의 經營成果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多角化로 인해 그룹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룹 전체의 經營을 통제하거나 系列會社들의 營業實績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基準의 制定 및 機構의 整備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널리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銀行業務와 非銀行業務間에는 營業방식, 시장구조, 인사정책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그 결과 금융그룹의 形成에 의한 業務多角化로 非銀行業務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과정에서 銀行과 非銀行 子會社 經營者들간의 自律的 經營權에 대한 마찰이나 직원들의 인사 보수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그룹의 전반적인 業務範圍와 營業活動水準에 대한 經營陣의 統制가 어려워지거나, 경영진이 그룹의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룹 全體에 대한 統制를 유지하는 것과 個別企業의 自律性을 保障하는

문제간에 적절한 균형을 취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룹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이 그룹 소속회사들에 분명하게 전달되는 데 障礙가 되는 要素들이 존재할 경우 금융그룹 전체의 經營成果가 改善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經營統制의 弱화는 규제를 받지 않는 관계회사에 의한 非正常的 去來나 過度한 危險負擔, 移轉價格 操作 등을 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그룹 非銀行業務의 收益性, 銀行과 非銀行 子會社들간의 경영상의 갈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의 向後 戰略을 적절히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계획 수립, 자회사 관리 등 그룹의 經營 全般에 관한 사항들을 취급하는 別途의 機構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監督上의 어려움 加重

금융그룹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組織의 複雜化·不透明化로 인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 전체의 經營의 健全性이나 危險度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선 多樣한 金融業務에 종사하는 복잡한 機關일수록 組織構造의 透明性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중 「기어링」(double gearing)에 의해 각 계열회사의 자본의 합계가 그룹 전체의 統合資本規模를 上廻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관계회사를 이용하여 負債比率를 허용수준 이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限度規制를 회피하기 위해 한 기업에 대한 貸出, 支給保證, 또는 다른 約定들을 母會社 및 子會社들에 분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金融그룹의 경우 自己資本比率이나 危險集中에 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組織의 不透明性을 강화하는 경향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金融그룹이 獨立 金融機關들에 비해 危險도가 과약되지 않은 新種 派生金融商品들을 취급하는 규모가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金融그룹의 危險度를 평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나 現行 監督體系가 相異하기 때문에,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健全經營監督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금융 업무를 감독하는 當局들간의 協助와 調和가 더욱 긴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金融그룹 組織의 不透明性이 增大되지 않도록 監督當局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